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561-01

영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편람

2016. 1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제1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I. 농촌산업화 개요 및 정책 방향	3
1. 농촌산업화 개요	5
2. 농촌산업화(6차산업화) 지원 정책 방향	9
II.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방향	19
1.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개요	21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22
III. 6차산업화 주요 사업	31
1. 농촌산업화 사업 예산현황	33
2. 주요 사업 개요 및 예산현황	34
IV.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제도	75
1. 지특회계 대상사업	77
2. 시·도 자율편성 사업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91
3.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96
V.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	101



제2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I. 사업개요 -----	115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117
2.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 -----	122
II. 예산의 신청 및 편성 -----	123
1. 예산 신청 및 집행 체계 -----	125
2.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	126
3. 행정사항 -----	129
4. 추진일정 -----	130
III. 사업시행 단계 -----	161
1.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63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169

목 차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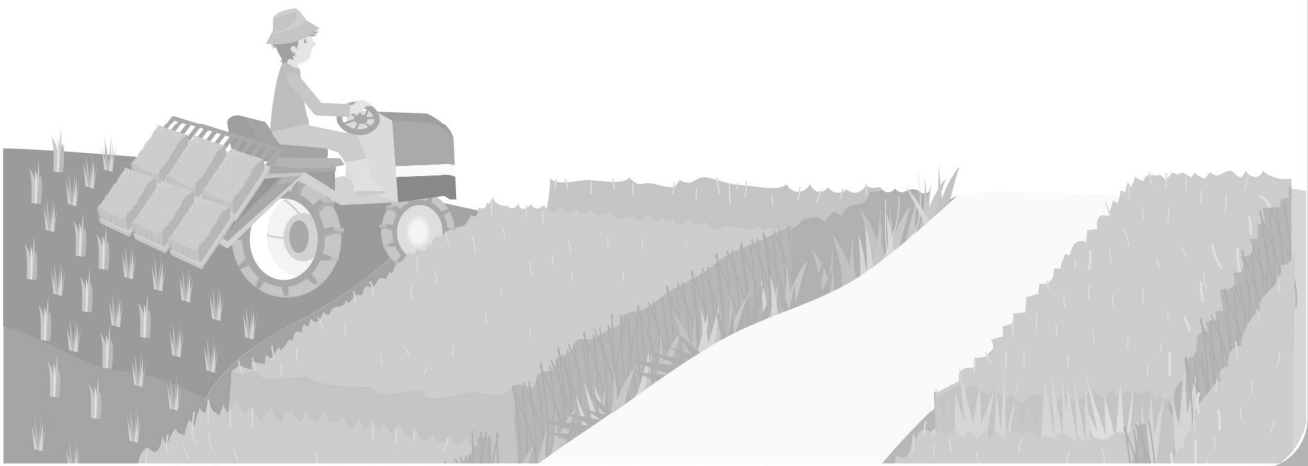
1. 관련 규정(발취)-----	183
1-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5
1-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99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211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8
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9
1-6.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290
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72
1-8.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444
2. 농촌산업 관련 통계-----	483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505
4.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521
5.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593
6. 2017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635
7. 농공단지 조성 현황-----	659
8.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	673
9.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현황-----	68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편람

제 1 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제1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농촌산업화 개요 및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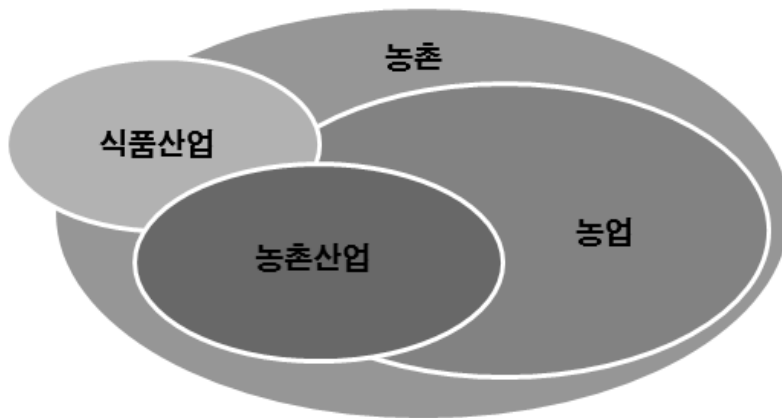


1 >> 농촌산업화 개요



가 농촌산업의 개념

- ▶ **농촌산업**은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공간적으로는 농촌 지역내에서 이루어지고, 산업화 대상은 농특산물 외에 문화·경관 등 무형자원까지 포함하며, 산업화 결과물은 제조·가공제품 뿐 아니라 관광 및 서비스업 등까지 포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1.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나

농촌산업의 육성

농촌산업의 육성과 관련, 국가와 지자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책무 부여

- 농촌산업육성 시책을 시행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산업육성기본계획**(3년 단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하여야함

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고유하거나 독특한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이하 “특산물 등”이라 한다)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이하 “농어촌산업”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8.호: 생략(기술개발, 상표·포장개발, 창업·역량강화, 농어촌산업인프라 조성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수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 수산레저산업을 비롯한 농어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농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어촌산업육성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촌산업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농어촌산업 육성정책 및 관련 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등을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에 대하여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지원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촌지역 산업진흥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농어촌정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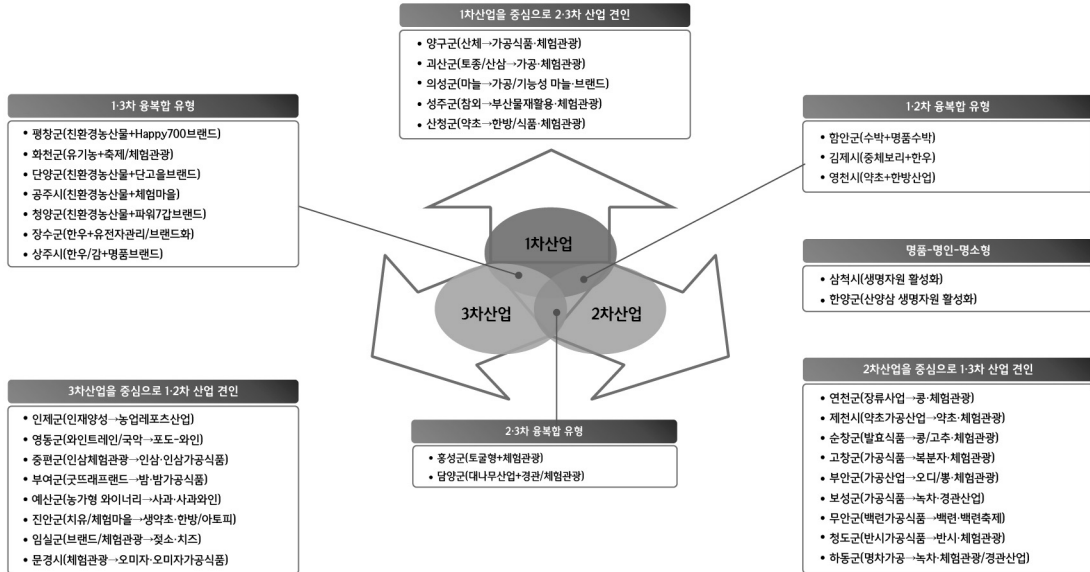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농어촌지역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개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공단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 농촌산업화 유형(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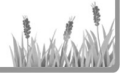
▶ 산업화 대상인 농촌 부존자원의 유형과 산업화 결과에 따른 제품 유형의 결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 가능



대분류	중분류	산업화 유형
원자재 중심형	농산물	고흥유자, 의성마늘, 울주배, 괴산고추, 보성녹차, 강화순무, 파주장단콩
	축산물	제주돼지고기, 황성한우
	임산물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공주밤, 황성더덕, 진안홍삼
제조 중심형	원자재 활용형	한산소곡주, 진주실크, 대나무 산업화(담양군), 백련을 활용한 산업화(무안군)
	기능성 활용형	감의 타닌 성분액, 동충하초
	자원기술 복합형	녹차의 EGCG를 활용한 함암제, 카데킨 함유 아토피 연고
서비스 중심형	노하우(Know-How)형	전주비빔밥, 춘천닭갈비, 남원추어탕, 지리산꽃감, 한산모시, 천안호두과자
	노웨어(Know-Where)형	땅끝마을, 황성한우문화촌, 춘양목산림휴양테마파크
	노후(Know-Who)형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김삿갓문화제, 이도령화 성춘향, 왕인박사
프로젝트형	상설 이벤트형	정선5일장, 진도토요민속여행, 대전토요일어울마당
	축제형	안동국제탈춤축제, 금산인삼축제, 함평나비축제, 하동야생차 문화축제

2 >>

농촌산업화(6차산업화) 지원 정책 방향



가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

▶ 한·칠레, 한·미, 한·중 FTA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농업농촌은 어려운 여건



▶ 농업소득의 정체 및 농가소득의 상대적 하락

○ 농업소득의 정체 → 농가소득 증가 저조

구 분	'05	'15	연평균 증가율
농가소득	30,503천원	37,215천원	2.00%
농업소득	11,815천원	11,257천원	-0.48%
농외소득	9,884천원	14,939천원	4.22%

○ 농가소득의 상대적 하락

- 농가소득 / 전국가구소득 : ('06) 88.6% → ('15) 61.6%
- 농가소득 / 도시근로자가구소득 : ('06) 78.2% → ('15) 55.9%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이 심화됨에 따라 농촌지역 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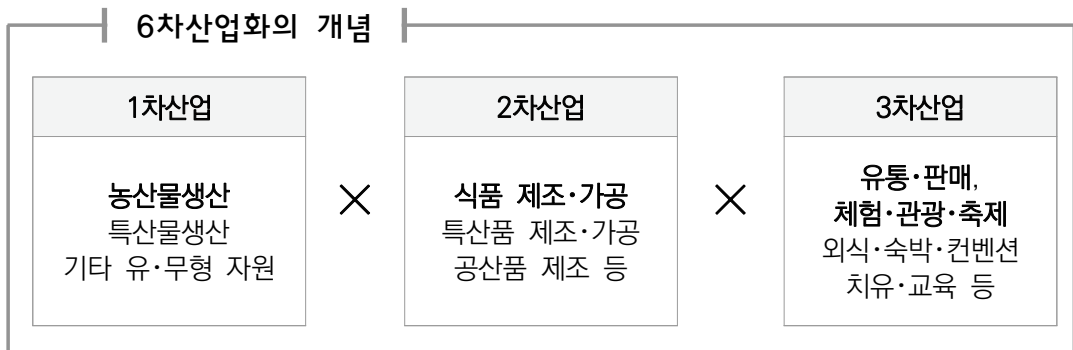
- 농가인구 비중 : ('70년) 44.7% → ('80) 28.4 → ('90) 15.5 → ('15) 5.0
- 농촌고령화율(전국) : ('05년) 29.1%(7.1%) → ('10) 31.8(11.1) → ('15) 38.4(13.2)

▶ 새로운 가능성

- 주 5일제 정착, 관광 트렌드 변화(단체/관람 → 가족/체험)
 - 아웃도어 산업 : ('09) 2조 4,300억 → ('13) 6조 4,000억
- 귀농, 귀촌인 증가 : ('01) 880가구 → ('13) 32,424가구(56,2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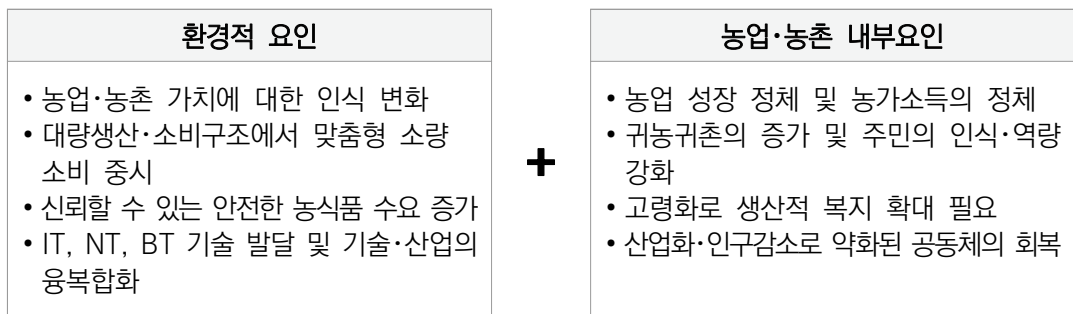
나 6차산업화의 개념

- ▶ 농촌 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산업)과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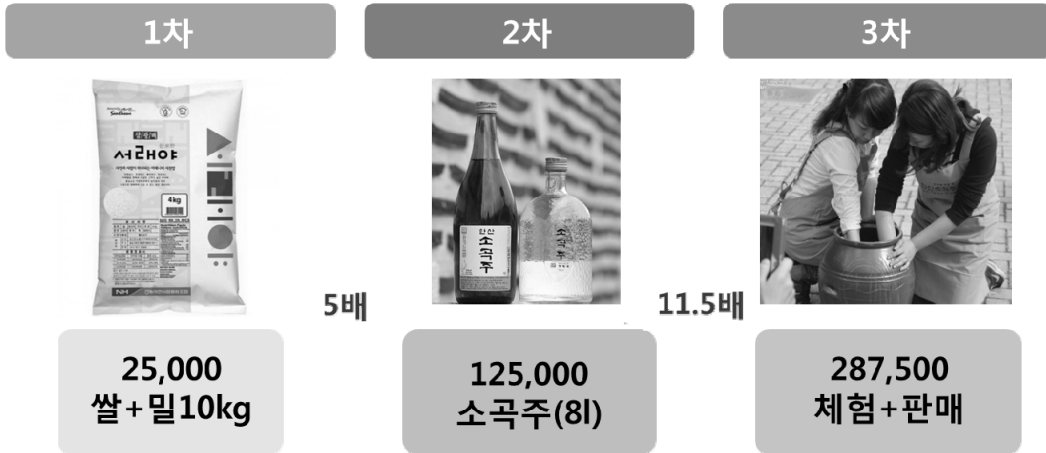
핵심요소 : 1) 농업인 등 농촌지역주민 주도, 2) 지역 부존자원의 활용, 3) 창출된 부가가치 및 일자리가 농업·농촌으로 내부화, 지역자본으로 형성되어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 6차산업화의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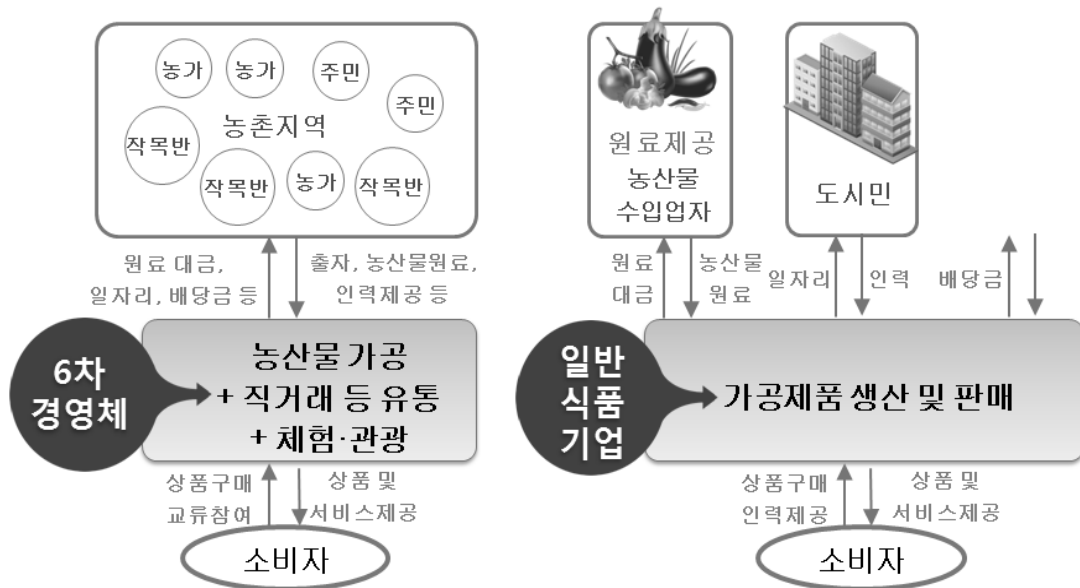


▶ 6차산업화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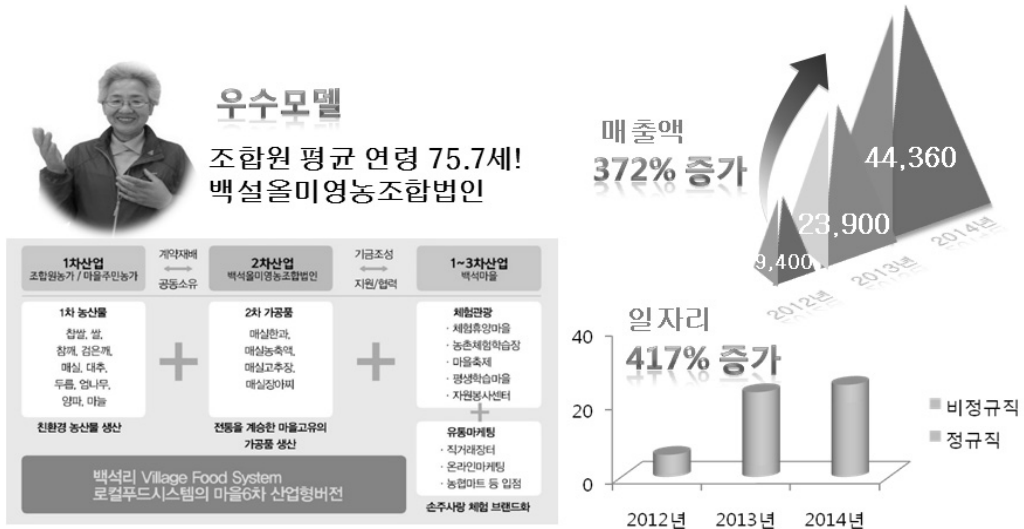
① 농산물 등 농촌자원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② 부가가치가 농업·농촌지역으로 내부화



③ 중소농, 고령농 등을 위한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6차산업화 추진 이유(일본 설문조사 결과)

- 생산, 가공, 판매 일원화를 통한 가격결정권 확보 - 68.9%
- 규격외품 및 재고의 처리 - 39.5%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25.7%
- 유통비용 절감 - 24.2%
- 농한기 인력 활용 - 13.3%
- 기타(정부지원, 후계자 양성 등) - 26.2%

다

6차산업화의 유형 및 사례

- ▶ 형식적으로는 개별 경영체 등이 경영을 다각화하는 방식과 주체간 제휴·연대 등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구분
- 경영체가 1,2,3차로 경영을 다각화(부분적 다각화 포함)하거나 다른 경영체에 출자, 독립 법인 설립 등의 형태로 추진

- 제휴·연대는 **지역내 연대, 지역외 연대, 지자체간 연대**로 구분
 - 주체간 장기계약, 기능분담, 공동사업 추진 등의 형태로 추진
 - * 지역외 연대 사례 : 경북 의성 마늘-롯데, 경북 문경 오미자-광동제약간의 연대
 - * 지자체간 연대 사례 : 강화·제천 등 12개 시·군의 한방약초 공동마케팅, 나주(배)-영주(사과)의 연대

▶ 내용상으로는 **경영체의 6차산업화와 지역산업 6차산업화**로 구분 가능

- **지역산업의 6차산업화**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조직 중심이 되어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경영다각화, 경영체간 연대,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지역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의미

▶ 부가가치 창출을 이끄는 **중심산업의 유형과 추진주체**에 따른 구분

- 융·복합화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산업 유형에 따라 크게 **1차 주도형, 2차 주도형, 3차 주도형**으로 구분
- 추진주체는 참여하는 범위에 따라 **개별 농가부터 마을공동체, 법인경영체, 지자체** 등으로 구분

■ 6차산업화의 유형 및 대표적 사례 ■

구분	1차 중심형	2차 중심형	3차 중심형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은아목장(여주) • 전남 우리원(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남에 다녀왔습니다(해남) • 경기 다물한과(양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대가농원(남양주) • 충북 영동 샤토미소(영동)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토고미마을(화천) • 경남 감미로운마을(창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임실 치즈마을(임실) • 강원 송천 떡마을(양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화탑마을(나주) • 강원 해담마을(양양)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밤뜨레영농조합(부여) • 경북 송강매원(칠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아이스딸기마을(합천) • 경북 미소머금고(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예산와인(예산) • 충남 돼지마블로즈(보령)
지역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문경 오미자(문경) • 전북 고창 복분자(고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감와인(청도) • 전남 장흥햇개(장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 산천어축제(화천) • 전북 완주 로컬푸드(완주)

라

6차산업화 추진 실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6월)

- 법적 개념정의, 인증제 도입, 지원 전문기관지정, 인허가 의제제도 도입, 6차산업화 지구제 도입 등

▶ 도별 6차산업 지원센터를 설치(10개소)하고, 현장맞춤형 창업보육 지원체계 구축

- 사업모델 공모전, 창업 경진대회 등 모델발굴
- 농산물종합가공센터(44개소) 확대를 통한 창업지원
- 모태펀드, 클라우드 펀딩 등 자금지원
- 경영, 회계, 제품 등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인력 양성·채용 지원
- 네이버, G마켓 등 전용판매플랫폼 설치 등 판로 지원

참고 : 6차산업 판로 지원 현황

- 지역별 안테나숍(18개소) 설치
- 로컬푸드 직매장(102개소) 연계 운영
- 네이버 산지직송, a마켓, 하나로마트(양재점) 등에 전용판매관 개설
- HDC 신라면세점 '상생협력관' 개설('16.2월)
- 우수제품 공영홈쇼핑 입점('16년, 10개 업체)
- 백화점, 아울렛 등과 연계한 품평회 및 판촉전 개최
- 중국 대련 전자상거래협회 MOU('16.7), K-Food 페어 참가 등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추진

▶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 지정

- 공동인프라 조성, 규제완화, 전후방 산업 연계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 * 지구현황('14~'17, 16개소): 영동 포도 와인, 순창 장류, 하동 녹차, 횡성 한우, 서천 소곡주, 영광 찰보리, 문경 오미자, 의성 마늘, 서귀포 감귤, 강릉평창 고랭지배추, 공주 알밤, 장수 레드푸드, 함양 산양삼, 고창 복분자, 고흥 유자, 안동 마

▶ 다양한 현장규제 개선을 통한 6차산업 활성화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해 규제현장포럼('15.6·10월),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농어촌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현장규제 개선

- 농어촌민박 방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에서 조식 제공을 허용('15.7월, 농어촌정비법 개정)
-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가공시설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144개 지자체, '16.6월 기준)
- 농촌체험마을의 사업다각화를 위해 체험마을의 경우 그린벨트 내에서도 2천㎡ 내에서 음식점 등 설치 허용('15.9월,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우체국, aT 외에 농협쇼핑몰, 전통주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가능토록 확대('15.4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고시 개정)
- 2천㎡ 이하의 농산물 가공·판매·유통시설의 경우, 진입도로(4m)의 의무확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15.5월, 개발행위허가지침 개정)
- 진흥지역 내에서 설치가능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1ha→1.5) 및 사료 제조시설(1ha→3) 면적 확대('14.12월, 농지법 개정)
- 농업법인의 주요 사업내용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추가('14.12월,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 등을 고려하여 산림 내 캠핑·레포츠 시설 설치 허용('14.12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산지생태 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축 방목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목허용 면적(3ha→5)을 확대('14.9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마 6차산업화 추진 성과

6차산업 경영체 육성

주요 성과

- 창업부터 사업활성화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6차산업 창업자 수 및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 지속 증가 추세
 - 창업자 수(누적) : ('14) 752개소 → ('15) 1,224 → ('16.10월) 1,606
 - 인증사업자 평균매출액 증가율 : ('14) 11.2% → ('15) 12.1 → ('16.9월) 13.5

▶ 성과사례 발굴·홍보, 6차제품 BI(Brand Identity) 개발 등을 통한 농업인 및 소비자의 6차산업 인지도 제고

- * 농업인 인지도(KREI) : ('13) 83.6% → ('14) 96.0% → ('15) 97.5 (13.9% 증)
- ** 소비자 인지도(농정원) : ('14) 38.3% → ('15) 66.3% → ('16) 67.3 (1.0% 증)

▶ 6차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모델 발굴, 시제품 생산, 컨설팅, 자금, 판로, 인력 등 맞춤형 창업보육 지원

- '대학생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 개최('14~'16년) 등을 통해 모델 발굴
 - * 매년 우수 사업모델 10개팀 수상(누계 30) → 5개팀 창업, 10개팀 창업 예정
-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15년:30개소→'16:44)하고 가공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및 가공기술 교육·이전 등 지원
 - * 지원실적('16.6월 기준): 창업코칭 1,275건, 시제품 생산 41건
- 6차산업 모태펀드(400억원), 6차산업 활성화자금(300억원, 2%)을 통한 자금 지원 및 소자본 창업을 위한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3개소) 구축
 - * 투자 실적('16.6월 기준): 모태펀드(9개소, 98억원), 크라우드펀딩(2개소, 1.5억원)
 - **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IBK투자증권, 오마이컴퍼니, 오픈트레이드
- 지역별 안테나숍(24개소), 로컬푸드 직매장('16:140)과 연계한 로컬 유통망 지원 및 6차 전용 판매플랫폼(네이버·a마켓 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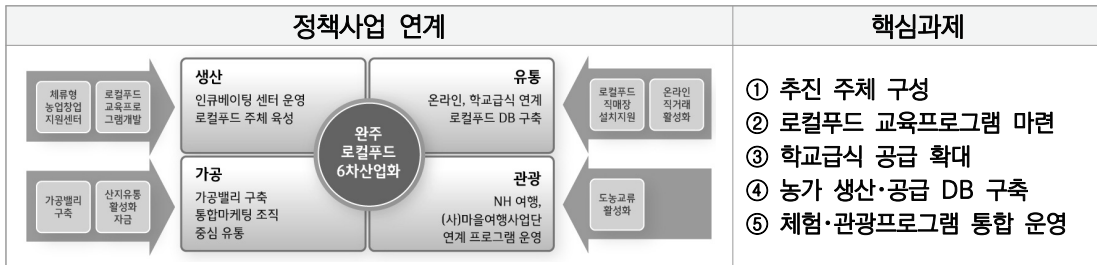
지역단위 6차산업화

주요 성과

- 6차산업화 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우수사례 20개소 발굴
 - 매출액 및 방문객(20개소 기준) : ('15) 7,939억원/1,379만명 → ('16) 8,372/1,565

- ▶ 지역 특화산업 후보군(77개소)을 발굴하고 정책사업 연계, 농협 참여, 종합컨설팅 등을 통한 지역단위 6차산업 발전방안 수립('16.5.4)
 - '16년 우선지원 대상(26개소)에 대해서는 중앙·지역단위 FD(Family Doctor)를 통해 지역별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153개 핵심과제 도출

Ⅰ 성과창출 프로젝트 예시(완주 로컬푸드) Ⅰ



- 유관기관(실용화재단, 농금원 등)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6차산업 참여 경영체에 대한 **상시 종합컨설팅 지원**
- 경영체간 네트워크, 전후방산업 연계 등 **기초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은 6차산업화 지구** ('16:13개소→'17:16)로 지정·육성
- ▶ 지역농협 6차산업 인증 확대('15:5개소→'16:50), **안정적 원물공급체계 구축** 등 지역농협 역할 강화
 - 지역농협 가공공장, 로컬푸드 직매장을 중심으로 6차산업 인증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지역농협 6차산업 인증 : ('15) 5개소 → ('16P) 50 → ('20P) 100
 - 인증사업자 대상 가공용원물 수요조사*(3.21), **원물공급전담농협 지정(33개소)**을 통해 지역농협 중심의 원물공급 추진
 - * 수요조사 결과 인증사업자 189개소(99개 품목)가 농협을 통한 원물구매 의사 있음

바

농촌산업화 정책 추진방향

농업 위주, 단편적, 중앙부처 주도 → 공간(농촌) 중심, package지원,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 산업정책으로 전환

1 정책목표 : 1차생산 지원, 농업인 소득증대

→ 융복합화(6차산업), 지역전체 부가가치 증대

- 농업 소득 증대를 통한 농가 소득 지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를 고려, 농촌 자원의 융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2 정책대상 : 농업(인) → 농업(인) + 향토기업 + 지역주민

- 농촌 지역내 비농림업 종사자 비중 증가를 고려, 정책대상 확대 (농업인 → 농촌지역 주민전체)

3 정책내용 : 단편적, H/W위주 → package화, S/W+H/W

- 개별 경영체 대상 시설설치 위주의 단편적 지원은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생산·제조가공·R&D·마케팅이 결합된 package 형태로 지원하고, S/W 분야 지원 강화

4 정책수단 : 하향식, 직접추진(중앙) → 상향식(포괄보조), 자율과 책임(지역)

- 농촌 산업화 관련 재정지원이 포괄보조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등 포괄보조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제1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II

지역단위 6차산업화 정책방향



1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개요



농가소득 제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산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우수모델 발굴 :('16) 목표 20개소

- ▶ (개념) 지역 특화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경영체들이 네트워크 구성, 가치사슬 효율화 등 집합적 활동에 기반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 ▶ (유형) 경영체간 연계, 6차산업 확산 형태 등을 기준으로 선도업체 중심형, 계열화형, 지역 클러스터형으로 분류(KREI)
 - 선도업체 중심형 : 6차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선도경영체를 중심으로 유사 모델이 확산되는 유형
 - 계열화형 :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가치사슬 내 다양한 경영체들이 수평·수직적으로 연계되는 유형
 - 지역 클러스터형 : 농촌자원이 집적화된 공간을 중심으로 혁신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협력에 기반한 집합적 활동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유형

구 분	선도업체 중심형	계열화형	지역 클러스터형	
유형도				
특 징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방·학습을 통한 생산 활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생산활동의 집적 및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 집합적 활동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주체별 거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 부문별 생산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업종 간 생산연계

2

지역단위 6차산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주요 내용

- 비(非)식용자원의 6차산업화
-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종합컨설팅 추진
- 농협을 통한 6차산업 판로 지원

가

비(非)식용자원의 6차산업화

현황

- 인증사업자(960개소), 향토산업(288) 등 다양한 형태의 6차산업이 추진 중이나 대부분 식용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
 - 인증사업자 중 야생화·왕골공예·쪽염색 등 비식용자원을 활용하는 경영체는 54개소로 약 5.6% 수준
 - * 향토산업육성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도 식용자원(93.2%) 중심
- 체험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유형도 먹거리(33.7%), 영농(20.5%) 순으로,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부족하고 비식용자원 활용 미흡

추진계획

- 생활건강제품 발굴 및 판로개척
 - 비누, 마스크팩, 샴푸, 화장품 등 제품 발굴
 - 국내 유통플랫폼, 중국 유통망 진출 추진
- 농촌체험 콘텐츠 확충 등 농촌관광 자원화
 - 문화, 전통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팜파티, 팜웨딩, 팜핑, 팜스테이, 마당스테이 등
- 강진 푸소(FUSO) 등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
-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상품에 문화, 전통, 경관 등 추가 검토

참고

비식용자원 6차산업화 현황

■ 비식용자원 6차산업 현황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및 지역 특화산업 육성 사업 현황

구분	비식용자원 활용 경영체	분야			
		공예	향장	비식용 가축	기타(경관 등)
6차산업 인증사업자 (960개소)	54개소	15	23	10	6
향토산업육성 (288개소)	33개소	11	11	2	9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 (411개소)	15개소	1	-	2	12

-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프로그램 현황

체험 프로그램	먹거리	영농	만들기	생태	휴양	생활	놀이	예절	축제
비율(%)	33.7	20.5	17.7	8.4	6.3	4.7	4.7	3.7	0.3

■ 분야별 사례

- (공예-왕자골 화문석) 왕골을 40년간 재배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왕골을 활용하여 수공예 화문석, 화방석, 삼합 등을 제작
- (관광-알프스마을) 추운 겨울기온을 활용하여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를 개최하고 여름철 조롱박 축제 등을 통해 4계절 관광객 유치
 - 조롱박을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하여 화장품·제약회사 등에 판매
- (비식용 가축-귀뚜라미 개구리탕) 케일·배추 등 친환경 채소로 식용·학습용·사료용 곤충을 재배하고 관련 사육용품 등 판매
-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마을에서는 전통가옥·예절 등 문화체험, 연날리기·썰매타기·웃놀이 등 놀이체험, 농기구타기·가축먹이주기 등 생활체험, 캠핑·레포트 등 휴양체험 등 운영

나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위한 상생협력 확산 방안

▶ FTA 등 글로벌 경쟁 시대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노하우 활용 필요

기본 방향

- 6차산업 상생협력 모델을 마케팅형·역량강화형·투자형으로 나누고, 기존 사례 고도화, 주산지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확산



- (마케팅형) 특산물 인지도를 활용한 로컬마케팅*을 통해 가치 창출
- (역량강화형) 지역업체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 추진
- (투자형)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6차산업 수행

상생협력 유형

유형	일반 상생협력	6차산업 상생협력		
		마케팅형	역량강화형	투자형
사업 형태	○ 원료, 유통, 수출, 출자, 종자, ICT 등 다양한 형태	○ 지역 및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마케팅 등 추진	○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관광 업체 등에 대한 역량강화 및 공동사업 추진	○ 투자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수행
특징	○ 농업계와 상생하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특산물에 대한 노출이 적음	○ 로컬푸드 인지도를 마케팅 등에 활용하여 프리미엄화 ○ 장기간 협업관계 지속	○ 지역 농식품업체 역량강화로 농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	○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 큼 ○ 투자 결정 등에 장기간 소요
주요 사례	○ 국순당 - 국내 최초 양조 전용 쌀 개발 및 300여 농가와 계약재배로 농업인과 상생	○ 롯데푸드 - 의성군과 협업으로 '의성마늘햄' 출시 - 의성군 인증 농가 원물구매 및 의성 마늘 브랜드 사용 - 10년 이상 장기 파트너십	○ CJ제일제당 - '즐거운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로 지역 식품기업에 R&D, 영업, 마케팅, 기술 및 판로 등 지원 - 떡볶이 제조업체 '미정은 R&D, 마케팅 등을 지원받아 매출 10배 이상 상승	○ 아이쿱생협 - 농공단지예 라면, 김치 등 가공시설 설치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 영화관, 게스트 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체험·관광이 가능한 6차산업화 단지 조성

- ▶ **기존 상생협력 사례 고도화, 신규 6차산업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성공사례 창출·확산
 - 기존 상생협력 사례 중 발전 가능한 사례는 **6차산업형 모델로 고도화**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주산지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상생기업-지자체 간 1:1 매칭**을 통해 6차산업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 6차산업화 지구*(16개소) 등 지자체 대상 **상생 희망분야 조사**(16.10월)
 - **Agro-Biz 발전포럼*** 등에 **관련 정보**(인프라·상생 희망분야 등) **제공**(10월)
 - * Agro-Biz : 식품·유통·IT·운송 등 26개 업체 참여 및 대표·실무위원회 구성
 - **관심 기업-지자체 매칭**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젝트 발굴
- ▶ **Agro-Biz 발전포럼(기업계)-인증사업자협회(농업계) 간 협업체계 구축**
 -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요, 지역 6차산업 인프라, 지역단위 6차산업화 추진 현황, 6차산업 우수제품 등 **관련 정보공유**
 - 상생기업 대상 지역농산물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분기별)
 - 지역별 **간담회, 팸투어 개최** 등을 통해 주기적 교류(분기별)
- ▶ **발굴된 우수사례 및 상생협력 효과**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확산** 유도
 - 6차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상생협력 효과 분석 및 기획보도, SNS 등을 통한 홍보
 - 카카오토티 ‘우리나라 좋은마을’(구독자 44천명), 6차산업 포털(www.6차산업.com) 등 활용

참고1

6차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1. 마케팅형 우수사례 - 롯데푸드

■ 상생협력 개요

- 상생 기업 : 롯데푸드(주)(대표 이영호)
 - 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 '15년 매출 약 1조 7,062억원
- 상생협력 분야 : 의성 마늘을 활용한 '의성마늘햄'을 개발하여 의성마늘 브랜드화 및 가치 제고

■ 주요 사업 내용

- 의성마늘 활용 제품개발 및 수급안정화 MOU 체결('06년)
 - '원료 수매→우수제품 개발 및 브랜드 육성→농가소득 확대→기업매출 증대 및 지자체 특산물 가치 상승'의 상생구조 구축
 - 의성군수 인증 농가를 통한 원료 수매 및 '의성마늘' 브랜드 활용
- 마늘 캠프 운영, 장학활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기여
 - 의성마늘 캠프 : '10~'16(연 1회) 7회 실시, 총 1천여명 참가
 - '12년 이후 연 1회 의성군 장학회 장학금 1천만원 기탁

성공 요인

- 10년간('06년~) 기업-지역 간 장기적 파트너십 유지
-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제품 개발로 지역 농산물 가치 제고

■ 주요 성과

- 연간 90톤(누적 905톤)의 의성마늘을 수매하여 '의성마늘햄' 제조·판매
 - 매출액(햄·소시지 등) : ('06) 211억원 → ('09) 891 → ('12) 945 → ('15) 1,050
- 5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통령상 수상, 3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 마늘 부분 1위, '15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등 지역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2. 역량강화형 - CJ제일제당

■ 상생협력 개요

- 상생 기업 : CJ제일제당(주)(대표 김철하)
 - 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 '15년 매출 약 12조 9,245억원
- 상생협력 분야: '즐거운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식품업체에 R&D·마케팅·기술·판로 등을 지원하고 공동사업 추진

■ 주요 사업 내용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즐거운 동행' 추진
 -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식품사업 전반 노하우(R&D·마케팅·기술·판로 등)를 중소 식품업체에 전수하여 역량 강화
 - * '13.9 CJ제일제당-농식품부-동반위 등 행복한 동행 MOU 체결
- 중소 식품업체 등과 협업을 통해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

성공 요인

- 지역 식품기업에 기술, 판로 등 역량강화를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시험재배를 통한 전략 품종 선정에 농가가 참여하고, 기업은 종자 개발 및 보급, 재배관리, 전량 수매 등을 통해 상생 파트너십 구축

■ 주요 성과

- 신선촌·애드팜 등 10개 중소기업 9개 제품 매출 전년비 30%증가
 - 매출액 : ('14) 460억원 → ('15) 600 → ('20p) 1,000
 - * 소스개발 기술 미보유, 낮은 인지도의 떡류 제조업체가 CJ 지원을 통해 떡볶이 제품 개발 역량 확보 및 연 매출 105억원 기록('15.11월 기준)
- CJ브리딩 설립('15.3)으로 종자개발 추진 및 콩나물 콩 등 계약재배 확대
 - * 콩나물 콩 제주지역 생산현황 : ('14) 30톤 → ('15) 300톤 → ('16.p) 500

3. 투자형 - 아이쿱생협

■ 상생협력 개요

- 상생 기업 : iCOOP생협사업연합회(회장 오미예)
 - 농식품 제조 및 유통 기업, 연매출 약 5,256억원
 - 전국에 85개 조합생협과 23만 명이 넘는 조합원으로 구성
- 상생협력 분야 :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를 기반으로 지역농산물 가공·유통·체험이 가능한 6차산업 단지 조성
 - 전국 자연드림 매장 수는 180개로 직원 수는 3,900여명

■ 주요 사업 내용

- 전국 자연드림 매장(180개소)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판매(채소, 주곡류는 무농약 인증 이상, 과일류는 저농약 인증 이상 판매)
-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대금을 미리 납부해 생산을 지원하는 수매선수금 운동 추진 등

성공 요인

- 조합원이 직접 상품 선정, 투명한 정보 공개, 합리적인 관리시스템
- '나와 이웃과 지구를 살리는' 윤리적 소비를 실천

■ 주요 성과

- 조합원수 : ('14) 215천명 → ('15) 250 (증 16%)
- 매출액 : ('14) 4,835억원 → ('15) 5,256 (증 9%)
- 매장 수 : ('14) 158개 → ('15) 180 (증 14%)

참고2

상생협력 추진 현황

- **(시스템 구축)** 농식품부-대한상의 간 ‘농식품 소비 및 소비확대 MOU’ 체결(‘14.8월) 및 공동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14.9월)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농업계와 기업계 연계 추진
 - 지역본부 설치·확대(‘16:4개소→’17:10) 및 주산지별 품목협의체* 운영(6개소) 등을 통해 지역단위 추진기반 마련
 - * 경기(김포-쌀, 안성-콩, 여주-고구마), 경남(산청-딸기, 의령-밀), 강원(정선-콩)

- **(제도화)** ‘상생협력 경영자문단’·‘Agro-Biz 발전포럼’ 운영 및 기업의 참여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대기업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운영하여 수출 노하우 및 기술 역량 전파(‘15.1월~)
 - * 농식품·해양수산 분야 특화된 상생협력 자문단을 구성하여 영세 농업법인 등 농식품 기업 지원(296업체 1,132회)
 - 동반성장지수 가점(최대 1점), 식품 R&D 지원, 수출지원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를 통한 기업 참여 유도
 - ‘Agro-Biz 발전포럼’*을 통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자율 추진체계 구축(‘15.11월~)
 - * Agro-Biz: 식품·유통·IT·운송 등 26개 업체 참여 및 대표·실무위원회 구성

- **(사례 발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 협력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농산물 단순 계약재배 외 유통·수출·종자·ICT·6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모델 발굴(53건, ’16.8월 기준)
 - * 원료구매(17건), 유통협력(15), 수출협력(9), 공동출자(2), 종자개발(2), 기타(8)
 - 상생협력 경연대회, 권역별 설명회, 우수사례집 발간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다 농협을 통한 6차산업 판로 지원

▶ 추진 방향

- 경영체 사업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판로지원을 위해 농협의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활용
- 농식품부, 6차산업지원센터, 인증사업자협회, 농협중앙회 협업

▶ 판로지원 방안

- 매출규모 10억원 이하 인증사업자(698개소, 82.7%) → 소재지의 로컬푸드 직매장 또는 하나로마트 입점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 진열, 재고 관리 등 직매장 자치 협의회 규약에 따라 입점·판매
 - (하나로마트) 스텝인숍 개념으로 6차산업 별도 매대를 설치
- 매출규모 10억원 이상 인증사업자(146개소, 17.3%) → 농협 온·오프라인 판매망(공영홈쇼핑, ㈜하나로유통 등) 입점 지원
 - 입점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품 관리 및 판촉행사 진행

업체별로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등에 입점하는 형태가 아닌 소재지의 인증사업자 및 제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제품 심사 및 입점이 되는 시스템 구축

제1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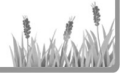
Ⅲ

6차산업화 주요 사업



1 >>

농촌산업화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회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농촌산업화 예산		148,470	208,114	210,900	2,786	1.33
○ 농특회계		20,296	28,950	32,783	3,833	13.2
□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	농특	27,330	25,472	31,327	5,855	23.0
- 직접경비	농특	729	229	229	-	-
- 민간경상보조	농특	10,662	9,398	10,088	690	7.3
- 지자체보조	농특	16,439	15,845	21,010	5,165	32.6
□ 농촌활력정착지원 (농촌지역활성화지원사업 내역)	농특	1,619	1,456	1,456	-	-
○ 지특회계		128,174	179,164	178,117	△1,047	△0.6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지특 (시도자율)	106,324	156,721	156,258	△463	△0.3
- 생활기반계정	지특	101,429	151,925	152,628	703	0.5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지특	3,520	3,951	2,835	△1,116	△28.2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지특	1,375	845	795	△50	△5.9
□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내역)	지특 (시도자율)	21,850	22,443	21,859	△584	△2.6

* 괄호안 금액은 농촌활력정착지원사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예산규모를 나타냄

** '16년부터 기존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

2 >> 주요 사업 개요 및 예산현황

2-1.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6차산업 활성화 지원	12,691	13,571	16,430	2,859	22.2%
① 6차산업 지구 조성	2,700	4,500	6,750	2,250	50.0%
②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4,825	5,830	6,205	375	6.4%
③ 시설디렉토리 구축	450	225	225	-	-
④ 6차산업 복합농장 구성	1,500	-	-	-	-
⑤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250	450	450	-	-
⑥ 6차산업 홍보·마케팅	1,416	1,216	1,059	△157	△12.9%
⑦ 6차산업 제품판촉 지원	700	700	1,100	400	57.1%
⑧ 6차산업 시스템 운영 및 콘텐츠 개발	800	600	591	△9	△1.5%
⑨ 6차산업활성화 운영비	50	50	50	-	-

가 6차산업 지구 조성

▶ 사업개요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사업기간: '14년~계속 ('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농업인(법인) 및 6차산업 사업자 등
 -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민간 50%)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 세부내용

- 공동이용시설 등 공동인프라, 기술·경영 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공동 홍보·마케팅, 규제 발굴·개선

Ⅰ 6차지구 지정 현황 Ⅰ

구 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년	3개소		영동 (포도외인)		순창 (장류)			하동 (녹차)	
'15년	6개소	횡성 (한우)		서천 (소곡주)		영광 (찰보리)	문경(오미자) 의성(마늘)		서귀포 (감귤)
'16년	4개소	강릉·평창 (고랭지배추)		공주 (알밤)	장수 (레드푸드)			함양 (산양삼)	
'17년	3개소				고창 (복분자)	고흥 (유자)	안동 (마)		

* '14년도 1년 사업 지구당 2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포함) 50%) 지원

* '15년도 3년차(30%:30:40)사업 지구당 30억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포함) 50%) 지원

▶ 기대효과

- 재정 지원과 함께 규제개선 등을 통해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다각화·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

참고 1

6차산업화 지구 사업내용

지구명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영동 (포도 와인)	'14~'16	2,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 제조가공센터 설치 와인카페 및 전시판매장 설치 와인삼겹살 거리 조성(홍보물 설치) 포도 와인 탐방로드 구축(전광·안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안내센터 및 사이버홍보컨텐츠 구축 농가 와이너리 레스토랑 설치 팜 스테이(와이너리 농가 숙박시설) 산·학·연 공동기획마케팅(시사회 등)
순창 (장류)	'14~'16	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효 한식뷔페 레스토랑 건립 농특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건강장수 테마체험장 건립 명품 장류 문화체험 민박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드테라피 음식, 힐링프로그램 개발 공동마케팅 장담그기 체험 및 장독대 분양
하동 (녹차)	'14~'16	2,0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루차 가공 시스템 구축 현대화 친환경다원 조성 친환경인증 확대 및 안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동녹차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Tea 힐링존 조성 Tea 테라피 제품 개발
횡성 (한우)	'15~'17	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우 부산물 가공시설 구축 한우 체험장 조성 판매·소비자 교육, 가공식품 레시피 Food 투어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홍보물 개발 제작 한우 부산물 가공상품 개발 한우 고품질 연구개발
서천 (소곡주)	'15~'17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곡주 갤러리 구축 소곡주 테마거리 조성 소곡주&모시 크래프트 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곡주 제품개발, 약리효과 연구 포장디자인, 전용주 제작 소곡주 축제, 상설판매장터 운영
영광 (찰보리)	'15~'17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리가공시설 업그레이드 스토리텔링, 외식·관광 컨텐츠 개발 찰보리 푸드체인망 구축 상품 디자인 및 포장재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찰보리 식도락 팸투어 찰보리 전문 레스토랑 구축 보리밭길 바이크로드 조성 보리 직매장 설치 특화거리 조성
문경 (오미자)	'15~'17	3,3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미자 가공장비, 시설 지원 로컬푸드체험장·음식점 조직화 오미자 신상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 오미자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PASS사업 실시(문경시 제휴 통합 카드)
의성 (마늘)	'15~'17	3,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합 체험센터 건립 6차사업자 창업·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판로확대 지원
서귀포 (감귤)	'15~'17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귤 가공업체 시설 보완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제작지원 감귤 체험프로그램 개발 감귤 푸드개발·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귤 테마하우스 및 거리 조성 통합 홍보마케팅 기능성감귤 신제품 개발
강릉·평창 (고령지배추)	'16~'18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은지·김치 토굴저장시설 구축 강릉 안반데기 체험시설 보완 대관령 농특산물 체험판매장 리모델링 안반데기 트래킹 코스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배추 식품포장재 및 시제품 개발 김치축제 개최 고령지 목은지·김치 체험행사 개최
공주 (알밤)	'16~'18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 가공원료 생산라인 구축 밤의 기능성 연구 고부가가치 제품화 기반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주 알밤축제 홍보 마케팅 공주밤 체험 콘텐츠 개발
장수 (레드푸드)	'16~'18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가공장 건축 및 장비지원 레드푸드 신소재 개발연구 레드푸드 상품화 레드푸드 체험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alth Food 개발 레드푸드 투어리즘 운영 공동 브랜드 마케팅 창업육성 아카데미 운영
함양 (산양삼)	'16~'18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가공센터 건립 활성형 산양삼 신소재 개발연구 활성형 산양삼 상품화 해외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농산촌체험관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프로그램 개발운영 Health Food 개발 Medical 체험시스템 개발 공동 브랜드화·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 개발

참고2

6차산업화 지구 사업 추진방향

■ 지역 대표자원 기반, 新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 농산물뿐만 아니라 문화, 경관,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
- 제조·가공품 외에도 체험·관광·외식·치유 등 신서비스 분야 발굴

■ 기존 인프라 활용

- 기존사업을 통해 조성된 각종 인프라(농공단지, 체험마을)의 연계·활용을 통해 재정의 경제성 및 사업의 효과성 제고
 - * 개별 공장이나 유통시설을 하나 더 건설하는 개념이 아닌 기존의 사업과 차별화

■ 지역주도 사업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지역 대표자원을 활용하고, 지자체 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종합적인 지구발전계획 수립
 - 지역 대표 부존자원 등 자원현황조사·가치사슬(value-chain)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패키지 지원 및 관련 정책사업과 연계
- 지역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농업과 연계 강화

■ 집적화를 통한 6차산업화 효과 극대화

- 주산지, 가공·체험 인프라가 집적화된 곳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 생산·제조가공·체험관광 등이 복합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 규제개선, 기업애로 지원, 전후방 연관산업 활성화

- 지구 내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 지구 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및 경영컨설팅, 포장디자인 개선, 판로개척,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
- 전후방 연관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농식품 제조·가공분야의 각종 규정·조례 제정 등 제도적 뒷받침

나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 사업개요

- 6차산업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코칭, 지자체 우수제품 안테나숍 설치 및 운영, 지역별 기초실태조사,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사업기간 : '15년~계속
 - * '14년 시범사업 :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6차산업자, 6차산업 협의체(컨소시엄 사업단)
 - 지원조건 :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코칭 자부담 20%))
 - 사업시행주체 : 6차산업 지원센터, 지자체

▶ 세부내용

-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 4,330백만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상담 및 코칭, 우수제품 안테나숍 운영, 기초실태조사 등
 - * 9개소×962백만원×50%(보조율)=4,330
-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 1,875백만원) 6차산업 주체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 25개소×300백만원× 50%(국비)×50%(1년차)=1,875

▶ 기대효과

- 지역별 6차산업화 추진 경영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운영 및 사업화 평가를 통해 지역형 6차산업화 비즈니스 모델 구축 지원

참고1

6차산업 인증제 개요 및 인증사업자 현황

■ 6차산업 사업자 인증(「농촌융복합산업육성법」 제8조)

- 지역단위 6차산업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내용, 사업실적, 향후 계획 등을 평가하여 6차산업 인증사업자로 지정

■ 인증 기준 및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인증대상 및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 2·3차 산업과 연계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지역농산물(광역단체)을 50%이상 사용(국내산) * 매출발생에 해당하는 기간은 자격요건에 없으나, 심사 시 3년간 매출액을 지표로 평가 • 2년 이상의 생산활동 추진실적이 있을 것 * 2년간 평균 농가소득 35백만원('13년 34,524천원, '14년 34,950천원) 이상
인증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인증절차	• 접수·평가(6차산업 지원센터/시도) → 인증·발급(농식품부)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취소: 인증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인증 취소 • 인증갱신: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 이상,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 * 인증 유효기간: 3년

■ 인증사업자 지정현황: 1,130개소('16. 12월 기준)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대전	세종	인천	울산	광주
'15년(A)	800	98	98	69	64	103	126	87	80	50		4	12	8	1	
'16년(B)	330	27	34	34	30	67	38	40	29	23	1		4		2	1
총계(A+B)	1,130	125	132	103	94	170	164	127	109	73	1	4	16	8	3	1

■ 인증사업자 지원사업

- 6차산업 인증사업자 BI 및 제품 BI(beyond farm)를 사업자, 제품 등에 사용
- 인증사업체 버킷리스트 파악하여 애로해소, 현장코칭, 판촉전 등 지원
- 농식품부, 양청 등 유관기관의 6차산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참고2

시도별 6차산업 안테나숍 현황

■ 목 적

- 6차산업 제품 등의 판로를 모색하고, 소비자들의 요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시장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촉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5년부터 계속
- (기능) 6차산업화 우수제품 시장조사 및 입점 지원
 - * 안테나숍 입점 등을 위한 제품 개선(포장디자인, 포장단위 등) 병행 추진

■ 운영현황('16.12월 기준): 24개소 운영 중

구 분	장 소	설치일	업체수	제품수	'16.매출액(천원)	비 고
총 계	총 27개소		1,007	6,141	5,775,451	
경기	하나로클럽(수원점)	'16.01.01	12	84	26,011	
	신세계백화점(경기점)	'15.12.14	7	34	5,580	종료
	하나로클럽(고양점)	'16.08.10	17	122	12,380	
	동대문디자인프라자	'16.08.27	37	62	5,592	
강원	이마트(춘천점)	'15.07.30	38	208	114,839	
	원예하나로클럽(원주)	'15.10.02	40	341	309,313	
	양돈하나로마트(강릉)	'16.07.21	38	181	10,703	
충북	하나로마트(청주점)	'16.05.17	34	47	18,615	
	충북보건대(힐링센터)	'16.07.28	33	115	29,262	시범운영
충남	갤러리아백화점(천안)	'15.05.16	22	169	546,032	
	하나로마트(대전)	'15.08.01	30	124	30,747	종료
	충남도청(홍성)	'15.08.27	16	73	11,322	
	롯데아울렛(부여)	'16.12.02	-	-	-	
전북	전북도청사	'15.12.07	53	356	399,595	
	익산역(KTX) 3층	'15.05.27	88	435	432,292	
	하나로클럽(전주점)	'16.07.19	32	185	77,579	

구 분	장 소	설치일	업체수	제품수	'16.매출액(천원)	비 고
전남	신세계백화점(광주점)	'16.9.1~13	37	240	78,336	종료
경북	대구백화점프라자	'15.05.01	44	360	303,054	
	이마트(경산점)	'15.07.02	36	250	339,083	
	이마트(구미점)	'15.07.09	36	250	218,031	
	이마트(월배점)	'16.08.04	23	130	112,239	
경남	롯데아울렛(김해)	'15.08.29	162	1,735	872,034	
제주	이마트(제주점)	'15.04.30	42	152	475,496	
	이마트(신제주)	'15.04.30	42	152	637,604	
	이마트(서귀포점)	'15.04.30	42	152	583,142	
	이마트(목동점)	'15.12	23	92	77,350	
	이마트(용산점)	'16.06	23	92	49,220	

■ '15년도 운영성과

- (매출성과) 2,907백만원('15.12월말 기준)
- (상설매장화) 안테나숍의 기능을 상설매장으로 전환·운영(제주 3개소)

다 시설디렉토리 구축

▶ 사업개요

- 지역별·유형별 제조·가공시설의 실태를 파악하여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 기본정보: 설치년도, 설치 장소, 면적, 소유주(연락처 포함), 가공품 종류 등
 - * 상세정보: 가공설비 종류, 시설 및 장비의 활용도(연중 가동률), 소유주가 시설·장비 활용 허용여부, 각종 인증사항(HACCP, GAP), OEM 생산제품 등
- 사업기간: '15년~계속
- 지원대상: 농업인(법인) 및 6차산업 사업자 등
-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6차산업 지원센터

▶ 세부내용

- (시설디렉토리 구축: 225백만원) 지역 내 제조·가공시설의 유형·실태를 파악하여 시설 수요자에게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시설의 설치없이 6차산업 촉진 지원
 - * 9개소×50백만원×50%(보조율)=225백만원

▶ 기대효과

- 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한 소규모 업체가 가공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6차산업 활성화 기여

Ⅰ 15년도 조사실적 Ⅰ

구 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조사업체수	5,172	352	573	875	830	733	559	678	126	446

라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 사업개요

- 지자체에서 지역 6차산업 제품에 대한 대형마트 등에 기획판촉전을 개최하여 6차산업 사업자에게 판로 및 홍보의 기회와 유통업체에게 상생활동의 기회 제공
 - * 판촉전 개최를 위한 제품발굴 품평회는 연 2회 이상 개최(제품 선정 장소 임차료, 전문가 심사수당 등 포함)
 - * 판촉전은 3회 이상 개최(4~7일 이내) 지역내외 대형마트에서 개최(판매대, 냉장고, 계산대, 시식대, 판매요원, 영상장비 등 임차료 포함)
- 사업기간: '14년~계속 ('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6차산업 지원센터

▶ 세부내용

- (유통업체 판매플랫폼 구축: 450백만원) 도별 지원센터를 통한 6차산업 제품 판촉전 및 품평회 개최
 - * 9개소×100백만원×50%(보조율)=450백만원

▶ 기대효과

- 6차산업 제품 판촉전 및 품평회 개최를 통해 경영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제품판로 확보 지원으로 6차산업 활성화

마 6차산업 홍보·마케팅

▶ 사업개요

-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학생 6차산업화 사업모델 공모전, 기타 정책연계 우수 사례 홍보
 - 사업기간 : '14년~계속 ('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법인) 및 6차산업 사업자 등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세부내용

- (경진대회 : 72백만원)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제품 발굴·확산
- (공모전 : 120백만원) 대학생 사업모델 공모전 개최
- (대국민 홍보 : 867) 방송, 언론, 현장 등 6차산업 홍보
 - * 우수사례 언론홍보 600, 제품BI 활용 소비촉진 홍보 121, 우수사례 제작 및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146)

▶ 기대효과

- 6차산업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주체별(경영체, 소비자) 접점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로 다양한 주체의 6차산업화 참여의지 제고

참고

6차산업 우수사례 및 제품 홍보(매체홍보)

■ 추진배경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6차산업에 대한 대국민 관심 및 참여증대 추세

* '6차산업' 검색 시 전년대비 언론보도('16.1월 조사):('14) 11,738건 → ('15) 22,734

'15년도 성과

- 6차산업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홍보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 소비자 인지도 : ('14) 38.3% → ('15) 66.3 (전년대비 28%P 향상)
- 우수경영체를 중점 홍보하여 6차산업 창업자 및 인증사업자, 매출액 증가
 - * 창업자 20%('14:392명→'15:472), 인증사업자 112%('14:379개소→'15:802), 인증사업자 평균 매출액 7%P('14:11.2%→'15:12.0) 증가
- ※ '15년도 우리부의 정책홍보 최우수 기관 및 정부업무평가(미래성장산업화, 정부 3.0) 우수기관 수상에 6차산업 홍보가 크게 기여

■ 지원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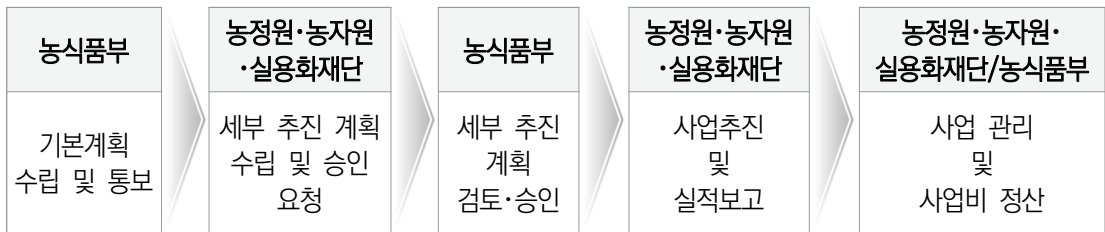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홍보 및 교육)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홍보 및 조사·연구)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6조(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연구·홍보 등)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업의 6차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6차산업의 성과 확산 및 참여 유도
- 추진방향
 - (맞춤형 홍보) 홍보대상별 전략 키워드, 메시지 등을 통해 맞춤형 체감 홍보 추진
 - * '창직', '창농', '청년)창업' 등의 키워드 활용 6차산업 홍보

- (소비접점형 홍보) 6차산업의 우수사례 및 의미와 가치를 알려 6차산업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창출 유도
 - * 6차산업 인증사업자 BI 및 제품 BI 적극 홍보
- (미디어홍보) 시청율이 높고 빠른 확산이 가능한 방송과 온라인, 신뢰도와 이용률이 높은 신문매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협업홍보) 6차산업 지원센터, 농업관련 민간단체, 소비자단체, 업무협약 체결기관 (네이버, HDC신라면세점 등)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

○ 추진절차 및 방법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 '17년도 사업예산: 1,059백만원(국고 100%)

- * 예산과목: 농특회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 농어촌공사: 158백만원(경진대회, 우수사례집 제작 및 성과확산 홍보 등)
- 실용화재단: 120백만원(대학생 6차산업 사업모델 공모전)
- 농정원: 781백만원(주요 정책 및 제품소비 홍보 등)

바

6차산업 우수제품 판촉지원

▶ 사업개요

- 6차산업 우수제품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플랫폼 및 제품판촉 지원, 우수제품 기획지원 등 판촉확대 지원
 - 사업기간: '14년~계속 ('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실용화재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세부내용

- (판촉지원: 480백만원) 6차산업 우수제품 유통품평회 및 판촉전 개최
 - * (판촉전)2회×65백만원+(홈쇼핑)10회×15백만원+(전용판매관)2개소×100백만원=480백만원
- (브랜드 및 포장개선: 460백만원)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선
 - * (브랜드개발)15개×29백만원×70%+(시제품개발)15개×15백만원×70%=460백만원
- (상세페이지 제작: 60백만원) 6차산업 제품 온라인 상세페이지(100개) 제작 지원 등
-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 100백만원) 6차산업 우수제품 전시판매를 위한 명품관 운영 등

▶ 기대효과

- 6차산업화 우수제품을 발굴, 시장조사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이어지는 일관화된 판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6차산업화 소비기반 마련

참고

6차산업 제품 판로 지원체계

■ **(추진배경)** 6차산업 사업자의 애로사항*으로 제품판로 확대에 대한 정책수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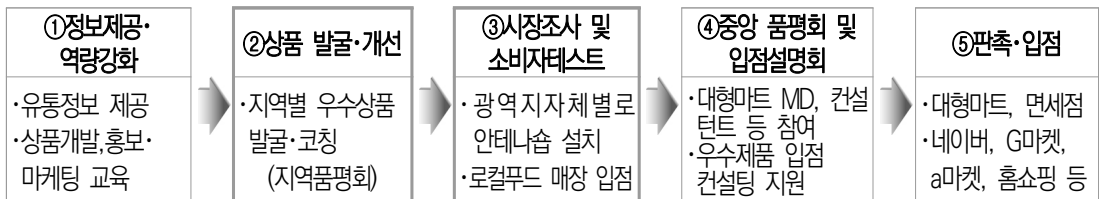
- * 애로사항 조사결과('15.6월) : 판로·홍보(36.6%), 자금조달(20.0%), 인력(13.3%) 등
- 6차산업 사업자의 규모가 아직 영세하고, 유통·마케팅 역량 부족

■ **(추진전략)** 입점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 지원하고, 유통채널 및 시장입지에 따라 선별적 판로 지원

- 개인사업자의 개별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되, 안정적 판로 확대를 위해 6차산업 전용 판매플랫폼** 구축으로 이원구조 운영
- * 개별 유통채널 : 로컬푸드 직매장, 홈쇼핑, 코레일(고향뜨락, 명품마루), 현대백화점(명인명촌관) 등
- ** 전용 판매플랫폼 : 대형유통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네이버 산지직송, 이베이코리아 G마켓, 농협 a마켓 등
- 시장의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해외 및 수도권 시장은 중앙에서, 지역시장은 시도(6차산업 지원센터와 협업)에서 판매플랫폼 구축 및 입점 지원

구분	시도	농식품부
개별 유통채널	로컬푸드 직매장, 코레일(고향뜨락, 명품마루), 홈쇼핑 등	현대백화점(명인명촌관), 공영홈쇼핑, aT 사이버거래소 등
전용 판매플랫폼	지역의 하나로마트,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사이버장터 등	수도권의 하나로마트 및 대형마트·백화점, 면세점, 네이버 산지직송, 농협 a마켓, 이베이코리아 G마켓(해외 포함) 등

■ **(추진사업)** '16년도 6차산업 우수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시장조사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지원 추진



※ 위 ②와 ③번은 지자체에서 중점 수행하는 사업

사

6차산업 온라인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사업개요

- 6차산업화에 대한 이해 및 정책성과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전문 채널 필요
 - 사업기간: '14년~계속 ('14년 시범사업)
 - 지원대상: 6차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 세부내용

- (온라인 사이트: 90백만원) 6차산업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501백만원) 6차산업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 * 소비유도형 콘텐츠 180(90개× 2백만원), 온라인 자문단 운영 78, 온프라인 홍보 243백만원 (온라인홍보 및 설문, SNS 운영, 키워드광고 등)

▶ 기대효과

- 6차산업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콘텐츠 제작·배포를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6차산업 제품 판매 촉진

참고

6차산업 사이트 정보화 추진

■ 6차산업 서비스 온라인/모바일 운영현황

- 서비스 내역 및 운영기관
 - 6차산업 사이트(www.6차산업.com) 및 상담관리 앱 등

- ➔ 6차산업 사이트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운영
- ➔ 6차산업 모바일 상담관리 앱(ios, 안드로이드) 운영
- ➔ 6차산업 성과관리시스템 운영(※비공개 서비스)

- 운영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차산업 사이트 이용자(예비인증사업자 포함)의 정보관리 편의 및 활용이 용이한 정보 관리환경 구축 필요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사용 확대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차산업 사이트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환경 조성 필요

■ 사업목적

- ➔ 6차산업화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 참여 확산 및 농가·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인 6차산업 정책의 가시적 성과 발굴 및 확산으로 창조농업 가치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사업추진 근거

- 6차산업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관련 정보교류 및 정책성과 확산으로 현장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주도적 활성화 기반 마련
 - 관련근거 :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추진근거	설 명	해당여부
VIP 지시사항	대통령, 장/차관, 기관장 등	
내/외부 지적사항	국회, 감사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	농식품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화기본계획	「농림수산식품 정보화기본계획(2012.01)」에 있는 사업 *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EA)정보화기획'계획및예산' 참조	
계속 사업	전년에 이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	●
법/제도 제/개정	법/제도 제/개정에 따른 보완/신규개발	●
대국민 서비스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완/신규개발	
내부행정 서비스 제고	내부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보완/신규개발	
정보자원 효율성 향상	ISP 사업이나 시스템/정보자원에 대한 고도화, 통합, 폐기 등	
정보자원 운영/유지보수	순수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일 경우	

■ 추진경과

- 6차 산업사이트 구축 및 운영(14년 7월)
- 6차 산업사이트 고도화 및 유지보수(15년)

■ 정보시스템 구성도



2-2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5예산 (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15139 (15,031)	11,901	14,897	2,996	25.1
〈민간 경상보조〉	8,425 (8,317)	7,061	7,517	456	6.4
① 농촌관광자원 개발	1,273	1,003	1,003	-	-
② 정보제공지원	735	1,035	1,035	-	-
③ 도시민 유치 확대	2,720 (2,615)	1,792	1,748	△44	△2.4
④ 역량강화 지원(응급처치)	180	180	180	-	-
⑤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370	548	1,048	500	91.2
⑥ 농촌관광사업 운영비	2,647 (2,644)	2,503	2,503	-	-
〈지자체 경상보조〉	6,714 (6,714)	4,840	7,380	2,540	52.4
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사무장 활동비 지원	3,420	3,420	3,420	-	-
②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474	400	400	-	-
③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	-	-	350	350	순증
④ 역량강화 지원 (농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200	200	200	-	-
⑤ 외국인 농촌관광 교통·통역 서비스 지원	-	-	590	590	순증
⑥ 농촌축제	500	500	500	-	-
⑦ 유학	320	320	320	-	-
⑧ 국제농업박람회	1,800	-	1,600	1,600	격년 개최

농촌관광 자원현황

▶ 방문객 및 매출액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년 (11월)
농촌관광 방문객 (천명)	전체	5,650	6,962	8,294	8,289	8,708	9,589
	외국인	-	-	-	97	83	189
매출액(백만원)		58,737	75,578	91,559	87,226	87,689	93,756

* '16.11월말 방문객은 체험마을 8,808천명(루코스 12.6일 조회기준) 및 6차 781천명(추정)

* '16.11월말 매출액은 12.6일 루코스 조회기준임

▶ 농촌관광자원(17개 분야)

계	28,403	낙농체험목장	32	식품명인	65
농촌체험휴양마을	951	농촌형 승마시설	457	우수외식업지구	19
6차산업 인증업체*	259(추정)	자연휴양림	165	명품고택·종택	84
관광농원	545	치유의 숲	7	농어촌민박	24,246
농촌테마공원	78	교육농장	573	팜스테이	303
찾아가는 양조장	18	농가맛집	117	스타팜	484

* 6차산업인증업체(전체 960개소) 중 관광가능자원 259(비율로 추정)

○ 우수 농촌관광자원 15개 분야 826개

계	826	식품명인 (식품산업진흥과)	61	스타팜 (농산물품질관리원)	20
농촌체험휴양마을	88	농어촌 승마시설 (축산정책과)	110	찾아가는 양조장 (농수산물유통공사)	18
6차산업 인증업체	76	자연휴양림 (산림청)	142	낙농체험목장 (낙농진흥회)	30
농촌테마공원	13	치유의 숲 (산림청)	11	말 육성목장 (한국마사회)	3
우수관광농원	28	농가맛집 (농촌진흥청)	47	-	-
우수농가민박	114	농촌교육농장 (농촌진흥청)	65	-	-

가 내외국인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 사업개요

-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농촌체험마을 유도 및 단순한 수확체험에서 벗어난 농사의 전과정을 아우르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및 예산) '16. 4 ~ 11월(8개월), 100백만원
- (사업내용)
 - **외국인 전용**: 외국인 관광객의 선호를 반영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종)
 -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명소(마을)와 연계한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 한국의 의식주(衣食住), 기존체험 연계, 레포츠 연계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 **농사 마스터**: 단순농사체험인 아닌 전과정에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종)
 - 파종, 재배, 수확, 가공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논, 밭, 과수, 원예·화훼, 가축 등 5개 주제로 농업 유형별·계절별 순환되는 작물 중심으로 개발
- (추진방법) 전문체험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용역발주

▶ 추진성과

-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행: '16.5.2~11.30(91백만 원)
- 사업 워크숍 시행: 테마별 개발참여마을 선정 및 시범운영 확정
 - * (1차, 외암마을) 농사마스터(감자, 딸기, 콩, 사과, 벼), 외국인(衣,食,住,樂,休) 개발 테마 선정
 - * (2차, 무수천하마을) 시범 참여마을 10곳 선정
- 시범운영 시행

▶ 세부 내용

구 분	주요내용	시범운영
외국인	衣 ▪ 한국만의 독특한 색채문화인 오방색 관련 전통 고유의 멋 체험 - 전통혼례체험, 천연 오색손수건 제작 체험, 오색실팔찌제작 체험	'16. 7. 29 고령 개실마을
	食 ▪ 한국 농촌의 다양한 전통음식 문화 체험 - 한국전통가정식 차리기, 세계 으뜸발효음식, 장보따리 전통매듭뉘기 등	'16. 7. 27 대전 무수천하마을
	住 ▪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여유가 중심인 한국 한옥(전통가옥)체험 - 손님맞이하기, 돌담길 나들이, 대청에서 풍류 즐기기 등	'16. 8. 3 안성 선비마을
	樂 ▪ 풍물놀이, 전통놀이 등 지역전통놀이 도입을 통한 선조여가문화 체험 - 한국의 전통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한국 전통악기 체험 등	'16. 9. 24 아산 외암마을
	休 ▪ 농촌의 생태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농촌청정환경의 치유효과 체험 - 고로쇠 채취, 약수물 섭취, 얼음굴 체험, 울무팔찌 만들기 체험 등	'16. 9. 10 양양 황룡마을
농사 마 스 터	감자 ▪ 밭에서 일어나는 1년 농사·농촌생활문화를 체험·학습 - 씨감자 만들기, 효능알기, 원산지 및 유래, 감자 꽃따기·수확, 감자떡 체험 등	'16. 7. 27 단양 한드미마을
	딸기 ▪ 딸기밭에서 일어나는 농사·농촌생활문화를 체험·학습 - 수경재배와 노지재배의 차이점, 딸기잼 만들기, 학습일지 작성 등	'16. 9. 10 양평 수미마을
	콩 ▪ 콩을 활용한 농사·농촌생활문화를 체험·학습 - 콩을 이용한 두부, 청국장+간장소스 샐러드 만들기, 비지를 이용한 과자만들기	'16. 8. 19 이천 서경들마을
	사과 ▪ 사과밭에서 일어나는 1년 농사·농촌생활문화 체험·학습 - 사과의 유래·인문적 특성 알아보기, 사과잼 및 사과주스 만들기, 수확 등	'16. 9. 24 예산 알토란사과마을
	벼 ▪ 24절기에 따른 논농사 및 농촌생활문화 체험·학습 - 절기별 벼농사 설명, 논 서식 곤충 관찰, 모판 만들기, 모심기, 벼베기 등	'16. 10. 29 익산 산들강농포마을

나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지원

▶ 사업개요

- 농촌지역자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
- 선정된 민간여행사에게 체험마을 지출비용 및 운영비 일부 지원
 - * 수도권 출발 : 체험비(9천원/인 한도), 운영비(일괄 3천원/인)
 - * 수도권외 출발 : 체험비(10천원/인 한도), 운영비(일괄 4천원/인)

▶ 추진성과

- 농촌 지역자원 기초조사를 통한 농촌관광 우수자원 814개* 선정(1~2월)
 - * 체험마을, 6차산업현장, 테마공원, 관광농원, 낙농체험목장, 양조장, 농가맛집, 식품명인 등
- 민간여행사 대상 농촌관광상품 공모 실시 및 설명회 개최(2.26~3.18)
 - * 공모설명회 : '16.3.7(월) 13:00~16:00, 119명(지자체, 마을대표, 여행업계 등) 참석
- 농촌관광상품 선정(45개 상품, 10개 여행사) 및 상품 운영(4.1~6.18)

구 분	상품수	구 분	상품수	구 분	상품수
여행스케치	15	홍익여행사	1	야호관광	2
버킷리스트	4	풍경있는 여행사	4	뭉치여행사	3
하나투어	5	포시즌학습여행	2		
테마캠프여행사	8	롯데JTB	1	총 계	45

- 민간여행사 연계 농촌관광상품 운영결과

구 분	총 계	4월	5월	6월
이용인원	6,467명	1,781명	3,644명	1,042명
지원금액(a)	77,276천원	22,258천원	44,814천원	10,204천원

▶ 잘된 사항(전년대비 개선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 사업 추진 2년차로 정부·공사의 적극적인 지원, 민간여행사 상품운영 노하우(모객, 홍보 활동 등) 증대로 **예산 조기 소진(3개월 운영)**
 - *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모객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예산 증액이 필요
- 총모객수는 전년대비 562명(9.5%) 증대('15년 5,905명⇒'16년 6,467명)
- 지방여행업체* 참여를 확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모객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원활한 상품운영을 위해 수도권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공모 실시 필요
 - * 포시즌 학습여행사, 야호관광, 뭉치여행사, 버킷리스트(총10개 업체 중 4개)

다 으뜸촌 기차여행상품 개발·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상 품 명)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 (상 품 수) 20개 상품 개발 및 운영
- (운영기간) '16년 4 ~ 11 (매주 수, 토, 일요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상품구성) 왕복열차 + 농촌체험휴양마을 + 지역 연계 관광자원
 - '14년, '15년 농촌관광 우수 등급마을(23개소) 및 지자체 추천 기타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상품성, 자원 연계성, 열차 상품 용이성 등 종합 검토에 따른 20개 상품 구성
- (지원내역) 상품운영비 정액(25,000원/인당) 지원
- (홍보방안) 키워드광고, 복지몰 등 온라인 홍보 및 전국 철도여행센터 활용, 기존 고객 DB 활용, 전단지 광고 등

▶ 추진성과

- 농촌체험마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왕복열차 연계 20개 코스 개발
- '농촌관광 으뜸촌 기차여행' 상품 출시·운영('16.4~)
- 공영홈쇼핑(아임쇼핑) 활용 상품 2종(수미·하추마을 코스) 홍보·판매('16.4.27)
- 코레일관광개발 연계 농촌관광 기차여행상품 운영결과

구 분	총 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용인원(명)	3,211	205	1,152	1,193	328	190	32	33	78
지원금액(천원)	80,275	5,125	28,800	29,825	8,200	4,750	800	825	1,950

※ '16.12월 현재 총 3,211명 상품 이용(공영홈쇼핑 모객 278명 포함)

라 팜을 활용한 관광상품 다양화 방안

▶ 사업개요

- 농촌체험휴양마을 팜파티 현장코칭을 통해 차별화된 ‘팜파티 모델’ 개발로 농촌관광 콘텐츠 다양화
- 새로운 팜파티 모델 시범운영 및 성과분석으로 특수목적형 농촌관광 상품개발에 대한 가능성 제시

▶ 추진성과

- ‘farm’을 시장화 시킬 수 있는 특수목적형 팜파티 등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팜파티 현장코칭 및 시범운영사업’ 계획수립(9월)
- 사업추진을 위한 현장코칭 전문가(4인) 구성(9월)
 - * 명소 황길식대표, 경기대 엄서호교수, 슬로우빌리지 김성주대표, 양평관광두레 신교진PD
- 팜파티 현장코칭 대상 마을 선정(2개소)

유형/대상	대상마을	선정사유
기업연수형/ 직장인	강원 인제 하추	직장인 힐링 및 단합에 적합한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 중임 * 삼시세끼 프로그램: 수확농산물 도리깨질, 가마솥밥 지어먹기, 풀벌레 음악회 등
축제형/ 젊은층	전북 남원 달오름	젊은층 방문이 많은 전주한옥마을과 남원 광한루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타겟층 유입이 용이 *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결과: 15년 방문객 965만3천명, 일평균 2만6,500명이며 주말 10~30대 중심으로 방문객 27%증가

- 팜파티 현장코칭 대상 마을 전문가 현장답사(10.4, 10.6)
- 현장코칭예정(남원 달오름 11.2, 인제 하추 10.26~27)
- 시범운영(남원 달오름 11.5~6, 인제 하추 11.11~12)

▶ 향후계획

- ‘팜’을 활용한 팜파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매뉴얼 보급
- 확산·육성을 위해 팜연수, 팜스쿨 등 상품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영(5개소)

마 농촌관광 등급결정 사업

▶ 사업개요

- 등급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촌관광사업의 품질유지 및 정보 제공으로 도시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유도
 -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조
- 농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촌관광 등급평가 확대**
 - 심사대상 : '15년 350개소 → '16년 453개소
 - 심사항목 : 4개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1~3등급·등급외

▶ 추진성과

- 등급결정요령 개정(4.6)
 - 주요내용 : 현장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급결정 처리기간 연장 등
- 현장심사기관 선정(2.29)
 - 인증 전문기관인 (주)한국능률협회 인증원을 현장심사기관으로 선정
 - 계약내용 : 계약금액 399,800천원, 계약기간 2.29~12.10
- 현장심사 추진(4.14~8.20)
 - 농촌체험휴양마을 총 399개소 현장심사 추진
 - * 당초 453개소 중 심사취소마을 54개소 제외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심사(경기·제주,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
- 현장심사결과 실무검토(9.21) : 현장심사결과 및 특이사항 검토
-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개최(10.19) : 453개 마을 등급 부여
 - '15~'16년 전부문 1·2등급마을 현황

구분	계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4(36)	2(1)	2(1)	13(2)	32(6)	12(3)	18(2)	17(7)	23(4)	18(2)	14(7)	3(1)
15년	46(8)	-(-)	-(-)	10(1)	9(1)	2(-)	1(-)	4(2)	11(2)	5(-)	3(2)	1(-)
16년	108(28)	2(1)	2(1)	3(1)	23(5)	10(3)	17(2)	13(5)	12(2)	13(2)	11(5)	2(1)

※ ()내서 전부문 1등급마을

-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증서배부(11.1) 및 으뜸촌 표지판 배부(11.14)

바 체험마을 내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 사업개요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처를 체험마을로 확대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
 - 신용카드 포인트 소지자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및 이용에 대한 신규수요 창출
 - 체험마을의 결제 수단 다양화를 통한 체험마을 이용 편의 제고

▶ 추진성과

- **(카드사 협의) 신한·삼성·NH농협 카드사와 협의하여 해당 카드사의 포인트를 체험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 **(수요조사) 지자체 협조로 전국 체험마을 대상 카드 포인트 가맹 희망여부 조사**
 - * 조사결과(사업자번호 기준): 신한 156개소, 삼성 152개소, NH농협 160개소 포인트 가맹 희망
- **(포인트 가맹추진) 각 카드사에서 포인트 가맹 희망마을 대상 가맹 계약 추진**
 - * 가맹현황: 총 158개소(신한 144개소, 삼성 145개소, NH농협 130개소)
- **(활용개시 및 보도자료 배포) '16.3.30(수)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개시 및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우리나라좋은마을 활용 홍보) 홈페이지 및 카카오토티 계정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개시 공지 및 사용가능 마을목록 게시**
 - * 포인트 이용실적: 총24회(신한 9, 삼성 11, 농협 4), 549,000원
- **(가맹점 확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가맹 체험마을 확대 추진**
 - * KB국민, BC, 하나, 롯데, SC카드사 대상 협의 완료 및 체험마을 대상 수요조사(KB국민, BC) 실시(10월~)

사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RUCOS) 재개발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농촌체험휴양마을관리시스템(RUCOS) 재개발
- 사업기간 : '16.2월 ~ '16.12월
- 사업예산 : 금220백만원(※VAT 포함)
- 추진내용
 - 체험마을 및 사업정보 연계성을 고려한 메뉴 구성 및 UI 환경 개선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기초정보를 시기별, 목적별 종합적 분석이 가능한 **통계자료 조회기능 구현**
 -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현황, 체험상품 및 특산품 판매실적, 방문객 실적 등 현장정보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기능 구현**
 - 정부 및 지자체, 자체사업 등 **사업과 연계한 정보관리**로 권한별 목적에 적합한 자료조회 기능 개발
 - 체험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식사, 숙박 등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 및 지출내역 관리 등 **회계관리 기능 개발**
 - 관광농원, 농촌테마공원, 양조장 등 농촌관광자원의 기본정보 및 방문객, 매출액 등 **성과정보 관리**

▶ 추진성과

- RUCOS재개발 사업 시행 : (사업기간/사업비) '16.5.25~11.24 / 219,470천원
- 개발내용
 - (UI 환경개선) 체험마을 및 사업정보 연계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회계관리 기능 개발) 수입·지출의 체계적인 관리
 - (통계자료 출력 기능 강화) 시기별·목적별 분석자료 출력기능 강화

- (현장정보 입력 및 조회) 스마트폰 등으로 현장에서 예약 등 입력·조회 강화
 - (성과정보 관리) 농촌관광 자원별 기본정보 및 매출액, 방문객의 체계적인 관리
- RUCOS 사용자(마을 운영자) 교육 실시(414명)

구분	일시·장소 및 교육인원	내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6.21(화), 제주 저지마을, 21명 • 경남: 6.27(월), 진주 가뫼골마을, 39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사용법 및 입력 방법 • 현황자료 관리 방법 • 운영실적 입력 방법 • 시스템 사용법 및 입력 방법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제도 및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7.12(화), 칠곡 가산산성마을, 33명 • 강원: 7.13(수), 삼척 너와마을, 43명 • 충남: 7.14(목), 아산 외암마을, 40명 • 경북: 7.19(화), 상주 은자골마을, 29명 • 전남: 7.26(화), 광양 도선국사마을, 38명 • 경북: 7.28(목), 예천 출렁다리마을, 35명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8.26(금), 고흥 신기거북마을, 30명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 9.06(화), 강진 녹향월촌마을, 30명 • 충남: 9.08(목), 아산 외암마을, 40명 • 경남: 9.20(화), 창원 빛돌배기마을, 36명 	

아 계절·테마별 농촌관광 코스(명소) 선정·홍보

▶ 사업개요

- 지자체 및 체험휴양협의회와 공동으로 농촌 관광코스(명소) 개발·선정(지역관광지, 체험마을, 휴양림 등) 및 홍보
-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선정심의위원회 운영(분기별)을 통해 계절별·테마별 관광코스(명소)를 선정하여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 * 트레킹(4월), 가족여행(5월), 농촌체험(6월), 캠핑·레포츠(7월), 숨은명소(8월), 식도락(9월), 가을의정취(10월), 전통문화(11월), 겨울보내기·해님이(12월), 겨울레포츠·해맞이('17.1월), 겨울수확하기('17.2월), 봄향기 느끼기('17.3월)

▶ 추진성과

-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지자체, 체험휴양협의회가 협업하여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코스 개발 및 공동 홍보 추진

- 2016년 농촌관광코스(3월~12월) 총 100개 코스 선정

▶ **잘된 사항(전년대비 개선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 코스 개발시 지역 농촌관광명소(체험마을, 휴양림 등)를 포함하여 선정
* (~'15) 계절별·테마별 체험마을 10선 → ('16)계절별·테마별 체험마을 중심 농촌관광명소 10선
- 농촌관광코스 선정 마을 전년대비 매출액(31.3%) 및 방문인원(107%) 증가

구분	매출액(천원)			방문인원(명)		
	15년	16년	증감	15년	16년	증감
실적	976,578	1,282,640	306,062	101,371	210,000	108,629

- 공공기관, 대기업, 교육기관, 지역채널, 단체, 개인 등 각종 SNS에 게재

총계	웹문서	뉴스	블로그	카페	포스트
36,427건	35,372건	597건	422건	34건	44건

- 관광코스 선정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농촌관광코스 공정성 강화 필요
* 코스선정 심사 실시⇒ (1,2)배수 선정⇒ 선정코스 현장답사 및 점검⇒ 최종코스 선정

자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결제서비스

▶ **사업개요**

-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정보제공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추진성과**

- (상품등재) 농촌여행상품 205개소 415종 등록 및 서비스 오픈
 - (4.15) 으뜸촌 농촌체험 패키지 여행상품(20개소, 20종)
 - (5.31) 농촌관광상품 33종(민간 32종, 코레일 1종)
 - (7.26) 우수여름체험상품(20개소, 36종), (7.28) 우수농가민박상품(52개소, 130종)
 - (9.13) 농촌체험여행상품(113개소, 196종)

- (교육) 마을 158개소, 여행사 8개소 및 도협의회 총 206명
 - 으뜸촌 사무장(3.23), 민간여행사·코레일 담당자(5.16)
 - 우수농가민박(6.28~7.4), 도협의회 담당자 및 체험마을 사무장(8.17~30)
- (홍보)
 - 네이버 키워드 검색(4.15~), 네이버 메인 노출(4.29~4.31, 7.29~8.26)
 - 카카오톡스토리 및 페이스북 이벤트 실시(3회)(6월·8월·11월)
 - 리후렛 배포 및 X배너 설치(도농교류의 날 행사)(7.7)
 - 블로그 게시(여름물놀이 체험마을 20선(2편)(8월)
 - 아이·여행·건강 테마별 상품소개 블로그 게시(3편)(10월)

* 키워드 :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마을', '농촌체험여행', '농촌마을여행' 또는 마을명

▶ **잘된 사항(전년대비 개선사항) 및 보완 필요사항**

- 대형포털 네이버를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체험상품 정보 제공 및 간편 예약·결제 기능 제공으로 대국민 관심 제고
- 예약결제상품 판매로 농촌 소득증대 기여 : 총912건 모객완료, 판매액 69백만원* (11월말 기준)
 - * 농촌체험여행상품(2백만원), 농가민박상품(67백만원)
- 단체중심이 아닌 가족, 개인 중심의 여행상품 기획 필요
- 온라인 특성에 맞는 여행상품 기획, 상품소개를 위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 및 실시간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 병행

차 **외국인 맞춤형 농촌관광상품 개발**

▶ **사업개요**

- 여행사 인프라를 활용, 농촌관광상품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 접근성 제고
- (추진기간) '16. 3~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내용)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농촌여행상품을 공모·심사하여 외국인 대상 우수 여행상품을 선정, 운영비 연중 지원
- (지원내용) 농촌관광상품 운영사 대상 최대 2만원/인까지 지원
 - 기존상품* : 운영비의 50%, 최대 1만원/인
 - 신규상품 : 운영비의 80%, 최대 15천원/인
 - 특별상품 : 운영비의 90%, 최대 2만원/인
 - 기존·신규상품에 상관없이 농촌관광지가 2개 이상이 포함된 여행상품
 - 농촌관광지에서 ‘식사+체험’ 또는 ‘숙박+체험’을 포함한 여행상품
 - 중국 관광객 대상 여행상품

▶ 추진성과

- 민간여행사 대상 농촌여행상품을 공모·심사하여 우수 여행상품 운영 지원(11개 여행사, 17개(상반기 9, 하반기 8) 상품 개발)
 - 외국인 관광객 2,293명 모객, 운영비 20백만원 지급('16.10월 기준)
 - ① 상반기 개발·운영 : 총 9개 상품

농촌관광지	여행사명	상품구분	대상국가	여행일정	상품가격
외암마을, 보향다원	디앤지투어	특별(신규)	동남아	5박6일	98만원
수미/의야지바람마을		특별(신규+기존)	중동, 중앙아시아	5박6일	98만원
외암/자채방아/수미마을	정호여행사	특별(신규)	싱가폴	5박7일	98만원
수미마을, 돼지박물관	밍월드	특별(신규+기존)	대만	4박5일	52만원
산머루농원		특별(기존)	대만	4박5일	48만원
어름치마을	코레일관광개발	신규	일본	4박5일	65만원
수미마을	아주상무중심	특별(신규)	중국	4박5일	72만원
돼지박물관, 의야지바람마을	비케이 여행사	특별(기존)	싱가폴	6박7일	140만원
수미마을	신태창여행사	-	싱가폴	6박7일	156만원

② 하반기 개발·운영 : 총 8개 상품

농촌관광지	여행사명	상품구분	대상국가	여행일정	상품가격
양평 수미마을	하나투어ITC	특별(체험+식사)	전국가	당일일정	15만원
안성 선비마을		특별(체험+식사)	전국가	당일일정	17만원
연천 초성김치마을		특별(체험+식사)	전국가	당일일정	12만원
용인 청계목장	성성여행사	특별(체험+식사)	대만	4박5일	74만원
양평 수미마을	신화정여행사	신규	싱가폴	6박7일	120만원
파주 산머루농원		기존	싱가폴	6박7일	117만원
파주 산머루농원	신태창여행사	기존	대만	4박5일	73만원
파주 산머루농원 파주 산머루마을	신라이여행사	특별 (농촌관광지2개소)	대만	4박5일	90만원

○ MICE 연계 및 건강·힐링 농촌관광상품 개발(총11종)

구분	방문지	주요 내용	비고
MICE 연계 상품	경기 양평 여물리체험마을	딸기체험, 연날리기, 레일바이크	당 일
	경기 양평 수미마을	마을체험, 경기민물고기 생태학습장	당 일
	경기 안성 선비마을	한국전통문화체험(선비체험(예절교육), 다도&국궁체험)	당 일
	경기 연천 초성김치마을	김치담기체험, 두부+인절미만들기	당 일
	대전 무수천하마을	수확체험, 음식만들기 체험 등	당 일
	충남 금산 조팝꽃피는마을	인삼요리체험, 도자기공예체험, 계절별상품	당 일
	강원양양 해담마을	레저체험(고기잡이+수륙양용차체험 등)	1박2일
	전북 완주 오복마을, 전북 임실 치즈마을	치즈만들기체험, 천연비누만들기+염색체험, 전주한옥마을관광	1박2일
	전북 완주 안덕마을	모악산트래킹, 황도한증체험	1박2일
	전북남원덕동마을, 경남하동의신마을	반달곰먹이주기체험, 남원광한루관광, 숫대만들기체험	1박2일
건강· 힐링	충남 금산, 보령, 예산	인삼밭 체험, 인삼주만들기 체험, 대천수산물시장 투어, 머드팩, 쥬트랙, 낙농체험	3박4일

카 외국인 대상 교통·통역서비스 운영

▶ 사업개요

- '2016~2018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농촌관광지 접근성 제고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운영기간·대상 : '16. 5월~12월,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 운영지역 : 외국인 농촌관광지 40개소 위주로 선정
- 운영방법 : 개별관광객 전문여행사 선정 후 홍보, 모객, 셔틀·통역서비스 제공
- 운영계획 : (시범운영) 국비 추진 (본운영) 중앙-지방간 예산 매칭 협업 추진
 - (1~2단계) 셔틀버스 3개 코스(장단콩마을, 해담마을, 사과와인농장) 운영(5월)

구 분	운행 코스	운영사
1단계	서울지역 호텔(관광객이 투숙하고 있는 호텔)-임진각-자유의다리-제3땅굴-DMZ영상관/전시관-도라전망대-도라산역- 장단콩마을 -인삼센터 또는 자수정센터-시청	서울 시티 투어
2단계	(강원) 서울광화문- 해담마을 -구룡령 길천약수, 미천골자연휴양림-서울 광화문	동보 여행사
	(충남) 서울 광화문- 사과와인농장 -추사고택-예당관광지-서울 광화문	

- (3단계) 지역별 셔틀버스 운영 및 통역사 파견 서비스 실시(6~12월)

- ① 농촌지역 연계 셔틀버스 운영 : 총 19개* 코스 운영
 - * (경기)수미마을, 돼지박물관 (강원)어름치마을 (충북)한드미마을, 방곡도깨비마을, 금강모치마을 (충남)외암민속마을, 알프스마을 (전북)고추장익는마을, 오복마을, 산들강웅모마을 (전남)무월마을 (경북)인량마을, 개실마을 (경남) 다랭이마을, 개평한옥마을 (제주) 아홉굿마을, 청수마을, 가시리마을
- 주요 공항, 관광지, 농촌관광지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코스 주1~2회 운영
- ② 농촌관광지 통역사 파견 서비스 : 외국인 관광객 2인이상 방문시 제공
 - 대상마을 :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지 400여개소*
 - * 외국인 농촌관광지 38개소, 2등급 이상 농촌체험휴양마을 104개소, 우수 관광농원 28개소, 6차산업 인증사업장 170여개소 등

- 신청요건 : 외국인 관광객(2인이상) 방문시 마을에서 신청
- 이용요건 : 1회 1명, 최대 4시간까지 이용 가능(영어, 일어, 중국어)
- 신청절차 : ①마을(단체) : 여행사에 신청서 제출 → ②여행사 : 통역사 스케줄 확인 후 마을에 확정 전화 또는 이메일 발송 → ③통역사 : 마을에 통역 서비스 제공 후 여행사에 통역비용 신청

▶ 추진성과

- (시범운영) 셔틀버스 3개 노선 38회 운행, 1,140명 모객(사업완료)

합 계	합계(평균)	파주 장단콩마을	양양 해담마을	예산 사과와인
횟 수	38	30	4	4
인원수	1,140	910	110	120

- (본운영) 113회 운행 1,593명 탑승, 통역사 파견 129회 추진(사업완료)

구 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셔틀버스	횟 수	113	20	20	10	14	10	8	3	11	17
	인원수	1,593	203	303	129	191	100	128	17	189	333
통역서비스	횟 수	16	2	-	-	3	-	2	-	9	-

2-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5결산	'16예산 (A)	'17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지특회계	106,324	156,721	156,258	△463	△0.3
○ 생활기반계정	101,429	151,925	152,628	703	0.5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3,520	3,951	2,835	△1,116	△28.2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1,375	845	795	△50	△5.9
■ 기획·평가체계 구축	469	440	493	53	12.0
■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37,462	48,906	46,385	△2,521	△5.2
■ 농산물 제조·가공지원	27,566	38,553	36,023	△2,530	△6.6
■ 농산물 체험·전시지원	361	1,110	6,360	5,250	473.0
■ 농촌 체험·관광지원	15,343	30,642	35,766	5,124	16.7
■ 농공단지 조성·개보수	18,722	25,277	13,253	△12,024	△47.6
■ 6차산업화지원	6,401	11,793	16,328	4,535	38.5
■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	-	1,650	1,650	순증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 사례 : 농산물(1차)을 가공한 식품과 민예품(2차)을 판매하고, 농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탐방 및 관광서비스(3차) 제공을 결합

○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재원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 추진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10년에 시·도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

* 현재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제조·가공, 체험·전시, 농촌체험·관광,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6차산업화 지원,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지원 등의 7개 사업유형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 사업을 실시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농업인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연구단체 등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농공단지 는 정액지원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연도별 지원 현황**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 농촌자원복합산업화	243,477	203,095	210,560	176,293	157,812	156,721
<생활기반계정>	230,588	192,923	203,377	171,586	152,917	151,925
<제주계정>	12,889	10,172	7,183	4,707	3,520	3,951
<세종계정>	-	-	-	-	1,375	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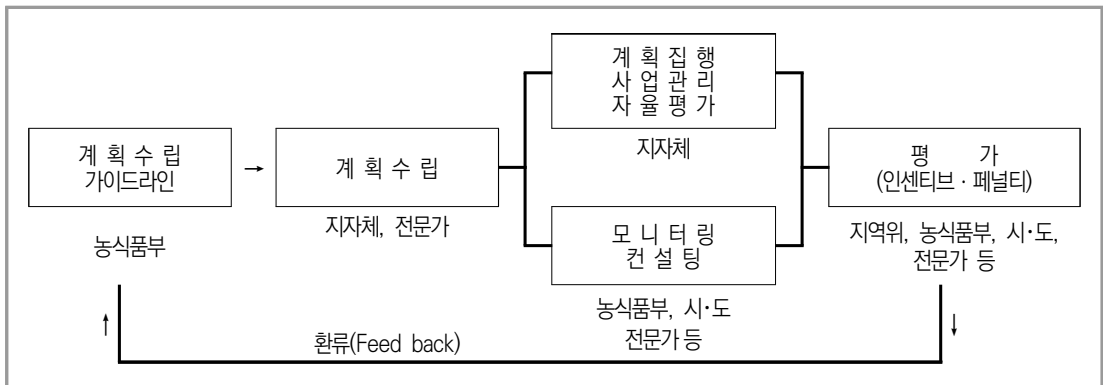
▶ **지원자금 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유형

- ①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②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 ③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④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⑤ 농촌 체험·관광 지원(㉠ 농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 ㉡ 농촌 테마공원 조성), ⑥ 농공단지 조성·개보수 지원 ⑦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⑧ 농촌 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 사업추진절차



참고

'17 예산 시도별·유형별 내역

(단위: 개, 백만원)

시도	총계		기획평가체계 구축지원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농촌관광지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 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합계	373	156,258	8	493	121	46,385	73	36,023	5	6,360	57	35,766	59	13,253	34	16,328	66	1,650
생활계정	350	152,628	7	482	109	44,203	65	34,636	5	6,360	57	5,766	59	13,253	34	16,328	64	1,600
부산	2	940	-	-	-	-	-	-	1	240	1	700	-	-	-	-	-	-
대구	4	1,365	-	-	2	945	-	-	2	420	-	-	-	-	-	-	-	-
인천	1	600	-	-	-	-	1	600	-	-	-	-	-	-	-	-	-	-
광주	2	1,559	-	-	-	-	1	59	-	-	1	1,500	-	-	-	-	-	-
대전	2	1,081	-	-	1	1,057	1	24	-	-	-	-	-	-	-	-	-	-
경기	12	7,164	1	20	1	950	2	830	-	-	1	2,197	-	-	2	3,017	6	150
강원	25	7,341	1	25	3	1,445	8	2,258	-	-	1	89	6	792	5	2,582	6	150
충북	15	3,473	-	-	-	-	5	1,170	-	-	1	500	5	1,078	3	650	3	75
충남	54	31,626	1	127	9	3,954	13	10,768	2	5,700	5	4,241	20	5,056	3	1,680	4	100
전북	149	57,888	1	150	79	27,152	13	9,375	-	-	32	13,200	7	1,104	16	6,657	10	250
전남	33	17,130	1	50	6	4,700	6	4,750	-	-	2	2,200	15	4,230	2	800	16	400
경북	26	11,400	1	70	3	1,000	9	2,792	-	-	6	6,670	2	193	2	450	9	225
경남	25	11,061	1	40	5	3,000	6	2,010	-	-	7	4,469	4	800	1	492	10	250
제주계정	20	2,835	1	11	11	1,437	7	1,362	-	-	-	-	-	-	-	-	1	25
세종계정	3	795	-	-	1	745	1	25	-	-	-	-	-	-	-	-	1	25

2-4. 향토산업육성

▶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15결산	'16예산(A)	'17예산안(B)	증감(A-B)	증감율
□ 지특회계(포괄보조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향토산업)	21,850	22,443	21,859	△584	△2.6

▶ 사업 개요

- 농촌지역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촌산업 연계·발전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 등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 '07~'17년까지 262개소 발굴(그 중 21개소 사업 포기, 241개소 추진)

▶ 지원 대상 : 농업인 조직, 향토기업체, 생산자단체 등

- * 산·학·연·관 등이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

▶ 지원 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4년간 사업비 30억원* 지원)

- * 국고 연차별 사업비(1~4년차): 3.5억, 5.5억, 4억, 2억

▶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내용: 사업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S/W+H/W(50%미만) 패키지 지원
- 업무추진 절차(시·군 사업계획 공모)
 - 시군사업계획 공모 및 선정(前년도 3월) → 선정(前년도 4~5월) → 시군계획 보완
 - 시군계획 전문가 검토·컨설팅 → 사업추진(당년도)

▶ 사업추진 경과

- ('04.4) 농촌지역 향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07~'08)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지역개발사업계정 → ('09~'14) 광역계정 → ('15~)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제주계정(포괄보조)
- ('14~) 향토산업육성사업 신규지구 선정권한 시도 이관('12.9)

▶ 연도별 지원 현황

* ()는 실제 시행지구(사업선정 후 중도 포기지구 제외)

구 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대상 (개소)	262 (241)	19 (18)	30 (28)	30 (28)	30 (28)	30 (29)	30 (26)	30 (24)	21 (19)	14 (14)	16 (15)	12 (12)
예산 (억원,국고)	3,184	43	90	286	344	406	409	438	397	328	224	219

제1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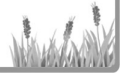
IV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제도



1 >>

지특회계 대상사업



가

지특회계 기본 구조

▶ 지특회계 사업 구분 : 4개 계정 8개 사업군

▮ 지특회계 편성체계 ▮

편성방식		계정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 자치시계정	제주특별 자치도계정
지자체 자율 편성	시·도	①시·도 자율편성사업	-	③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④시도,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시군구 기반구축사업 등 포함	
	사군구	②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⑤특별지방행정 기관이관사무 수행경비
부처직접편성		-	⑥부처직접 편성사업	⑦부처직접 편성사업	⑧부처직접 편성사업	

① 시·도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 지역의 일반적 개발사업으로 각 시·도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②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생활기반계정]

- 성장촉진지역 등 시·군·구 관련 기반구축사업으로, 해당 시·군·구가 지출한도(계속
소요)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

* 단,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③, ④, ⑤ 자율편성사업 [세종·제주계정]

- 세종 및 제주계정 대상사업 중 부처직접편성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군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 단,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의 신규소요는 부처가 공모를 통해 선정

⑥, ⑦, ⑧ 부처직접편성사업 [경제발전계정, 세종·제주계정]

- 경제협력권 지원을 위한 시·도간 연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 각 부처가 시·도 발전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의거 지자체 요구 등을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

▶ 기본 구조상의 특징

- ①汎국가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他 회계로, 지역 연계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은 지특회계에서 수행
- ② 생활기반계정은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으로 구성하고, 경제발전계정은 부처 직접편성사업으로 구성
 - 지특회계 안에서도 재정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생활기반계정에 포함
 -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경제발전계정에 포함

참 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구조 현황

구 분	(舊)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특화 발전 및 광역 경제권 경쟁력 향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회 계 구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개발계정 * 24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광역발전계정 * 지역연계협력사업 중점지원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활기반계정 * 37개 포괄보조금사업으로 구성 ② 경제발전계정 * 5 + 2 권역을 폐지, 시·도 중심 “지역 협력권”으로 전환 ③ 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 세종특별자치도계정
예 산 편 성		
예 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 집행후 남은 잔여예산은 전용하여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연도로 제한 (미집행시 국고 반납)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잔여예산은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유사목적 사업에 사용 가능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 하되 규정이 없으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나

계정별 대상사업

생활기반계정 ※ 균특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포괄보조금사업(31+6개)지원대상

- 31개 포괄보조사업은 시·도 자율편성*,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6개 사업은 시·군·구 자율편성**으로 운영

* 시·도는 지출한도 내에서 31개 포괄보조사업 중 선택하여 재원배분

** 시군구는 지출한도 내에서 해당 지역별 시·군·구 개발사업 선택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내역사업(예시)
시도 자율 편성 사업	문화부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박물관, 문예회관 등
		②관광자원 개발	50%	·관광지 개발 등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④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작은 영화관 등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문화재청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지역문화유산 개발
	농림부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농촌체험관광 지원 등
		⑧농업기반정비	80%	·밭기반 정비 등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향토산업육성 등
	해수부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어촌체험 관광지원 등
		⑪어업기반정비	80%	·지방어항 등
		⑫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연안정비 등
	농진청	⑬수산물가공산업육성	30~5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등
		⑭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
	산림청	⑮산림경영자원 육성	80%	·임산물 수출촉진 등
		⑯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숲길 조성·관리 등
		⑰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임도시설
	산업부	⑱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지역산업마케팅지원 등
중기청	⑲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 기반조성	6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여가부	⑳청소년시설 확충	30~88%	·청소년시설 확충	
환경부	㉑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㉒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지역생태계 복원 등	
	㉓생태하천복원	50~70%	·생태하천 복원	
	㉔노후상수도 정비	50~70%	·노후 상수관망·정수장	
국토부	㉕대중교통 지원	70~90%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등	
	㉖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등	
	㉗주차환경개선지원	50%	·공영주차장건설지원	
새만금	㉘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새만금 공업용수도 건설	
행자부	㉙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등	
고용부	㉚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복지부	㉛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시군구 자율 편성 사업	국토부	㉜성장촉진지역 개발	100%	·지역개발 지원 등
		㉝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50%	·주거환경 개선 등
	행자부	㉞특수생활지역 개발	8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농림부	㉟일반농산어촌 개발	70%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안전처	㊱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70~80%	·63개 행복생활권 대상 등
		㊲소하천정비	50%	·소하천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산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사항
 -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균특법 시행령 제36조)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의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균특법 제3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및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균특법 제3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대상사업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 생활기반계정의 지원대상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와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경제발전계정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용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경제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다

지원 제외사업

▶ 균특법 시행령(§36 별표)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일반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보조사업
-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 장애아교육 지원 등
-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제도와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논농업 직접지불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 환경친화형 양식어업 직접지불
-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다음의 보조사업
 - 장애수당·장애아동부양수당 지원
 - 저소득모자·부자가정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지원
- 수질·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
- 에너지정책의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 지역에너지 개발
 - 석탄비축 및 진흥지구개발 지원
 - 광산지역 공해 방지 시설 및 장비 지원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편성지침에서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1. 초·중등학교 학생 중식 지원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 사이버 가정학습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8.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상)
9. 주요 교육정책 홍보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 지원
11. 실업계 고교 확충 등(자본)
1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자본)
13. 농어촌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 지원
15. 중학교학력 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利差補填)
18. 지역정보화 지원
19. 자전거도로 정비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21. 공공도서관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23. 문화의 집 조성
2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종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5.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26. 관리책임자대회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29. 조각공원 조성
30. 통영국제음악제
31. 문화학교 운영
32.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35. 노랑해전 재현
36. 문화의 거리 조성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38.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41. 공주미술제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45.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46. 농가도우미 지원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48. 농촌 PC 보내기 사업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50. 지방자치단체 종자 보급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53. <삭제> 2015.7.24.
54. 사회복귀시설 운영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56. 공공보건사업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58. 지역봉사사업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60.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6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6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70.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72. 편의시설설치 시민 촉진단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7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영유아 거주 시설은 제외)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79.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닛
81. 경로당 운영
82. 경로당 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 무료급식
84.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2. 아동시설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95. <삭제> 2015.7.24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 결식아동 급식
101. <삭제> 2015.7.24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4. 미혼모 중간의 집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08.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110. 푸드뱅크 운영장비 지원
111. 노숙인 등 보호(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은 제외함)
112. 쪽방생활자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118. 결연기관 PC 구입비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21.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 지원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26. 시·도 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29.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131. 환승주차장 건설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33. 벽지노선(僻地路線) 손실보상
134. 오지(奧地)·도서(島嶼) 공영버스 지원
135.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
136. 불가사리 구제(驅除)
137. 자연수산과 급식비 지원
138. 장보고축제
139.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魚道施設) 등 지원
141. 내수면시험장 개수·보수
142. 연어 치어(稚魚) 방류
143. 재래어종 치어 방류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45. 수산물 위생안전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149. 양식기반시설
150. 마을어장 개발
151. 현충시설(顯忠施設)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57. 친환경 화장실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61. 보호수(保護樹) 정비
162. 임산물 유통·가공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라

지특회계 대상사업의 중복신청 금지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지특회계로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됨(균특법 제41조)
 -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균특법시행령 제44조)

참고

시·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절차

① (예산실) 17개 시·도 별로 기본한도 통보(4.15)



② (시·도) 기본한도내 예산안 마련, 부처에 신청(4.29)
• 31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편성



③ (각 부처)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5.27)
• 시·도 신청금액 원칙적 미조정 및 사업별 의견 제시



④ (예산실)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10%이상 삭감
•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사업 → 적정성 검토 및 삭감 → 대체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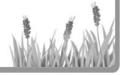
⑤ (예산실)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7월말)
* 평가에 의한 시·도별 인센티브와 순수 추가한도
• 시·도별 추가 예산요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상기 ④과정)



⑥ (예산실)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2 >>

시·도 자율편성 사업 예산안 편성시 유의사항



▶ 총괄

○ 지자체별 지출한도 준수

- 각 지자체(시·도)는 자율편성 한도 내에서 포괄보조사업을 선택하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
- 시·도별 한도와 시·군·구별 한도 간 상호조정 불가

○ 포괄보조사업별 목적 및 보조율 준수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 제외 사업은 신청 불가
- 종전 정액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
 - '10년 이전부터 추진하던 계속사업은 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 적용
 - 다만,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의 경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협의·조정

■ 포괄보조사업별 보조율 ■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①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30~70%	①7임도시설(국유림 제외)	70%
②관광자원 개발	50%	①8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③체육진흥시설 지원	30%	①9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60%
④지방문화산업기반 지원	50~80%	②0청소년시설 확충	30~88%
⑤산업단지·폐산업시설 문화재생	50%	②1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⑥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50%	②2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50%
⑦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②3생태하천 복원	50~70%
⑧농업기반정비	80%	②4노후상수도 정비	50~70%
⑨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50%	②5대중교통 지원	70~90%
⑩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②6지역거점 조성지원	50~100%
⑪어업기반정비	80%	②7주차환경개선지원	50%
⑫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②8공업용수도 건설지원	100%
⑬수산물가공업육성	30~50%	②9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50%
⑭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③0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5%
⑮산림경영자원 육성	80%	③1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80%
⑯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 재원배분
 - 국정과제·지역공약·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우선반영, 지역생활권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활성화 적극 추진
 - 투자우선순위, 성과, 정책체감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재원배분
 - 재원배분시 집행 가능성을 감안, 적정 소요 반영
 - 사업현장에서의 실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점검

■ **집행을 제고**를 위한 균특법 제43조(예산의 이월) 및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관련 규정

- 세출예산 최대 이월가능 기간을 2 회계연도로 제한
- 지자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부처에 이월명세서를 제출

■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법에 따라 국고에 반환

- 다만, 사업종료 후 남은 집행잔액은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 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 가능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 시·도지사는 재원배분시 관할구역 내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
 - 각 지자체가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성장촉진지역에서 시행하는 포괄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p 상향 적용 가능
-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지역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경쟁력 향상 등 지자체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 지속 추진
 - 지자체 책임성 제고를 위해 재정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시·군 자율통합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시·도 자율편성 사업을 통해 통합 지자체에 배분하는 사업에 대해 통합 후 5년간 국고보조율 10%p 상향 지원
 - * (계속사업) 통합시점부터 사업종료시까지 10%p 상향
 - (신규사업) 통합 이후 5년 경과 이전 10%p 상향, 5년 경과 이후는 기준보조율 적용

- 시·도 자율편성 사업 내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출한도를 통합 후 5년간 통합 이전 수준 이상 유지
- 예산편성과정에서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소관 부처로 하여금 통합 지자체의 신규 소요를 우선 반영토록 권고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의 일부조항 적용 배제*
 - * §18(보조금의 교부조건), §21(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26(보조사업수행명령), §28(보조금의 금액확정) 내지 §33(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관리법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부터 제33조(강제징수) 적용

▶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지자체는 포괄보조사업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 점검

| 사전 검증 사항 |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④ **사업수행 방식 및 물량·단가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선의 사업추진 방식 검토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다만, '16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 ※ 예산요구서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예산편성시 사전 절차 이행 불투명 사업은 미반영
 - 민자유치가 수반되는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확실한 투자 계획*을 전제로 예산신청
 - * 민간사업자와의 양해각서 등 증빙서류 첨부

- 문화·체육시설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시설별 운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되, 공립박물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 운영계획서에는 이용수요 및 운영비 확보방안, 전시콘텐츠 확보현황 및 향후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운영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운영계획 부실시 신규사업 반영 제한
 - 생태하천복원, 노후상수도 정비 신규사업 요구시에는 환경부의 검토를 거쳐 요구
 - 지자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 둘이상의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인센티브 부여
 - 각 지자체의 예산신청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가능
- * 예시 : (기존) 각 지자체별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개선) '15년 신규사업 중 A시, B시, C시 등 3개 지자체가 연계하여 1개소 건립
⇒ 국고보조율 : 40% → 50%(10%p 상향)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사업

- 성과부진 사업은 지자체 자율편성시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
 - 집행실적 부진 사업(예산현액 기준 '15년 집행실적 60% 이하)
 - 자금배정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부득히 하게 집행이 부진하게 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명될 경우 부진사업에서 제외
 -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하위(미흡) 사업
- 사업간 우선순위 점검을 통해 주요 역점사업에 집중투자
 - 국정과제 등을 우선 요구하고, 완공위주의 자원배분으로 계속사업을 조기 완료
- 개별사업별로 기 결정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되, 개별사업의 신청기준(지방비 분담률, 신청 상한액 등) 준수
 - 재정당국 등과 사전 합의된 국고지원 규모는 조정 불가
 - 정해진 사업규모를 최소의 비용과 부담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3

지특회계 예산편성 지침 관련 Q&A



1. 지자체에서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예산신청시, 지특회계에 속하는지, 어느 계정인지 등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는지?

Ⓢ 균특법의 세출조항(제34조, 35조, 35조의2, 35조의3),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별첨 1 지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

2. 특정사업이 일반회계인지 지특회계인지 불분명할 경우, 임의로 신청하면 기재부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는가?

- Ⓢ 사업신청자가 균특법의 세출조항(제34조, 35조, 35조의2, 35조의3),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회계를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 Ⓢ 기재부는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 사업금액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

3. 지자체에서 시·도자율사업 편성시 신규로 포괄보조사업(현 3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 Ⓢ 사업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한 포괄보조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 포괄보조사업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허
 - 부처 세부사업(30개 사업) 기준이며, 신규 내역사업의 신청은 가능
- Ⓢ 다만,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와 협의

4. 포괄보조사업 내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는 내역사업의 종류에 제한을 두는지?

Ⓢ 균특법 제34조(생활계정), 제35조의2(제주계정), 제35조의3(세종계정)의 지특회계 세출항목에 적합한 사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

- ➡ 포괄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균특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 제외대상 사업,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 지원제외사업(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참조)
 - 일반여권발급사업, 농농업직접지불사업, 취약계층 복지지원 관련사업 등 균특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지원제외대상으로 규정된 사업(7개 사업군)
 - 초중등 학생중식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역정보화지원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사업(163개 사업)
- ➡ 그 밖에 타회계, 기금 등에서 추진중인 사업을 지특회계에서 중복하여 신청 불가
 - 균특법 제 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5. 예산안 편성시 포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한 재정당국의 심사 범위는?

- ➡ 포괄보조사업 내 계속소요의 경우, 집행률, 지역발전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 조정 했는지 여부 등 심사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포괄보조사업 내 신규소요의 경우, 사업의 기본목적 부합여부 및 보조율 적용의 적정성 등 심사

6. 포괄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적용은?

- ➡ 원칙적으로 각 포괄보조사업별 통합보조율을 적용
 -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각 포괄보조사업별 통합보조율을 적용하되 **기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완료시까지 **기존 보조율 적용 가능**
- ➡ 다만,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의 보조율 적용 가능

7. 2개 이상 지자체가 상호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복합 공공시설을 건설시 보조율은?

- ➡ 지자체간 또는 사업간 연계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적용
 - 3개시가 공동으로 공립박물관 1개소 건립 : 보조율 40 → 50%
 -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 : 보조율 40 → 50%

8.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을 생활기반계정으로 요구할지, 경제발전계정으로 요구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원칙적으로 균특법의 세출조항,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한 「지특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근거로 해당되는 계정에 편성을 요구하면 됨
- 예를 들어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이 포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할 경우에는 생활기반계정으로 신청하고
- 사업의 성격상 경제발전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연계·협력일 경우에는 경제발전계정으로 신청

9. 광역지자체간 협력사업의 경우 편성신청시 편성주관 지자체를 통해 일괄요구해야 하는지?

- 경제발전계정인 경우, 시·도(광역지자체)와 소관부처간 협의를 거쳐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음
- 생활기반계정인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출한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소관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주관 지자체 선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0.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하는 규정인지?

- 균특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활용은 지방재정법 상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 상 전용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아도 됨
- 다만 보조금 정산 문제 등을 감안하여 ①동일 부처 ②지특 내 동일계정 내의 사업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제3항의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동일 부문 사업을 의미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집행잔액 미활용시 다음 연도 지방재정 수입으로 편입해서는 안 되며, 국고에 반납하여야 함

11.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집행잔액의 발생시점인 “사업이 끝난 후”의 정확한 시기는?

- ➡ 균특법 상 “사업이 끝난 후”의 시점은 당초 교부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체결시점***으로 봄이 타당
 - *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공사를 분리 발주할 경우 **마지막으로 발주한 공사의 계약 체결시점**을 “사업이 끝난 후”로 봄
 - 계약 체결시점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잔액규모가 실질적으로 결정되면** 13번 항목에 따라 타 사업으로 활용 가능

12. 균특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집행잔액 사용시 지방비 매칭을 해야하는지? 매칭을 해야한다면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 지특회계 보조금은 교부금 같은 일반 지방재원이 아니므로 해당사업의 보조율에 따라 지방비 매칭 필요
- ➡ 이 때 매칭 비율은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비율에 따라야 함

13. 지특회계의 이월 가능 범위와 기한은?

- ➡ 균특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안에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초과시 국고에 반납)
 - 균특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월범위 20%는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명시·사고이월 등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임

제1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 제도 개요

- (목적) 일정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로 지역특구제도 도입 결정('03년), 지역특구법 제정('04.3월)
 - *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음
- (지정절차) 기초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후 특구 신청하면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구 지정

▶ 지정 효과

- (규제완화) 각 개별법에 정한 규제의 특례(적용배제 및 완화)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적용
 - * 적용현황 : 현행 129개 규제특례 중 74개 규제 특례가 총 823회 적용되어 특구 당 평균 4.7개의 특례 적용
- (우대지원) 특구 지정을 통해 예산 인센티브*를 받거나 특구사업에 우선적인 재정 지원을 부처에 권고**토록 중기청에 요청 가능
 - * 가점 반영사업 (농식품부 4개 사업) : 향토자원육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 ** 관련규정 (특구법 제14조제4항) : 중앙부처의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정책에 대해 해당 특구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줄 것을 중기청에 요청 가능
- (홍보효과) “지역특구”를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해당 지역의 브랜드로 활용 가능

▶ 지정 현황

지역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합계
특구수(개)	10	8	30	37	12	3	18	14	14	16	13	3	178

참고 1

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 및 운영 경과

구 분	주요 내용
'03. 3. 27	경제정책조정회의 (새정부 경제운용 방향) - 규제완화를 통한 지방특화발전 장치 마련
'03. 6. 12	제9차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구상' 발표 • 지역특구를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의 하나로 선정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발전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① 특별법제정,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 ③ R&D 지방지원비율 확대 ④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⑥ 지역특구 도입 ⑦ 낙후지역 대책수립
'04. 3. 22	지역특구법 제정
'04. 9. 22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시행 • 총 29개 법률 69개 규제특례 적용
'04. 12. 30	제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6개 특구 지정) •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 농업특구, 국도최남단마라도 청정특구
'06. 10. 4	(1차 개정)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총 47개 법률 97개 규제특례로 확대
'08. 2. 29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업무 이관 (정부조직법령 개정)
'09. 7. 2	(2차 개정)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총 58개 법률 126개 규제특례로 확대
'11. 8. 25	(3차 개정) 지역특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 총 58개 법률 129개 규제특례로 확대
'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업무 이관(정부조직법령 개정)
'13.12. 13	제30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2개 신규지정·1개 지정해제, 누계 155개
'14. 3. 28	제31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5개 신규지정, 누계 160개
'14. 9. 25	제32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3개 신규지정, 누계 163개
'15. 11. 27	제35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7개 신규지정·1개 지정해제, 누계 172개
'16. 03. 18	제36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5개 신규지정·2개 지정해제, 누계 175개
'16. 07. 18	제37차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 3개 신규지정, 누계 178개

참고2

지역특구지정 현황 ('16. 10월 현재)

■ 연도별 지정 현황

지정년도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2004	2	2	1	1		6
2005	18	7	5	3	2	35
2006	19	5	3	3	1	31
2007	11	5	4	5		25
2008	7	9	4	1	1	22
2009	7	5	1	1		14
2010	5	3	2	1		11
2011	4	1	2	1		8
2012		1	2			3
2013	1	2	1	1		5
2014	6	1			1	8
2015	6	2	2		1	11
2016	2	3	2	1		8
지정해제	3	3	1		2	9
계	85	43	28	18	4	178

■ 지역별·유형별 지정 현황

지역 \ 유형	향토자원	관광레포츠	교육	산업연구	의료·복지	합 계
서울(9)	1	2	5		2	10
부산(6)	1	3	2			6
대구(2)	1			2		3
인천(3)	1	1	1			3
광주(2)	1		1			2
대전(0)	0
세종(0)	0
울산(2)	1	1				2
경기(11)	4	4	1	3		12
강원(12)	7	4		3		14
충북(11)	8	3	1	2		14
충남(12)	12	1	4	1		18
전북(11)	7	4		3	2	16
전남(21)	18	8	8	1		35
경북(20)	17	6	3	1		27
경남(10)	5	4	2	2		13
제주(2)	1	2				3
합계(134)	85	43	28	18	4	178

※ () 안은 지역특구 관할 기초지자체 수

■ 시·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시·도	시·군·구	계	특구 명칭	유형	위원회 차수
서울 (9개)	동대문구(1)	1	서울 악령시한방산업특구	향토자원	4차지정
	노원구(2)	2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3차지정
	중 구(3)	3	서울 중구 영어교육특구	교육	13차지정
		4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특구	의료·복지	31차지정
	강남구(4)	5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변경-35차)	관광레포츠	15차지정
	관악구(5)	6	관악 Edu-Valley교육특구	교육	22차지정
	은평구(6)	7	은평 북한산 韓문화체험특구	관광레포츠	33차지정
	성동구(7)	8	성동 용·북합혁신교육특구	교육	35차지정
	강서구(8)	9	서울 강서미라클-메디특구	의료·복지	35차지정
중랑구(9)	10	중랑 역사문화교육특구	교육	37차지정	
부산 (6개)	해운대구(1)	1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변경-18차,19차)	관광레포츠	2차지정
	기장군(2)	2	기장 미역·다시마특구(변경-35차)	향토자원	11차지정
	동 구(3)	3	부산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12차지정
	남 구(4)	4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관광레포츠	20차지정
	금정구(5)	5	부산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교육	28차지정
	동래구(6)	6	동래 문화교육특구	교육	35차지정
대구 (2개)	중 구(1)	1	대구 악령시한방특구	향토자원	1차지정
		2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산업·연구	6차지정
	북 구(2)	3	대구 안경산업특구	산업·연구	9차지정
인천 (3개)	서 구(1)	1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변경-35차)	교육	3차지정
	강화군(2)	2	강화 약썩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중 구(3)	3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특구	관광레포츠	11차지정
광주 (2개)	광주광역시, 광산구(1)	1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향토자원	25차지정
	남 구(2)	2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	교육	25차지정
울산 (2개)	울주군(1)	1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남 구(2)	2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변경-36차)	관광레포츠	15차지정
경기 (11개)	이천시(1)	1	이천 도자산업특구(변경-18차,28차)	향토자원	4차지정
	군포시(2)	2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교육	6차지정
	양평군(3)	3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고양시(4)	4	고양 화훼산업특구	산업·연구	8차지정
		5	고양 전시문화특구	산업·연구	19차지정
	여주시(5)	6	여주 쌀산업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양주시(6)	7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관광레포츠	15차지정
	안산시(7)	8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관광레포츠	17차지정
가평군(8)	9	가평 잣산업특구(변경-35차)	향토자원	23차지정	

V. 지역특화발전 특구 제도

시·도	시·군·구	계	특구 명칭	유형	위원회 차수
	시흥시(9)	10	시흥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	관광레포츠포츠	26차지정
	의왕시(10)	11	의왕 철도특구	산업·연구	29차지정
	남양주시(11)	12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관광레포츠포츠	35차지정
강원 (12개)	원주시(1)	1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산업·연구	3차지정
		2	원주 옷·한지산업특구(변경-17차)	향토자원	10차지정
	태백시(2)	3	태백 고지대스포츠헌련장특구	관광레포츠포츠	4차지정
	강릉시(3)	4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산업·연구	5차지정
	화천군(4)	5	화천 평화·생태특구(변경-18차)	관광레포츠포츠	10차지정
	삼척시(5)	6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산업·연구	16차지정
	영월군(6)	7	영월 박물관고을특구(변경-26차,36차)	관광레포츠포츠	16차지정
	정선군(7)	8	정선 아리랑5일장특구(변경-29차)	관광레포츠포츠	20차지정
	인제군(8)	9	인제 산나물특구	향토자원	23차지정
		10	인제 웅대향태산업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평창군(9)	11	평창 산양삼특구	향토자원	32차지정
	홍천군(10)	12	홍천 청정산양삼특구	향토자원	32차지정
	홍천군	13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향토자원	37차지정
	강원도, 속초시(11), 평창군, 고성군(12)	14	강원(속초·평창·고성) 명태산업광역특구	향토자원	33차지정
충북 (10)	제천시(1)	1	제천 약초웰빙특구(변경-19차)	향토자원	3차지정
	옥천군(2)	2	옥천 묘목산업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3	옥천 옷산산업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충주시(3)	4	충주 사과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5	충주 중원역사문화레포츠포츠포츠특구(변경-16차)	관광레포츠포츠	14차지정
	영동군(4)	6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향토자원	6차지정
		7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단양군(5)	8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산업·연구	7차지정
	음성군(6)	9	음성 다울찬친환경수박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청주시(7)	10	청주 직지문화특구	관광레포츠포츠	12차지정
	보은군(8)	11	보은 대추한우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증평군(9)	12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레포츠포츠	18차지정
	청주, 충주, 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	13	충북 태양광특구	산업·연구	23차지정
	진천군(10)	14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30차지정
충남 (13개)	금산군(1)	1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변경-20차,29차)	향토자원	3차지정
		2	금산·추부 깻잎특구	향토자원	33차지정
	논산시(2)	3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시·도	시·군·구	계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4	논산 양촌곶감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5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향토자원	12차지정	
		청양군(3)	6	청양 고추·구기자특구(변경-14차)	향토자원	9차지정
		태안군(4)	7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산업·연구	13차지정
		예산군(5)	8	예산 향토사과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홍성예산군(6)	9	홍성·예산 국제문화교육특구	교육	16차지정
		홍성군(7)	10	홍성 유기농업특구	향토자원	32차지정
		서천군(8)	1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12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아산시(9)	13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3차지정
		천안시(10)	14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4차지정
		서산시(11)	15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변경-26차,30차,35차)	관광레포츨	16차지정
		부여군(12)	16	부여 양송이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공주시(13)	17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교육	20차지정
	18		공주 5도2촌일밤특구	향토자원	20차지정	
	전북 (11개)	순창군(1)	1	순창 장류산업특구(변경-14차,29차)	산업·연구	1차지정
			2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의료·복지	16차지정
		고창군(2)	3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향토자원	1차지정
4			고창 경관농업특구	관광레포츨	1차지정	
완주군(3)		5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변경-20차)	의료·복지	4차지정	
남원시(4)		6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변경-8차,17차,30차)	향토자원	5차지정	
진안군(5)		7	진안 홍삼한방특구(변경-20차,25차)	향토자원	6차지정	
부안군(6)		8	부안 영상문화특구	관광레포츨	8차지정	
		9	부안 청정누에타운특구(변경-26차)	향토자원	9차지정	
		10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산업·연구	11차지정	
김제시(7)		11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12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	산업·연구	36차지정	
전주시(8)		13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관광레포츨	20차지정	
장수군(9)		14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관광레포츨	23차지정	
정읍시(10)		15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향토자원	35차지정	
임실군(11)		16	임실엔치즈·낙농특구	향토자원	36차지정	
전남 (21개)	순천시(1)	1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교육	1차지정	
		2	순천 친환경농업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3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관광레포츨	7차지정	
		4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교육	8차지정	
	곡성군(3)	5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변경-7차,20차)	관광레포츨	4차지정	
		6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교육	7차지정	

시·도	시·군·구	계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경상	함평군(4)	7	함평 나비산업특구	관광레포츨	8차지정
		8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향토자원	15차지정
	장흥군(5)	9	정남진 장흥도요시장생약초한우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10	정남진 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관광레포츨	14차지정
	강진군(6)	11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교육	10차지정
		12	강진 고려청자문화특구	관광레포츨	17차지정
	보성군(7)	13	보성 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13차지정
		14	보성 영어 평생교육 특구	교육	17차지정
		15	보성 벌교꼬막문화산업 특구	향토자원	35차지정
	광양시(8)	16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교육	14차지정
		17	광양 매실산업특구	향토자원	14차지정
	신안군(9)	18	신안 천일염산업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고흥군(10)	19	고흥 우주해양리조트특구(변경-36차)	관광레포츨	17차지정
		20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21	고흥 분청사기문화예술	관광레포츨	36차지정
	영광군(11)	22	영광 굴비산업특구	향토자원	17차지정
		23	영광 보리산업특구	향토자원	19차지정
	완도군(12)	24	완도 전복산업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25	완도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	향토자원	22차지정
	구례군(13)	26	구례 야생화생태특구	향토자원	20차지정
		27	구례 산수유산업특구	향토자원	25차지정
나주시(14)	28	나주 배산업특구	향토자원	20차지정	
해남군(15)	29	땅끝해남 웰빙고구마산업특구	향토자원	22차지정	
화순군(16)	30	화순 백신산업특구(변경-36차)	향토자원	22차지정	
목포시(17)	31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교육	23차지정	
진도군(18)	32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관광레포츨	29차지정	
무안군(19)	33	무안 향토량양파한우옹북학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영암군(20)	34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향토자원	35차지정	
담양군(21)	35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교육	36차지정	
경북 (20개)	영양군(1)	1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관광레포츨	3차지정
		2	영양 고추산업특구(변경-15차)	향토자원	11차지정
	안동시(2)	3	안동 산약(마)마을특구(변경-11차)	향토자원	4차지정
	상주시(3)	4	상주 꽃감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5	상주 고령지포도특구	향토자원	9차지정
	영천시(4)	6	영천 한방진흥특구	향토자원	5차지정
	영덕군(5)	7	영덕 대게특구(변경-16차)	관광레포츨	6차지정
		8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산업·연구	13차지정

시·도	시·군·구	계	특 구 명 칭	유 형	위원회 차수	
경상		9	영덕 유소년축구특구	관광레포츠	37차지정	
	성주군(6)	10	성주 참외산업특구	향토자원	7차지정	
	김천시(7)	11	김천 포도산업특구	향토자원	7차지정	
		12	김천 자두산업특구	향토자원	10차지정	
	의성군(8)	13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문경시(9)	14	문경 오미자산업특구(변경-27차)	향토자원	8차지정	
	울진군(10)	15	울진 로하스농업특구	향토자원	8차지정	
	경산시(11)	16	경산 종묘산업특구	향토자원	11차지정	
		영주시(12)	17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교육	12차지정
	18		영주 힐링특구	향토자원	31차지정	
	봉화군(13)	19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관광레포츠	12차지정	
	포항시(14)	20	포항 구룡과메기산업특구	향토자원	12차지정	
	청도군(15)	21	청도 반시나라특구(변경-22차)	향토자원	13차지정	
		22	청도 우리정신글로벌별화교육특구	교육	26차지정	
	구미시(16)	23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교육	15차지정	
	고령군(17)	24	고령 대가야농촌체험특구	관광레포츠	15차지정	
	칠곡군(18)	25	칠곡 양봉산업특구	향토자원	15차지정	
	청송군(19)	26	청송 사과특구	향토자원	16차지정	
	예천군(20)	27	예천 곤충산업특구	향토자원	18차지정	
	경남 (10개)	창녕군(1)	1	창녕 외국어교육특구(변경-30차)	교육	2차지정
		산청군(2)	2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변경-16차,23차)	향토자원	3차지정
		의령군(3)	3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12차)	관광레포츠	4차지정
		함양군(4)	4	함양 지리산 산양삼산업특구(변경-6차,35차)	향토자원	5차지정
			5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산업·연구	13차지정
			6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향토자원	29차지정
			7	거창 향노화힐빙특구	관광레포츠	36차지정
		김해시(6)	8	김해 평생교육특구	교육	6차지정
하동군(7)		9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향토자원	7차지정	
고성군(8)		10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변경-15차,33차)	관광레포츠	11차지정	
	11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변경-16차,32차,36차)	산업·연구	12차지정		
거제시(9)	12	거제 해양휴양특구	관광레포츠	19차지정		
창원시(10)	13	창원 단감산업특구	향토자원	33차지정		
제주 (2개)	서귀포시	1	국토최남단 마라도청정특구	관광레포츠	1차지정	
		2	서귀포휴양예술특구	관광레포츠	30차지정	
	제주시	3	제주 추자도 참굴비 섬체험 특구	향토자원	17차지정	

참고3

지역특구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지역특구 지정 신청(지자체 ↔ 중기청)

- 특구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결정·통보. (단, 45일 연장 가능)
- * 지역특구 신청서를 검토하여 미비서류(자료) 보완·추가 제출요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중기청 ↔ 환경부)

-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등)

관계행정기관 협의(중기청 ↔ 관계행정기관)

- 관계행정기관은 20일 이내에 의견제출 (1차에 한해 10일 범위 협의 연장가능)
- * 기간 내 제출이 없는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 처리

지역특구 실무위원회 협의(중기청 ↔ 실무위원)

- 관계행정기관 협이가 끝난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 (위원회 안건상정 전 사전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조사항 정리)

지역특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지역특구위원 중 민간위원)

- 안건별로 지역특구의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

지역특구 위원회 심의·의결(위원장 : 중기청장)

- 특화사업과 지역의 특성·여건과의 적합성
- 규제특례와 특화사업과의 연관성
- 특화사업의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의 확보(민자 유치 가능성 포함)
-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및 주민 등의 의견
- 사업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적합한 정도
- 기타(실행가능성, 차별성,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 등)

지역특구 지정·고시(중기청)

- 중기청장은 관보에 특구지정 고시(특구계획 승인, 특화사업자로 지정으로 봄)
-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받은 결과를 주민열람(14일 이상)
- * 지자체장은 지역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할 수 있음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중기청)

- 지역특구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및 부진특구를 선정
- 평가결과 지역특구제도개선에 반영

참고4

지역특구 규제특례 현황('16. 10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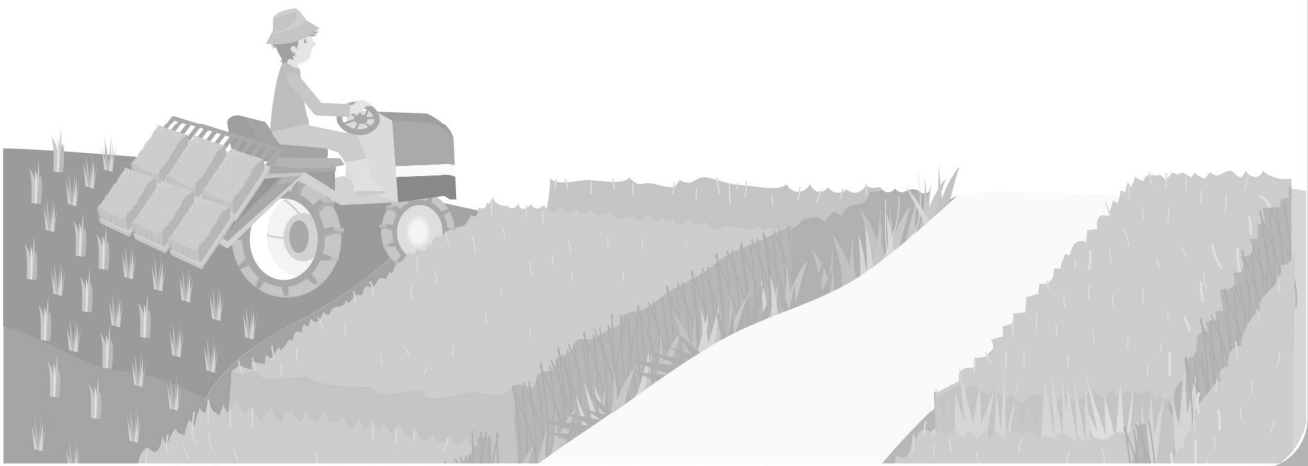
구 분	적용특례(관련 법률)	적용특구수
일반 규제특례 (61개)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46
	도로통행 제한(도로교통법)	107
	농지의 위탁경영 / 임대·사용대(농지법)	60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특허법)	48
	도로점용 허가 지체없이 허용(도로법)	52
	외국인 체류기간 상한 연장(출입국관리법)	45
	외국인 교원 및 강사임용(초·중등교육법)	24
	기타	166
	소 계(적용특례 49개)	648
토지이용 규제특례 (53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법)	21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농지법)	16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법)	1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국토계획·이용법률)	10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이용법률)	4
	기타	42
	소 계(적용특례 21개)	104
권한이양 특례 (15개)	식품 표시기준 완화(식품위생법)	69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등록 완화(체육시설설치이용법)	7
	기타	5
	소 계(적용특례 4개)	81
(129개)	합 계 (적용특례 74개)	83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편람

제 2 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제2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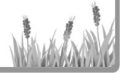
사업개요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6차산업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 * 사례 : 농산물(1차)을 가공한 식품과 민예품(2차)을 판매하고, 농촌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탐방 및 관광서비스(3차) 제공을 결합
 - 지자체에서 포괄보조금예산 사업을 활용,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가

추진 방향

- ▶ 포괄보조 제도의 취지와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편성·집행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
 - negative 방식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법령상 금지, 핵심 농정 방향 배치 등의 경우 외에는 지자체 자율적인 사업추진 허용
 - 예산편성 절차의 간소화로 농식품부의 시·도 신청사업 검토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성 여부 판단은 지자체 책임으로 함
 - 중앙정부는 사후 평가·환류에 중점을 두어, 현행 집행실적(진도) 위주 점검 →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점검 위주로 전환
- ▶ 평면적 투자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전략적·집중적 투자
 -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바탕으로 투자대상을 선정
- ▶ 농촌 자원 산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S/W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
 - 지역 주도의 농촌 산업화 추진 체계 구축, 공공/민간부문의 지원 기능 확충

▶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 시·군 범위를 넘어선 복수 시·도, 시·군간 연계·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시행

나 지원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52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촌 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다 사업 범위

▶ 지원대상 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아래 지원제외 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원 가능
 - * 농산물 자원을 산업화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농산물 외의 특산물, 전통문화, 역사, 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산업화(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하는 경우 포함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첨부 2’ 참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장비** 지원(농가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소모성 투입재**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토목·건축분야에 **총사업비 30억원이상**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의 사전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
-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확보** 및 사업신청 전 법령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 신청 불가**
 - 다만, 신청년도내 중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 * 농공단지 지정(농공단지통합지침에 따름),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사업 등은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 **지원 대상자** :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구청장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자의 총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별표10]의 **지원요건**(총출자금 1억이상, 자부담 이상, 자기자본 50%이상, 농업인출자 10%이상 등)에 **충족**되어야 함

〈주〉 사업(자) 선정시 주요 우대 또는 가점대상

- ① 농식품부의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등과 연계사업으로 추진코자 할 경우
- ②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내 특화사업**의 경우
- ③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6차산업 인증사업자
-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가 연계된 사업인 경우
- ⑤ 주원료를 지역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
- ⑥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은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선선정기회 부여
- ⑦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는 가점부여 등 선정시 우대

▶ **지원 기준**

- **지원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은 지자체가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은 정액지원
- **사업비 지원 한도**
 - 농촌테마공원조성 사업 :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시·군·구당 1개 지구에 한하여 가능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당해 시·도의 당해연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국고예산 총액의 0.3~0.5% 내외
- 제조·가공·생산·유통시설비 : 보조사업자 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 지원대상 지역 : 시·군·구 전체
 - 2개 이상의 농촌 시·군 협력 사업인 경우 해당 시·군
 -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시·군·구는 제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 ※ 사업대상 지역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타 지침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라 추진 경과

- ▶ '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예산을 편성, 개별 세부사업*으로 각각 시행
 - * 세부사업 : 특화품목육성, 향토산업육성(계속), 농촌테마공원조성,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공단지조성, 축산경쟁력제고, 양곡유통지원, 농산물유통 등
- ▶ '10년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개별 세부사업을 시·도 포괄보조사업(농어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으로 통합
 - * 수산분야인 어촌어항관광개발, 친환경어업지원, 수산자원회복 등 포함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2년 예산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편성
- (농공단지) '13년 예산부터 특화농공단지만 조성비 지원
 - 일반·전문농공단지는 '13년이후 계속지구만 지원
 - '10년부터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비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 '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수산분야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2 >> 사업유형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0예산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16예산	'17예산
계	235,580	243,477	203,095	210,560	176,293	157,812	156,721	156,258
지역개발계정	221,914	230,588	192,923	203,377	171,586	152,917	151,925	152,62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3,666	12,889	10,172	7,183	4,707	3,520	3,951	2,835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	1,375	845	795
기획·평가체계 구축	-	-	-	394	353	613	440	493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	103,464	84,775	55,722	56,106	60,332	55,326	48,906	46,385
농산물 제조·가공	39,645	50,089	54,466	57,208	50,837	41,676	38,553	36,023
농산물 체험·전시 지원	1,000	1,300	3,748	5,005	3,857	993	1,110	6,360
농촌 체험·관광 지원	39,183	54,669	42,937	41,552	35,086	24,129	30,642	35,766
농공단지 조성·개보수	52,288	52,644	46,222	50,295	25,828	27,061	25,277	13,253
6차산업화지원	-	-	-	-	-	8,014	11,793	16,32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	-	-	-	-	-	1,650

제2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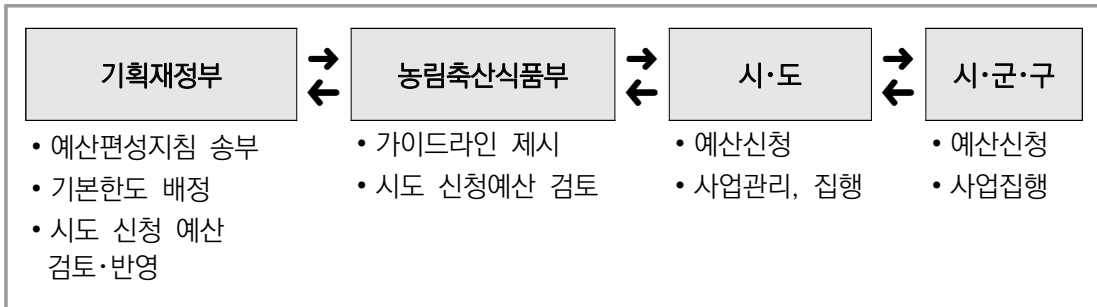
예산의 신청 및 편성



1 >> 예산 신청 및 집행 체계



가 예산 신청 체계



- ▶ 각 시·도별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기본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 농식품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업유형별로 분류하여 신청

나 집행 사후관리

- ▶ 사업시행 다음연도에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 및 사업은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지자체 및 사업은 페널티(예산 삭감) 부여
- ▶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분기 1회 이상 사업점검 실시
 -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해소 및 제도개선 추진

2 >>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가 사업 유형별 신청

-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첨부)을 참고**하되, 지역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신청

 -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양한 유형의 사업추진 가능**
- ▶ 단편적, 1회성 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구조의 고도화***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도의 실질적 심사기능 강화

 - * 생산·제조·가공·R&D·마케팅이 결합된 **package** 형태로 추진하고 사업규모 및 사업 성격 등을 고려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등
- ▶ **예산신청 사업유형** : 복합산업화 형태에 따라 8개 사업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

지원 방식	사업 유형	비 고(세부유형)
i)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 지원	①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ii)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③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④ 농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iii)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농촌 체험·관광 지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농촌관광 공동인프라조성 녹색농업 치유단지조성
iv)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v)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6차산업화 지원	
vi)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 지원	⑧ 농촌공동체회사우수사업지원	* '17농특에서 이관

* 2개 이상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비중이 가장 큰 유형으로 분류하여 예산 신청

나 신규 내역사업

▶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증

- 지자체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7개 사업유형 내 신규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신청에 앞서 다음의 체크리스트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사전 점검
 - **사업목적의 부합성***, 지원대상사업 여부,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물량·단가의 적정성 등
 - * 재정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

사전 검증 사항

-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적인 설계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 * 집행가능성은 실제 집행가능성 여부를 검증
-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 매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상의 기준단가 등을 참고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신청년도 중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예산편성시 사전절차 이행 불투명 사업은 미반영)
 - * 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정하는 절차에 따름
-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 등 1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총사업비 4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 등 3억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투자심사를 실시
- 토목·건축 분야 총사업비 규모가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농식품부의 사업성 검토** 선행
 - 농식품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된 사업은 검토결과외 수정·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신청
 -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제외(‘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 조사 별도 실시)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업 중 농식품부의 사전 타당성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신청 불가

▶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다년차 사업으로 추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 단년도(회계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단년도 예산신청이 가능하나, 시·도에서 철저히 검토
- 정부예산안 통보 시점부터 사업준비 등을 통해 연초에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 절차 당겨 추진

다

계속 사업

- ▶ 개별사업별로 기 결정된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잔여사업비를 우선 반영
 - 전년도 집행 부진사업(이월사업)은 예산현액 규모를 감안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소요만을 신청

- 특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공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무리한 예산 편성 지양

* 당해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전년도 집행실적이 낮으면 잔여 사업비 미반영

▶ **성과부진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액 조정**

- 집행실적 부진사업(예 : 예산현액 기준 전년도 집행실적 60% 이하)
- 지역발전위원회 평가결과 하위사업

▶ **시·도가 신청한 예산 중 기재부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 또는 대체사업 발굴 신청**

- 국고지원 부적절, 성과부진 등의 사유로 삭감된 예산이 있을 경우 시·도 후순위 신규 사업 또는 기존 계속사업으로 대체 신청
- * 1차 신청 후 감액재원 또는 인센티브재원이 배정되므로 미리 준비 필요

▶ **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사례 또는 선심성·행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최대한 신청 억제**

3

행정사항



▶ **시·도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을 담당할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 등을 지정·운영**

- * 사업유형 중 ①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사업과 연계
- 총괄부서는 기획·평가·예산신청 등 사업추진 총괄 업무를 담당
- 세부사업부서는 계획수립·예산신청 보조업무와 세부사업 추진업무를 담당

4

추진일정



-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매년초
- ▶ **시·도별 기본한도 통보**(기획재정부 → 시·도) : 4월하순
- ▶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통보**(농식품부) : 4월하순~5월초
- ▶ **기본한도내 예산안 마련, 부처에 신청**(시·도 → 농식품부) : 5월중
- ▶ **시·도 요구내역 검토, 예산요구**(농식품부 → 기획재정부) : 6월중
 - * 시·도의 부적정 등의 예산요구내역에 대한 조정의견 기재부에 제출
- ▶ **예산요구 적정성 검토**(기재부) : 7~9월초
 - * (계속사업) 집행실적 저조, 지역위 하위평가 사업은 10%이상 삭감
 - * (신규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국고지원 부적절 사업은 미반영
 - * 시·도별 기본한도를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조정 : 삭감 → 대체 → 적정성 검토·삭감 → 대체 ...
- ▶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기재부) : 8월말~9월
 - *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시·도별 지출한도는 준수

참고1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유형별 지원 조건이나 지원 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을 6개의 산업화 지원 방식으로 구분, 8개의 사업유형을 제시한 것으로서
 - 각각의 유형별 사업 외에 여러개의 유형이 혼합된 사업의 추진은 물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목적, 추진방향 등에 부합될 경우에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 추진도 가능
 - * 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는 8개 유형 중 1개 유형으로 분류(비중이 가장 크거나 유사한 성격의 유형으로 분류)

■ 농촌 산업화 추진 지원체계 구축지원

① (사업유형 1)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사업내용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동 사업(향토산업 포함)으로 생산된 제품의 공동 홍보·마케팅 지원
- 지원내용: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공동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유통·제조·가공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② (사업유형 2)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등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ICT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생산·유통 시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③ (사업유형 3) 농축산물 제조·가공 지원

- 사업내용
 - 농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 산업체의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S/W사업비는 제조·가공 등 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 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기준 : 제조·가공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미설정

④ (사업유형 4)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사업내용
 - 생산된 농축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체험마을 내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포함),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 체험·관광 중심의 산업화 지원

⑤ (사업유형 5) 농촌체험·관광 지원

㉞ 농촌 테마공원 조성

- 사업내용
 - 테마공원 기반시설 및 체험·휴양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 공원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시설 설치비,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테마공원 기반시설 :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사업 시행계획 수립비
 -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 사업으로 추진
 - 공원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컨설팅 등
 -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17년 신규사업까지 지원, '18년 신규사업부터는 지원불가
- 지원기준 :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 *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㉔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조성

- 사업내용
 - 농촌 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관광 관련 공동인프라 조성 지원
- 지원내용
 - 지역별 농촌관광안내센터 설치, 공동체험장 조성, 공동예약 시스템 구축, 공동 브랜드 육성 등

㉕ 녹색농업 치유단지 조성

- 사업내용
 - 치료나 건강증진 목적의 자연·건강·의료·교육·체험·휴양 등 기반시설 지원
 - 농업치유, 원예치유, 산림치유, 동물매개치유 등 커텐츠별 프로그램 개발
 - 참여농가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지원

- 지원내용
 - 단지조성비, 콘텐츠개발·교육 등 S/W사업비

■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화 지원

⑥ (사업유형 6)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 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기준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 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1차·2차·3차 융복합 산업화 지원

⑦ (사업유형 7)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사업내용
 - 지역단위 기존 인프라 현황조사 및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 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 등록, ICT 융복합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부문 : 시설비, 운영비
- 지원내용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도한 S/W 지원은 제한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⑧ (사업유형 8)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농촌공동체회사*사업을 지원하여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 유도
 -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부문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사회서비스 및 농촌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5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간 지원 가능
 - 인건비는 지원대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령자(65세 이상)를 고용하는 경우 급여의 일부 지원
 -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중 일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필수 확인)

참고2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총사업비 30억이상)

■ 목 적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규예정 중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여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경제성을 사전에 분석한 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성과 제고 및 예산낭비 방지

■ 기본 방향

- **사업성 여부 판단은 지자체에 자율성·책임성 부여**
 - 입지여건, 사업의지,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민원발생, 사후관리계획, 지원대상 여부 등
 - ※ 지자체 자체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사업(중앙 또는 지방 투융자심사 통과 가능 사업)에 대해서만 신청
- **농식품부는 사업목적 부합성, 사전절차 이행 등 위주로 검토**
 - 농업정책 및 사업목적 부합 여부,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부지확보·각종영향평가 등 사업 준비상황 등
 - ※ 지자체의 자체 타당성 검증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반사항 검토

■ 대상 사업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운영비 등 S/W는 미포함)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신규사업)**
 - 총사업비는 토목·건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자재대·부대비와 설비비를 포함
 - ※ 특화농공단지 신규조성 사업은 사업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세부 검토계획

-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자체 타당성 검토 실시
 - [붙임2] 서식에 따라 자체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첨부(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붙임2-1] 서식)
 - ※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실시

- (시·도) 시·군의 사업성 검토 신청서를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고, 타당성 검토서(붙임2, 붙임2-1 서식)와 함께 사업성 검토 신청서(붙임1 서식) 제출
 - 민간경영체가 신청한 사업 중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는 국장, 시·군에서는 부기관장 방침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만 농식품부 사업성 검토 신청
 - ※ 도에서는 기획실 예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성 검토 신청서 미제출,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첨부
 - ※ 시·군 직접사업의 경우 시·도에서 붙임2, 붙임2-1 서식에 따라 타당성 검토
 - 농식품부 검토결과 사업성 있는 사업에 한해 예산 신청
- (농식품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업성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의 자체 검토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발표심사 실시
 - ※ 서면·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 검토 병행(세부계획 별도 통보)

【 추진절차 】



* 타당성 검토 : 보조사업자가 민간(법인 등)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시·군인 경우에는 시·도에서 실시

■ 추진 일정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계획** **통보** (2월, 농식품부)
- 신규사업 **발굴** 및 자체 **타당성 검토** 실시 (시·군, 시·도)
- **사업성 검토 신청서 제출** (3.20까지,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성 검토 신청서 작성자는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 **사업성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4월,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성 검토
- 농식품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신청** (4~5월,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행정 사항

- 시·도는 시·군의 「사업성 검토 신청서」 및 「자체 타당성 검토서」를 취합하여 3.20일까지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

붙임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 서식

〈사업시행지침 상의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중 ①~⑤, ⑦번 유형사업〉

③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유형)
[000 유자음료 제조·가공시설 지원](세부사업명)

1. 목 적(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목표

가. 비 전(글자크기 14 point)

* 1~2줄로 핵심만 기록(글자크기 13 point)

나. 목 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한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다. 추진전략

라. 성과지표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7년	'18년	'19년	'20년	
참여업체 매출액(백만원)					
참여농가 (주민) 소득	소득(백만원)				
	농어가(주민)수				
일자리(명)					
수출(달러)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를 선택(상기 예시 외의 지표가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모든 지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만 대상으로 함

3. 사업내용

- 사업위치 : 00도 00군 읍·면(00길 00)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 지원대상자 : (시·군, 영농조합법인, 가공업체 등)
 -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 : (공모 절차에 의한 선정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 사업유형 : (주민중심형 / 관광중심형 중 택1)
 - * 사업유형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만 해당
- 세부내용(H/W)
 - 생산시설(○○○㎡) : ○○ 공동생산시설 ○○○㎡
 - 제조·가공시설(○○○㎡) : ○○ 가공공장 ○○○㎡
 - 부속시설(○○○㎡) :
 - 장비구입 : 00종(장비명 및 개소수 등 서술)
 - * 기타 시설·장비 등 서술
- 세부내용(S/W)
 - 프로그램 연구개발 : 00종(연구개발명 서술)
 - 제품 연구개발 : 00종(연구개발명 서술)
 - 프로그램 운영 : 00종(프로그램명 서술)
- 사업기간 : ○○년~○○년(00년간)
- 사업추진 경위
 - * 사업자 선정, 사업추진 배경,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4. 연차별 투자계획

가. 총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H/W(시설, 토목, 설비, 장비 등) 합계(A)					
①토목공사	면적(m ²)				
	공사비용				
②건축공사	(건축명)	연면적(m ²)			
		사업비			
	(건축명)	연면적(m ²)			
		사업비			
	(건축명)	연면적(m ²)			
		사업비			
③기타 설비/ 부대비 등	(설비명)	개소수(개)			
		사업비			
	(장비명)	개소수(개)			
		사업비			
	(설계비)	개수			
		사업비			
(부대비)	개소수(개)				
	사업비				
S/W(프로그램운영, 연구개발 등) 합계(B)					
① (세부내역명)					
② (세부내역명)					
합 계(A+B)					

* 설비 : 건축물에 부대하는 기계·기구·전기·전산·통신·난방 등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S/W 로 분류하되, 컴퓨터 구입비는 장비에 포함

나. 세부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투자액 산출근거를 기록(규모×단위규모당 단가 = 0000백만원)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7년	'18년	'19년이후
□ H/W 합계(A)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S/W 합계(B)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A+B)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라. 유관사업 연계 계획

※ 유관사업과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기

마. 사업추진단 구성(안) : 별첨

※ 사업추진단 운영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없음” 명기

5.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6. 시·도(사업부서) 검토의견

① 지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지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⑤ 기타 검토의견

※ 별첨 :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사업시행지침 상의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중 ⑥번 유형사업〉

⑥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유형)
[○○농공단지 개·보수](세부사업명)

1. 목 적(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내용

사업위치 : 00도 00군 읍·면(00길 00)

사업기간 : 00년~00년(00년간)

단지조성 준공년도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개·보수 총사업비(국비와 지방비 부담률 50:50으로 산정)

* 자부담이 있는 경우 기재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사업규모 : 부지면적 m²

세부내용

○

*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작성

3.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7년	'18년	'19년이후
□ 합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주요 공종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4. 기대효과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5. 시·도(사업부서) 검토의견

①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②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③ 기타 검토의견

※ 별첨 :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붙임 2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서(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별도서식)

(사 업 명)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small>* 확보된 경우 높음에 "O"표</small>	낮음	-	높음	
1-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있음	-	없음	
1-3. 사전 행정절차(기본계획, 환경영향 검토 등) 이행여부	낮음	-	높음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부적합	보통	적합	
2. 사업의지				
2-1.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낮음	보통	높음	
2-2.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낮음	보통	높음	
2-2.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및 보조사 업자의 의지	낮음	보통	높음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적정한 규모인지	부적정	-	적정	
3-2. 보조사업자가 있는지, 없다면 수요는 있는지	없음	모름	있음	
3-3. 자부담 능력은 있는지	없음	-	있음	
3-4. 부지매입비 적정성	부적정	-	적정	
3-5. 건축 및 부지조성비의 적정성(단가 등)	부적정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결 과 도 출 이 유
	부정적	보통	긍정적	
4. 사업효과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없음	-	있음	
4-2. 투자 대비 편익 정도	낮음	보통	높음	
4-3. 지역주민(농가)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낮음	보통	높음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6. 사후관리계획				
6-1.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다면 사후관리 능력이 있는지)	없음	-	있음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미대상		대상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8. 도(道) 기획실(예산총괄부서) 의견 ○				
9.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 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				

<작성자> 소속 : 시·군, 과 성명 : (서명)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 요령〉

I. 검토방법

- 사업 주관부서(시·군 또는 시·도)는 '17년 추진할 신규사업 계획을 토대로 사업별 자체 타당성 검토 서식에 따라 검토 실시
- 신규사업 사업성검토 신청서를 담당자 자체 타당성 검토 후 결과에 대해 필요시 사업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II. 항목별 평가 착안사항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
- 확보 가능성은 매매계약서, 사용승락서, 자금확보 또는 자금동원 능력 등을 기준으로 '17년도 초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

1-2. 법적 제한사항 있는지

- 사업대상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등 토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지역·지구 해당여부 확인가능

1-3. 사전 행정절차

- 사업시행 전(前)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의 경우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를 확인
-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사업의 경우 이행계획을 첨부하고 그 이행계획의 실천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 목적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이 안 좋은지를 확인
ex) 관광목적 사업에 관광객 내방이 어려운 입지를 선택하는 경우 등

2. 사업의지

2-1.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책임자 이상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

2-2.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 사업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등을 파악

2-3. 사업추진주체 또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

- 보조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시·군 직접수행사업은 시장·군수의 당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보조사업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자 대표의 의지를 파악 (청문을 통해 파악)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규모인지

- 세부사업과 세부사업 용도의 부지 및 건축물의 크기가 적정한지

3-2. 보조사업자가 있는지, 없다면 수요는 있는지

- 사업수행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지는 신청현황, 의향조사 또는 설문조사결과 등을 기준으로 파악하되, 조사결과가 없는 경우는 주변상황을 종합하여 판단

3-3.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 보조사업자가 있는 경우 자부담 능력은 자금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파악(기존 부채 규모가 너무 많아 더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지 등)

3-4. 부지매입비 적정성 (* 부지매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만 해당)

- 예산요구 내역을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단가를 파악하고, 사업 예상부지 주변의 시세·공시지가 등과 비교

3-5. 건축 및 부지조성비의 적정성

- 건축 및 부지조성 단가가 현실성이 낮은지를 평가

4. 사업효과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한 실적이 있는지는 서면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만 인정

4-2. 투자 대비 편익분석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을 하였다면 그 분석은 적정하였는지(과대, 과소 평가 요소는 없었는지 등을 체크)를 파악하고, 분석을 한 실적이 없다면 투자와 편익의 정도를 파악한 후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

*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BC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별도 첨부

4-3. 지역주민(농가) 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면 사업효과로 지역주민(농가) 소득환원 등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정도를 평가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과 목적사업과의 관계를 살펴 민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평가

6. 사후관리계획

6-1. 관리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지(없다면 사후관리 능력이 있는지)

- 목적물 완공 후 해당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계획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 또는 보조사업자의 구상을 청취하고 그 구상이 적절한지를 평가
 - * 사후관리자의 능력, 발생비용 조달계획 등을 검토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예산신청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8. 도(道) 기획실(예산총괄부서) 의견

- 예산을 편성하는 도(道) 부서의 의견을 간단히 기재

9.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 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검토의견을 200자 이내로 요약

붙임 2-1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서(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 업 명)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의 견
	부정적	보통	긍정적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확보된 경우 높음에 “○”표	낮음	-	높음	
1-2.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지 (행위·허가 등 제한사항)	있음	-	없음	
1-3. 사전 행정절차(기본계획, 환경 영향 검토 등) 이행여부	낮음	-	높음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부적합	보통	적합	
2. 사업의지				
2-1.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및 민간참여주체의 의지	낮음	보통	높음	
2-2.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낮음	보통	높음	
2-3.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낮음	보통	높음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사업테마 및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부적합	보통	적정	
3-2. 부지 및 시설(종류·규모)이 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부적정	보통	적정	
3-3. 민간참여주체의 자부담 능력은 있는지	없음	-	있음	
3-4. 건축 및 부지조성비 등의 적정성	부적정	-	적정	
3-5.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적정성	부적정	-	적정	

구 분	검토결과			검 토 의 견
	부정적	보통	긍정적	
4. 사업효과				
4-1. 투자 대비 효과 정도	낮음	보통	높음	
4-2. 예상 이용객 수의 적정성	낮음	보통	높음	
4-3. 지역주민(농가) 후생·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낮음	보통	높음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6. 사후관리계획				
6-1. 농촌테마공원 운영계획(예산 확보계획 포함)의 적정성	낮음	보통	높음	
6-2. 농촌테마공원 운영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낮음	보통	높음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미대상		대상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p>8. 종합의견 : 사업추진 적정 (), 조건부(), 부적정() * 해당부분에 “○“표 ○</p> <p>※ 전문가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기재</p>				

〈작성자〉 소속 : 시·군, 과 성명 : (서명)

〈신규사업 자체 타당성 검토 요령〉

1. 입지여건

1-1.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다면 확보 가능성은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
- 확보 가능성은 매매계약서, 사용승락서, 부지매입자금 확보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업 시작년도 초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

1-2. 법적 제한사항 있는지(지자체의 자체 사업성 검토서로 같음)

- 사업대상 부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 지역·지구 해당여부 확인 가능
-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변경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작년도 초까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

1-3. 사전 행정절차

- 사업선정 후 개발사업 사전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추진 시 문제발생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확인
 - * 관할 환경청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활용
- 사전 행정절차별 예상 소요기간을 명시한 이행계획 첨부

1-4. 사업장소가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 사업목적 및 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 등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이 어떠한지 확인
 - * 주민중심형은 주민생활권으로부터의 접근 편의성, 관광중심형은 외부 관광객 접근성 등을 검토

2. 사업의지

2-1.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및 민간참여주체의 의지

- 시장군수구청장의 당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 민간참여 주체(대표)의 의지 파악

- * 지자체 사업계획서로 같음하되,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 현장 및 발표심사 시 민간참여주체(대표)가 참여하여 질의응답 등에 대응

2-2.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지자체의 자체 사업성 검토결과로 같음)

- 사업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등을 파악

- * 지역주민 참여도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중 또는 운영 시 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계획 등을 통해 확인

2-3.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책임자 이상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

- * 현장 및 발표심사 시 과장급 이상 책임공무원이 설명·발표·질의응답 대응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사업테마 및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 사업목적 및 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 지역특성과의 부합여부, 지역산업과의 연계 정도,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2. 부지 및 시설이 목표달성에 적정한지

- 사업목적 및 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 등을 감안할 때, 사업부지의 규모 및 조성 시설 등의 종류·규모 등이 적정한지

3-3. 민간참여주체의 자부담 능력은 있는지(민간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민간투자가 있는 경우, 민간참여주체의 자금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파악(기존 부채 규모가 너무 많아 더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지 등)

- * 지자체의 자체 사업성 검토서로 같음

3-4. 건축 및 부지조성비 등의 적정성

- 부지조성 및 시설건축 단가 등 하드웨어 사업비가 현실성이 있는지

3-5.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적정성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마케팅·홍보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현실성이 있는지

4. 사업효과

4-1. 투자 대비 효과분석의 적정성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분석은 지자체 자체 사업성 검토서로 같음, 지나치게 과대·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확인(B/C분석 결과가 1 이상일 필요는 없음)
 - * 투자는 총 사업비 및 운영비, 효과는 추정 매출액(음식점·체험프로그램·입장료·파머스마켓·숙박비 등)으로 한정, 산출기간은 30년
 - 주민중심형의 경우 행사수입(매출액)이나 주민이용률, 시설가동률을 추가로 고려
 - * 산출 근거자료 및 B/C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첨부

4-2. 예상 이용객 수의 적정성

- 사업목적 및 유형 등을 감안할 때 예상 이용객 수가 적정한지
 - 구체적인 예상 이용객 수 분석은 지자체 자체 사업성 검토서로 같음, 지나치게 과대·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확인
 - * 주민중심형은 이용권 설정(사회적 수용력), 관광중심형은 중력모형으로 예상 이용객 수를 산출하고, 공통적으로 물리적 수용력 함께 검토
 - 타 분석방법을 통해 예상 이용객 수를 추가로 분석할 경우, 분석결과가 상기 방법과 차이나는 이유 및 추가분석 사유 함께 기술
 - * 산출 근거자료 및 예상 이용객 수 추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학교수 등 행정·복지분야(주민중심형) 또는 관광분야(관광중심형) 전문가의 검토결과 첨부

4-3. 지역주민(농가) 후생·소득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 지역주민(농가)의 후생 및 소득증대 등으로 연계되는 정도를 확인
 - * 사업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만족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소비) 규모, willing to pay(개발·이용을 위해 기꺼이 내는 비용),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통해 확인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과 목적사업과의 관계를 살펴 민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평가

6. 사후관리계획

6-1. 농촌테마공원 운영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의 적정성

- 농촌테마공원 완공 후 운영·관리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6-2. 농촌테마공원 운영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 농촌테마공원 완공 후 전담 운영조직·인력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조성 시부터 민간투자가 있거나 조성완료 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업포기 등으로 민간참여주체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지자체 대응계획의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

7. 지원대상 여부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상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

7-2.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여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상 예산신청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8. 종합의견

- 적정·조건부·부적정 기준

- 적 정 : 사업성이 인정되어 예산반영 및 정상 추진

다만, 해당 시·군은 보완사항(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신청

- 조건부 : 선행절차 이행, 사업내용 보완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추진
 - 부적정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님
- 검토의견은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 (지자체 자체 타당성 검토 시) 예산을 편성하는 도 기획실(예산총괄부서) 및 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300자 이내로 기재

제2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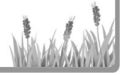
III

사업시행 단계



1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가

사업신청 단계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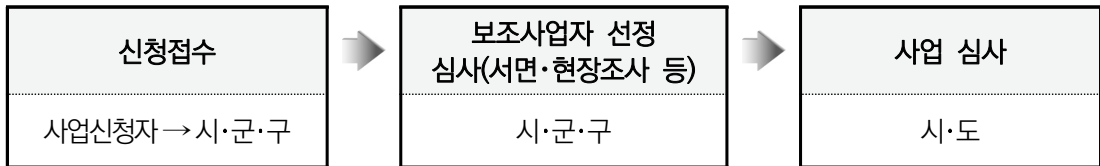
▶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 5개년계획상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월중)

나 사업자 선정 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등 자체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지사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 선정시 6차산업화 지구와 연계된 사업,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관리시설, 6차산업 인증사업자, 지역특화발전 특구내 특화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 등에 가점 또는 우대

다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포괄보조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시·도별 내역사업(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8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 사업 기준) 예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 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 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라 자금배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소요 집계표와 같이 자금배정 요구)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마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어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 제재 및 처벌내용 》

▶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성과측정 단계

-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증가, 방문객 증가 등의 성과를 측정

사

사업평가 환류단계

《 사업평가 》

▶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위 평가
 - 평가시기 : 1~4월

▶ 시·도, 시·군·구(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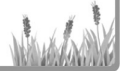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 환 류 》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2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언제나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

참고 1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모니터링 지침

■ **추진목적**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특회계, 포괄보조)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집행** 유도
 -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우수·미흡사례의 발굴 및 홍보·보완을 통해 사업추진 성과 제고

■ **기본방향**

-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는 등 **현장으로 해소, 사업성과 제고에 중점**
 - 모니터링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애로사항은 제도개선, 현장코칭 등을 통해 해소 지원
- **사업성과 및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우수한 부분은 적극 **홍보·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 추진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홍보
 - 우수·미흡사례는 지자체 간 공유를 통해 사업효과 제고에 활용
- 모니터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분담**
 - (**지자체**)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당집행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 **현장 밀착형 지원**
 - (**중앙**) 지자체의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미흡분야 중심의 점검관리를 통해 실효성 확보
 - 지자체의 사업시행지침 준수(예산집행,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제외대상, 사후관리), 추진성과 조사지침 준수(성과관리, 사업종료 후 사업관리), 모니터링 추진상황, 부당행위,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여부 등 점검

■ 추진계획

■ 모니터링 원칙 ■

- 전반적인 사업관리, 집행관리는 지자체 책임하에 실시하고, 중앙정부는 성과 및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여부 점검에 중점

■ 모니터링 추진체계 ■

구분	지자체 모니터링	중앙 모니터링
점검주체	▶ 시·군 및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필요시 전문가 참여 실시
점검대상	▶ '시행중 사업지구(이월사업 포함)	
점검주기	▶ 시·군 : 분기 1회이상(수시) ▶ 시·도 : 분기 1회 * 서면(4회) : 3, 6, 9, 12월말 기준 * 현장(2회) : 4, 9월말 기준	▶ 분기 1회 * 서면(4회) : 3, 6, 9, 12월말 기준 → 4, 7, 10, 익년1월 점검 * 현장은 수시
점검방법	▶ 서면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 ▶ 현장 :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 시행 * 불임양식에 따라 점검 실시	▶ 서면 : 지자체 작성자료 토대로 점검·분석 ▶ 현장 : 지자체의 모니터링(서면, 현장) 결과를 토대로 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서면 : 예산집행실적, 추진상황, 애로사항 등 ▶ 현장 : 서면모니터링 내용 + 우수·미흡 사례 등	▶ 현장 : 사업시행지침 준수여부, 집행부진, 성과 관리 적정성, 사업관리·모니터링 추진 상황, 부당행위,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여부 등 * 중점관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
보고체계	▶ 서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현장 : 시·도 → 농식품부	▶ 서면 : 농어촌공사 분석 → 농식품부 ▶ 현장 : 농어촌공사 실시 → 농식품부
환류	▶ 필요한 사업지구에 컨설팅 지원 * 보조사업자 맞춤형 코칭 알선	▶ 중앙 모니터링 이후 중앙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농어촌공사 주관, 민간전문가와 합동 컨설팅 지원

1. 모니터링 주체

- (점검주체) 시·도(시·군)는 자체 모니터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중앙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식품부의 모니터링 업무를 대행하여 실시
 - 현장 모니터링에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 코칭 지원

2. 모니터링 대상 및 주요내용

- (점검대상) 시행 중인 사업지구(전년도 이월사업 포함)
 - 서면 모니터링은 쏘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현장은 표본점검 실시
 - 시·도는 집행부진, 민원발생, 현장애로 등 집행상 문제가 있는 사업지구와 완료지구 중 우수지구도 선정
- (점검내용) 예산집행실적, 사업추진상황, 보조사업자 애로사항, 사업성과 등을 중앙과 지방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지자체는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의 부당 집행사항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점검
 - 완료사업 중 우수·미흡 사업 사례도 발굴
 - 중앙은 사업지침 준수여부, 성과관리 적정성, 부당행위,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 여부 등 점검
 - 지자체의 모니터링(서면, 현장) 결과를 토대로 검토 후 점검 실시
 - * 현장 모니터링 상세 대상은 모니터링 실시 전 선정

중앙 모니터링 관리항목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 예산편성 및 집행 적정성, 중장기계획 포함, 다년도 사업화,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모, 자부담 확보 및 우선집행, 농업경영정보 등록, 사업포기 이력자 및 동일 보조사업자 지원 제한, 보조사업자 사업성과 제출, 전문가 참여, 근거당 설정 제한, 시설물 현지점검, 중요재산 임의 행위 제한, 부가세 환급금 반납, 창업·보육교육 이수 및 경영컨설팅,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고려 여부 등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성과 조사시 조사지침('15.12월) 준수 여부
 - 성과지표 실적조사 적정성, 증빙자료 보관, 사업종료 후 성과관리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사업 사업성 검토결과 보완의견 이행여부
- 농공단지 통계자료 입력
- 사례발굴

3. 모니터링 시기(주기)

- 시·군 : 분기 1회 이상(수시)
- 시·도 : 분기 1회 (서면 4회/년, 현장 2회)
 - [서면] 3·6·9·12월말 기준 → 4·7·10·익년 1월 점검
 - [현장] 3·9월말 기준 → 4·10월초 점검
 - * 정기 외에 필요시 수시모니터링 실시
- 중 앙 : 분기 1회 (서면 4회/년, 현장은 수시)
 - [서면] 3·6·9·12월말 기준 → 4·7·10·익년 1월 점검
 - [현장] 상시 모니터링 실시(지자체의 모니터링 결과 참고)
 -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추가로 점검할 수 있음

4. 보고 체계 및 시기

- 지자체는 모니터링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농어촌공사는 지자체의 서면 모니터링 분석결과와 현장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서면] 시·군 → 시·도 → 농식품부(농어촌공사 분석)
 - 시·군 : 매 점검일 기준(주기) 경과 후 **익월 5일까지** 시·도에 제출
 - 시·도 : 매 점검일 기준(주기) 경과 후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현장] 시·도 →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 농식품부
 - 시·도 : 매 점검일 기준(주기) 경과 후 **익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농어촌공사 : 점검·컨설팅 완료 후 **20일 이내** 농식품부에 제출

5. 모니터링 결과 환류

- (지자체) 시·도는 현장점검 실시 후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의 자체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는 등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조치 방안 강구** 시행
 - 보조사업자(민간경영체)의 경영·기술 애로사항 등을 6차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지원

- **(중 앙)** 모니터링 결과는 **제도개선, 지자체간 공유, 지자체 포상**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필요시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은 사업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우수·미흡사례**를 발굴하여 지자체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
 - **우수 지자체·사례**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우수지자체에 6차산업 관련 국고사업(향토산업육성사업, 복합농장, 지역컨소시엄 사업단 구성 지원) 배정시 우선 또는 추가 배정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민간인에 대해 포상 실시
 - 필요시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한 중앙단위 **컨설팅** 실시(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민간 전문가와 합동 실시)
 - 지자체 서면·현장 모니터링 결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앙 현장 모니터링 실시 후 문제점 및 애로 해소사항 필요지구를 대상으로 전문가 참여
 - * 컨설팅 상세 대상은 현장 컨설팅 실시 전 선정

■ 행정사항

-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는 서면·현장 모니터링 점검시기에 맞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제출양식 : [붙임2] 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아래한글)

붙임 1 현장 모니터링 관리항목 주요내용

관리항목 : 24개소, 중점관리항목(★표시) : 10개소

구 분	관 리 항 목 주 요 내 용
I. 사업시행지침(16.1월) 준수 여부	
1) 예산편성·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집행실적 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 교부자금 및 이월예산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 중장기계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의 다년도 사업화
2)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제 도입(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자부담 확보 및 우선집행 ★ 농업경영정보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사업포기 이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사업 성과지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 시 성과지표(매출액, 일자리, 참여농가소득액 등) 제출 ○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객관성 확보, 사업분야별 심의위원 차별화 ○ 근저당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한 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지원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성 장비 지원 적정 등 지원제외대상 지원 여부
4)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원물 확보 등 지역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 부적정 원료사용 여부 확인

구 분	관 리 항 목 주 요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현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시설이 보조시설임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식 확인 ★ 중요재산 임의 행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기간 중에는 임의로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 정산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완료 후 부가세 환급금 만큼의 보조금 반납 ○ 중요재산 현황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교육 및 컨설팅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후 관련 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시·군·구 확인사항)
II. 추진성과 조사시 조사지침(15.12월) 준수 여부 - 별도시행	
1) 성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실적조사 방법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매출액, 일자리, 농가소득, 방문객수) 실적에 대한 행정조사 시 증빙서류 확인 등 방법의 적정성 ★ 시·군·구 성과지표 확인 및 증빙자료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성과지표 증빙서류를 검토 후 시·도 제출, 제출한 증빙서류 보관(비치)
2)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매출액, 일자리, 참여농가 소득액 등) 제출(의무화)
III. 신규사업(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사전 사업성 검토 준수 여부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업성 검토결과 보완의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사업성 검토결과 보완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조건부'에 대한 보완사항 반영 점검
V. 농공단지 통계자료 입력 여부	
통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공단지 통계자료 적기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자체에 분기별 업데이트 공문 시행, 공문 시행 후 한달 반 정도 사이트 개방 (www.femis.go.kr/femiscx)
VI. 사례발굴 준수 여부	
사례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우수·미흡사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5년 사이에 완료된 사업 중 우수·미흡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례전파 및 보완·개선방안 도출

붙임 2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서식)

시·도	000과	현장 점검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행정주사	홍길동	044-201-1234 (010-3333-5555)

□ 현장점검 개요

- 일시 / 지역 :
- 참석자 :
- 표본점검 시 대상선정 이유 :
- 주요 점검내용

-

□ 사업개요

- 세부사업명 :
- 사업유형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업추진 경과

-

※ 일정별 작성 :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결정,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상세 기재

○ '00년 보조사업자 선정 방법

법인명	선정 ¹⁾	자부담 능력 ²⁾	농업경영 정보 등록 ³⁾	사업 포기 이력 ⁴⁾	동일 추가 지원 ⁵⁾	농가 소득 연계 ⁶⁾	성과지표 제출 ⁷⁾	전문가 참여 ⁸⁾
〇〇영농조합법인	공모/지정/기타	○	○	×	×	○	○	○

주) 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아래 각 항목을 위반하였을 시 별도 사유 작성

- 1) 선정 : 공모가 원칙(공모기간 10일 이상)
- 2) 자부담 능력 :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 방지
- 3)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인 조직의 경우 필히 농업경영정보 등록(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4) 사업포기이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5) 동일 추가지원 : 보조사업자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6) 농가소득연계 :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
- 7) 성과지표 제출 : 보조사업자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를 제시하도록 규정
- 8) 전문가참여 : 사업선정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 참여 여부

□ 사업비 집행행 현황

※ 향후 집행을 제고를 위한 만회대책을 세부적으로 작성요망

□ 부진유형 및 사유(내용)

○ 부진유형 :

※ 아래 유형 중 택 1

- ① 행정절차이행 지연[사업 확정 및 인허가 지연 등 포함]
- ② 부지보상 지연[부지 미확보 및 지연, 공장설립 지연 포함]
- ③ 민원발생[주민협의 지연 포함]
- ④ 보조사업자 미 선정 및 선정 지연[유찰, 재공모 등에 의한 지연 포함]
- ⑤ 보조사업자 중도 포기[사업 중단 포함]
- ⑥ 예산(국비, 지방비, 자부담) 미확보 및 지연
- ⑦ 보조금 정산을 준공정산 후 일괄 지급
- ⑧ 설계 변경사업[설계 지연, 사업계획 변경 포함]
- ⑨ 기타
 - 사업완료 후 사업비 잔액 발생
 - 이상기후(풍수해, 가뭄 등)로 인한 자연재해

○ 부진 사유(내용) :

※ 자세히 기입

□ 자본보조 시설/장비 관리현황

□ 보조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실적

〈교육〉

법인명	교육과정	교육이수기관	교육기간	교육내용
○○영농조합법인	법인조직관리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16.2.24.~2.26.	"간략히 기재"

〈컨설팅〉

법인명	컨설팅 기관명	컨설팅기간	컨설팅 내용
○○영농조합법인	(주) ○○○컨설팅	'15.10.1.~	"간략히 기재"

□ 사업 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향후 정책추진 방향설정 및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예산, 제도, 지침, 애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

○ 문 제 점 :

※ 주요사업 추진상, 성과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현장점검을 통해 발굴된 문제점) 작성

○ 애로사항 :

※ 주요사업 추진상 애로사항 작성

□ 개선방안

※ 제도개선 필요사항,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중심의 개선방안 도출, 사업추진(예산지원)체계 개선 방안, 점검결과 환류 방안 등 작성

□ 우수사례, 미흡사례

※ 보편적 홍보·마케팅에 대한 사례는 작성하지 말 것

○ 사례 내용 :

□ 건의사항

※ 사업추진상에 제도개선사항 및 신규 아이디어 등이 있으면 작성

○

□ 향후 조치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치계획

※ 성과달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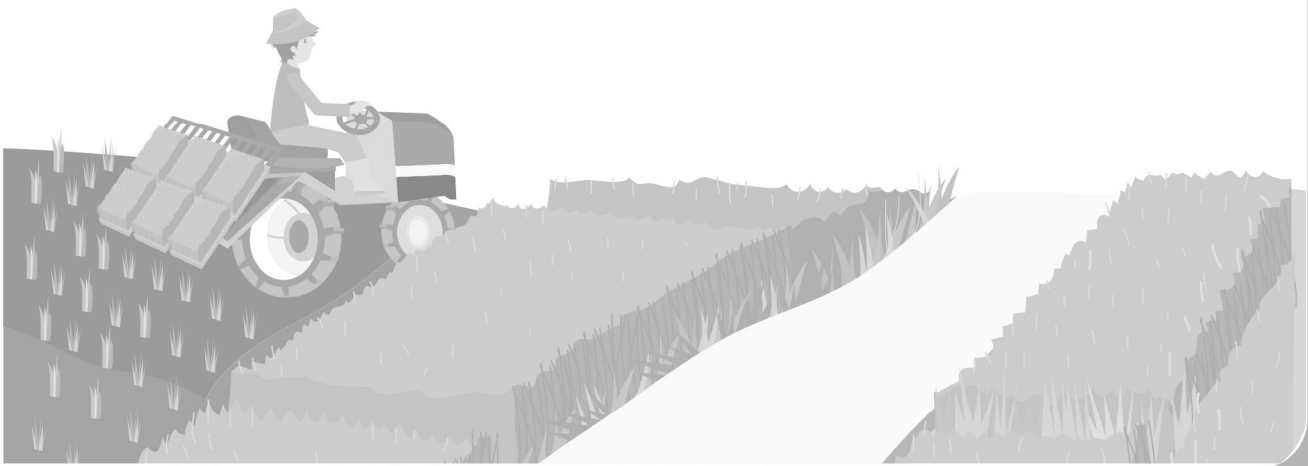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등

[별첨] 시·도(시·군) 홍보실적 등



참고자료



참고자료 1

관련 규정(발취)

[시행 2017.6.3.] [법률 제14309호, 2016.12.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장 총 칙 <개정 2009.4.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4.1.7., 2015.7.24.>

1. "지역발전"이란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 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경제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경제협력권산업"이란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4.22.>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0.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④ 지역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역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1.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1.7.>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7조의2(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역생활권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이하 "지역생활권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와 시·도지사는 수립된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정부와 시·도지사는 지역발전계획과 시·도 계획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내용에 적합하게 지역생활권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7.>

[본조신설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경제협력권의 경제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경제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21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7., 2016.12.2.>

1. 지역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지역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4.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현황
5. 지역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현황
6.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현황
7.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현황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현황
9.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현황
10.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운영 현황
11.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4.22.]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개정 2009.4.22.>

제22조(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1.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9.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29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생활권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14.1.7.>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31조(회계의 관리·운영)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7., 2014.1.28.>

[전문개정 2009.4.22.]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2014.3.11.>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 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3., 2011.5.19., 2012.5.23., 2014.1.7., 2014.1.28., 2014.6.3.>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지역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경제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지역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용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목개정 2014.1.7.]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7., 2014.1.28.>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및 지원 등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

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용자 등
 -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용자 및 지원 등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용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

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7.>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4.1.7.>
[전문개정 2009.4.22.]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22.]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2.]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

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7.25., 2016.1.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1.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1.7., 2014.1.28.>

[전문개정 2009.4.22.]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자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시행 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장 총 칙 <개정 2009.5.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군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4.11.19., 2016.1.22.>

②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4.11.19.>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3.11.>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2조에서 이동 <2009.5.29.>]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7.27., 2014.3.11.>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5.29.]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09.5.29.>

제4조(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지역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계획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지역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6조(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목개정 2014.3.11.]

제8조(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③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목개정 2014.3.11.]

제9조(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 지역발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편람의 작성 및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2.4.10.,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목개정 2014.3.11.]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종합평가)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도별 지역발전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역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문단은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3.11.>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3.11.>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09.5.29.>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본조신설 2009.5.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5.29.>]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시·도지사는 국가 또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한꺼번에 작성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역발전위원회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역발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 의견을 기초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지사과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
- ⑥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대상 사업과 그 체결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20조(지역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발전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29.]

제2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9.]

제32조(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발전이나 지역생활권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생활권의 권역 설정이나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생활권과 관련된 연구·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이나 지역생활권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발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거나 발전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3.11.]

제5장 지역발전특별회계 〈개정 2014.3.11.〉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삭제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5.29.]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삭제 <2014.3.11.>
9.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0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생활기반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9.5.29.]

제41조(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1.>

③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5.29.]

제42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5.29.]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지역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1.>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3.11.>

[전문개정 2009.5.29.]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5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9.]

제46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9.]

제46조의2(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44조 제4항에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3.11.]

1-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보조금법)

[시행 2016.4.29.] [법률 제13931호, 2016.1.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4

제1장 총 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전문개정 2011.7.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7.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8.>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7.20.>
1.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2.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3.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1.7.25.]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8.>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목개정 2016.1.28.]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과 협의의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 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1.28.]

제6장 보 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8.>

-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7.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1.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8.]

[시행일 : 2017.6.1.]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7장 벌 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전문개정 2011.7.25.]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1.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543호, 2016.10.1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4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4.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2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10.26.]

[제목개정 2016.4.28.]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 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10.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제11조(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

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10.26.]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4.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4.28.]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4.28.>
-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

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4.28.>

[전문개정 2011.10.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10.26.]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들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들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들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4.28.]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8.>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4.28.>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별표 1] <개정 2016. 4. 28.>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30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 소하천 정비	50	
6. 농어업기반 정비	80	
7. 배수 개선	100	
8. 방조제 개·보수		
가. 국가관리	100	
나. 지방관리	50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80	
10. 토양개량사업	70	
1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개선	50	
나. 개별시설	20	
다. 공동자원화시설 퇴비화(堆肥化)·액비화(液肥化) 시설	40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 시설)	50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5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13. 연근해어선 감척(減隻)	연안: 80 근해: 100	
14. 농기계임대사업	50	
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00	
16.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50	
18. 소규모 바다목장	50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 (공공시설)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20. 풋거름 작물 종자대금	50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0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계속: 40 신규: 30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50	
23. 농산물유통 개선	40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26. 폐기물 처리시설	서울특별시: 30 광역시: 40 시·군 및 도서지역: 50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하고, 시·군의 단독시설 및 도서지역의 매립시설은 30퍼센트 지원
27. 삭제 <2016.4.28.>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70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정액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50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10	
나. 광역시(충인처리시설)	50	
다. 시지역(읍 이상)	50	
라. 군지역(면 이하)	70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80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50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60	
나. 광역시(군지역)	80	
다. 시·군·구	80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 (전지역)	70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정액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38. 경전철 건설	정액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정액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50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 율 70%
41. 대중교통 지원	90	내역사업 중 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 지원 사업은 70%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10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30	
44. 지방하천 정비	50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70	
46. 도시철도 건설	서울: 40 지방: 6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100	
나. 기타	50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0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60	
나. 큰나무	50	

참고1. 관련 규정(발체)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50. 숲 가꾸기	50	
51. 사방사업	70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0	
53. 임산물(林産物) 유통구조 개선	50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20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56. 임도시설	70	
57. 산림서비스 증진	50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0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50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100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100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50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4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65. 관광자원 개발	50	용지매입비 제외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50	용지매입비 제외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50(70)	
나. 경기장	30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30	용지매입비 제외
70. 청소년시설 확충	서울: 30 지방: 70 ~ 88	지방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에 따라 차등 지원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50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50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 환자 관리	서울: 30 지방: 50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77. 한센양로자 지원	50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서울: 30 지방: 50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서울: 30 지방: 50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 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 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서울: 50 지방: 8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 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 제급여	서울: 50 지방: 80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 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 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인 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서울: 50 지방: 80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 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서울: 50 지방: 80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50 지방: 70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 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 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서울: 50 지방: 80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5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70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 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 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97. 장애인활동 지원	서울: 50 지방: 70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비의 3분의2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80	
102. 사회적기업 육성	75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50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0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50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5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0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50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50	
110.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물류기반 조성	60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50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가. 개량의 경우 광역시는 10%, 도청 소재지는 20%, 시·군은 3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18. 양로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사 업	기준보조율(%)	비 고
119. 정신요양시설 운영	서울 50 지방 70	
120.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50	
121.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	40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별표 3] <개정 2011.10.26.>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제1항 관련)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의 지표와 보조사업 해당 지역의 발전도 및 국가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지 표	산식 및 사용자료 등
1. 재정자주도	가. 계산식: $\frac{\{지방세수입+세의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text{일반회계 예산규모}} \times 100$ 나.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재정자주도를 사용한다.
2. 분야별 재정지출 지수	가. 계산식: $\frac{\{\text{분야별 세출예산 순계(純系)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text{세출예산 순계 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times 100$ 나. 분야별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기능 분류에 따른 13개 분야(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각각의 예산 규모를 말한다. 다. 자료는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 예산상의 분야별 재정 지출 지수를 사용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6. 4. 28.>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 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 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 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 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p>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 자원(이하 "유·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p> <p>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다른 생산자단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 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 제2 조제1호 및 제3호에 따 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 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 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 자연·문화 등 유형·무 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 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 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 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p>	<p>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 ·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 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 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 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 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 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 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 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 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p> <p>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 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 은 자를 말한다.</p> <p>5. "농촌융복합산업지구"란 특 정 지역의 농식품 관련 자 원 또는 생산물 등을 집적 화하거나 농촌융복합산업 사 업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특화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 한다.</p> <p>제3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가의 소득증대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의한 농촌경제의 활성화 3.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 생태 계 조성 4. 농업과 다른 산업 간의 융복 합화를 통한 농촌융복합산 업의 고도화 5.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강화 	<p>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 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 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 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p>	<p>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율100분</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방향</p> <p>2. 농촌융복합산업의 종합적인 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p> <p>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p> <p>4.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이해증진에 관한 사항</p> <p>5.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p> <p>6.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p> <p>7.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8. 농촌융복합산업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p> <p>9.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10.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p>	<p>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p> <p>2.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 확보 및 자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p>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⑤ 시·군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군계획 제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 "시·도계획"은 "시·군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p> <p>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p> <p>⑦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시행과 제출 절차 등에</p>	<p>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 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을 받아 농촌융 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 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농업인등을 포함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진 사업의 명칭 2. 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기본방향 및 체계 4.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 5. 추진사업의 대상 위치 및 그 면적 6.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7.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 자계획 8.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 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p>	<p>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 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 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 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 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자원조달계 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 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 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 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 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 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 게 하여야 한다.</p>

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
<p>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평가한 후 사업자 인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중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은 그 허가등을</p>	<p>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산 농산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생산 농산물의 사용 계획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p>

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별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정지의 해제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8.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 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 21조에 따라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p> <p>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와 신고</p> <p>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의 허가</p> <p>1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p> <p>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 허가</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인증을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등의 기준에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의제되는 허가등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인증의 표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이나 생산·가공한 제품 및 그 제품의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②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사업화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인증의 표시) 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와 같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③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p> <p>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②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인증 효과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인증의 갱신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인증의 갱신) ①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갱신하려면 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인증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p>제13조(인증의 승계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사업을 양</p>		<p>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사업자에게 갱신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할 수 있다.</p> <p>제5조(인증의 승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2조제2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인증의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p>		<p>의 승계신고서에 기존에 발급된 인증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양도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이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자 인증서를 새로 내주어야 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상의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p> <p>제15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p>	<p>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별 유·무형 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p>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p>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지역단위의 실태조사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제1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산업 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 기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p>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p> <p>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 기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p>	<p>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운영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2. 법 제7조에 따른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3. 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현황 4. 법 제1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보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원 기능 수행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가 관리 4.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지원 6.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 7.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교육·연수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9.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p>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p>	<p>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제2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 	<p>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p> <p>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사를 방해하는 경우</p> <p>⑥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p>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과정 또는 내용이 	<p>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
<p>극히 불량한 경우</p> <p>4.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창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농촌융복합산업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제공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p>제21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p>	<p>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2조(사업조정의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상품·서비스를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지역 동일 업종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상당수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p>	<p>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p>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업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p> <p>제23조(판로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p> <p>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유통센터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의 판매 및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협회의 설립 등) 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품목별·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저작권·상표권 등의 보호 활동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공동의 홍보·마케팅·품질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4. 그 밖에 협회등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5조(금융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7조에 따라 설립한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 하여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 또는 투자 제도를 수립·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26조(홍보 및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제27조(가공시설 내 판매장 운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설치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내의 일부에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제28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산물</p>	<p>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가공·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적합한 처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p> <p>제29조(유휴 가공시설의 임대 장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유휴 가공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시책을 통하여 유휴 가공시설의 소유자 또는 기업의 시설 임대를 장려할 수 있다.</p> <p>제4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p> <p>제30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의 신청 등)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 	<p>제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또는 변경의 신청)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② 시·도지사는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현황 3. 지구의 발전 방안 및 세부 사업계획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지구 내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간 연계방안 5. 지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31조(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p>	<p>의 정정을 위한 변경</p> <p>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농촌 융복합산업 간의 적합성 2. 지구 지정 시 지역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및 실효성 5. 그 밖에 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제32조(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제31조에 따라 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그 발전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p>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p> <p>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 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의 변경</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 조에 따라 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 서 규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협 의에 응하여서는 아니 되고, 협 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 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등의 의 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구 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3조(지구의 지정 해제)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제31조에 따 라 지정된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 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1.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 조성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p> <p>2.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지구를 조성할 수 없게 된 경우</p> <p>3.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p> <p>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제34조(지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공동 제조·판매·체험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p> <p>2. 공동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p> <p>3. 공동 마케팅·홍보·판로 확보</p> <p>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p>	<p>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5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도지사는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구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육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육성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공동 마케팅·홍보 2. 법률·세무 등의 상담 및 경영·컨설팅 3.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증개·알선 4.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협력 기회 부여 5. 기술·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술의 홍보 6. 국내외 시장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지구 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지역단위의 실태조사 ③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육성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p> <p>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육성센터가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육성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운영,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지구 안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3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38조(보고·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기관, 지원센터, 육성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9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농촌융복합 산업 사업자의 인증 취소</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2.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p> <p>3.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p> <p>4. 제35조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취소</p> <p>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6장 벌칙</p> <p>제41조(벌칙)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p>	<p>제25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및 평가</p> <p>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지역단위의 실태조사</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p>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p>
<p>자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자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에 따른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p>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3조(과태료) ① 제13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법 률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시 행 령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	시 행 규 칙 [농산품부령 제145호, 2015.6.4., 제정]
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8조제 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 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한 경우나 서류 검사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 과·징수한다.		

1-6

농림축산식품부소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의 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까지를 일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농정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라 함은 농림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다. 농림축산식품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축산식품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장으로서 농림축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제2호

- 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축산심의회"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말한다.
 8. "농림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지원대상자"라 함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이 훈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사업자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10.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부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12.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3. "사업자금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4. "사업지원과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16.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이차보전"이라 함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18. "평가"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주요업무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19. "주요업무"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추진하는 정책, 시책 및 사업으로서 총괄부서장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말한다.
20. "정부업무평가"라 함은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 "자체평가"라 함은 국무조정실장이 수립한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따라 주요정책 등 각 부문별 평가대상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2.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국정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평가주관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4.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라 함은 사업부서장이 주요업무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말 목표 달성도를 자율평가 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예산 등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5.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함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청장 및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모든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 연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별표 2)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과 그 산하기관장·단체장, 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장,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 및 관계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제3조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조사업의 시행공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6항, 제56조의2, 제57조제4항 및 제6항, 제58조, 제63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안전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⑥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 중 농림축산식품 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원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농림축산식품사업 계획수립 및 신청

제24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후 공고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지역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은 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는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 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르며,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농림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⑤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⑥ 농업인 등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붙여야 한다.

제27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연도 내 사업추진 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 ⑥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용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⑦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63조제1항 단서에서 제시된 사업
 - 나.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 다.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 라.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 ⑧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전문개정>
 -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

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⑩ 삭제

제29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관계기관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대출취급기관장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장은 제28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전업농(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용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용자지원 등)
 - 다. 주산지 여부: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시군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2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1호 내지 5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6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서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6.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협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편성

제33조(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 및 지출한도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평가담당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사업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요구안 편성원칙)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용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용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용자사업으로 운영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용자사업은 재정용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안전행정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정보화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바. 통계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기획통계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기금)편성시 10%이상 감액하되, 개선계획을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 7.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정평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 8. 실비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 9.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 심의 등) ①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장 및 총괄부서장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심의대상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해당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의 구성원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축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서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축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36조(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의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10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37조(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군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축산심의회는 제31조 및 제3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시도농림축산식품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 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38조(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3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 연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 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해당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9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4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44조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 중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5년간의 사업비 합계를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 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3월31일까지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1조(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된 즉시 제4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6조 및 제28조, 제3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2조(준용규정) 청장은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집행

제53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중앙관서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확인 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제재확인서(「계약법」 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사업비 이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 및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중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용자금 또는 보조금 집행시마다 용자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⑥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5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5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⑧ 지원대상자는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금이 가능한 보조금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전용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집행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통합관리망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농산물 공급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해당 농작물 및 가축사육정보가 포함된 자료 및 공급자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빙은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시행기관(시장·군수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등 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⑩ 사업시행기관은 별표 4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중,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⑫ 지원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의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및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을 통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중전의 제53조에서 이동]

제53조의3(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로 통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3조제8항 및 제9항에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③ 「보조금법」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④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3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으면 실적보고서의 내용이 적정 한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실적이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사업자금을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중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적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중전의 제53조의2에서 이동]

⑨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 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제53조의4(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을 경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 등')이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 ② 사업시행기관은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의5(부가가치세 환급)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중전의 제53조의3에서 이동]

제54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정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55조(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6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56조의2(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용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을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56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56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5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56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

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56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6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56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용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주관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용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용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용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대출취급기관은 용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 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60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이 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집행자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 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보조사업자는 부지확보, 인허가, 지방비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동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반환해야 된다는 사항
 - ② 보조금은 해당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53조의2 및 제9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 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제5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 ⑤ 제56조의2, 제5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 중 "용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56조의2제3항 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56조의3제2항 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제61조(대출금의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제외)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산업 외의 용도(농림사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 및 제68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융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 및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농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 한다) 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6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61조제2항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제63조(지원의 제한) ①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2. 제61조제3항에 따른 중도회수사유에 대하여는 지원의 제한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61조제2항제4호 및 제61조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용자금이 포함된 보조사업은 사업주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당사자에게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적용하고 대출금 등은 본 조 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 사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제63조의2(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제31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수령자 수급제한과 관련한 사항으로 배제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3조3(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은 「보조금법」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 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3조의4(보조금 등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법」 제33조에 해당 될 경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취하고 「보조

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 또는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 부당수령자가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보조금법」제33조의3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를 결정하고 집행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재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검토 요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63조의2 및 제63조3에 따라 구성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및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의5(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보조금법」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3조의6(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들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제33조 및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7(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3조의8(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보조금부정수급자,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63조제3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등 및 보조금수령자
 3.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6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사후관리

제6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해당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농림축산식품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6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다음 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다음 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장에게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관리대장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7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8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 및 이차보전사업 등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농금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농금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1조제3항제1호·제2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 ④ 농금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중요재산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중요재산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 ②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중요재산공개시스템 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개별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 또는 별표8(사후관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기간 동안 반기별(6월, 12월)로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69조의2(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제69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6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9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환수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제69조의3(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보조사업자등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국·관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 제26조의3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운영관리 지침「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7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평가 및 환류

제71조(평가의 원칙) 평가는 객관성,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매년 4월 말까지 사업부서장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제73조(자체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부문별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1. 주요정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2. 재정사업 : 해당 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재정사업 부문의 관리과제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관리과제
3. 그 밖 : 정책과 서비스 수준에 영향을 주는 조직, 인사부문 등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평가총괄관련기관의 평가지침 적용

제74조(자체평가의 절차) ① 사업부서장은 자체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자체평가 소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평가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자체평가결과를 확정한다.
- ⑤ 총괄부서장은 전년도 주요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발 및 수정·보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특정평가) ①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의 각 평가대상부문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 ② 사업부서장은 평가지표별로 평정근거를 기술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총괄부서장 및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7조(교육) 총괄부서장은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이상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되는 적정비용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8조(그 밖의 사항) 이외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9조(평가계획의 수립)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개요
2. 평가의 실시방향
3.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4. 성과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원칙
5. 그 밖에 총괄부서에서 정하는 사항

제80조(평가의 대상선정) 총괄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을 감안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 사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하되, 경상비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제81조(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①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 및 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현장중심, 성과중심으로 개별사업을 매년 평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매년 2~4월 중 사업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연도 예산신청시 점검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단위로 현장점검위원회(외부위원 포함, 국장이 위원장)를 구성하여 주요사업군 3~5개에 대해 현장점검토론회를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재정평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사업부서의 자율평가) ① 사업부서장은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자율평가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 이행점검 및 자율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2조2(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와 「보조금법」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3조(총괄부서의 평가) ①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자율평가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별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성과목표 달성정도

- 가. 계획 : 사업시행지침서,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
 - 나. 실적 : 사업을 통해 도달한 수준에 대한 실제 측정치
2. 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
-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등급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
 - 가.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 조정
 - 나. 정책·시책 및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 다. 정책목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 가. 증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우수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 나. 현수준 유지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평가등급이 보통 이상이며,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사업
 - 다. 감액 :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이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 라. 통폐합·폐지 :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사업,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 ③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를 감안하여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84조(평가결과안의 통보 및 사업부서장의 의견제시) ① 총괄부서장은 성과평가보고서안을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부서장은 7일 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사업부서장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85조(평가결과 보고) ① 총괄부서장은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5월 1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총괄부서장이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안을 토대로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6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사업부서의 의무) ① 총괄부서장은 제83조 및 제84조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고, 사업부서장 등에게 평가결과를 5월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제84조제2항의 업무개선 및 대안제시에 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에 조치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책자발간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88조(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 반영) ① 사업부서장은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다음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인사담당 부서장은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성과, 개인성과 등에 반영하고 인사 및 성과급 지급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예산부서장은 재정부문 정부업무평가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반영하고, 그 결과를 매년 7월 30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사업부서장 또는 담당자에게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과정 또는 성과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90조(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 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등으로 하여금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10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2조(정부사업대행 및 집행관리)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공공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설립한 회사, 그 밖에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61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이 훈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경과규정) ① 제63조의5 규정은 2016.4.29.일 이후 발생한 위반사실을 이유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2 규정은 2017.6.1.일 수행중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 단계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5월	·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 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축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 지자체의 사업홍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 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 단계	이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3월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축산 식품부	익년도 4월	·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별표4 : 제53조제10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 분	기준단가 내역			
냉난방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다점 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 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사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접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p>*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p>			
	<p>*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p>			

구 분	기준단가 내역														
	<p><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 적용단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설비형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단가(천원/kW)</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기-공기(공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617</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기-물(공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65</td> </tr> </tbody> </table> <p>*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p> <p><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 적용단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설비형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단가(천원/kW)</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직밀폐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1,63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수평밀폐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1,26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개방형(SCW형)</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8</td> </tr> </tbody> </table> <p>*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p> <p>*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구분	기준단가 내역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p>*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p> <p>*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p>			

[별표6 : 제6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개선

구분	'14.12.31 이전		'15. 1. 1. 이후			비고
	부동산 및 종물	기타	부동산 및 종물	기계·장비		
				1천만원 이상 1』	1천만원 미만 2』	
·관리대장	종이 대장	종이 대장	통합 관리 시스템	×	×	
·재정지원이력	×	×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통합 관리 시스템	
·정기점검	○	○	○	○	×	
·재산처분시 승인	○	×	○	○	×	

1』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이상

2』 이동식 기계·장비는 500만원 미만

[별표7 : 제67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 110cm —————→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나. 준공후 안내문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21 cm

↓

← 30cm →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21 cm

↓

← 30cm →

다. 스티커형 표지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등에서 정한 중요재산

〈예시〉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 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별표8 : 제69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질감시설(지열 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 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 재산에서 제외

※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경영체 등이 보조사업자가 되는 자율사업에 적용하며 공공사업은 사업별 여건에 맞게 설정

[별표9 : 제69조의2제2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text{담보제공 승인 한도} = \text{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text{보조금} - \text{기담보 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
-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담당과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지자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 중앙관서의 장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text{보조금 환수금액} = \text{보조율} \times \left(\frac{\text{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text{사후관리기간(개월수)}} \times \text{감정평가액} + \text{이득금} \right)$$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원칙적으로 중요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 다만, 제3자가 사업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사용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별표10 : 제91조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60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m ²	m ²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m ²	개소 (톤)	식 	대 (톤)	m ²			
(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 단체등, 회사, 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립)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6조제5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용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용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 현황			용자금 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의 관계	예상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6조제6항 관련]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 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 정부보조금 (천원)

[별지 제4호서식 : 제29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지방비	자담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사업예정지			계	보조	대출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경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규모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0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천원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 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제56조의3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 확인일	확인자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20	피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 ○ 과	○ ○ ○ ○	○ ○ ○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도) ○ ○ 과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업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비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미 배 정 : ④ 천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합계 :	③① 천원

(주) ○ ①=②+③+④, ③=③①

- 사업자금과의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의3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시·군·자치구

발신: ○○시도

접수 확인일 20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 확인자	○○시·군·자치구 ○○과

1. 사업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미 배정: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③ 천원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미 배 정: ④ 천원
6. 시·도 의 재배분일	20		
7. 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③①			합계: ③ 천원

- 사업자금과의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 제56조의3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지원대상자

발신 : 사업주관기관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접수 확인일 20	확인자	사업주관기관 ○○과	○○○○ ○○○
	피 확인자	○○조합 ○○부서

1. 사업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4. 事業資金課 의 배정액	이미 배정 : ② 천원
3. 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이번 배정 : ③ 천원 (“3”의 배정일분)
5. 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6. 시도의 재배분일	20		미 배 정 : ④ 천원
7. 대출예정금액 확정일	20		
8. 지원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③①			합계 : ③ 천원

- 사업자금과의 용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1997. 11. 7. 승인

297mm × 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제57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용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접수 확인일 20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 ○ 시·군·자치구 ○ ○ 과	○ ○ ○ ○	○ ○ ○
	피 확인자	○ ○ 조합 ○ ○ 부서

사업명	주 소	성 명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 과의 용자 한도액 배정일	사업지원 과의 용자 한도액 배분 일	시·도의 용자한도 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용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 ○ ○ ○ 사 업		김삿갓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 ○ ○ ○ 사 업		김개동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용자한도액 재배분일” 남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58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용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소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번지	통 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p>2000. 00. 00.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된 바 있는 0000 사업의 용자한도액 00,000,000천원중 00,000,000천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제6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 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3호서식 : 제6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 제69조제2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input type="checkbox"/> 목적외 사용 <input type="checkbox"/> 양도 <input type="checkbox"/> 교환 <input type="checkbox"/> 대여 <input type="checkbox"/> 담보의 제공							
1. 신청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m^2		yyyyymmdd~yyyyymmdd	
시 설				m^2		yyyyymmdd~yyyyymmdd	
설 비				식		yyyyymmdd~yyyyymmdd	
장 비				대		yyyyymmdd~y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						
시도	○ 시군구 검토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견 제시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 시설: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 설비: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 장비: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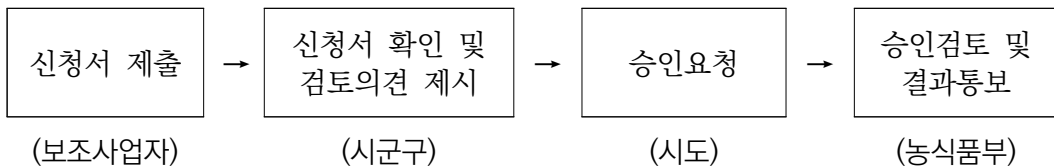
-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를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 시설: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 설비·장비: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 토지: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 승인절차



* 결과통보 절차: 농식품부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별지 제15호서식 : 제4조의2 관련]

20 년도 보조사업 총괄표

I. 총괄표

1. 공모사업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2. 비공모사업

민간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 자치단체보조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예산	지원대상

II. 세부사업계획

*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

□ (내역사업명)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 (내역사업명)

- 지원예산: (예산금액)
- 지원내용: (정률/정액, 자부담, 지원기간 등 기재)
- 지원대상: (민간/지자체 지원 구분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 기재)
- 사업일정: (공모일 경우, 공모기간, 선정일자, 사업기간)
- 사업담당: (보조사업 담당자 연락처 기재)

[별지 제16호 서식 : 제63조의4 제3항 관련] 신설

보조금 부정수급자 제재 검토 요청 서식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천원(국고 , 시도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을 결정한 구체적 사유 등을 기재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기재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명단공표 제외 사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 제69조의2 제1항 관련]

중요재산현황

증양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m ²)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현재가액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1-7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 20. 시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예규는 2016. 2. 20.부터 예산집행품의가 이루어지는 세출예산 집행부터 적용한다.

【 목 차 】

제 I 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제 II 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제 III 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 1. 인건비, 2. 일반운영비, 3. 여비, 4. 업무추진비,
- 5. 직무수행경비 6. 의회비, 7. 연구개발비, 8. 일반보상금,
- 9. 포상금, 10. 배상금 11. 출연금, 12. 민간이전,
- 13. 자치단체등 이전, 14. 시설비 및 부대비 15. 민간자본이전,
- 16.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7. 자산취득비

제 IV 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제 I 장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 ▣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령·지방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 입법 취지를 근거로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원칙에 따라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㉑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의 금지(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 경우, 국가정책이라 함은 정부가 법령·지침 또는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말한다.

㉒ 당해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의 금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㉓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예외 : 예산의 이월, 지난회계연도 지출,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지출 등

㉕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5조)

-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 예외 :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제16조)

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㉕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㉖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경비 집행(지방공무원법 제44조)

-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지급할 수 없다.
 -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여 학자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 법령의 위임 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 제정 금지

9)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지방재정법 제71조)

-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 예외 : 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한 자금의 교부, 신용카드의 사용을 통한 예산집행

10) 예산 집행절차 준수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예시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조금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개별 법령

제 Ⅱ 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1.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1-1. 예산 절감 노력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 절감목표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감분의 예산배정은 유보해야 한다.
- 예산부서는 사업비 낙찰 차액 및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배정 제도를 통하여 조정하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 연말 예산집행시 시급하지 않는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홍보비 중 중복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 임차료 등 해당 사업비의 통계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재무관(분임 재무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도에서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나 연간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상품권 구매 시 자치단체 전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구매 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해당 행사운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한다.

1-2. 예산배정의 탄력적 운영

- 예산부서의 장(기획관리실장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경우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예산배정을 일부 또는 전부를 유보하거나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예산 편성 시 제시했던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②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 ③ 지방비 부담 또는 민간부담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 ④ 집행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⑤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혁신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⑥ 국비 및 시도비, 특별교부세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 ⑦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동일 사업에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⑧ 기타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 예산부서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재정 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은 조정할 수 있다.
- 당초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 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3. 재배정 예산제도의 합리적 운영

- 예산재배정은 재배정 받는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해야 하며,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며,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재배정은 본청에서 의회사무처(과), 시·군·구/읍면동, 제1관서의 재무관 또는 다른 제1관서나 시·군·구/읍·면·동 재무관에게만 가능하다.

1-4. 세출예산 집행의 제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4조)

- 세출예산은 배정받은 경우라도 아래의 경우는 그 요건이 충족될 때 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 다만, 비상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 ①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②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 ③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5. 예산이월의 합리적 운영

-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재원 없이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하여야 한다.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이월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동일 편성목내에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이월된 사업의 물량이 증가하여 이월된 예산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하여 집행할 수 있다.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여야 한다.

예 시

- 다목적 회관 건립,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의 통합발주,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 통합 발주시에는 예산의 재배정(지방재정법시행령 제85조), 계약의 위임·위탁(지방계약법 제7조)방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참고1. 관련 규정(발췌)

- 통합 발주시 국고보조금(또는 시·도비 보조금)이 부처(부서)별로 교부되는 경우 관계 부처(시·도)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단, 도서 구매의 경우와 같이 신간서적 구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거나, 물품 보관상의 문제 등으로 통합 구매하는 것이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1-7. 지출절약 및 예산성과금제도 적극 활용

- 각 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이 예산의 집행방법 개선 등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업무 성과는 종전과 같거나 그 이상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8. 예산집행 사전협의제 운영(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2조)

- 아래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 경비출납원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1조제5항에서 규정한 품의를 생략하는 집행에 관한 사항은 협의를 생략한다)

- ① 시설공사·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200만원 이상)
- ②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집행(건당 50만원 이상)
- ③ 민간위탁경비
- ④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
- ⑤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⑥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 ⑦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2-1.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활용(지방재정법 제96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예산을 집행한다.

2-2. 출납원 소관의 검사 실시(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9조)

-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출내역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재무관은 검사결과 일상경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경비 교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지출원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 재무관은 회계담당자의 교체 및 인수인계시 출납원 소관의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공무원의 회계 책임 강화

-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회계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 등 집행행위자의 실명이 기재 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회계부서는 집행내역을 상호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공개해야 한다.
- 회계책임을 지는 공무원은「지방재정법」제91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 재무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등과「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예산집행품의자를 포함)를 말한다.

2-4. 사회복지급여의 투명한 집행

- 사회복지급여는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다.
- 사회복지급여는 회계부서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편뱅킹, 대량이체 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5. 신용카드 사용원칙

- 「IV.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6. 수입대체 경비의 집행(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지출이 직접적으로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아래의 경비는 직접사용이 가능하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경비
 - 시·군·구의 보건소 운영경비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경비

3. 예산 조기집행

3-1. 지방예산 조기집행 기초 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중점 추진사업은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사업, 대규모 SOC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은 별도로 중점관리하고,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 예산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전년도 이월사업, SOC 계속사업 등 집행이 용이한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

3-2.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 간소화 적극 활용

- 2009년 이후 개선된 아래의 법령·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 (재해복구공사 단가계약제도 활용)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79조)
 - (긴급입찰제도 활용)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40일 →5일)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 기간 단축)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 심사서류 제출(7일內) → 서류보완(7일內) → 심사(7일內) →심사 연장(3일內)
 - (소액 수의계약 활용)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수기견적) 2천만원 이하 / (전자견적) 종합공사 2억원(전문 1억원, 기타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하

3-3. 조기집행 시 예산 낭비요인 최소화

- 인건비, 공공요금, 사회복지급여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한다.

3-4.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 억제한다.
- 연말에 무리한 집행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한다.

연말 몰아쓰기 집행사례

-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 업무추진비(지방의회 포함)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실·과·소별 업무 추진비 할당 또는 선심성 연말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3-5. 지방재정집행 추진단 구성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 재정집행 상황을 정기·수시로 점검한다.
-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이 지방재정 추진단장이 되며, 각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임명하여 재정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

3-6. 지방재정 집행관리 점검회의

-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재정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집행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예산의 월별 집행실적,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대책 등 집행을 제고방안을 위하여 자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자치부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재정집행 현장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자치단체의 집행 애로요인을 발굴·해소하고 자치단체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 Ⅲ 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1. 인건비 (101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의해 집행

1-1. 보수(101-01)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1/4분기에 일괄 납부 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거 5%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특정사업을 위한 인부임은 사업 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 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 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에서 세목 조정하여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고용노동부)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일반운영비(201목)

2-1. 사무관리비(201-01)

1. 일반수용비

- 가.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나.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다.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라.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마.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바.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예 시

-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사.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탁교육비

가.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시 집행할 수 있다.

나.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다.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시에는 해당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이 퇴근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

3. 운영수당

가.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예시 : 경상북도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

- 경북 도청 공무원 중 건축 관련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군위군투자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군위군 관내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이 군위군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지급 가능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나”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나.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 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1일(야)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시험관리비

- 시험실시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를 집행한다. 다만,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고사 중 당해기관 교관요원이 출제, 채점 및 문제선정, 감수, 문제편집·편찬을 하는 경우는 시험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마.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4.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소속 공무원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또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5. 급량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급량비 설정에 의한다.>

가.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연초대 등.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 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단, 경보통제소, 재해대책 및 소방상황실 교대근무자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에게도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6. 임차료

- 가.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나.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다. 각종 시험 및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단, 청소비 등은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라. 예비군훈련, 식목, 권농, 육림행사 등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보유 차량을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하도록 한다.
- 마.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바.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2-2. 공공운영비(201-02)

1. 공공요금 및 제세

- 가. 전화는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
- 나.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다.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라.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마.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 바.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아.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 연료비

- 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나. 냉·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설장비유지비

- 가.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증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 나.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다.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7984, 2012.1.16)을 준수하여야 한다.
- 라.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착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마. 원동기 등 동력장치, 증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바. 시설장비의 내구년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한다.
- 사.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일반수용비** : 기계·기구·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시설비** : 주로 자본형성적 경비로서 도로·하천의 개보수,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 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

4. 차량·선박비

- 가.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 하고, 차량·선박 유류비와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에서 집행한다.

참고1. 관련 규정(발취)

- 나.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다.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이용주유소에는 입간판(공공조달 납품주유소)이 설치되어 있으며,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5.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 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의무실·양호실 등에 소요되는 의약품·소모성의료기구 구입비용에 집행한다.
- 나. 소속직원에게 대한 공상치료비 등에 집행한다.

2-3. 행사운영비(201-03)

-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일반운영비를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유의사항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 할 수 없다.(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라. 회의장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예 시

-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한다.
-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맞춤형복지제도 예산이 사무관리비(201-01)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3. 여 비(202목)

3-1. 국내여비(202-01)

-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에 의한다.
- 국내 여비는 지급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한다.

가. 회계담당공무원(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다만, 다른 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식회의, 행사, 연찬회 등의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 이내) 또는 다른 입증서류(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 및 월액여비는 제외)
- 2일 이상 출장 :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 ※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 별도자료 구비 불필요

다.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3-2. 월액여비(202-02)

-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1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 다만, 출장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다.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 출장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을 적용하고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가. 운 임

- 국외항공운임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 회계담당자는 항공운임 영수증, 항공권 사본 등으로 국외항공운임의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GTR 요금을 적용하여 국외항공요금 노선별·종류별·할인율표에 의거 지급한다.
 - ※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항공요금 등의 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직접 현금지급 또는 계좌입금한다.
-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출장자는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에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계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나. 일비, 숙박비, 식비

- 국외여행경비 중 일비, 숙박비, 식비는 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국외여비 집행기준

- 단체장·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업무관련 자료수집·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 ※ 예시 : 동일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
- 지방의회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회비에서만 집행하여야 한다.
- 북한지역 출장 시 여비지급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별표4의 나등급에 준하여 지급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
-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 여비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8의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4. 업무추진비(203목)

각 업무추진비 공통

-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 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 개산금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 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 업무추진비(203-0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단체·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소의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단체·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나.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는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함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게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면·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면·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면·동장은 소관 읍·면·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군 건설국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 1항 (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 라.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203-02)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203-04)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가 없는 사업소, 의회 전문위원실 등도 지급〉

-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실, 과, 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
- 과 운영비
 -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비고
월 지급액	100천원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 5천원추가

-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5. 직무수행경비(204목)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광역·기초의회 전문위원은 당해직급의 보조기관 기준액 적용(기초의회전문위원의 경우 직제규칙에 따라 6급에게도 지급가능)한다.
- 일선기관의 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 직책 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인 겸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겸직)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예 시

-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 가능
-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국장급 월정직책급만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

5-2. 직급보조비(204-02)

-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지급한다.

5-3. 특정업무경비(204-03)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한다.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하다.
- 예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지급가능
- 특정업무경비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중복지급할 수 없다. 다만,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 밖의 자치경찰특수활동경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 지급할 수 있다.
-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 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시·군·구 임기제공무원 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5급 상당이하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text{지급액} = \text{월정액}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 주당 근무시간}}{\text{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근무시간}}$$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text{☞ } 18,750\text{원} = 50,000\text{원} \times (15\text{시간}/40\text{시간})$$

-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한다.
- 특사경수사활동비의 지급대상은 자치경찰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전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계 또는 팀)이 구성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 파견, 휴직 등으로 특정업무담당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다만,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기관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의회비(205목)

공통사항

- ❖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편성된 9가지 경비(통계목)에 한정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되고 그 활동기간을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 활동기간이라 함은 예산·결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함
-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6-1. 의정활동비(205-01)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4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2. 월정수당(205-02)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7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

6-3. 의원국내여비(205-03)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 5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국내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소요액을 집행한다.

6-4. 의원국외여비(205-0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 및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원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
-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까지 추가 편성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외여비를 집행할 수 있다.

6-5.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5, 205-06)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격려금 지출은 현금성 지출인 점을 감안하여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개신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 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4만원 이하에서 집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 집행 시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 중 신용카드 발급절차 중 의무적 제한업종 참고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의원 개인 명의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 상한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음
- 지방의회와 관련된 경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관계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 경비로 정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 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음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7. 연구개발비(207목)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내(출납폐쇄기한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한국SW산업협회)
 - 임상연구용역 : 실 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한다.
- 정보화사업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

8. 일반보상금(301목)

공통사항

- ❖ 『일반보상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위문·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운영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 목에 편성

8-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이장·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예) 통장·이장 수당지급일이 매달 20일이고 1. 19일 변경됐을 경우

┌ 전임자 : 200,000원 ÷ 31(1. 1~1.31)일 × 18일(1. 1~1.18)일 = 116,100원

└ 후임자 : 200,000원 ÷ 31(1. 1~1.31)일 × 13일(1. 19~1.31)일 = 83,800원

8-2. 민간인 국외여비(301-06)

-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내 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8-3. 외빈초청여비(301-07)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 추진비로 집행한다.

8-4. 행사실비보상금(301-09)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 징구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 원칙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한다.

8-5. 기타보상금(301-11)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집행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9. 포상금(303목)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다.〉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국내에 한하며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50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 기관포상금 수령 시 수상 부서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배상금 등(305목)

10-1. 배상금등(305)

-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으로 집행한다.

11. 출연금(306목)

11-1. 출연금(306)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집행할 수 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서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포함하여야 한다.

12. 민간이전(307목)

12-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집행하는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2조의5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조기집행을 제고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016. 6. 30일까지는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다.
- * 매월 교부하는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아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교부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외규정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광역은 3,000만원 미만, 기초는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에 보조금 교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중 실제 사업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하는 사업도 포함)
- **범죄피해자지원법인**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세출 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지방재정법」 제65조에 따라 그외수입(224-06)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5)으로 세입조치 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한다.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 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정산시 증빙서〉

- 정산 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또는 사용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12-2.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다만,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3.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3. 자치단체등 이전(308목)

13-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3-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집행기관에 보관한다.

13-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0)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14.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동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14-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
 - 예) 건축공사 낙찰차액으로 건축물의 조경·안전시설공사 등실시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4-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한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14-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전문공사는 1억원 초과)

15-2.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재정관리과-7984, 2012.1.16)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목)

16-1.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위탁금(307-05)의 예와 같이 한다.

17. 자산취득비(405목)

17-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산취득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주요물품정수 책정기준”에 의한 물품구입에 집행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구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7-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 (203, 205)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가. 외빈초청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 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나.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 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다. 기타보상금(301-1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임의 적용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설비(401-01):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 시설부대비(401-03):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 관한법」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2.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 “1”의 규정에서 정한 신용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 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2. 신용카드 발급절차

1. 발급 및 사용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 포지티브 방식: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 일반유흥주점:接客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 클럽, 카페, 스탠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주점: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接客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리방안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과 주무담당자가 개설한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공용카드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별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신용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 ❖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 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 ❖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 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1조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4. 신용카드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 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한다.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별표 제2호 서식)를 정리한다.
 -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3.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2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
 -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제1호 서식]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급매수	금융기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관일자 (직·성명)	결재		
		기관명	통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별표 제2호 서식]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담당	실과장

제 1 편 농촌산업화 지원 총괄

제 2 편 농촌자립복합사업화 지원사업

참 고 자 료

1-8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I. 사업유형별 지침

11. 민간보조사업

11-1. 적용범위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11-2. 세부지침

- 가. 중앙관서의 장의 책무

(1) 보조금 지원 제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 받아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중앙관서장의 처분 위반으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가능 사유 교부조건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참고1. 관련 규정(발췌)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 ※ 불법시위 참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3) 허위의 신청, 보조금 타용도 사용 확인시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령자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공모방식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중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모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해당 중앙 관서 소속 공무원 및 예산·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 중 민간 위원은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해당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공모방식으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중복지원을 지양한다.

(5) 보조금 교부시 유의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년 예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이를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및 자부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 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환수실적 및 실집행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6)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의 필요한 세부절차규정을 명시하여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자치단체에게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후 당해 회계연도내에 보조사업자의 요건·자격을 재점검하고, 보조금이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7) 보조금 구분계리 및 이자발생 최소화

- 보조금 교부시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구분계리 하도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 하여야 한다.

(8) 보조금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자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1)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 집행계획 마련 및 제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자부담 계획서 포함, 의무 사항)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3)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www.bojogeumjaesan.go.kr)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을 통해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표준양식 및 필수기재사항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법 제39조의2, 시행령 제18조)

(1) 신고 대상자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집행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 참조
-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포상금 산출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12. 자치단체보조사업

12-1. 적용범위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
- 나. 자치단체에 대한 일반보조사업과 통합보조사업

12-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1) 보조금 교부시 점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에 대하여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17년 예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의 교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에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모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고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유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1. 민간보조사업” 지침상 보조금 지원 제한 대상에게 보조금이 재교부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다.
 - 아울러,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중앙관서의 장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하여야 한다.
 -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지체상금, 운영수입 등에 대하여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인지 여부를 명시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하지 않은 중요재산의 처분을 승인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다.

※ 중요재산: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漂),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요재산 관리 및 등록에 대한 부처별 기준을 마련하되, 임대차 보증금 등 관리가 가능한 재산을 관리대상에 포함)

- 중앙관서의 장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 공사 계약을 보조사업자 등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등을 시행하도록 교부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재교부하여 민간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 조건을 명시할 수 있음

(3) 자치단체 매칭사업 국비 우선 교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으며,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조치한다.

- 다만, '15년에 동 규정의 적용을 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동종의 사업은 국비 선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 법 제18조제2항의 수익반환 조건부 교부결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 * 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간이 미경과한 재산 처분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반드시 협의 필요

(5)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보조금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원활한 정산을 위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되,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중 다음의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단,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는 전부 반납)
 -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중앙관서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자료 보관

-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민간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해야 한다.
 - 보관대상인 자료는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의미한다.
 - 다만, 단순·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은 1년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 계산서 :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 증거서류 :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첨부서류 :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다음의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 항공기
 -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 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국고보조금 중요재산공개시스템(www.bojogeumjaesan.go.kr)에 상시 공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 정보망을 통해 중요재산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6개월 마다 변동현황을 수정 공시하여야 한다.
- 현재액은 “공정가액”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단, 차이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제외)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0)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근거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한 사업수행 방식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1) 예산절감액 및 50만원 미만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내 사업 사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와 사용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않고 같은 중앙

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동일부문 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참조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경비 등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 또는 신규사업, 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외사업(「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12) 보조금 전액 반환시 보조금과 이자 반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13) 행정수요 유발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14) 지방비 부담분 초과 우선 투자시 국비 보전

- 자치단체는 [별표]의 재해예방 및 SOC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회계연도 중앙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자할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라 함은 [별표]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국비 투자분을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장과 우선 투자 대상 사업,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보전시기와 보전조건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재해예방 및 SOC사업

소 관	사 업 명	회 계	보조율
국 토 부	지방하천정비	일 반	50%
방 재 청	재해위험지역정비	일 반 지 특	50%
국 토 부	광역도로 건설	지 특	50%
국 토 부	도시철도 건설	교 특	서울 40%, 지방 60%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은 공사비의 70%(단, '15년 기준 계속사업은 90%)

나. 통합보조사업

(1) 세분화 및 사업명 임의 변경 금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16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 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2) 자치단체별 지원규모

-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 규모로 한다.

(3) 추진계획 제출 및 수용

-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4) 세부내역사업 변경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통합보조사업별 구분계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운용실적 제출 및 정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운용실적 평가 및 결과 통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 노력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 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일반보조사업 집행기준 준용

-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다. 신고포상금 지급

(1) 신고 대상자

-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2) 신고대상 행위

- 교부 또는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 교부결정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 중앙관서의 장은 법제31조제①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포상금 지급여부는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 집행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지급신청서 양식은 ‘제4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샘플’ 참조

- 중앙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는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 다만, 지급 기준 및 한도에 대한 개정이 있을 경우 산출기준은 신고 또는 고발 접수일 당시에 시행되었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라. 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다.

13.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13-1. 적용범위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제35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매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13-2. 기본지침

가. 집행과정에서의 지원대상 지자체 변경금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보조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를 말한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보조금법 및 집행지침 준수, 일부 조항 적용 배제

- 지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30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 기타 지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13-3. 세부지침

가. 각 과목 상호간 전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국가 직접수행사업

-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일반 출연금(350목), 연구개발 출연금(360목), 건설비(420목) 사업을 타 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나. 예산의 이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아니한 것은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의 범위안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부터 제3항,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한 이월은 20/100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이월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이월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으로서,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신규사업 추진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6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 적극 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연계 사업 및 복합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타 계정 사업에 사용은 불가).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II. 참 고

4.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샘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당해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보조사업자)

1.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불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용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00%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6년 ○○월 ○○일

○○○○○ 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중앙관서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기금운용집행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Ⅲ. 주요 질문모음(FAQ)

- (1) 이월제도의 개념, 종류 및 절차
-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3)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 (4) 사고이월된 예산을 재계약하여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5)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 (6)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7) 예산 집행시 내역변경의 개념 및 변경절차
- (8) 보조금 정산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산정방법
- (9)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가능 여부
- (10) 보조금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정기에탁 가능 여부
- (1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이월 가능 여부
- (12) 보조금 반환명령 불응시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 (13) 지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법 적용여부
- (14) 공사구간의 일시적 토지사용료 지급시 집행 비목
- (15) 시설비 낙찰차액을 자체전용할 수 있는지?
- (16) 건설비 세목의 승인전용 여부

(1) 이월제도의 개념, 이월의 종류 및 절차는?

□ 이월의 개념

-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의 예외조항으로 운영

□ 이월의 종류

- 명시이월(「국가재정법」 제24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 되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 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예산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사고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 요건〉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부대입찰 또는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0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보상 대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 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
 -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경상적 경비 이월 : 기본경비의 이월범위 및 절차 참고
- 계속비 이월(「헌법」 제55조, 「국가재정법」 제48조제3항)
 -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의 절차 및 효과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
 -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에서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와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2호)
 -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제3~5호)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참고1. 관련 규정(발췌)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명시이월비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국가재정법」 제24조제1항) 다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
-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 가능(「국가재정법」 제 24조제2항)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24조 ①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예산의 집행과정 중에 있는 이월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4) 사고이월된 예산집행시 전년도에 계약한 업체가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부도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의 의미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 다만, 이월된 당해사업의 계약업체가 계약조건 미이행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월된 당해사업의 수행을 위해 이월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변경하거나,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는?

□ 이·전용의 개념

-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移用):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국가재정법」제47조제1항)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국가재정법」제47조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획재정부장관이 부처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체이용 가능)
 - 예산의 전용(轉用):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매 회계년도마다 정하는 “세출예산전용권 위임 범위” 내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46조제2항)

□ 이·전용의 절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이 이용 또는 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송부(「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
- 다만, 자체전용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전용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감사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

□ 이·전용의 효과

- 예산의 이·전용은 당해 기관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목 예산현액의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 이·전용의 금지

- 동 지침의 이·전용권 위임 범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 처럼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를 것

(6)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 세목조정의 개념

-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함을 의미
 - * (예시)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조정

□ 세목조정 절차

- 세목간 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처럼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 가능
- 세목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7) 예산 집행시 내역변경(조정)의 개념 및 변경절차

□ 내역변경의 개념

-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내역변경(조정) 절차

- 내역변경(조정)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금액변경은 있으나, 단위사업내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8)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1〉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1.10~2.14)
 : 4,931,500원
 - $2,500,000\text{천원(보조금)} \times 2\%(\text{금리}) \times 36/365 = 4,931,500\text{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2.15~7.9) : 7,945,200원
 - $1,000,000\text{천원(보조금-1차교부액)} \times 2\%(\text{금리}) \times 145/365 = 7,945,200\text{원(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text{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times 2\%(\text{금리}) \times 41/365 = 224,650\text{원(일원단위 절사)}$
-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사례2〉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text{천원(보조금)} \times 2\%(\text{금리}) \times 36/365 = 4,931,500\text{원}$
(일원단위 절사)
-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text{천원(보조금-1차집행액)} \times 2\%(\text{금리}) \times 145/365 = 7,945,200\text{원}$
(일원단위 절사)
-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text{천원(집행잔액)} \times 2\%(\text{금리}) \times 164/365 = 898,630\text{원(일원단위 절사)}$

(9)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
 - 또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교부권자(중앙관서의 장)와 보조사업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등의 행위는 가능
 - 근저당 설정기간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처분 제한기간은 개별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경과한 경우와 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여 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재산(내용연수 미경과시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필요)의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음

(10)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이자수익 증대를 위해 정기예탁 등을 할 수 있는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좌관리(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므로 보조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정기예탁 등 가능
 - 다만, 동법 제31조 및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정산 후 전액 반납 조치

(11) 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이월이 가능한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내용(교부조건 포함) 또는 경비배분을 변경이 가능하므로 보조사업기간 연장 신청·승인을 거쳐 다음연도까지 집행 가능
 - 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월 후 집행
 - 다만, 동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기간을 다음연도까지 연장한 경우에도 당해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 본 지침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2)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중앙관서장이 강제징수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강제징수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절차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음

(1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가능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규율대상이 국고보조금에 한정 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참고1. 관련 규정(발췌)

(14) 공사구간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비목을 임차료와 토지매입비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사용료의 지급비목은 「임차료」로 지출

* 토지매입비는 동 예산의 지출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상되는 비목

(15)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항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낙찰차액도 동일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자체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목적으로 낙찰차액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낙찰차액의 사용범위와 절차는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건설비’ 부분 참조

(16) 건설비의 자체전용 제외대상 세목(420-01·02·05)에 대해서 세목의 증감이 있을 경우 모두 기획재정부의 전용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 전용권위임범위에 따른 건설비 특정세목에 대한 자체전용 제외는 전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되는 것임

○ 전용에 해당될 경우 동세목을 증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감액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야함

□ 전용사항이 아닌 내역변경(조정) 또는 세목조정에 대해서는 각 중앙관서에서 해당 변경 및 조정 처리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변경 집행이 가능

○ 다만, 당해 세목에 대해 집행지침에서 별도의 협의 의무를 두고 있을 경우는 반드시 협의후 집행 하여야 함

참고자료 2

농촌산업 관련 통계

참고자료 2 농촌산업 관련 통계자료

1 기본통계

1-1. 국토이용상황

국토 면적	농 경 지		산 림		기 타				
	%	면적	%	면적	%	면적			
70	9.848	2,298	23.3	1,273	1,025	6,611	67.1	939	9.6
75	9.881	2,240	22.7	1,277	963	6,635	67.1	1,006	10.2
80	9.899	2,196	22.2	1,307	889	6,568	66.3	1,135	11.5
85	9.914	2,144	21.6	1,325	819	6,531	65.9	1,239	12.5
90	9.927	2,109	21.2	1,345	764	6,476	65.3	1,341	13.5
95	9.927	1,985	20.0	1,206	779	6,452	65.0	1,490	15.0
02	9.959	1,863	18.7	1,139	724	6,412	64.4	1,684	16.9
03	9.960	1,846	18.5	1,127	719	6,406	64.3	1,708	17.2
04	9.962	1,836	18.4	1,115	721	6,400	64.3	1,718	17.3
05	9.965	1,824	18.3	1,105	719	6,394	64.2	1,747	17.5
06	9.968	1,800	18.1	1,084	716	6,389	64.1	1,779	17.8
07	9.972	1,782	17.9	1,070	712	6,382	64.0	1,808	18.1
08	9.983	1,759	17.6	1,046	713	6,375	63.9	1,849	18.5
09	9.990	1,737	17.4	1,010	727	6,370	63.8	1,883	18.8
10	10.003	1,715	17.1	984	731	6,369	63.7	1,919	19.2
11	10.015	1,698	17.0	960	738	6,369	63.7	1,948	19.3
12	10.019	1,730	17.3	966	764	6,369	63.6	1,920	19.2
13	10.027	1,711	17.1	964	748	6,369	63.5	1,947	19.4
14	10.028	1,691	16.9	934	757	6,369	63.5	1,968	19.6
15	10.030	1,679	16.7	908	771	6,369	63.5	1,982	19.8

자료 : 통계청, 산림청
주 : '95년 이후 국토면적에는 미수복지가 불포함.

1-2. 경지이용상황

국토 면적	경지면적		이용면적		농가호당경지면적		국민1인당경지면적				
	천ha	%	천ha	%	논	밭	논	밭			
70	9.848	2.298	△0.6	3.264	142.1	92.5	51.3	41.2	7.31	4.05	3.26
75	9.848	2.240	0.1	3.144	140.4	94.1	53.6	40.5	6.46	3.68	2.78
80	9.899	2,196	△0.5	2,765	125.3	101.8	60.6	41.2	5.76	3.43	2.33
85	9,912	2,144	△0.4	2,592	120.4	111.3	68.8	42.5	5.29	3.27	2.02
90	9,926	2,109	△0.8	2,409	113.3	119.4	76.1	43.3	4.92	3.14	1.78
95	9,927	1,985	△2.3	2,197	108.1	132.3	80.4	51.9	4.45	2.70	1.75
00	9,946	1,889	△0.5	2,098	110.5	136.5	83.0	53.5	3.99	2.43	1.56
01	9,954	1,876	△0.7	2,089	110.6	138.5	84.6	53.9	3.96	2.42	1.54
02	9,959	1,863	△0.7	2,020	107.6	145.5	88.9	56.6	3.91	2.39	1.52
03	9,960	1,846	△0.9	1,936	103.9	146.0	89.1	56.9	3.86	2.35	1.50
04	9,962	1,836	△0.5	1,941	105.2	148.1	89.9	58.1	3.82	2.32	1.50
05	9,965	1,824	△0.6	1,921	104.7	143.3	86.8	56.5	3.79	2.30	1.49
06	9,968	1,800	△1.3	1,860	102.0	144.6	87.1	57.5	3.72	2.24	1.48
07	9,972	1,782	△1.0	1,856	103.1	144.8	86.9	57.8	3.67	2.20	1.47
08	9,983	1,759	△1.3	1,834	103.0	145.1	86.3	58.8	3.59	2.13	1.46
09	9,990	1,737	△1.3	1,873	106.5	145.4	84.5	60.8	3.53	2.05	1.48
10	10,003	1,715	△1.2	1,820	104.8	145.7	83.6	62.1	3.47	1.99	1.48
11	10,015	1,698	△1.0	1,802	105.1	146.0	82.5	63.5	3.41	1.93	1.48
12	10,019	1,730	1.9	1,766	104.0	150.3	83.9	66.4	3.46	1.93	1.53
13	10,027	1,711	△1.1	1,749	101.1	149.9	84.4	65.5	3.41	1.92	1.49
14	10,028	1,691	△1.2	1,754	103.7	156.5	83.3	67.5	3.35	1.85	1.50
15	10,030	1,679	△0.7	1,681	100.1	154.2	83.4	70.8	3.32	1.79	1.52

자료 : 통계청, 행정자치부
주 : '08년 이후 경지이용율은 경작가능면적 대비 이용면적임

1-3. 연도별 인구 및 가구

총가구	총 인구			농촌 인구			농가 인구			여가 인구					
	친호	증가율	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충북	충남	충북	충남	충북	충남	충북	충남
70	5,857	32.241	2.21	5.4	-	-	-	-	-	-	-	-	-	-	-
75	6,754	35.281	1.70	5.1	17,910	2,390	1,444	1,224	2,345	1,873	2,945	3,142	2,271	277	2,379
80	7,969	38.124	1.57	4.6	16,002	2,554	1,212	972	2,184	1,610	2,555	2,669	1,950	295	2,155
85	9,571	40.806	0.99	4.2	14,006	2,581	1,003	825	1,965	1,257	2,254	2,152	1,767	203	1,926
90	11,355	42.869	0.99	3.8	11,102	2,078	797	684	1,546	926	1,740	1,703	1,434	194	1,767
95	12,958	45.093	1.01	3.5	9,572	1,775	648	612	1,301	724	1,282	1,523	1,396	165	1,501
00	14,312	47.008	0.84	3.3	9,381	1,914	611	603	1,250	637	1,183	1,408	1,172	152	1,383
01	14,834	47.357	0.74	-	-	-	-	-	-	-	-	-	-	-	-
02	15,064	47.622	0.55	-	-	-	-	-	-	-	-	-	-	-	-
03	15,465	47.859	0.49	-	-	-	-	-	-	-	-	-	-	-	-
04	15,720	48.039	0.38	-	-	-	-	-	-	-	-	-	-	-	-
05	15,971	48.138	0.21	3.0	8,764	1,877	570	553	1,186	544	1,028	1,400	1,464	142	1,273
06	16,289	48.372	0.49	-	-	-	-	-	-	-	-	-	-	-	-
07	16,543	48.598	0.47	-	-	-	-	-	-	-	-	-	-	-	-
08	16,791	48.949	0.72	-	-	-	-	-	-	-	-	-	-	-	-
09	17,052	49.182	0.48	-	-	-	-	-	-	-	-	-	-	-	-
10	17,359	49.410	0.46	2.8	8,758	1,962	552	574	1,228	506	1,173	1,207	1,130	135	1,177
11	17,687	49.779	0.75	2.8	-	-	-	-	-	-	-	-	-	-	-
12	17,951	50.004	0.45	2.8	-	-	-	-	-	-	-	-	-	-	-
13	18,206	50.220	0.43	2.8	-	-	-	-	-	-	-	-	-	-	-
14	18,457	50.424	0.41	2.7	-	-	-	-	-	-	-	-	-	-	-
15	18,705	50.617	0.38	2.7	9,392	2,142	597	639	1,171	537	1,017	1,240	1,144	160	1,089

경남	제주	농가 인구			여가 인구							
		친호	%	명	친호	%	명					
-	-	2,483	42.4	14,422	44.7	5.81	195	3.3	1,165	3.6	12.1	5,99
2,271	277	2,379	35.2	13,244	37.5	1.6	5.57	154	2.3	894	2.5	2.2
1,950	295	2,155	27.0	10,827	28.4	0.5	5.02	157	2.0	844	2.2	6.8
1,767	203	1,926	20.1	8,521	20.9	0.5	4.42	145	1.5	689	1.7	3.7
1,434	194	1,767	15.6	6,661	15.5	1.8	3.77	122	1.1	496	1.2	11.5
1,396	165	1,501	11.6	4,851	10.8	0.6	3.23	104	0.8	347	0.8	9.1
1,172	152	1,383	9.7	4,031	8.6	0.4	2.91	82	0.6	251	0.6	20.3
-	-	1,354	9.1	3,933	8.3	0.4	2.91	78	0.5	234	0.5	6.7
-	-	1,280	8.5	3,591	7.5	0.7	2.80	73	0.5	215	0.5	8.2
-	-	1,264	8.3	3,530	7.4	0.7	2.79	73	0.5	212	0.5	1.4
-	-	1,240	8.0	3,415	7.1	0.3	2.75	73	0.5	210	0.4	1.0
1,464	142	1,273	8.0	3,434	7.1	0.6	2.70	80	0.5	221	0.5	5.2
-	-	1,245	7.7	3,304	6.8	0.3	2.65	77	0.5	212	0.5	4.1
-	-	1,231	7.5	3,274	6.8	0.9	2.66	74	0.4	202	0.4	4.8
-	-	1,212	7.3	3,187	6.6	0.7	2.63	71	0.4	192	0.4	5.0
-	-	1,195	7.0	3,117	6.4	0.2	2.61	69	0.4	184	0.4	4.2
1,130	135	1,177	6.8	3,063	6.4	0.1	2.60	66	0.4	171	0.3	7.1
-	-	1,163	6.6	2,962	6.0	0.3	2.55	63	0.4	159	0.3	7.0
-	-	1,151	6.4	2,912	5.8	0.1	2.53	62	0.3	153	0.3	3.9
-	-	1,142	6.3	2,847	5.7	0.2	2.49	60	0.3	147	0.3	3.8
-	-	1,121	6.1	2,752	5.5	0.3	2.50	58.8	0.3	141	0.3	4.1
1,144	160	1,089	5.7	2,569	5.0	0.6	2.40	55	0.3	128	0.3	9.2

자료: 통계청 등록센서스, 인구총조사, 인구동향, 농가인구조사
 주: 1) 90년 이후 여가 및 여가인구는 피고용자가 제외됨.
 2) 농촌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읍면동 단위 인구이며, 00년도 농촌인구 집계에는 특·광역시외 읍면동 단위 인구 포함
 3) 총가구는 전남 및 외국인구 제외(05, 00, 96, 90은 총조사자료임)
 4) 총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관계없이 연안주택인구 자료를 수록

1-4. 연령별 농가인구

(단위: 천명)

	농가인구		14세이하 ¹⁾		15~19세 ²⁾		20~49세		50~59세		60세이상		65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0	14,422	7,164	7,258	3,231	3,040	1,497	797	700	4,404	2,096	2,307	1,107	539	567	1,143	500	644	713
75	13,244	6,654	6,590	4,780	2,302	1,980	1,070	910	4,212	2,069	2,143	1,108	532	575	1,164	505	659	738
80	10,827	5,415	5,412	3,230	1,653	1,577	1,684	902	782	3,701	1,857	1,844	1,074	496	578	1,138	507	631
85	8,521	4,246	4,275	2,114	1,086	1,028	1,271	681	590	2,830	1,433	1,397	1,129	521	608	1,177	525	652
90	6,661	3,279	3,382	1,370	699	671	734	379	355	2,259	1,157	1,102	1,111	513	598	1,187	531	656
95	4,851	2,373	2,478	680	352	328	423	212	211	1,626	845	781	867	394	473	1,255	570	685
00	4,031	1,971	2,060	459	242	217	262	134	128	1,301	682	619	676	311	366	1,333	603	730
01	3,933	1,903	2,031	444	236	209	242	125	117	1,188	607	581	636	294	342	1,423	641	782
02	3,591	1,748	1,843	384	204	180	193	100	93	1,052	545	507	590	272	318	1,372	627	745
03	3,530	1,715	1,815	377	202	175	177	92	85	1,019	527	492	580	269	311	1,377	625	752
04	3,415	1,654	1,761	353	187	165	159	84	75	963	496	467	566	264	302	1,375	622	752
05	3,434	1,677	1,757	335	178	157	158	83	75	989	516	473	601	282	319	1,351	618	733
06	3,304	1,607	1,697	315	170	145	144	75	69	896	460	436	601	281	320	1,348	621	727
07	3,274	1,590	1,684	308	166	142	143	75	68	855	440	416	592	274	319	1,375	636	739
08	3,187	1,542	1,645	288	155	133	133	71	62	796	409	387	584	267	317	1,386	641	745
09	3,117	1,510	1,607	265	141	124	133	72	61	749	389	360	577	263	314	1,393	645	748
10	3,063	1,501	1,562	270	142	129	133	71	62	793	414	380	587	278	309	1,279	596	683
11	2,962	1,456	1,506	236	127	108	127	68	60	699	360	339	593	280	313	1,307	621	686
12	2,912	1,424	1,488	216	115	101	125	66	59	653	341	312	574	269	304	1,344	632	712
13	2,847	1,387	1,461	197	105	92	117	61	56	602	316	286	570	266	303	1,361	638	724
14	2,752	1,340	1,412	175	93	82	112	60	52	557	293	264	539	253	286	1,369	641	728
15	2,569	1,265	1,305	150	78	71	90	48	42	520	275	245	517	246	271	1,293	618	675

자료: 통계청(농가인구조사, 농림어업총조사)
 주: 1) 70-87년도는 13세 이하임.
 2) 70-87년도는 14-19세임.

1-5.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단위: 천호)

농가 호수	경지없는 농가	규 모 별 농 가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26	2,411	72	2,411	26	761	824	446	193
70	2,483	72	2,411	26	761	824	446	193	124	37
75	2,379	94	2,285	2	689	828	431	187	112	36
80	2,156	28	2,128	14	598	748	438	191	109	31
85	1,926	46	1,880	9	525	686	390	160	87	23
90	1,767	24	1,743	15	468	544	352	191	129	44
95	1,501	24	1,477	16	417	432	265	153	123	70
00	1,383	14	1,369	30	410	379	219	132	114	85
01	1,354	19	1,335	18	441	369	211	121	100	75
02	1,280	20	1,260	25	408	344	193	113	99	78
03	1,264	21	1,243	28	414	332	185	107	94	83
04	1,240	20	1,221	29	416	322	177	102	91	82
05	1,273	17	1,256	38	419	330	174	107	93	93
06	1,245	15	1,230	38	449	325	158	94	80	86
07	1,231	16	1,215	36	454	313	156	90	80	86
08	1,212	14	1,198	28	449	308	155	89	81	88
09	1,195	14	1,181	16	454	300	152	87	82	90
10	1,177	14	1,164	23	450	288	142	87	78	97
11	1,163	12	1,151	9	468	281	136	83	76	97
12	1,151	12	1,140	14	461	275	134	83	74	99
13	1,142	10	1,132	15	460	269	133	81	74	99
14	1,121	10	1,111	14	456	262	129	79	74	97
15	1,089	10	1,078	22	464	255	114	71	63	89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1-6.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

(단위: 천명)

	총수 Total	15~29세 Years	15~19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Years & over
01	2,148	67	6	61	184	382	518	998
02	2,069	51	4	46	145	372	489	1,013
03	1,950	48	4	44	127	341	449	985
04	1,824	36	3	33	105	305	417	961
05	1,813	29	3	26	83	286	420	994
06	1,781	29	2	26	80	270	411	992
07	1,723	26	2	24	79	258	403	957
08	1,686	23	1	22	74	239	404	947
09	1,648	25	2	23	75	227	404	918
10	1,566	31	1	30	70	200	390	875
11	1,542	24	1	23	73	182	379	883
12	1,528	34	3	32	65	157	365	908
13	1,520	37	2	35	64	134	360	926
14	1,452	34	2	32	53	129	342	894
15	1,345	28	3	26	48	123	309	837
15. 1/4	1,092	26	2	24	45	103	271	648
2/4	1,505	35	3	32	48	134	340	947
3/4	1,494	31	3	28	49	136	329	950
4/4	1,289	21	2	19	48	120	296	80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연령분 9차개정(2008) 기준
 2) 2005년부터 연령구간 10세 단위로 구분

1-7. 농림어업 부가가치

(1) 당해년가액

(단위: 10억원)

	농림어업	농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 서비스
		작물	축산업			
70	736.7	634.5	577.1	57.5	49.6	43.6
75	2,560.2	2,239.6	2,090.4	149.2	137.9	159.8
80	5,282.2	4,698.3	4,298.0	400.4	385.4	425.4
85	10,193.8	8,545.4	7,641.4	904.1	597.5	870.6
90	15,030.0	12,787.0	11,378.0	1,409.0	676.5	1,342.9
95	22,894.4	19,600.4	16,636.1	2,964.2	927.2	2,046.9
00	25,049.4	21,185.1	18,551.4	2,633.7	1,255.4	2,206.9
02	25,562.8	21,839.6	18,050.1	3,789.4	1,260.7	1,980.2
03	25,490.2	21,505.1	17,852.5	3,652.5	1,182.7	2,282.1
04	27,896.3	23,977.4	19,272.7	4,704.7	1,144.2	2,218.3
05	26,125.1	22,264.5	16,665.7	5,598.8	1,054.9	2,196.5
06	26,036.1	22,166.6	17,088.7	5,077.9	1,055.6	2,193.4
07	25,517.7	21,405.9	16,856.5	4,549.4	1,174.3	2,260.7
08	24,983.1	20,597.1	17,523.3	3,073.8	1,284.8	2,395.8
09	27,033.4	21,333.7	17,277.2	4,056.5	1,497.0	3,493.2
10	28,297.4	22,433.7	17,580.2	4,853.4	1,764.4	3,425.8
11	30,454.0	24,265.4	19,321.2	4,944.2	1,769.2	3,732.8
12	30,775.1	24,715.0	19,716.5	4,998.5	1,948.0	3,416.4
13	30,437.2	24,668.8	19,522.0	5,146.7	1,967.8	3,061.1
14	31,560.3	25,663.3	17,987.5	7,675.7	2,144.5	2,998.4
15(P)	32,741.0	26,812.4	18,004.7	8,807.6	2,014.2	3,116.1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년
주: 농림은 작물, 축산업의 합계임

(2) 2010년 연쇄가액(at chained 2010 year prices)

(단위: 10억원)

	농림어업	농업		임업	어업	농림어업 서비스
		작물	축산업			
70	11,191.2	8,766.6	8,635.9	573.3	1,818.7	1,099.5
75	14,481.7	11,306.1	10,932.8	833.8	1,908.0	1,713.6
80	13,583.9	10,197.1	9,690.1	955.2	2,163.3	1,840.9
85	19,111.8	14,744.8	13,381.8	1,730.5	2,238.2	2,285.4
90	19,876.2	15,202.5	13,971.3	1,590.7	1,693.4	2,945.5
95	22,918.7	18,470.7	15,927.7	2,929.6	1,266.7	2,674.5
00	24,671.4	20,475.5	17,590.5	3,075.3	1,198.6	2,459.7
02	24,521.9	20,192.7	16,980.4	3,395.4	1,176.9	2,493.9
03	23,219.9	18,868.5	15,797.3	3,238.8	1,115.8	2,590.4
04	25,312.6	20,825.5	17,592.8	3,417.5	1,169.3	2,526.4
05	25,666.2	20,857.6	17,595.5	3,442.2	1,218.6	2,805.8
06	26,066.6	20,946.9	17,492.4	3,560.8	1,308.5	3,122.3
07	27,127.7	21,583.7	17,709.4	3,884.7	1,448.0	3,518.2
08	28,646.6	22,924.6	18,599.7	4,296.6	1,489.5	3,585.5
09	29,575.7	23,505.2	18,996.8	4,502.9	1,711.4	3,664.1
10	28,297.4	22,433.7	17,580.2	4,853.4	1,764.4	3,425.8
11	27,744.6	21,887.0	17,235.4	4,651.6	1,762.0	3,592.7
12	27,506.9	21,844.1	16,633.8	5,241.3	1,631.6	3,306.1
13	28,357.7	22,900.1	17,306.1	5,638.6	1,603.1	3,086.3
14	29,378.2	23,322.4	17,730.4	5,632.6	1,943.2	3,319.6
15(P)	28,951.1	22,892.0	17,025.2	5,809.9	1,953.9	3,301.4

자료: 한국은행
주: 연쇄가액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총계는 비가법적 특성에 의해 총량(또는 상위부품) 금액과 그 구성항목 금액이 합이 일치하지 않음

1-8. 경제활동별 실질 성장률

(단위: 전년대비 증감률 %)

국 내 총생산	농 립 어 업				광공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림	임업	어업	농림어업 서비스						
70	10.0	-0.7	-2.0	-0.6	18.6	12.0	16.1	17.7	4.2	13.6
75	7.9	5.3	6.5	-2.9	-4.6	5.0	12.9	12.9	5.8	7.6
80	-1.7	-16.6	-20.9	20.3	4.9	-11.8	-1.9	7.0	-2.9	5.6
85	7.7	6.1	7.6	-7.7	5.0	-0.4	7.1	19.4	5.4	8.7
90	9.8	-5.6	-6.8	-7.1	5.8	-7.8	11.1	16.2	23.6	9.3
95	9.6	7.0	10.2	-8.9	-9.8	-7.1	12.7	6.5	5.2	9.0
01	4.5	1.6	1.4	0.1	2.9	8.6	3.2	6.0	4.9	5.3
02	7.4	-2.1	-2.7	-1.9	-1.5	22.7	9.2	8.0	2.9	8.1
03	2.9	-5.3	-6.6	-5.2	3.9	13.2	4.9	3.8	8.4	2.1
04	4.9	9.0	10.4	4.8	-2.5	12.8	9.6	7.0	1.4	2.8
05	3.9	1.4	0.2	4.2	11.1	10.6	5.8	7.1	-0.6	3.9
06	5.2	1.6	0.4	7.4	11.3	-2.2	7.7	2.0	1.7	4.6
07	5.5	4.1	3.0	10.7	12.7	-0.8	8.3	4.2	2.5	5.2
08	2.8	5.6	6.2	2.9	1.9	3.2	3.7	3.4	-2.6	3.2
09	0.7	3.2	2.5	14.9	2.2	6.3	-0.5	5.0	2.3	1.5
10	6.5	-4.3	-4.6	3.1	-6.5	-2.1	13.5	5.9	-3.7	4.4
11	3.7	-2.0	-2.4	-0.1	-1.0	4.3	6.5	0.2	-5.5	3.1
12	2.3	-0.9	-0.2	-7.4	-2.6	1.9	2.4	4.0	-1.8	2.8
13	2.9	3.1	4.8	-1.7	-6.6	2.6	3.6	-0.3	3.0	2.9
14	3.3	3.6	1.8	21.2	7.6	-1.1	3.5	2.6	0.8	3.3
15(7)	2.6	-1.5	-1.8	0.5	-0.5	2.6	1.2	6.2	3.0	2.8

자료: 한국은행

1-9. 수출인 실적

(단위: 백만\$, %)

품 목 별	11	12	13	14	15	증감률 (15/14)
	국가 전 체	555,214	548,076	559,632	572,665	526,757
농림축수산물	7,691.3	8,006.1	7,875.9	8,249.7	8,032.5	△2.6
수	5,117.1	5,180.1	5,176.7	5,693.5	5,720.6	0.5
- 농 산 물	4,940.8	4,785.0	4,741.0	5,223.7	5,223.8	0.0
출	176.3	395.1	435.7	469.8	496.8	5.8
임 산 물	266.4	464.8	547.9	489.3	386.7	△21.0
수 산 물	2,307.8	2,361.3	2,151.3	2,067.0	1,925.2	△6.9
국가 전 체	524,413	519,584	515,586	525,515	436,499	△16.9
농림축수산물	33,184.0	33,422.4	34,192.7	36,139.9	34,770.0	△3.8
수	23,433.4	23,437.6	23,793.5	24,929.8	23,624.1	△5.2
- 농 산 물	18,362.0	13,717.1	19,105.8	19,307.9	17,896.1	△7.3
임	5,071.4	4,720.5	4,687.7	5,621.9	5,728.0	1.9
출	5,560.7	6,009.5	6,505.9	6,705.4	6,591.4	△1.7
수 산 물	4,189.9	3,975.3	3,893.3	4,504.7	4,554.5	1.1
국가 전 체	30,801	28,492	44,046	47,150	90,258	91.4
수	-25,493	-25,416	-26,317	-27,890	-26,737	4.1
지						

자료: 식량산업정책연구소(농산물), 국제협력국(농업통상과, 관세청 통관기준)
주: 석재류 제외

1-10. 원천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농가 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 소득 ¹⁾		비가장 소득 ²⁾		농가 부채				
		농업 총수입	농업 경비	점 업 수 입	사 업 외 수 입	이 전 수 입	이 전 수 입	비 가 장 수 입	비 가 장 수 입	농가 채 분 가 능 소 득 ⁴⁾	농가 자 산	농가 부 채		
70	256	194	248	54	62	10	52	-	-	208	7	38	915	16
75	873	715	891	176	158	22	136	-	-	616	22	853	4,588	33
80	2,693	1,755	3,342	587	938	67	872	-	-	2,138	97	2,579	13,384	339
85	5,736	3,699	5,477	1,778	1,060	214	846	977	-	4,691	83	5,690	28,378	2,024
90	11,026	6,264	9,078	2,814	2,841	589	2,252	1,921	-	8,227	320	10,965	79,352	4,734
95	21,803	10,469	16,012	5,543	6,931	1,526	5,404	4,403	-	14,782	722	21,629	158,171	9,163
00	23,072	10,897	19,514	8,617	7,432	1,435	5,997	4,743	-	18,003	707	22,838	159,975	20,207
01	23,907	11,267	20,193	8,927	7,829	1,491	6,338	4,811	-	18,458	631	23,669	166,765	20,376
02	24,475	11,274	19,951	8,677	8,140	1,454	6,686	5,060	-	17,858	823	24,236	170,465	19,898
03	26,878	10,572	23,611	13,039	9,397	2,266	7,131	2,031	4,878	18,162	5,901	20,976	204,527	26,619
04	29,001	12,050	26,623	14,572	9,544	2,342	7,201	3,006	4,401	18,386	6,305	22,696	243,665	26,892
05	30,503	11,815	26,496	14,681	9,884	2,531	7,353	4,078	4,725	19,378	7,271	23,232	298,178	27,210
06	32,303	12,092	27,322	15,231	10,037	2,690	7,347	4,886	5,289	19,891	8,571	23,733	356,963	28,161
07	31,967	10,406	26,102	15,696	11,097	2,959	8,138	4,959	5,506	20,510	7,538	24,429	395,981	29,946
08	30,523	9,654	25,843	16,189	11,353	2,900	8,453	5,289	4,227	20,328	6,773	23,749	341,227	25,786
09	30,814	9,698	26,621	16,924	12,128	3,296	8,832	5,481	3,507	20,017	6,557	24,257	358,029	26,268
10	32,121	10,098	27,221	17,123	12,946	3,467	9,480	5,610	3,467	21,264	6,408	25,712	372,476	27,210
11	30,148	8,753	26,457	17,704	12,949	3,653	9,296	5,453	2,993	22,156	5,750	24,398	387,180	26,035
12	31,031	9,127	27,589	18,461	13,585	3,966	9,619	5,614	2,705	22,315	5,176	25,855	407,872	27,262
13	34,524	10,035	30,648	20,613	15,705	4,182	11,523	5,844	2,940	24,184	6,080	28,444	400,580	27,363
14	34,950	10,303	32,179	21,875	14,799	3,751	11,048	6,819	3,029	24,466	6,089	28,861	431,823	27,878
15	37,215	11,257	33,654	22,398	14,939	3,733	11,206	7,906	3,114	24,184	6,080	31,135	400,580	27,363

주 : 1) 03년 표본개편으로 가계지출이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분리, 다른행목간 이동이 있으므로 시계열 자료 이용시 주의
 2) 03년 이전자료는 가계내 추산임
 3) 03년 이전은 조세부담금과 분가지를 합계임(개편후 비소비지출 개념과 일치하지 않음)
 4) 03년 이전은 농가소득-조세부담금, 03년부터 농가소득-비소비지출
 5) 03년 이전은 처분가능소득-가계지출-분가지를, 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

1-11. 농외소득 및 이진소득

(단위: 천원)

농외 소득	겸업소득 ¹⁾		사업외소득 ²⁾		이전 소득 ³⁾	비경상 소득 ⁴⁾
	겸업수입	겸업지출	사업외수입	사업외지출		
70	62	10	17	7	52	-
75	158	22	52	30	136	-
80	938	67	172	106	872	-
85	1,060	214	566	351	1,068	222
90	2,841	589	1,038	449	2,252	298
95	6,931	1,526	2,842	1,315	5,404	572
00	7,432	1,435	3,340	1,905	5,997	6,564
01	7,829	1,491	3,409	1,917	6,338	6,886
02	8,140	1,454	3,475	2,021	6,686	7,177
03	9,397	2,266	6,517	4,251	7,130	7,178
04	9,544	2,342	6,091	3,748	7,201	7,299
05	9,884	2,531	7,186	4,655	7,353	7,416
06	10,037	2,690	7,937	5,247	7,347	7,440
07	11,097	2,959	7,616	4,658	8,138	8,229
08	11,353	2,900	6,347	3,447	8,453	8,532
09	12,128	3,296	7,655	4,359	8,832	8,944
10	12,946	3,467	8,445	4,978	9,480	9,598
11	12,949	3,653	8,695	5,043	9,296	9,472
12	13,585	3,966	9,358	5,392	9,619	9,739
13	15,705	4,182	9,432	5,249	11,523	11,676
14	14,799	3,751	8,400	4,649	11,048	11,233
15	14,939	3,733	8,252	4,520	11,206	11,380

자료: 농가경제조사(통계청)
 주: 1) 임, 연임, 재조합, 권역별 등
 2) 농안노임, 금근, 임대료 등
 3) 사제근, 가족보조근, 타인보조근 등은 83년부터 사업외 수입에서 이진소득으로 항목 분리 신설
 4) 08년부터 이진소득에서 일부행목 분리신설한 것으로 겸업수입, 퇴직연금수입이 있음

1-12. 기계소득·지출

(1)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단위: 천원)

		소 득					비경상 소득
		경 상 소 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진소득	
07	43,874	42,226	37,954	1,980	167	2,125	1,648
08	46,807	45,091	40,597	2,026	159	2,309	1,716
09	46,238	44,395	39,866	1,940	169	2,420	1,844
10	48,092	46,572	41,750	2,111	158	2,553	1,520
11	50,983	49,394	44,041	2,200	160	2,992	1,589
12	53,908	52,302	46,622	2,295	183	3,202	1,607
13	55,275	53,658	47,917	2,359	143	3,239	1,616
14	56,815	55,051	49,173	2,256	163	3,459	1,765
15	57,800	55,874	49,541	2,379	162	3,791	1,926

자료: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주: 원별급 기계수지를 기초로 연간소득으로 환산

(2) 전국 가구 소득

(단위: 천원)

		소 득					비경상 소득
		경 상 소 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진소득	
07	38,400	36,744	24,529	8,689	221	3,306	1,656
08	40,689	39,049	26,507	8,838	217	3,487	1,640
09	41,184	39,527	26,849	8,967	178	3,534	1,657
10	43,581	41,894	28,183	9,658	174	3,880	1,687
11	46,099	44,463	29,948	10,093	195	4,227	1,636
12	48,923	47,217	32,266	10,250	251	4,450	1,706
13	49,942	48,297	33,156	10,290	244	4,607	1,645
14	51,628	49,842	34,460	10,346	236	4,800	1,786
15	52,477	50,662	35,024	10,151	236	5,251	1,815

자료: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주: 원별급 기계수지를 기초로 연간소득으로 환산

2 농촌개발

2-1. 농공단지 현황

○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완료 현황(누계치)

연도	'04까지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지정	637	337	345	359	385	401	421	430	444	453	459	467
조성완료	592	298	311	324	330	339	347	360	376	390	406	420

(단위: 개)

○ 시도별 농공단지 지정현황(15년말 기준)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단지수	467	1	43	43	92	57	65	69	82	3	12
면적	75,595	117	6,930	6,215	14,595	10,544	11,124	11,694	11,977	312	2,087

(단위: 개, 천㎡)

*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에 포함

○ 연도별 입주 및 고용 현황

구분	분양률	가동률	입주계약		고용
			가동률	입주계약	
05	98.0	90.6	4,842	115	
06	97.8	93.1	5,001	116	
07	96.8	93.7	5,231	116	
08	98.4	94.1	5,372	120	
09	97.4	93.7	5,632	123	
10	97.2	93.6	5,808	130	
11	96.3	94.9	6,028	138	
12	95.5	94.8	6,208	140	
13	94.2	94.7	6,447	147	
14	94.6	93.8	6,626	148	
15	94.1	94.2	6,736	150	

(단위: %, 개사, 천명)

자료: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2-2. 농촌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현황

(15년말 기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계	개소 873	개소 23	개소 545	개소 24,246
부산	-	-	-	48
대구	-	-	-	9
인천	5	-	25	1,252
광주	-	-	-	3
대전	5	-	-	-
울산	6	-	1	149
세종	3	-	-	5
경기	95	2	62	2,351
강원	167	2	112	5,466
충북	59	-	36	1,050
충남	118	3	55	1,622
전북	98	1	22	1,168
전남	114	3	53	3,427
경북	96	5	42	2,079
경남	94	3	115	3,273
제주	13	4	22	2,344

자료: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주: 휴양단지는 사업지구로 지정·고사된 지역 포함

3 식 품

3-1. 식품산업 규모

	시장규모		음식점업		음식료품제조업		총사자수	평	
	백만원	백만원	음식료품제조업	백만원	음식점업	백만원		음식료품제조업	음식점업
04	91,895,893	43,526,296	48,369,597	1,715,909	159,901	1,556,008			
05	89,920,724	43,668,201	46,252,523	1,602,513	157,686	1,444,827			
06	98,082,760	44,381,449	53,701,311	1,607,436	156,967	1,450,469			
07	107,514,407	48,149,057	59,365,350	1,730,650	163,236	1,567,414			
08	119,923,594	55,211,670	64,711,924	1,738,652	160,584	1,578,068			
09	130,636,513	60,771,327	69,865,186	1,767,256	166,538	1,600,718			
10	136,123,058	68,557,241	67,565,817	1,780,222	171,119	1,609,103			
11	143,715,179	70,208,151	73,507,028	1,860,347	176,729	1,683,618			
12	152,435,112	75,149,913	77,285,199	1,931,646	178,839	1,752,807			
13	156,870,080	77,320,481	79,549,599	2,008,014	183,800	1,824,214			
14	163,745,255	79,925,324	83,819,931	2,090,465	194,954	1,895,511			

자료 : 통계청, 관원·제조업조사(총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 음식료품제조업)
통계청 도소매업조사('07년부터 음식점 및 주점업)

3-2.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사업제수 (A)	기업평균사자수 (B)	명	급 여 액 백만원	출 하 액 (C)	백만원	주요생산비 백만원	부가가치 (D)	백만원	유형자산 연말잔액 백만원	업체당 출하액 (C/A)	1인당부가가치 (D/B)	부가가치율 (D/C)	%
04	3,841	159,901	3,016,460	43,526,296	25,578,453	18,118,937	15,001,032	11,332.0	113.3	41.6			
05	3,932	157,686	3,240,829	43,668,201	25,942,035	17,841,267	15,025,207	11,105.8	113.1	40.9			
06	4,057	156,967	3,347,440	44,381,449	26,625,174	17,756,352	15,164,850	10,939.5	113.1	40.0			
07	4,257	163,236	3,597,585	48,149,057	28,953,396	19,473,346	16,552,722	11,310.6	119.3	40.4			
08	4,061	160,584	3,621,854	55,211,670	34,980,587	20,651,160	18,254,979	13,595.6	128.6	37.4			
09	4,169	166,538	3,893,057	60,771,327	39,218,366	21,803,904	20,483,220	14,577.0	130.9	35.9			
10	4,261	171,119	4,152,129	63,725,015	41,284,088	22,665,085	-	14,955.4	132.5	35.6			
11	4,360	176,729	4,434,772	70,208,151	46,808,383	24,077,827	24,410,799	16,102.8	136.2	34.3			
12	4,423	178,839	4,626,664	75,149,913	49,400,752	26,089,995	24,853,346	16,990.7	145.9	34.7			
13	4,616	183,800	4,884,474	77,320,481	50,238,384	27,449,372	25,497,696	16,750.5	149.3	35.5			
14	4,983	194,954	5,433,135	79,925,324	51,145,627	28,851,937	27,332,420	16,039.6	148.0	36.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총시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10년 경제총조사

3-3. 식품산업 부가가치

(1) 당해년가격

	국내총생산 (GDP)		국내총부가가치 (GVA)		음식도품 및 담배 제조업		음식숙박업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75	10,505.1	9,530.1	272.5	2.9	219.9	2.3		
80	39,471.3	35,086.4	907.7	2.6	579.5	1.7		
85	87,239.6	78,235.2	1,869.6	2.4	1,481.5	1.9		
90	197,712.3	178,400.9	3,498.4	2.0	4,607.3	2.6		
95	428,927.1	388,731.9	6,825.2	1.8	11,079.1	2.9		
00	635,184.6	570,222.6	10,008.9	1.8	17,093.7	3.0		
03	810,915.3	725,381.7	11,387.8	1.6	21,151.4	2.9		
04	876,033.1	790,257.0	12,491.2	1.6	21,285.4	2.7		
05	919,797.3	830,043.5	12,307.8	1.5	21,884.2	2.6		
06	966,054.6	871,126.3	12,385.8	1.4	23,554.2	2.7		
07	1,043,257.8	941,871.6	12,883.6	1.4	25,440.5	2.7		
08	1,104,492.2	996,257.5	13,633.7	1.4	27,485.7	2.8		
09	1,151,707.8	1,044,565.5	14,482.0	1.4	28,685.0	2.7		
10	1,265,308.0	1,145,124.1	14,931.1	1.3	29,862.0	2.6		
11	1,332,681.0	1,209,956.2	15,807.9	1.3	31,070.7	2.6		
12	1,377,456.7	1,251,455.3	16,100.6	1.3	32,424.0	2.6		
13	1,429,445.4	1,303,238.2	17,234.3	1.3	33,771.6	2.6		
14	1,486,079.3	1,354,855.3	18,292.7	1.4	35,705.5	2.6		
15(P)	1,558,591.6	1,417,608.5	18,867.8	1.3	37,952.6	2.7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8 SNA 이행에 따른 기준년 개편으로 '00년 이후 시계열은 '10년 기준, 과거 자료는 '05년 기준

(2) 2010년 연쇄가격(at chained 2010 year prices)

	국내총생산 (GDP)		국내총부가가치 (GVA)		음식도품 및 담배 제조업		음식숙박업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10억원	%
75	108,549.2	101,181.5	3,256.7	3.3	4,448.5	3.8		
80	163,065.0	147,530.1	5,508.3	3.7	4,880.3	2.8		
85	254,991.8	229,699.1	7,693.1	3.3	7,232.0	2.6		
90	419,518.1	374,826.2	9,542.0	2.5	11,852.3	2.6		
95	628,442.2	562,376.5	12,003.9	2.0	18,742.5	2.7		
00	820,843.8	733,836.8	13,362.9	1.8	24,277.4	3.3		
03	948,796.2	850,782.9	14,345.9	1.7	27,458.5	3.2		
04	995,285.7	892,054.5	14,646.3	1.6	27,354.5	3.1		
05	1,034,337.5	928,995.3	14,390.3	1.5	27,075.5	2.9		
06	1,087,876.4	976,372.3	14,449.8	1.5	27,772.0	2.8		
07	1,147,311.4	1,033,356.2	14,670.5	1.4	29,046.7	2.8		
08	1,179,771.4	1,065,183.3	15,013.6	1.4	29,530.3	2.8		
09	1,188,118.4	1,076,429.7	14,570.1	1.4	29,255.3	2.7		
10	1,265,308.0	1,145,124.1	14,931.1	1.3	29,862.0	2.6		
11	1,311,892.7	1,185,403.2	15,015.8	1.3	30,046.0	2.5		
12	1,341,966.5	1,213,224.4	14,754.0	1.2	30,507.1	2.5		
13	1,380,832.6	1,250,078.5	15,019.1	1.2	30,775.0	2.5		
14	1,426,972.4	1,290,494.0	15,553.2	1.2	31,513.4	2.4		
15(P)	1,464,244.0	1,320,845.6	15,570.5	1.2	31,288.4	2.4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8 SNA 이행에 따른 기준년 개편으로 '00년 이후 시계열은 '10년 기준, 과거 자료는 '05년 기준

4 외국 주요통계

4-1. 통계로 본 OECD국가와 한국

(1) 국토면적 및 인구

국 가	국토면적 (만ha)		인구밀도 (km ² /명)		인 구				
	1.2	13	80	90	00	05	10		
한 국	1,002	501	38,124	42,869	47,008	48,138	49,410		
일본	3,780	337	116,807	122,249	125,715	126,979	127,320		
캐나다	99,847	4	24,593	27,662	30,702	32,256	34,126		
미국	19,644	60	67,570	85,609	102,809	109,748	118,618		
멕시코	98,315	-	230,406	252,848	282,896	296,140	309,876		
오스트레일리아	77,412	3	14,569	17,097	19,107	20,274	22,163		
뉴질랜드	2,677	16	3,113	3,398	3,858	4,135	4,369		
노르웨이	839	101	7,549	7,707	8,051	8,235	8,392		
벨기에	305	366	9,852	9,978	10,268	10,561	10,930		
체코	789	133	10,283	10,324	10,263	10,231	10,507		
덴마크	431	130	5,123	5,140	5,338	5,418	5,551		
핀란드	3,384	16	4,780	4,987	5,176	5,246	5,368		
스웨덴	5,491	116	53,880	56,943	59,387	61,242	62,961		
독일	3,572	226	78,304	78,958	81,896	81,247	80,435		
프랑스	1,320	84	9,643	10,132	10,954	11,070	11,178		
영국	930	106	10,707	10,385	10,224	10,096	10,015		
러시아	1,030	3	228	255	281	297	318		
이탈리아	703	66	3,401	3,563	3,842	4,204	4,617		
일본	3,013	200	56,434	57,008	57,147	58,657	59,588		
북부부르크	26	210	364	382	436	458	508		
네델란드	415	450	14,144	14,915	15,894	16,332	16,632		
노르웨이	3,822	16	4,086	4,240	4,492	4,624	4,891		
폴란드	3,127	123	35,574	38,195	38,486	38,464	38,575		
포르투갈	922	113	9,766	9,890	10,279	10,480	10,585		
슬로바키아	490	110	-	5,278	5,386	5,385	5,407		
스페인	5,056	92	37,542	39,192	40,750	43,855	46,601		
스웨덴	4,474	21	8,310	8,559	8,872	9,030	9,382		
튀르키예	413	195	6,319	6,674	7,166	7,409	7,831		
미국	7,836	97	44,438	53,995	63,240	67,861	72,310		
영국	2,436	263	56,330	57,110	58,867	60,210	62,717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천명)	13		13/12		65세이상인구					출생성비 (여아 100명당)		기대수명 (10)	
	남자	여자	%	%	00	05	10	10	06	10	전체	남자	여자
50,220	23,270	26,950	0.43	1.54	7.2	9.1	11.0	107.5	106.9	80.0	76.5	83.2	
126,985	4,465	122,520	-0.12	0.65	17.2	19.8	22.9	105.3	105.8	82.6	79.1	86.0	
35,231	8,487	26,744	1.03	4.87	12.5	13.1	14.2	-	105.1	80.7	78.3	82.9	
123,740	11,153	112,587	1.35	6.05	5.0	5.3	5.9	103.9	103.9	75.7	73.3	78.1	
317,136	10,545	306,591	0.74	0.00	12.3	12.3	13.0	-	-	78.1	75.6	80.6	
5,624	5,624	0.41	1.54	12.4	12.9	13.5	-	105.2	105.2	81.4	79.1	83.7	
5,453	4,465	0.51	0.65	11.8	12.0	13.0	104.4	106.4	80.2	78.2	82.2		
63,845	8,487	0.38	15.3	16.1	17.7	17.7	104.1	105.0	80.1	77.2	82.7		
80,566	11,153	0.11	0.65	16.9	17.2	17.2	-	-	79.5	77.2	82.7		
11,055	10,545	-0.50	0.00	-	-	-	104.1	105.8	76.9	73.6	80.0		
5,624	5,624	0.41	1.54	14.9	15.1	16.7	105.8	104.9	78.6	76.3	80.8		
5,453	4,465	0.51	0.65	14.9	15.9	17.1	104.1	105.5	79.5	76.0	82.8		
63,845	8,487	0.44	16.1	16.6	17.0	17.0	104.8	104.9	80.8	77.4	84.3		
80,566	11,153	0.11	16.2	18.8	20.6	20.6	105.8	105.0	79.8	77.1	82.3		
11,055	10,545	-0.50	0.00	16.9	18.5	19.0	106.3	107.4	79.8	77.3	82.3		
9,925	9,925	-0.33	15.1	15.7	16.7	16.7	104.8	105.0	73.8	69.7	77.9		
325	4,465	0.62	11.6	11.7	12.1	12.1	104.7	105.8	81.4	79.6	83.2		
4,671	8,487	0.06	10.5	10.6	11.1	11.1	106.2	104.2	79.6	77.2	81.9		
59,771	11,153	0.06	18.1	19.5	20.4	20.4	-	106.5	81.5	78.7	84.0		
545	10,545	2.39	14.1	14.4	14.0	14.0	105.1	101.6	79.5	76.7	82.2		
16,809	16,809	0.36	13.6	14.1	15.6	15.6	104.3	104.3	80.2	78.0	82.2		
5,083	4,465	1.28	13.2	14.7	15.0	15.0	105.4	105.0	80.6	78.3	82.9		
38,619	8,487	0.03	12.2	13.2	13.5	13.5	105.9	107.8	75.5	71.2	79.8		
10,460	10,460	-0.53	16.3	17.2	18.8	18.8	105.2	105.8	78.7	75.5	81.9		
5,419	5,419	0.07	11.4	11.7	12.4	12.4	105.6	102.3	-	-	-		
46,455	46,455	-0.39	16.6	16.6	17.2	17.2	106.5	106.4	81.2	78.0	84.4		
9,624	9,624	0.84	-	-	-	-	105.9	105.6	81.1	79.0	83.1		
8,119	8,119	1.18	16.6	15.8	16.9	16.9	106.1	104.9	81.8	79.3	84.1		
76,224	76,224	1.80	6.0	6.5	7.0	7.0	-	-	73.4	69.9	76.9		
63,956	63,956	0.60	15.8	16.0	16.2	16.2	-	-	79.6	77.5	81.7		

(2) 국민계정

국 가	국내총생산(당해연가격 GDP)(10억US\$)							경제활동별 총생산 비율(2010, %)		
	09	10	11	12	13	14	2차산업 ¹⁾	제조업	서비스업	
한	902.3	1,094.3	1,202.7	1,222.4	1,305.4	1,410.0	38.2	30.7	59.3	
일본	5,035.1	5,495.4	5,905.6	5,954.5	4,919.6	4,601.5	27.5	19.7	71.3	
캐나다	1,370.8	1,614.0	1,788.8	1,832.7	1,839.0	1,786.7	20.7	10.7	70.8	
멕시코	894.9	1,051.1	1,171.2	1,186.7	1,262.2	1,282.7	35.1	17.3	61.5	
미국	14,418.7	14,964.4	15,517.9	16,163.2	16,768.1	17,419.0	20.3	12.5	78.5	
오스트레일리아	926.3	1,141.3	1,388.1	1,534.4	1,560.4	1,453.8	27.0	8.6	70.6	
뉴질랜드	120.5	145.3	166.1	174.4	188.4	-	23.7	12.1	69.2	
오스트리아	397.6	389.7	429.1	407.6	428.3	436.3	28.6	18.6	70.0	
벨기에	485.8	484.4	528.1	498.7	524.8	533.4	23.7	15.1	75.5	
체코	205.7	207.0	227.3	206.8	208.8	205.5	36.8	23.4	61.5	
크로아티아	319.8	319.8	341.5	322.3	335.9	342.0	22.8	12.6	75.8	
핀란드	251.5	247.8	273.7	256.7	268.2	270.7	30.0	19.5	67.3	
프랑스	2,693.8	2,647.0	2,862.5	2,681.4	2,810.2	2,829.2	19.6	11.3	78.6	
독일	3,413.0	3,412.2	3,751.9	3,533.2	3,730.3	3,852.6	30.0	22.0	69.3	
그리스	329.9	299.6	288.8	249.5	242.2	237.6	15.2	7.7	81.5	
헝가리	129.4	129.6	139.4	126.8	133.4	137.1	30.4	21.9	66.0	
아일랜드	12.8	13.3	14.7	14.2	15.4	17.1	23.7	13.8	68.9	
이탈리아	2,336.6	2,184.4	2,378.8	2,220.0	2,321.1	2,459.0	26.4	21.9	72.4	
일본	2,186.2	2,126.7	2,278.1	2,075.2	2,136.9	2,144.3	24.4	15.8	73.7	
북유럽	50.1	52.1	59.0	56.3	60.1	-	12.9	5.9	86.9	
네덜란드	858.1	856.4	893.7	823.1	853.5	869.5	22.1	11.8	76.0	
노르웨이	386.4	428.5	498.2	509.7	522.3	500.1	39.1	8.1	59.2	
폴란드	436.5	476.7	524.4	496.2	526.1	548.0	32.9	17.5	64.1	
포르투갈	243.7	238.3	244.9	216.4	224.9	229.6	22.6	13.2	75.2	
슬로바키아	88.6	89.0	97.5	92.7	97.7	99.8	35.5	20.9	61.7	
스페인	1,499.1	1,431.7	1,494.5	1,355.7	1,393.0	1,404.3	26.0	13.3	71.4	
스웨덴	429.7	488.4	563.1	543.9	579.5	570.6	28.9	18.6	69.4	
스위스	539.5	581.2	696.3	666.1	685.4	-	26.3	19.2	73.0	
터키	614.6	731.2	774.8	788.9	823.2	799.5	26.4	17.4	64.2	
영국	2,309.0	2,407.9	2,592.0	2,614.9	2,678.2	2,941.9	20.6	10.2	78.7	

주: 1) 간접법, 전가가능·수도업 포함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3) 농업

국 가	농가인구 (천명, 14)	생산량 (천t, 13)	보리생산량 (천t, 13)	밀생산량 (천t, 13)	소 사육두수 (천두, 13)	폐지사육두수 (천두, 13)	비료소비량 (천t, 13)	농업용 기계 보유대수(천대, 10)	
								트랙터	예취탈곡기(콤바인)
합	2,577	5,632	90	27	3,342	9,912	459	264,834	81,004
나	1,087	10,758	183	812	4,065	9,685	1,087	-	-
시	309	-	10,237	37,530	12,215	12,879	4,052	-	-
군	7,720	180	594	3,357	32,403	16,202	1,810	-	-
구	2,301	8,613	4,683	57,967	89,300	64,775	20,028	-	-
오스트레일리아	459	1,161	7,472	22,856	29,291	2,098	2,352	-	-
뉴질랜드	188	-	416	448	10,182	298	864	-	-
오스트리아	124	-	734	1,598	1,956	2,983	141	-	-
벨기에	53	-	386	1,804	2,455	6,595	234	-	-
러시아	294	-	1,594	4,701	1,353	1,587	400	-	-
핀란드	65	-	3,950	4,139	1,615	12,076	276	-	-
프랑스	82	-	1,904	888	912	1,300	375	-	-
독일	475	82	10,316	38,614	19,096	13,488	2,574	-	-
그리스	557	-	10,344	25,019	12,587	27,690	2,416	-	-
터키	539	227	353	1,586	679	1,077	401	-	-
헝가리	277	10	1,071	5,096	760	2,989	482	-	-
아일랜드	11	-	-	-	68	26	20	-	-
아일랜드	135	-	1,663	545	6,903	1,552	559	-	-
러시아	704	1,339	873	7,277	6,092	8,662	881	-	-
룩셈부르크	3	-	42	91	194	88	11	-	-
네덜란드	191	-	206	1,331	3,999	12,212	240	-	-
이탈리아	82	-	480	199	850	848	154	-	-
폴란드	2,648	-	2,920	9,470	5,860	11,162	2,180	-	-
포르투갈	480	168	23	88	1,471	2,014	168	-	-
슬로바키아	178	-	446	1,684	471	631	156	-	-
스페인	848	852	10,058	7,603	5,697	25,495	1,749	-	-
인도네시아	103	-	1,940	1,869	1,497	1,399	219	-	-
러시아	136	-	165	480	1,563	1,488	79	-	-
싱가포르	7,607	900	7,900	22,050	13,917	3	2,336	-	-
영국	450	-	7,092	11,921	9,844	4,885	1,545	-	-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주: 셀, 보리 생산량은 조곡기준인 농가인구는 농업종사자수를 포함.

(4) 제조업

구	가	자 동 차 생 산 량 (1,000개)							국가별	음식료품 및 담배생산(12)				담배(백만개)
		10	11	12	13	14	15	16		필가투(천)	백주(십만)	청양음료(십만)	담배(백만개)	
합	4,272	4,657	4,562	4,521	4,525	4,525	4,525	국	1,942	-	25,132	-	-	
일	9,629	8,399	9,943	9,630	9,775	9,775	9,775	본	4,668	26,904	156,959	-	-	
캐	2,068	2,135	2,463	2,394	2,394	2,394	2,394	나	2,200	-	-	-	-	
백	2,345	2,681	3,002	3,055	3,368	3,368	3,368	시	3,224	86,237	195,020	36,161	-	
미	7,743	8,646	10,336	11,066	11,661	11,661	11,661	국	19,067	-	-	-	-	
오스트레일리아	239	224	210	216	175	175	175	오스트레일리아	-	-	-	-	-	
뉴질랜드	-	-	-	-	-	-	-	뉴질랜드	256	-	-	-	-	
오스트리아	105	153	138	171	154	154	154	오스트리아	615	-	-	-	-	
벨기에	555	562	542	518	516	516	516	벨기에	1,125	-	-	-	-	
체코	1,076	1,200	1,179	1,133	1,251	1,251	1,251	체코	755	18,024	-	-	-	
핀란드	-	-	-	-	-	-	-	핀란드	243	6,080	6,984	0	-	
프랑스	6	3	5	15	45	45	45	프랑스	222	4,154	4,083	-	-	
독일	2,229	2,278	2,010	1,783	1,851	1,851	1,851	독일	4,445	-	-	-	-	
그리스	5,906	6,311	5,797	5,877	6,051	6,051	6,051	그리스	5,040	86,083	122,317	206,175	-	
헝가리	168	203	218	222	227	227	227	헝가리	814	6,118	9,464	-	-	
아일랜드	-	-	-	-	-	-	-	아일랜드	-	-	440	-	-	
이탈리아	836	790	672	658	698	698	698	이탈리아	3,884	-	-	-	-	
룩셈부르크	-	-	-	-	-	-	-	룩셈부르크	-	-	-	-	-	
네덜란드	94	73	66	67	95	95	95	네덜란드	648	24,959	23,749	-	-	
노르웨이	869	837	656	590	594	594	594	노르웨이	2,156	39,702	40,299	84,712	-	
폴란드	159	192	164	154	162	162	162	폴란드	680	-	-	-	-	
슬로바키아	351	335	776	906	993	993	993	슬로바키아	211	2,864	5,641	-	-	
스페인	2,388	2,354	1,979	2,163	2,403	2,403	2,403	스페인	3,053	31,796	58,295	-	-	
스웨덴	217	189	163	161	154	154	154	스웨덴	450	4,471	7,719	0	-	
스위스	-	-	-	-	-	-	-	스위스	375	-	-	-	-	
터키	1,098	1,189	1,073	1,126	1,170	1,170	1,170	터키	7,697	-	36,605	-	-	
영국	1,393	1,464	1,576	1,597	1,599	1,599	1,599	영국	4,222	43,583	71,471	40,976	-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4-2. 주요국별 인구

(단위 : 만명)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이탈리아
70	3,224	20,488	2,132	5,542	5,077	6,071	1,251	1,468	5,366
75	3,528	21,597	2,273	5,614	5,270	6,183	1,362	1,615	5,544
80	3,812	22,776	2,406	5,625	5,388	6,157	1,469	1,760	5,643
85	4,081	23,928	2,520	5,681	5,517	6,102	1,578	1,910	5,714
90	4,287	25,285	2,766	5,711	5,694	7,896	1,710	2,040	5,701
95	4,509	26,628	2,930	5,790	5,822	8,161	1,813	2,136	5,712
00	4,701	28,290	3,070	5,887	5,939	8,190	1,911	2,228	5,715
01	4,736	28,580	3,099	5,908	5,971	8,181	1,931	2,241	5,736
02	4,762	28,847	3,129	5,930	6,008	8,170	1,951	2,252	5,766
03	4,786	29,101	3,160	5,955	6,047	8,157	1,974	2,261	5,800
04	4,804	29,353	3,192	5,985	6,086	8,142	1,999	2,269	5,835
05	4,814	29,614	3,226	6,021	6,124	8,125	2,027	2,277	5,866
06	4,837	29,886	3,261	6,065	6,161	8,106	2,061	2,288	5,892
07	4,860	30,166	3,298	6,115	6,197	8,086	2,098	2,296	5,914
08	4,895	30,447	3,336	6,169	6,231	8,067	2,137	2,304	5,932
09	4,918	30,723	3,375	6,222	6,264	8,052	2,177	2,312	5,947
10	4,941	30,988	3,413	6,272	6,296	8,044	2,216	2,316	5,959
11	4,978	31,239	3,450	6,317	6,327	8,043	2,254	2,323	5,968
12	5,000	31,480	3,487	6,357	6,356	8,048	2,291	2,332	5,974
13	5,022	31,714	3,523	6,396	6,385	8,057	2,327	2,337	5,977
14	5,042	31,945	3,559	6,433	6,412	8,065	2,362	2,342	5,979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물감」

주 : 한국은 국내통계, 독일의 89년까지는 서독수치임

4-3. 주요국별 국토이용 현황

(단위 : 1,000ha)

(2011)	국토면적	유지면적	농 경 지		비농경지
			경 지	과수원	
한	10,015	9,710	1,492	206	8,012
중	960,000	932,749	111,599	14,716	806,434
인	328,726	297,319	157,350	12,300	127,669
인도	190,457	181,157	23,500	20,000	137,657
일본	37,796	36,450	4,254	307	31,889
발레이	33,080	32,855	1,800	5,785	25,270
미안	67,659	65,329	10,876	1,464	53,079
필리	30,000	29,817	5,400	5,200	19,217
싱가	71	70	1	0	69
태	51,312	51,089	15,760	4,500	30,829
터	78,356	76,963	20,539	3,091	53,333
캐	998,467	909,351	42,968	4,926	861,457
백	196,438	194,395	25,491	2,675	166,229
미	983,151	914,742	160,163	2,600	751,980
아	278,040	273,669	38,048	1,000	234,621
브	851,488	845,942	71,930	7,100	766,912
오	8,388	8,241	1,363	65	6,813
스	4,309	4,243	2,499	4	1,740
프	54,919	54,766	18,370	1,020	35,376
독	35,713	34,857	11,875	200	22,782
이	30,134	29,414	6,800	2,521	20,093
네	4,154	3,373	1,042	36	2,294
영	24,361	24,193	6,062	45	18,086
오	774,122	768,230	47,678	400	720,152
뉴	26,771	26,331	471	71	25,789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4-4. 주요국별 농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2014)	인 구		경제활동인구		비 중	
	총인구	농가인구	계	년도		농림어업
한	50,424	2,577	26,536	(14)	1,452	5.5
중국(대만포함)	1,392,855	507,577	786,475	(03)	510,573	64.9
인도	1,295,292	276,130	469,518	(03)	273,515	58.3
인도네시아	254,455	50,013	108,465	(03)	50,254	46.3
일본	126,795	1,087	65,770	(13)	2,330	3.5
미얀마	53,437	21,122	26,954	(03)	18,671	69.3
필리핀	99,139	13,719	37,057	(08)	12,030	32.5
싱가포르	5,507	1	3,631	(14)	-	-
태국	67,726	17,521	38,345	(08)	16,067	41.9
캐나다	35,588	309	18,122	(08)	403	2.2
멕시코	125,386	7,720	45,111	(08)	5,759	12.8
미국	319,449	2,301	153,889	(10)	2,206	1.4
아르헨티나	42,980	1,369	11,687	(12)	478	4.1
브라질	206,078	9,930	90,962	(04)	12,404	13.6
덴마크	5,647	65	2,906	(14)	67	2.3
프랑스	64,121	475	28,589	(14)	714	2.5
독일	80,646	557	41,969	(14)	569	1.4
이탈리아	59,789	704	25,515	(14)	812	3.2
네덜란드	16,868	191	8,927	(14)	178	2.0
영국	64,331	450	32,637	(14)	382	1.2
오스트레일리아	23,622	459	10,928	(07)	370	3.4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4-5. 주요국별 국민소득

(1) 국민총소득

(단위: 억 달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태만	싱가포르
70	81	2,033	9,824	838	1,249	1,409	1,846	365	57	19
75	209	4,992	15,981	1,661	2,372	3,429	4,177	916	154	56
80	606	10,589	27,421	2,583	5,387	6,676	8,128	1,486	414	113
85	911	13,480	40,536	3,396	4,662	5,202	6,231	1,561	631	183
90	279	3,124	5,923	571	1,033	1,281	1,793	301	171	39
95	554	5,378	7,602	581	1,208	1,617	2,585	355	283	89
00	558	4,791	10,421	720	1,558	1,394	1,934	403	336	95
01	530	4,229	10,789	712	1,543	1,407	1,931	368	306	88
02	607	4,045	11,099	733	1,700	1,516	2,052	384	316	89
03	678	4,374	11,591	866	1,975	1,871	2,481	453	328	94
04	764	4,743	12,373	996	2,338	2,155	2,837	595	360	106
05	891	4,679	13,222	1,140	2,468	2,242	2,886	668	385	119
06	1,007	4,481	14,141	1,290	2,609	2,372	3,055	718	398	143
07	1,119	4,504	14,586	1,436	2,991	2,719	3,493	815	418	174
08	1,002	5,012	14,791	1,519	2,796	2,986	3,793	1,012	427	184
09	900	5,175	14,495	1,347	2,313	2,742	3,495	894	405	184
10	1,095	5,643	15,121	1,583	2,434	2,701	3,484	1,097	460	235
11	1,210	6,090	15,803	1,756	2,622	2,928	3,848	1,332	499	269
12	1,235	6,143	16,600	1,801	2,607	2,729	3,626	1,488	511	282
13	1,315	5,100	17,204	1,812	2,654	2,855	3,826	1,521	526	293
14	1,421	4,790	17,813	1,759	2,884	2,893	3,956	1,420	545	299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주: 독일의 90년까지는 서독 수치임

(2) 1인당 GNI

	(단위: US 달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싱가포르
75	592	4,475	7,400	7,309	4,242	6,496	6,756	6,791	964	2,490
80	1,598	9,065	12,039	10,747	9,564	12,390	13,207	10,455	2,344	4,688
85	2,229	11,155	16,997	13,496	8,045	9,430	10,220	10,263	3,297	7,391
90	6,505	25,551	23,425	20,626	18,092	22,493	22,708	17,575	8,216	12,768
95	12,282	43,200	28,550	19,835	20,855	27,777	31,678	19,605	13,129	25,417
00	11,865	38,113	36,838	23,448	26,459	23,474	23,614	21,092	14,941	24,311
01	11,180	33,570	37,749	22,971	26,118	23,564	23,605	19,052	13,448	21,361
02	12,735	32,039	38,475	23,436	28,672	25,228	25,114	19,654	13,750	21,607
03	14,161	34,572	39,832	27,399	33,159	30,948	30,420	22,969	14,120	22,007
04	15,898	37,410	42,151	31,213	39,063	35,410	34,842	29,792	15,388	24,262
05	18,508	36,844	44,647	35,348	40,988	36,612	35,523	32,927	16,532	26,466
06	20,823	35,246	47,316	39,551	43,025	38,497	37,690	34,851	17,026	30,888
07	23,033	35,392	48,352	43,549	48,915	43,871	43,199	38,872	17,814	36,827
08	20,463	39,363	48,580	45,534	45,330	47,920	47,019	47,354	18,131	37,848
09	18,303	40,638	47,178	39,904	37,173	43,772	43,407	41,061	16,988	36,957
10	22,170	44,323	48,797	46,378	38,815	42,900	43,314	49,492	19,278	46,284
11	24,302	47,854	50,587	50,901	41,511	46,286	47,851	59,100	20,939	51,837
12	24,696	48,318	52,731	51,647	41,002	42,930	45,058	64,933	21,308	53,110
13	26,179	40,165	54,249	51,441	41,490	44,720	47,494	65,365	21,902	54,207
14	28,180	37,781	55,761	49,419	44,832	45,110	49,055	60,116	22,635	54,220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주: GNI를 추계단위로 나누어 계산, 독일: 1990년도 이전은 OECD 추정치

(3) 경제성장률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싱가포르 ¹⁾
70	-	9.5	-0.3	2.6	2.4	5.7	5.0	5.6	11.3	5.3
75	5.9	2.9	-0.8	2.6	-0.7	-0.3	-1.2	2.2	4.2	-2.7
80	-1.5	3.5	-0.5	1.5	-2.2	1.6	1.0	2.3	7.3	4.1
85	6.8	5.1	3.2	4.8	3.8	1.9	1.8	4.5	5.0	2.6
90	9.8	5.6	1.9	0.1	0.5	2.9	5.3	3.5	5.7	10.0
95	9.6	1.9	2.7	2.7	2.5	2.1	1.7	3.9	6.5	7.0
00	8.9	2.3	4.1	5.1	3.8	3.9	3.0	3.9	6.4	8.9
01	4.5	0.4	1.0	1.7	2.7	2.0	1.7	1.9	-1.3	-1.0
02	7.4	0.3	1.8	2.8	2.5	1.1	0.0	3.9	5.6	4.2
03	2.9	1.7	2.8	1.9	4.3	0.8	-0.7	3.1	4.1	4.4
04	4.9	2.4	3.8	3.1	2.5	2.8	1.2	4.2	6.5	9.5
05	3.9	1.3	3.3	3.2	2.8	1.6	0.7	3.2	5.4	7.5
06	5.2	1.7	2.7	2.6	3.0	2.4	3.7	3.0	5.6	8.9
07	5.5	2.2	1.8	2.0	2.6	2.4	3.3	3.8	6.5	9.1
08	2.8	-1.0	-0.3	1.2	-0.3	0.2	1.1	3.7	0.7	1.8
09	0.7	-5.5	-2.8	-2.7	-4.3	-2.9	-5.6	1.7	-1.6	-0.6
10	6.5	4.7	2.5	3.4	1.9	2.0	4.1	2.0	10.6	15.2
11	3.7	-0.5	1.6	3.0	1.6	2.1	3.6	2.3	3.8	6.2
12	2.3	1.8	2.3	1.9	0.7	0.2	0.4	3.7	2.1	3.4
13	2.9	1.6	2.2	2.0	1.7	0.7	0.1	2.5	2.2	4.4
14	3.3	-0.1	2.4	2.5	2.6	0.2	1.6	2.5	3.8	2.9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주: 1) 94년 이전은 한국은행 자료, 기혼년기준 GDP기준

(4) 수출입실적

○ 수출

	(단위 : 억 달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싱가폴			
80	175	1,304	2,256	677	1,101	1,160	1,929	220	198	194			
85	303	1,772	2,188	908	1,014	1,017	1,839	228	307	228			
90	650	2,876	3,936	1,276	1,851	2,166	4,101	398	674	527			
95	1,251	4,431	5,847	1,922	2,420	2,867	5,238	531	1,133	1,183			
00	1,723	4,793	7,819	2,766	2,832	2,987	5,501	639	1,520	1,378			
08	4,220	7,820	12,874	4,564	4,683	6,089	14,514	1,873	2,556	3,382			
09	3,635	5,807	10,560	3,140	3,565	4,761	11,207	1,540	2,037	2,698			
10	4,664	7,698	12,785	3,875	4,101	5,170	12,616	2,123	2,746	3,519			
11	5,552	8,226	14,803	4,521	4,782	5,853	14,770	2,717	3,083	4,095			
12	5,479	7,986	15,457	4,548	4,746	5,585	14,084	2,567	3,012	4,084			
13	5,596	7,146	15,791	4,584	4,769	5,682	14,516	2,530	3,054	4,103			
14	5,727	6,902	16,234	4,700	4,776	5,674	15,055	2,412	3,137	4,098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 수입

	(단위 : 억달러)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대만	싱가폴			
80	223	1,413	2,570	628	1,156	1,349	1,880	225	198	240			
85	311	1,305	3,525	811	1,095	1,077	1,585	259	201	263			
90	698	2,354	5,170	1,232	2,244	2,344	3,462	420	548	609			
95	1,351	3,359	7,709	1,680	2,652	2,814	4,643	613	1,040	1,245			
00	1,605	3,795	12,593	2,448	3,335	3,108	4,954	715	1,407	1,345			
08	4,353	7,626	21,695	4,190	6,441	7,158	11,867	2,003	2,404	3,198			
09	3,231	5,505	16,053	3,309	4,860	5,605	9,262	1,655	1,744	2,458			
10	4,252	6,924	19,692	4,039	5,627	6,087	10,562	2,016	2,512	3,108			
11	5,244	8,541	22,659	4,648	6,386	7,129	12,562	2,437	2,814	3,658			
12	5,196	8,856	23,365	4,763	6,465	6,671	11,646	2,609	2,705	3,797			
13	5,156	8,324	23,291	4,758	6,454	6,723	11,928	2,421	2,699	3,730			
14	5,255	8,119	24,126	4,799	6,633	6,621	12,180	2,369	2,740	3,662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참고자료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17년도)**

참고자료 3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장 김철 사무관 신동원	044-201-1581 044-201-1586
각 시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담당과	지자체별 상이	지자체별 상이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농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지역발전체계(RIS) 구축,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지역 R&D 기반 구축
 - 농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농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촌 체험·휴양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제5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 제31조, 제35조, 제38조
- 「농어촌정비법」 제73조, 제74조, 제77조, 78조
 - * 시·군·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농어촌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합 계	2,138,010	315,624	313,442	312,516	계속
국고보조	1,069,005	157,812	156,721	156,258	계속
지방비· 자부담	1,059,005	157,812	156,721	156,258	계속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 자율사업(포괄보조)으로 시·도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18년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II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수도권 지역 시·군·구 제외(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3. 지원대상

- 농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농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보육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농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복합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역 농업 생산·유통 혁신 및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축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 및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지원
 -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및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의2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다만, 농업법인 등에 속한 농가가 조직화되어 계통·공동출하 방식으로 유통하는 경우로서 시·도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조성,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은 예산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다만, 전년도에 사전절차 이행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가능)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보조로 취득된 재산이 아닌 기존 제조·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매입과 판촉·홍보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임차료는 제외),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여러 1·2·3차 개별 경영체가 공동출자, 참여 등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보조율 25%로 지원(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
- 차량(탐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보조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지원기준 :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 결정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지원사업(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정액지원
 - 농촌테마공원조성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국비 25%로, 차량(탐차 등)·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로 지원
- 사업기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생산·유통·제조·가공시설 설치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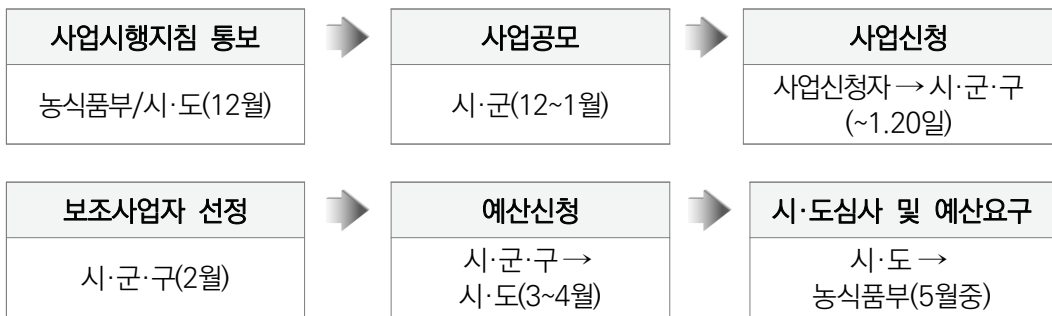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등은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 참조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될 경우에는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가. 사업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사업 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호서식에 의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구가 따로 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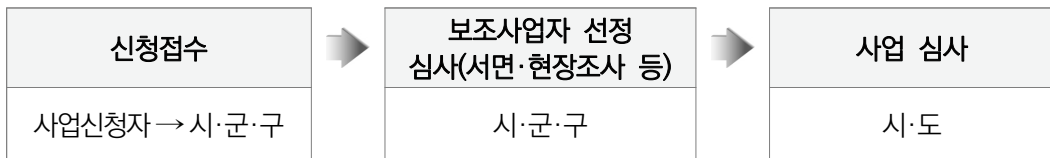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구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신청(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신청은 자제)

※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5월중)
 -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체 심의 등을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시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사업분야별 심의위원을 차별화하여야 함
 - * 전문가 : 대학 및 연구소 소속 관련 전문가, 경영·유통 분야 전문가 등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 기간 10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로 가공업체 등을 선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지역 내 농축산물(주원료) 매입실적,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농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는 사업 신청시 성과지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우수 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 보조사업계획에는 GAP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우선 선정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준비가 충실한 자와 6차산업 인증 사업자는 선정시 우대
-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등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에 선정된 시군의 특화품목과 연계 추진코자 할 경우 선정시 우대

〈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후보군(77개소)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개 시군 6개 품목	7개 시군 10개 품목	7개 시군 7개 품목	10개 시군 13개 품목	10개 시군 11개 품목	8개 시군 10개 품목	6개 시군 9개 품목	5개 시군 8개 품목	2개 시군 3개 품목
·여주(쌀) ·김포(새싹인삼+가공) ·이천(쌀밥) ·평택(쌀) ·파주(산머루) ·양평(쌀가공식품)	·횡성(한우) ·평창(약콩, 배추) ·양구(사래기) ·강릉(산채) ·홍천(잔인삼, 한우) ·영월(장류) ·양양(떡)	·충주(당노 바이오) ·영동(포도) ·증평(인삼) ·옥천(한우) ·괴산(친환경잡곡) ·청주(사슴) ·음성(들깨)	·예산(사과) ·당진(쌀) ·공주(일밤) ·보령(돼지) ·서천(소곡주) ·논산(장류, 딸기) ·아산(쌀) ·천안(호두과자) ·금산(깻잎, 흑삼) ·청양(구기자, 맥문동)	·군산(흰찰쌀 보리) ·익산(과채류) ·정읍(귀리) ·완주(로컬푸드) ·진안(로컬푸드) ·장수(레드푸드) ·임실(치즈, 로컬푸드) ·순창(장류) ·고창(복분자) ·부안(양파)	·여수(썩) ·광양(매실) ·고흥(유자) ·영광(쌀모시, 찰보리) ·보성(녹차) ·강진(장류) ·장성(컬러푸드, 편백) ·진도(울금)	·경북(사과) ·안동(마, 콩) ·문경(오미자) ·의성(미늘, 한우) ·성주(참외) ·상주(쌀, 오이)	·남해(미늘) ·김해(산딸기) ·산청(쌀, 양잠, 딸기) ·함양(산양삼) ·하동(매실, 녹차)	·제주(감귤, 블랙푸드) ·서귀포(감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특화사업의 경우는 신규사업 선정시 우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 기업은 선정시 가점부여 등 우선선정기회 부여

- 친환경 인증농가나 단체는 가점부여 등 선정시 우대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다만,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과거 지원한 사업에 대한 성과·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할 수 있음
-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사업은 「6차산업 지원센터」 등 6차 산업 지원기관을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의 수립

-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시·군·구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나. 예산 내역사업의 변경

- 시·도별 내역사업(붙임 유형별 가이드라인상의 7개 사업유형 중 감액변경되는 내역사업 기준) 예산액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내역변경 내용과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각 시·도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 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세부내역사업별 자금 소요 집계표와 함께 자금배정 요구, 서식 별도 통보)

나.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 * 사업완료 전이라도 연간 사업량의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지급 가능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보조금교부조건 부여사항을 포함하여 수급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 조건을 부여

다.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결정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제조·가공분야 보조사업자는 선정된 후 관련분야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 보조사업자 선정 전에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교육이수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으로 부여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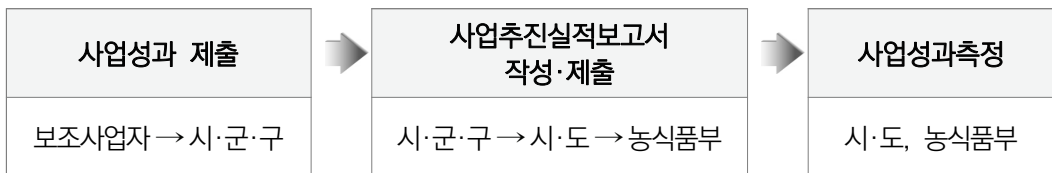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내용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양도·대여·담보제공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처분받을 수 있음

6. 성과측정단계

- 일자리 창출, 농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방문객 등의 성과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지역발전위원회

-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지자체 평가 실시
 - 시·도 자체평가 실시 → 지역위 평가
 - 평가시기 : 1~4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

나. 환 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또는 사업별로 인센티브(예산 추가지원) 및 페널티(예산 삭감) 등 부여
- 모니터링,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IV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언제나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사업 신청(사업예정 전년도 1.20일까지)
 -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투자되는 토목·건축사업의 경우 '17.3.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업성을 자체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 신청
 -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3. 기타 유의사항

- 농축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차, 3차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은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참고자료 4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참고자료 4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

I 사업개요 및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농촌테마공원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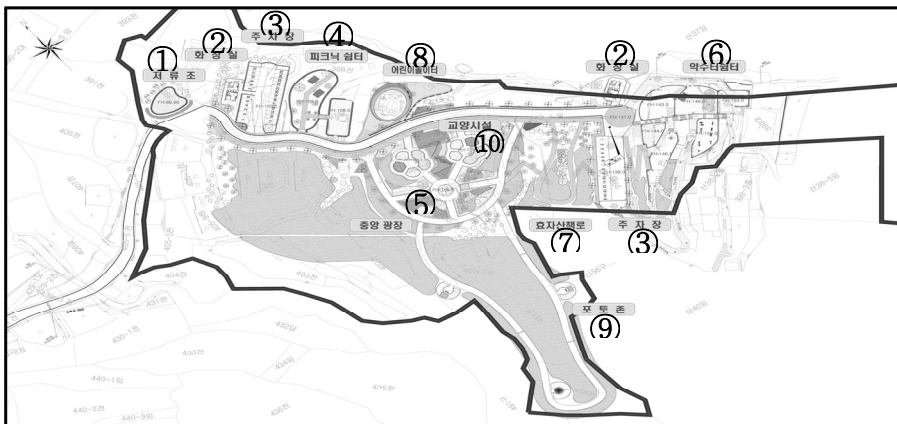
- 농촌테마공원이란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교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원시설

※ ‘농촌자원’이라 함은 도시와 구별되는 **농업·농촌의 유·무형 자원**, 즉 농촌의 **자연 또는 농업시설** (경작지, 저수지 등), 독특한 농촌주거 또는 문화, 생활방식으로 형성된 **경관자원**, 지역 고유의 농업생산 및 가공, 서비스 등 **1·2·3차 산업자원**, 농촌의 다양한 인문·역사, 스토리 등을 포함한 **문화자원**, 농촌의 경제 및 생활공동체 중심의 사회문화활동 등 농촌 **사회자원**을 말함

나. 사업의 유형

- ① **(주민중심형)** 인접 읍면 또는 해당 시군 주민이 주 이용대상으로, 지역주민 후생증대를 위한 공공 편의·휴식시설 위주로 구성
 - 주로 주민생활권 인근에 조성되어 주민 휴식·복지·공동체 공간 또는 직거래장터, 지역 사회단체 모임·행사나 마을축제 공간 등으로 활용
 - * 공원 관리·운영비용의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 행정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 주민중심형 사례: 창녕 함박산지구('18년 개장예정) >



② **(관광중심형)** 대도시나 인접 시군 등 외부 관광객이 주 이용대상으로,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체험·위락·휴양시설 위주로 구성

-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화 되거나 인근 체험마을관광지와 연계되어 어린이·청소년 교육 체험공간 또는 관광휴양공간으로 기능

* 입장료나 학습관·체험프로그램 이용비, 시설대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공원 관리·운영비용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경우가 다수

〈 관광중심형 사례: 안성 팜랜드('12년 개장) 〉

안성 팜랜드

식당가
 국내 우수농축산물 맛보는 기회
 * Farm 편의점(ATM/입실 화이피자)
 * 목장식당
 * 펠리식당
 * 피크닉사이트
 * 푸드하우스
 * 스낵하우스
 * 카페점 (헛도그, 음료)
 * 푸드포트(전통음식)

승마센터
 푸른 자연 속에서 승마를!
 * 승마공원(아와수영장)
 * 승마센터/공급하우스
 * 실레수막방
 * 매구간
 * 구비장

체험목장
 가족을 만지며 교감하는 가족체험
 * 야외공연장
 * 소채원
 * 가족이키 데미
 * 서프이체널
 * 가족체험장
 * 가족역이벤트소
 * 연와마을
 * 만일꽃농장
 * 초동약 숲
 * 관상조류마을
 * 토끼방목장
 * 전통생활전시관
 * 원더미일(전통놀이)
 * 물레방아살터
 * 야외승마장
 * 체험마당
 * 활보기체험장(초창농업)

중앙광장
 독일풍 건물양식의 복합문화공간
 * 맥아티틀
 * 낙농체험관(치즈/피자체험)
 * 기념품샵
 * 그림책관
 * 방방
 * 어린이놀이터
 * 캐릭터광장
 * 동화마을연못
 * 역사관(인포센터)
 * 중앙광장 매표소
 * 수유실/기저귀교환실
 * 놀이기구
 * 소공방
 * 도예타자 합승장
 * 이색자전거 대여소

그림같은초원
 드넓은 목초지에서 여유를!
 * 체험초지(연날라기)
 * 바람개비연막
 * 그림같은초원
 * 드디어광양명(백단해당)
 * 초지연가길
 * 다목적광장
 * 갈대원터
 * 물레공원(거위연못)
 * 드디어광양제(신사저용목)

WELCOME!

다. 사업의 목적

- 농업·농촌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보전·홍보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 농업 생산 및 가공, 서비스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 및 다각화 실현
- 농촌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내 소득창출 및 고용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라. 추진방향

- 지역의 경관자원과 문화·사회자원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 조성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 기반시설 및 체험·휴양시설 등 시설 조성 위주로 지원
-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농·특산물의 생산·가공·판매·서비스 등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조성

마.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 산업 육성),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농어촌정비법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 계획의 수립)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2. 주요내용**가.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자는 기본(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 등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사업자,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촌지역
- 지원 대상지구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승인받은 지구
 - ※ 자치도·자치시 및 시·군·구당 1개 지구만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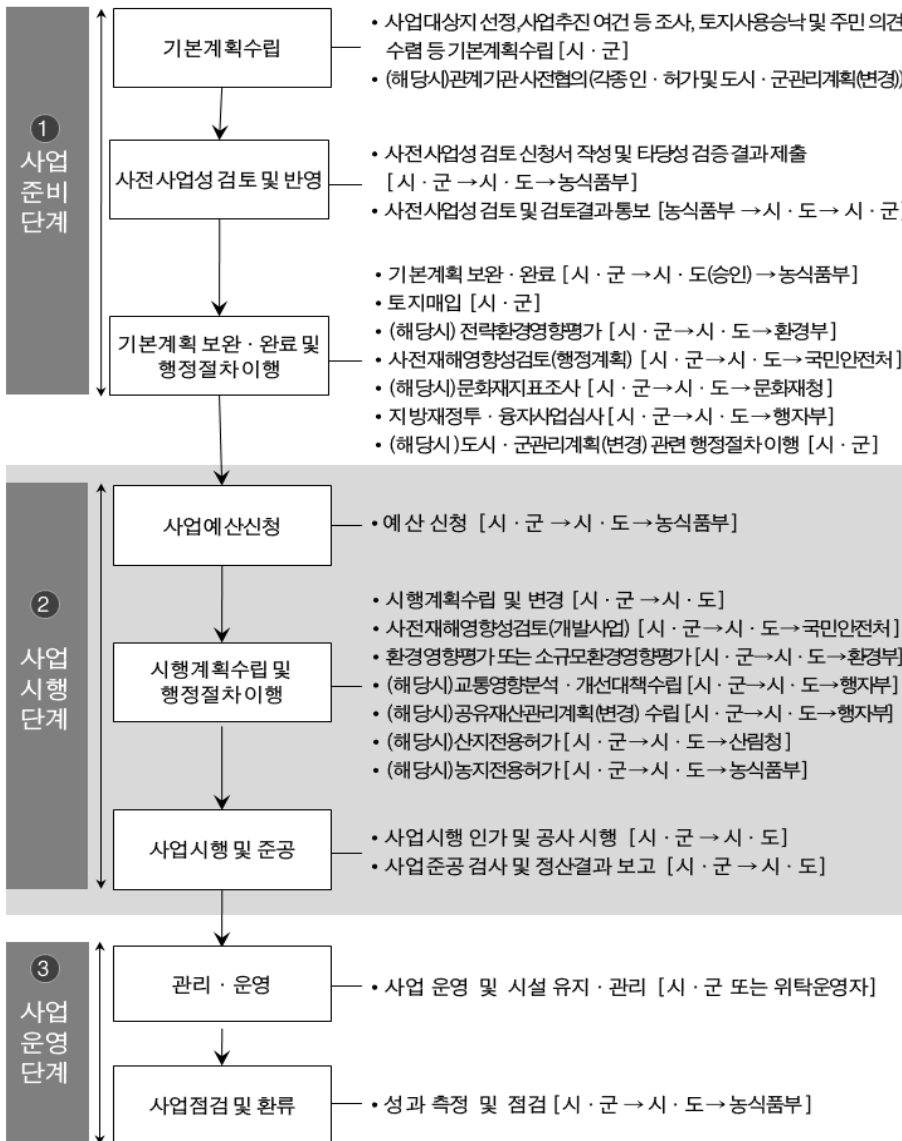
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은 도입시설의 조성,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업부지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위탁 시설 조성비는 지원 불가 <붙임 1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의 지원대상 배제는 '18년 신규사업 지구부터 적용
 - 운영프로그램 개발 : 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관련 비용
 - ※ 운영프로그램 개발비는 보조사업비(국비, 지방비)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원기반시설 : 도로(진입도로, 대상지 내 도로),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관리지원시설(관리사무소, 대피 시설 등), 경관시설 등
 - 편의시설 :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 ※ 위탁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 시설,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음식점, 카페 등), 숙박시설(펜션, 방갈로, 야영장 등)은 민자 또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자체자금(지방비)으로 추진
 - ※ 지원제외 대상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단, '18년 신규사업부터는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도 지원 제외)

마. 지원형태 및 기준

-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자금배정 이후 시행계획수립 시부터 3~5년간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 단, 지방비 및 민간자본은 추가부담 가능

바. 사업추진절차



사. 사업추진 총괄 체크리스트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총괄 체크리스트 >

구 분		체크리스트 목록	
① 사업 준비 단계	기본계획 수립	개발여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현황 ○ 사업대상지 특성 분석
		개발기본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비전 및 목표설정 ○ 조성테마 선정 ○ 공간구상
		시설(공간) 조성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이용계획 ○ 동선계획 ○ 조경·경관계획 ○ 도입시설계획 ○ 종합계획도
		관리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방식 선정 ○ 관리운영 추진주체 구성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계획
		투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 재원조달계획 ○ 민자유치계획(필요시) ○ 사업타당성 분석 ○ 파급효과 분석
		기타 첨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각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 주민설명회 등 의사결정 자료 ○ 기타 기본계획수립 시 근거 서류 및 자료 ○ (해당시) 각종 인·허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협의결과
	사전사업성 검토	입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확보 여부 및 가능성 ○ 법적 제한사항 여부 ○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 장소적 입지의 타당성
사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주체(시장·군수) 의지 ○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 ○ 지역주민의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구 분		체크리스트 목록		
		투자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달성을 위한 규모 적정성 ○ 지방비 부담 능력 ○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합리성 	
		사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대비 산출효과분석 및 투자대비 편익분석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민원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발생 가능성 여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지원제외대상 사업인지 여부 ○ 예산신청 불가내용 포함여부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여부 	
	기본계획 보완·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기본계획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사항 	
		부지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매입 방법 ○ 토지매입 완료 여부 	
		행정절차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이행여부 ○ (해당시) 문화재지표조사 이행여부 ○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이행여부 ○ (해당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행정절차 이행여부 	
	② 사업 시행 단계	예산신청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 사업비 집행 비율 점검 등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주민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회, 공청회 등 이행여부 ○ 전문가 자문여부
실시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설계보고서 ○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 ○ 설계도서 ○ 설계예산서 ○ 각종 인·허가 자료 및 협의자료 	
관리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관리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주체 선정여부 - 운영활성화 방안 수립 여부 	

구 분		체크리스트 목록		
	행정절차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이행여부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 (해당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이행여부 ○ (해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립 이행여부 ○ (해당시) 산지전용허가 이행여부 ○ (해당시) 농지전용허가 이행여부 	
		사업시행 및 준공	공사추진현황	○ 공정률 점검 등
			인허가	○ 각종 인허가 승인여부
③ 사업 운영 단계	사업점검 및 환류	준공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준공현황 점검(준공검사) ○ 운영준비사항 점검 	
		관리·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체제 확정여부 ○ 시설 유지관리 및 활용사항 	
		추진상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종별 추진상황 ○ 사업 부진사유(애로사항) 및 대책 	
		운영상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실적 및 운영효과 ○ 향후 시설 유지 및 운영활성화 방안 	

II 사업준비단계

1. 기본계획수립

- 기본계획은 사업의 기본방침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 여건 파악, 부지조건, 연계 및 영향 요소 등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정리하여 실시설계 추진 전 기본적인 방향을 확정하는 계획

시장·군수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다음 <표 1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군 자체수립)

- 기본계획수립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 작성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획에 반영

< 표 1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

<p>① 개발여건분석</p> <p>1.1 지역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현황 - 인문·사회현황 - 농업·농촌현황 - 관광현황 - 자연현황 <p>1.2 사업대상지 특성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 사업대상지의 활용 여건 - 개발여건 분석 종합 	<p>② 개발기본구상</p> <p>2.1 개발비전 및 목표설정</p> <p>2.2 조성테마 선정</p> <p>2.3 공간구상</p>
<p>③ 시설(공간) 조성계획</p> <p>3.1 토지이용계획</p> <p>3.2 동선계획</p> <p>3.3 조경·경관계획</p> <p>3.4 도입시설계획</p> <p>3.5 종합계획도</p>	<p>④ 관리운영계획</p> <p>4.1 관리운영방식 선정</p> <p>4.2 관리운영 추진주체 구성</p> <p>4.3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p> <p>4.4 시설물 관리운영계획</p> <p>4.5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계획</p>
<p>⑤ 투자계획</p> <p>5.1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p> <p>5.2 자원조달계획</p> <p>5.3 민자유치계획(필요시)</p> <p>5.4 사업타당성 분석</p> <p>5.5 파급효과 분석</p>	<p>⑥ 기타 첨부사항</p> <p>6.1 토지매각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p> <p>6.2 주민설명회 등 의사결정과정 관련 자료</p> <p>6.3 기타 기본계획수립 시 근거가 되는 자료</p> <p>6.4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자료</p>

기본계획수립 세부사항

Ⅰ 개발여건분석

1.1 지역현황

- 지역현황 작성 시 시·도, 시·군, 읍·면 단위로 기술
- 입지현황
 - 위치, 면적, 행정구역, 접근체계 등 분석
 - 입지는 광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
- 인문·사회현황
 - 인문현황, 지역경제, 공간구조 등 분석
 - 인문현황은 인구 규모, 인구 구조, 인구 증감 등 기술
 - 지역경제는 산업구조, 재정자립도 등 기술
 - 공간구조는 정주체계(대상지와 마을과의 연계성), 토지이용, 교통망 등 기술
- 농업·농촌현황
 - 농가, 주요 재배작목, 지역특산물 및 농산업 관련 현황분석
 - 농촌체험마을, 농어촌휴양단지 등 농촌관광 관련 현황분석
- 관광현황
 - 관광자원, 관광개발, 지역축제, 관광객추이 등 분석
- 자연현황
 - 주요 산림, 하천, 저수지 등 환경보전 관련 용도지역의 분포현황 분석

1.2 사업대상지 특성 분석

- 사업대상지 선정요건
 - 개발 가용지의 위치, 면적 등 일반현황 작성
 - 표고, 경사도, 향, 식생 등 지형적 여건 분석
 - ※ 대상지 지형 및 토질 여건은 개발시 기반조성 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검토
 - 접근성,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확보 용이성 등 인문적 여건 분석
 - 교통, 접근성, 경관 등 물리적 여건 분석
 - 최종적인 사업대상지의 구역 제시

- 사업대상지의 활용 여건
 - 사업대상지 내 또는 주변지역의 주요 자원 분포현황 작성
 - 토지이용, 토지소유현황 등을 작성
 - 상위계획 중 지역이나 사업과 관련된 개발계획 검토
 - 개발관련 법규 검토를 통해 관련 시설 등 설치 가능 여부 검토
 - ※ 검토해야 할 개발관련 계획 및 법규 : 도시·군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한 제약요인 등 검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국토이용계획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 개발여건분석 종합
 - 개발여건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과 대상지가 지닌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
 - ※ 개발여건분석 부분에서 위치도, 현황분석도 등의 도면 작성 시 사용하는 도면축척은 대상지역에 따라 1/50,000, 1/25,000 중 선별
 - ※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

② 개발기본구상

2.1 개발비전 및 목표설정

- 개발여건분석을 토대로 해당 농촌테마공원이 단기적·중장기적 관점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방향 설정
- 개발비전은 실현 가능한 농촌테마공원의 미래상을 제시
- 개발비전을 바탕으로 달성코자하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되, 사업지구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정성적 목표와 이를 계량화한 발전지표를 제시하는 정량적 목표로 구분하여 작성

2.2 조성테마 선정

- 지역 내 농촌관광의 트렌드 및 방문객 요구, 타 지역과의 경쟁우위 등 분석
- 사업대상지의 향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원을 선별하고 이를 활용한 테마를 선정
- 시설물 디자인, 공간 구현, 체험프로그램 등 테마구현 방식 기술

2.3 공간구상

- 조성테마를 비롯하여 시설의 유사성, 차별성, 연계성, 접근성 등을 분석한 후 사업 지구 내 기능 및 역할에 따른 공간구획(zoning)을 설정
- 공간구상은 실제 부지 도면 위에 공간의 상호관계 및 구역을 표현

③ 시설(공간) 조성계획

3.1 토지이용계획

- 사업지구 내 환경·지형적 특성에 맞도록 공간을 분할하며 도입시설(공간) 기능 및 이용형태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경계를 설정
- 토지이용계획의 결과는 토지이용계획표와 토지이용계획도로 제시

3.2 동선계획

- 기존 동선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지형태, 자연지형,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 및 노선 선정
- 방문객의 유형·규모에 따른 시설이용, 휴식, 체험활동 등을 고려한 동선 구성
- 동선체계는 보·차도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시설접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구분하여 계획
- 동선계획은 계획내용과 함께 동선 계획도를 작성하고 동선체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3.3 조경·경관계획

- 조경 식재계획, 포장계획, 경관계획 등 포함
-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촌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개발로 인해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녹지와 경관 조성
- 식재 수종은 가급적 향토수종으로 하되 사업지구 내 기능과 경관성을 고려하여 선택
- 조경 식재계획은 식재수종, 식재기능, 조경시설물 등에 대한 내용 제시
- 포장계획은 사용재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공간별로 제시
- 경관계획은 조성테마 및 도입시설(공간)에 따른 개성 있는 경관을 연출과 농촌테마 공원의 전체적인 경관형성에 대한 내용 제시

3.4 도입시설계획

- 도입시설은 지역적·공간(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시설을 선정하며 민간자본 유치여부에 따라 도입 가능한 시설 검토

- 다양한 체험 및 휴양·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당 사업 지구만의 선정기준 제시
- 사업대상지 내 구획별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선정

3.5 종합계획도

- 사업지구의 시설(공간) 조성계획을 구현했을 때의 종합계획(master plan)이 전체적으로 표현된 도면 제시
 - ※ 시설(공간) 조성계획 부분에서 세부적인 계획도면 작성 시 사용하는 도면축척은 1/25,000 사용
 - ※ 도면 1매에 계획구역 전체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정 축척을 사용

4 관리운영계획

4.1 관리운영방식 선정

- 공공직영, 위탁운영(전체, 부분)을 비교·검토하여 사업지구에 적절한 관리운영방식 채택

4.2 관리운영 추진주체 구성

- 관리운영방식을 토대로 단독주체, 공동주체로 유형을 구분하며 유형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지구에 적합한 관리운영주체를 제시
- 관리·운영주체의 사업 수행 역량을 인력, 조직, 자금조달, 마케팅 등의 능력 판단

4.3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리운영조직 및 구성 인력계획을 제시

4.4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 도입시설물별로 운영방법 및 주체, 유지관리방법 및 주체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제시

4.5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계획

- 사업지구 조성테마 및 도입시설, 주변여건 등을 활용한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계획을 제시
- 활용 가능한 홍보·마케팅방안 도출 등

5 투자계획

5.1 공종별·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비 산정은 투자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체사업비를 먼저 제시한 후 공종별·연차별로 작성하여 제시
- 사업비의 투입시기와 투자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업비를 산정

5.2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은 공공(국비, 지방비 등)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가능한 재원을 검토
- 공공부문의 재원확충 또는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유도하는 민자유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

5.3 민자유치계획(필요시)

-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 시 작성
- 민간사업자의 참여자격, 참여범위, 참여방법 등을 기술
- 사업추진방식, 사업기간, 사용료 결정, 기타조건 등 사업시행조건 기술
-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포기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계획 수립
 - ※ 기본계획수립 당시 민간사업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별도 작성

5.4 사업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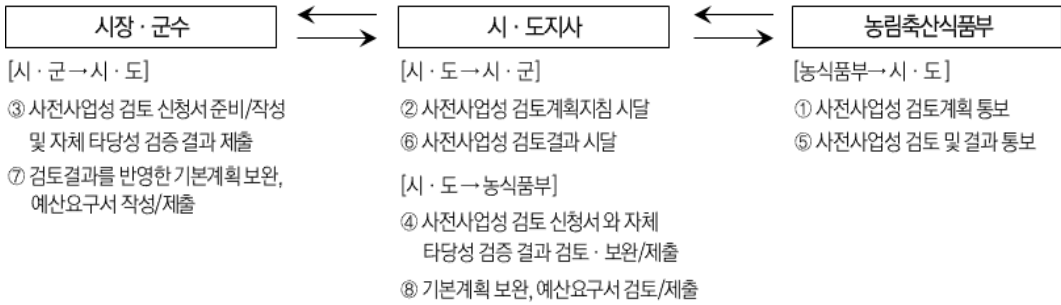
-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경제성, 사업성 등을 검토
- 경제성은 미래 손익추정으로 검토
- 사업성은 비용편익분석, 투자대비 산출효과분석 등으로 검토
 - ※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분야 전문가의 검토 결과 별도 첨부

5.5 파급효과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로 구분
-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등의 파급효과 측면을 추정
-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발생 가능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각각 예측

2. 사전사업성 검토 및 반영

〈사전사업성 검토 추진절차〉 ※ 절차의 순서는 번호순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반영한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식〉와 자체 타당성 검증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와 자체 타당성 검증 결과를 검토·보완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까지)
-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 작성자는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
- 타당성 검증 항목은 〈붙임 2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체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착안 사항〉에 준함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익년도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계획을 시·도에 통보(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4월)
 - 서면 검토와 발표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필요시 현장 확인)
 - 조건부 승인 시, 조건사항을 보완 또는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

3. 기본계획 보완·완료

가. 기본계획 승인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사전사업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종 검토·보완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한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고시
-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보상하여 부지를 확보
- 토지매입 및 보상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을 따름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하며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서 및 승인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나. 기본계획 승인 전·후 행정절차 이행사항

시장·군수

- 관련 법령·기준이 해당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다음 <표 2 - 기본계획 수립 전·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에 대하여 검토·추진(<붙임 3 -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설명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제41조,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에 해당할 경우 농촌테마공원 사업지구 기본계획 승인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필요시 기본계획 수립·확정 전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를 관계부서 및 기관과 검토·협의
- **(문화재지표조사)** 사업대상지구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그 미만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제4조에 따라 계획수립 완료 전 문화재지표조사 실시

- (지방재정투·용자사업심사) 「지방재정법」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 대상(시·군·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이 되므로「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 매뉴얼(행정자치부)」에 제시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이행
-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관련 절차) 사업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해당 사업지구에 적합한 개발방식으로 도시·군관리계획(변경) 수립

< 표 2 - 기본계획 승인 전·후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 >

구 분		이행 대상	이행시기
승인전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2조 제2항(별표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별표 1)의 대상 행정계획	
	문화재지표조사	○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승인후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 (사도심사)	○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지방재정 법시행령 제41조)	○ 기본계획수립 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용자 사업을 심사,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 심사 가능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 (중앙심사)	○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지방재정 법시행령 제41조)	○ 기본계획수립 후부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투용자 사업을 심사,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 심사 가능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관련 절차	○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사업대상지 개발 방식에 적합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변경) 필요	

Ⅲ 사업시행단계

1. 사업예산신청

시장·군수

- 대상지구 총사업비 중 국고는 지원한도(50억원) 이내로 하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방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 추진
- 부지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본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 및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 *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개발사업(자연재해 대책법 등), 문화재지표조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기관 협의(각종 전용허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 지원제외 대상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하되 '18년 신규 사업부터는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도 지원 제외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을 반영한 익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5월 말)
 - 예산신청은 사업비 집행에 부담되지 않도록 연차별로 균형 있게 배정
 - 1차년도 예산신청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시행계획 행정절차 이행에 수반 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정
- ※ 자금배정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2. 시행계획수립

-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실시설계 업무와 개장 후 운영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함께 진행하는 실질적인 계획

시장·군수

-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표 3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을 받아야 함(〈별지 제2호 서식 -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시행계획수립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농어촌 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의 [별표5]에 의함
- 시행계획은 사업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이행 등을 고려하여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수립 가능
- 시행계획은 사업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수립(예산지원 계획에 맞춰 년차별(3~5년) 계획으로 작성)하되, 공종별로 분리하여 수립
-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대상지선정, 기본계획수립 등 사업준비단계에 참여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별지 제3호 서식 - 시행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및 조치 사항〉)
-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승인되면 시행계획 내용을 고시
- 시행계획수립 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도 지사 및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
 - 직전에 승인된 기본(시행)계획 대비 총 사업비(지원사업비 기준) 및 면적의 ·10% 미만, 경미한 사항 변경: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시·도 및 농식품부 보고 ·10~30% 미만 변경: 시·도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 농식품부 보고 ·30% 이상, 사업테마 변경: 시·도 및 농식품부와 협의 후 시·도 승인을 받아 변경, 농식품부 보고
 - * 총 사업비가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민자 100억일 경우, 지원사업비는 100억

- * 경미한 사항: 지구명칭 변경, 전체 부지면적의 10% 범위 내 증감, 기타 단순착오 및 현지 지형사항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사항 변경
- * 변경비율은 자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절대값으로 산정
 - 자금 사용용도 : 공원기반시설, 편의시설, 체험·휴양시설,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시행계획 수립, 진입도로 부지매입('18년 신규사업부터 제외)
- ex) 총 지원사업비가 100억이고, 그 중 공원기반시설 사업비 -5억, 체험·휴양시설 사업비 +5억을 변경할 경우 전체 사업비 변경액은 $|-5억| + |5억| = 10억$ 으로 시·도 협의대상
- 시·군에서는 계획 변경내용 및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목적 및 법령 위배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시·군 제출자료 및 시·도 검토의견을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지구명칭의 변경 및 지구범위의 조정(당초 대상지구 면적의 10% 범위 내 증감)
- 기타 단순 착오 및 현지 지형사정으로 인한 시설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절차는 이행하지 않음
- ※ 기본계획 승인된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되는 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

< 표 3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예시) >

<p>① 실시설계 보고서</p> <p>②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p> <p>③ 설계도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원도 - 설계도면 - 축소도면 <p>④ 설계예산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역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p>⑤ 각종 인허가 자료</p> <p>⑥ 각종 협의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의견수렴(필요시) - 전문가 자문 <p>⑦ 관리운영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확정 - 부문별 운영계획 - 부문별 유지관리계획 - 운영수지 분석 - 홍보마케팅 계획 - 연계활성화 계획
--	--

시행계획수립 세부사항

- 시행계획 내용은 실시설계와 관리운영계획으로 구분
- 실시설계는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상세 설계에 대한 문서 또는 서류, 도면을 작성
- 관리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
 - 관리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확정 : 시행할 관리운영방식 및 운영주체 제시
 - 부문별 운영계획 : 조직, 인력, 시설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 제시
 - 부문별 유지관리계획 : 시설, 서비스, 환경·위생, 안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유지관리 계획 제시
 - 운영수지 분석 : 기준사례시설을 설정함으로써 예상입장객 수나 운영예산 등 예측
 - 홍보마케팅 계획 : 인터넷 마케팅, 축제 및 이벤트 등 교류행사, 관광루트 개발 등 적용 가능한 홍보전략 마련
 - 연계활성화 계획 : 주민참여, 주변 마을 및 농촌관광 관련시설과 소프트웨어적인 연계 방안 도출

시행계획수립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시장·군수

- 시행계획수립 시 관련 법령·기준이 해당 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사항에 따라 다음 <표 4 - 시행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과 같이 추진(<붙임 3 -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설명자료>)
-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개발사업)** 사업대상지구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 허가·승인 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한 관계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 진행
-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규모에 해당되는 평가방식을 결정하고 시행계획수립 허가·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전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을 수립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립)** 사업대상지구가 공유재산 또는 국·공유지에 포함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기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 필요시 추진

< 표 4 - 시행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예시) >

구 분	이행 대상	이행시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준함)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별표3)에 준함)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별표4)에 준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권역에서의 개발사업 등(「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별표1)에 준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수립	○ 금액기준 : - 취득 : 20억원 이상 - 처분 : 10억원 ○ 면적기준(토지만 해당) - 취득 : 1건당 1천㎡ 이상 - 처분 : 1건당 2천㎡ 이상	○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산지전용허가	○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지역조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및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준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관련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며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행계획 승인 및 변경 시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기타사항

- 시행계획수립 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 특히, 저수지 수변 및 하천주변의 개발인 경우 하수도시설 및 오폐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추진 시에는 환경피해 저감대책 마련 등 공사 중 안전대책을 강구 추진하여 주변 지역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

3. 사업시행 및 준공

시장·군수

- 사업시행자(시장·군수)는 매년도 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 사업시행(〈별지 제5호 서식 -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 담당시공사 선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
- 사업시행은 당해 연도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며, 설계도서에 맞게 실시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감리규정)을 준수

- 공사감리비는「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0조의 [별표5]에 의함
- 사업시행자(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의 사전예방 등을 위해 지역주민을 명예 감독원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 중 주요사항에 대해 시공 전·중·후 현장사진을 보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신청(〈별지 제6호 서식 - 준공결과보고〉)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내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
-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위탁시행자는 준공(부분준공 포함) 후 공공시설물과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
- 시장·군수는 인수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준공검사와 함께 향후 운영계획을 검토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농어촌정비법」제114조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 가능

※ 단,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자와 동일한 경우는 위탁할 수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정비법」제119조에 따라 필요시 농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IV

사업운영단계

1. 관리 및 운영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의 준공 및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의 개장 전 관리운영 사항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시설의 운영에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개장
 - 시장·군수는 시설의 기본사항 및 개장 일시를 지역 내 공지 및 홍보함
- 시장·군수는 개장 후 주요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정 등 운영 상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사업지구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수립한 관리운영계획 내용을 기본으로 개장 전 관리운영체제를 구축,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각의 시설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가. 관리운영 체제 마련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관리운영조직은 시설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관리운영방식(표 5 - 유형별 관리운영 방식의 사례(예시))을 검토·적용하여 구성
 - 시설의 성격 및 관리운영에 요구되는 기술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 주체를 정하고 가급적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시장·군수는 농촌테마공원 운영 관련 시·군 담당부서, 관리운영담당자 등 유지관리 및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유지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제 구축
- * 유지관리협의체는 시·군 담당부서 및 관련부서(공무원), 농촌테마공원 운영자(조직), 시설관리 책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표 5 - 유형별 관리운영 방식의 사례(예시) >

구 분	내 용	
시·군 직영방식	○ 주요 시설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공원형 시설이거나 공공이 직접 관리운영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시·군에서 직접 주도하여 운영	
	상근 관리	- 시설 내 상주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리 또는 관리 인력 고용을 통한 시설 관리운영
	비상근 관리	- 시설 내 상주하지 않고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관리인력 파견 또는 지역주민 등 일시 고용을 통한 시설 관리운영
위탁운영방식	○ 시설 성격상 전문적인 관리운영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효율을 기해야 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시설 전체위탁과 부분위탁 등으로 운영 가능하며 위수탁 계약을 통한 운영방식 체계를 정립	
	공공 산하 기관(단체)에 위탁	- 지역 시설관리공단, 공공에서 운영하는 관련 재단 등 공적 산하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지역 내 민간사업자 또는 단체에 위탁	- 운영관련 전문성을 가진 지역 내 민간사업자(농업생산 또는 체험사업 운영, 숙박 및 식음 분야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협·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
	인근 마을 및 권역에 위탁	- 농촌테마공원과 인접한 마을 또는 권역의 공동체(마을 공동체 사업을 위한 법인 또는 협·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마을 또는 권역)에 위탁 관리운영
기타 혼합운영방식	○ 시·군 직영 + 시설의 부분 위탁 방식 ○ 시·군 직영 + 시설의 부분 임대 방식 ○ 민간 위탁운영 + 시설의 부분 임대 방식 등	

나.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활용

① 유지관리 기본방향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시공회사 또는 위탁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민간자본 투자로 조성한 시설 및 민간위탁시설을 포함한 농촌테마공원 전체의 유지 관리는 시장·군수가 지도·감독하도록 함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건축물, 조경시설 등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 하고,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는 준공 후 시설물의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함
- 시설의 유지관리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건축법」제35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등 관련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관리

② 유지관리의 범위

- 유지관리의 범위는 각 시설물을 언제 어디서나 최상의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유지, 보수 등 활동사항으로 함
- 각 시설물의 기능유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위생환경에 관한 관리 등을 위한 수시, 일상 및 정기적인 점검결과를 기록관리
 - 시설물 유지관리자는 시설물 인수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적절히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
 -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점검계획과 결과, 대책수립과 조치사항 등을 세밀하게 기록·관리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가 의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결정
 - 유지관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연간 소요되는 유지 관리비를 책정하여 구성 항목별로 관리

③ 시설별 유지관리 및 활용

① 기반 및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 공원 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 및 정기 점검 시행
 - 일상점검은 일상순시 및 관찰, 화장실 및 휴지통 등의 청소를 포함하여 벤치, 음수전 등 이용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시설의 청소 등을 포함

- 정기점검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도장, 안내해설판 및 도로·산책로 등의 포장면 등의 청소, 건물 내의 소모품(전구, 수도꼭지 등)의 점검 및 교환 등을 포함
- 기반시설의 점검·관리
 - 급배수시설은 일정한 인력과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급수펌프의 성능이 항상 정상인 되도록 관리
 - 배수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의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조정
 - 진입도로 및 주차장은 포장면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용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 등을 제거
- 편의시설의 점검·관리
 - 휴지통, 파고라 및 벤치 등은 청결 정도를 수시로 점검·관리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
 - 음수대는 청결유지를 위해 연 2회 이상 수질검사 실시

② 체험·휴양시설의 관리와 활용

- 농촌테마공원 내 조성되는 체험·휴양시설(전시, 체험, 판매 등의 건축시설 또는 야외 구조물 등)은 시설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활용을 고려하여 관리 및 운영
 - 다각적 활용이 가능한 체험·휴양시설은 농업 생산 및 가공체험시설, 홍보관 및 학습 전시관, 야영장, 농특산물 판매장, 산책로 및 탐방로 등
 - 시설의 활용은 지역주민의 운영 참여를 통한 소득 및 고용기회 창출 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장려
- 농촌테마공원 내 체험·휴양시설의 운영특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활용방안 (표 6 - 유형별 시설 활용 사례(예시))을 검토하여 다각적인 운영 활성화 도모
 - * 조성완료된 농촌테마공원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은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내 ‘농촌체험·관광지원사업’ 예산으로 별도 추가 신청 가능

< 표 6 - 유형별 시설 활용 사례(예시) >

활용 유형	시설 활용 사례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통한 시설활용	<p>제천 한방 엑스포공원의 아름다운 주말장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 제천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주 무대였던 제천 한방엑스포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주말장터’ 장소로 활용을 통한 시민 참여 및 이용 유도 - 2014년 제천시의 각종 시민사회단체로 ‘아름다운장터 운영협의회’ 구성,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엑스포공원에서 주말장터 개최 - 주요 프로그램은 벼룩시장, 먹거리 장터, 프리마켓, 재능 기부 공연 등 -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의미 있는 지역행사 장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전한 소비문화 및 여가공간으로서 활성화
	<p>일본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의 직거래 장터 ‘아침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다치구 도시농업공원은 1984년 도쿄도 아다치구청이 조성 이후 직접 관리해오다 운영효율화를 위해 위탁체제로 전환,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3개 업체를 선정해 공동으로 관리 ○ ‘아사이치 시장(아침시장)’이라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원에 활기를 띠기 시작, 도시농업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가 높아짐 - 공원에서 생산한 농작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소규모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을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 운영 -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아사이치 시장에서는 농약과 화학재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산물만 팔도록 규정하여 운영
타 시설과 연계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한 시설활용	<p>남양주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문화벨트 협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양주시 내 위치하는 6개의 문화시설(실학박물관, 남양주 종합촬영소, 남양주역사박물관,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다산유적지, 몽골문화촌) 활성화 및 공동 홍보를 위한 협약 체결 ○ 6개 기관 공동으로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상호 협력을 통한 시설 활용 방안 추진
	<p>제주 물사랑 홍보관 운영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사랑 홍보관은 제주도 건입동 옛 금산수원지의 관리동을 리모델링해 2013년 3월 개관 ○ 각종 홍보활동 및 방문객 유치활동을 통해 관람객 증가

활용 유형	시설 활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홍보마케팅 및 방문객 유치 활동 -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교 물체험 학습장으로 집중 유치 - 도내 여행사 대상 관광객 관람요청 - 홍보관에서 가까운 학교 방문홍보 등 적극 관람객 유치 홍보활동 전개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 및 마을공동체 창업공간으로 활용</p>	<p style="text-align: center;">진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콤플렉스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이전하면서 해당 부지를 지역주민·공동체를 위한 복합 콤플렉스로 조성 ○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후 운영의 권한은 민간에 위탁 -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 및 농촌창업 관련 단체 입주 - 위탁 운영주체는 마을·단체·주민에 대한 수시 상담, 행정 위탁사업, 단체 자체 사업, 지원센터 입주단체 지원 등을 주 업무로 하며 부대사업으로 시설관리, 마을만들기 행정 협조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도로공사의 꿈꾸는 휴게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도로 휴게소 활성화를 위한 청년 창업매장 운영 우수 아이템 공모 추진 ○ 공모전에 선정된 아이템에 대하여 최대 1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창업공간을 제공,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체험 등 지원 - 일반 창업아이템 : 기존 휴게소 메뉴와 차별화된 간식 또는 식사류 판매 - 지식 창업아이템 : 휴게소에 적용 가능한 공예, 그림, 패션 소품 등 제작·전시·판매 등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한 운영 활성화</p>	<p style="text-align: center;">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역량강화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의 업무수행능력과 마을관리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의 역량강화교육 - 농어촌사업 및 사무장제도의 이해, 체험객 관리요령 등

③ 조경 및 식생 유지·관리

- 조경수목 및 식물의 유지·관리는 생장, 번식 등을 계속하는 생물로서의 생리·생태적 특성과 공원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시행
 - 교목 및 관목류, 초본류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세우고 적절한 시기에 관리활동 시행

- 산림 휴양지 및 습지지역은 가급적 인위적인 전정 등을 배제하고 자연형성과정을 통하여 식생의 자연적인 천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
- 지주목과 당김줄 설치 : 갓 이식한 수목이나 천근성 수목은 수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목이나 당김줄을 설치
- 멀칭 : 겨울철 수목에 대하여 멀칭을 함으로써 토양수분의 유지 및 토양 비옥도 증진, 온도조절 작용
- 관수 : 공원 내 전 지역의 경사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식물의 고사나 잔디부분의 수분상태를 유지하도록 관수 실시
- 전지와 전정 : 수목의 생육장애요인 제거와 수형을 다듬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

④ 기타 시설 관리

- 농촌테마공원이 강·호수 등의 수변 또는 저수지 주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점검 및 환경수질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2. 사업점검 및 환류

- 사업점검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지구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완료지구에 대한 운영상황 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결과 미흡한 평가를 받은 대상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본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
- 사업점검 항목은 <표 7 - 사업점검 체크리스트(예시)> 참고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지구에 대해 분기별(사업완료지구는 반기별)로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완료지구는 반기말 익월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7호 서식 - 추진상황 점검/보고, 별지 제8호 서식 - 운영상황 점검/보고>)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운영은 위해 시·도의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및 완료지구의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며 그 결과를 반기말 기준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점검 결과 사업 추진 및 운영상황이 부진한 시·군에 대한 조치를 강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익년도 농촌테마공원 관련 제도개선 추진 등 보완대책 마련
- 사업을 추진 중인 지구는 사업점검을 통해 집행이 부진한 경우 페널티 부여(익년도 예산 신청시 감액 조정)
 - * 기타 사업이행점검, 사업평가 및 환류에 대한 사항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적용

< 표 7 - 사업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구 분		세부 검토사항
추진상황점검		○ 공종별 추진상황(추진진도 및 예산집행 현황) ○ 행정절차 이행사항 ○ 사업 부진사유(애로사항) 및 대책
운영 상황 점검	관리운영현황	○ 관리운영계획 사항의 이행 및 변경사항 ○ 관리운영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 시설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규정 이행사항(시설물 관리대장 작성/비치를 통한 기록관리 사항 등) ○ 시설 및 운영관리비용의 기존 목적 외 사용 등 여부
	운영실적	○ 사업지구의 정량적 운영실적 - 방문객수, 매출액, 지역 일자리 창출, 운영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실적 등 ○ 사업지구의 정성적 운영효과 - 사업지구의 방문객 만족도, 지역주민 인식 등
	향후 시설유지 및 운영활성화 방안	○ 향후 시설 유지관리의 예산확보 및 계획 ○ 지속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등

V

참고사항 및 관련서식

〈붙임 1〉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세 부 내 용	국비지원 여부
공원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진입도로, 대상지 내 도로) •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 관리지원시설(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 경관시설 등 ※부지매입비 및 진입도로 부지매입비는 지원 불가 ('18년 신규사업부터 적용)	지 원
편의시설	•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홍보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생태공원 등	
시행계획수립	• 기본계획수립 이후의 시행계획수립과 제반사항에 소요되는 경비(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운영프로그램 개발	•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각종 농촌관광 및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 전체 보조사업비(국비, 지방비) 10% 이내로 하되 최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위락시설	•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피크닉장 등	지원 불가 (시·군 자체 비용으로 추진)
판매시설	•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음식점, 카페 등	
숙박시설	• 펜션, 방갈로, 야영장 등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문화재지표조사 등 포함)	

<붙임 2>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착안사항

구 분		세부 검토사항
1. 입지여건	1-1. 부지확보 여부 및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확인 ○ 매매계약서, 사용승낙서, 자금확보 또는 자금동원 능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 전까지 부지확보가 가능한지를 판단
	1-2. 법적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토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해당지역·지구 해당여부 확인가능 ○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변경계획 및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결과를 첨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시작년도 초까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파악
	1-3. 사전 행정 절차 이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선정 후 개발사업 사전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추진 시 문제발생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였는지 확인 * 관할 환경청의 환경입지컨설팅제도(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활용 ○ 사전 행정절차별 예상 소요기간을 명시한 이행계획 첨부
	1-4. 장소적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및 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 등을 감안할 때 입지여건이 어떠한지 확인 * 주민중심형은 주민생활권으로부터의 접근 편의성, 관광중심형은 외부 관광객 접근성 등을 검토
2. 사업의지	2-1. 사업시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민간참여 주체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의 당해 사업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고,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 민간참여주체(대표)의 의지 파악 * 지자체 사업계획서로 같음하되,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 현장 및 발표심사 시 민간참여주체(대표)가 참여하여 질의응답 등에 대응
	2-2. 지역주민 사업 이해도, 관심도, 참여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추진 의지 및 참여도 등을 파악 * 지역주민 참여도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중 또는 운영 시 지역주민·단체가 참여하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확인

구 분		세부 검토사항
	2-3. 사업담당 실무책임자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 이상 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감안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 * 현장 및 발표심사 시 과장급 이상 책임공무원이 설명·발표·질의응답 대응
3. 투자계획의 적정성	3-1. 사업테마 및 프로그램이 적합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및 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 지역특성과의 부합여부, 지역산업과의 연계정도,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3-2. 부지 및 시설이 목표달성에 적절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및 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 등을 감안할 때, 사업부지의 규모 및 조성시설 등의 종류규모 등이 적절한지
	3-3. 민간참여 주체의 자부담 능력은 있는지 (민간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가 있는 경우, 민간참여주체의 자금 확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파악(기존 부채규모가 너무 많아 더 이상의 자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지 등)
	3-4. 건축 및 부지조성비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조성 및 시설건축 단가 등 하드웨어 사업비가 현실성이 있는지
	3-5. 운영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마케팅홍보 등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현실성이 있는지
4. 사업효과	4-1. 투자 대비 효과분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대비 효과 분석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분석은 지자체 자체 사업성 검토서로 같음, 지나치게 과대·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확인(B/C분석 결과가 1 이상일 필요는 없음) * 투자는 총 사업비 및 운영비, 효과는 추정 매출액(음식점·체험프로그램·입장료·파머스마켓·숙박비 등)으로 한정, 산출기간은 30년 - 주민중심형의 경우 행사수입(매출액)이나 주민이용률, 시설 가동률을 추가로 고려 * 산출 근거자료 및 B/C 분석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학교수 등 경영·경제·회계분야 전문가의 검토결과 첨부

구 분		세부 검토사항
	4-2. 예상 이용객 수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및 유형 등을 감안할 때 예상 이용객 수가 적정한지 - 구체적인 예상 이용객 수 분석은 지자체 자체 사업성 검토서로 같음, 지나치게 과대·과소평가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민중심형은 이용권 설정(사회적 수용력), 관광중심형은 중력모형으로 예상 이용객 수를 산출하고, 공통적으로 물리적 수용력 함께 검토 - 타 분석방법을 통해 예상 이용객 수를 추가로 분석할 경우, 분석결과가 상기 방법과 차이나는 이유 및 추가분석 사유 함께 기술 * 산출 근거자료 및 예상 이용객 수 추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대학교수 등 행정·복지분야(주민중심형) 또는 관광분야(관광중심형) 전문가의 검토결과 첨부
	4-2. 지역주민(농가) 후생·소득 증대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농가)의 후생 및 소득증대 등으로 연계되는 정도를 확인 * 사업유형(주민중심형·관광중심형)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만족도, 지역 농특산물 판매(소비) 규모, willing to pay(개발·이용을 위해 기꺼이 내는 비용),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통해 확인
5. 민원발생	5-1. 민원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주변의 여건 및 목적사업과의 관계를 살펴 민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
6. 사후관리 계획	6-1. 농촌테마 공원 운영계획(예산 확보계획 포함)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테마공원 완공 후 운영·관리계획(예산·확보계획 포함)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6-2. 농촌테마 공원 운영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테마공원 완공 후 전담 운영조직·인력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 조성 시부터 민간투자가 있거나 조성완료 후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업포기 등으로 민간참여주체의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지자체 대응계획의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
7. 포괄 보조사업 가이드라인	7-1.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지원대상 해당 여부 검토 ○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지침 상 목적과의 부합성 검토

구 분		세부 검토사항
	7-2. 예산신청 불가 내용 포함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상 제시된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중 예산신청 불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8.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조건부·부적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정 : 사업성이 인정되어 예산반영 및 정상 추진 다만, 해당 시·군은 보완사항(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예산 신청 - 조건부 : 선행절차 이행, 사업내용 보완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추진 - 부적정 :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님 ○ 검토의견은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자체 사업성 검토 시) 예산을 편성하는 도 기획실(예산총괄부서) 및 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300자 이내로 기재

<붙임 3>

계획수립 시 행정절차 이행사항 설명자료

□ 전략환경영향평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1. 정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2조 제2항 [별표 2] •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장, 승인기관장] 2. 평가준비서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4. 심의 결과 공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5. 주민의견 청취 [대상계획 제안자] 6.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협의기관장, 승인기관장, 해당지역 유역환경청 및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행정(계획수립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 환경부장관 - 주관행정(계획수립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7.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 [대상계획 제안자] 8.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여부 공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 계획 수립 행정기관→협의기관장, 승인기관장] 1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협의기관] 11.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주관행정기관] 12. 협의내용 이행결과 통보 [주관행정기관→협의기관]	인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환경부)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입지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본계획기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문화재지표조사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지역안에 건설공사 시행전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조사하는 것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 및 건설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계획수립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3만 제곱미터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은 인·허가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표 조사를 명할 경우에는 동 법에 따라 지표조사를 시행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지표조사를 실시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에서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는 한편, 시·도지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에 따라 추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기록으로 남기고자 발굴조사를 실시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행정계획	개발사업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려는 행정계획의 대상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려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 [별표 1]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행정계획	개발사업	
	<p>공원조성계획의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p>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6조 1 [별표 1]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협의서류 제출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2.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국민안전처/지역본부] 3. 접구 및 기본여건 검토 [국민안전처/지역본부(방재부서)] 4. 검토위원회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국민안전처/지방본부 검토위원회] 5. 협의의견 작성 [국민안전처/지역본부] 6. 협의의견 통보 [국민안전처/지역본부(방재부서)→관계행정기관] 7. 조치결과 또는 계획접수 [관계행정기관→국민안전처/지역본부] 8. 착공전 이행계획서 접수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9. 이행실태점검 [국민안전처/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국민안전처)
검토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시·군·구	광역시·도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37조 		
심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용자사업 	
심사기관	자체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신규 투·용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신규 투·용자사업
	의뢰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심사)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구의 신규 투·용자사업 (중앙 심사)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시·군·구의 신규 투·용자사업 	
심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전에 시행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 		
의뢰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심사는 1월 15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10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1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심사는 2월 1일까지 2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의뢰받은 심사 대상 사업이 중앙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행정부장관에게 송부함(시기는 시·도 절차 시기와 동일)
심사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 매뉴얼(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용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시·군·구	광역시·도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 및 당해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결과보고서 제출	• 광천시 · 도지사	• 행정자치부장관	
사후평가	• 자체심사한 투자사업	• 자체심사 및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	

□ 환경영향평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 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 등의 채취사업	•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7조 제2항 [별표 3] • 의제하는 주된 계획의 승인 전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작성·심의 [대상계획 제안자] 2. 평가서초안 작성 [대상계획 제안자] 3. 주민의견수렴(공고·공람, 설명회·공청회)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4. 평가서본안 작성 및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5. 평가서 협의요청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환경부 등 협의 기관] 6. 평가서 검토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 협의내용 통보 [환경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대상계획 제안자] 8. 협의내용 재협의/반영내용 확인·통보 [협의기관→주관 행정기관] 9. 착공통보(협의내용 이행) [주관행정기관→협의기관] 	
평가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환경 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대기환경 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 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 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생활환경 분야 :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 인구, 주거,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본계획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대 상	•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별표 4]
추진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1조 제2항 [별표 4]	
추진절차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대상계획 제안자→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승인기관] 2. 협의요청 :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전 [승인기관→협의기관] 3. 평가서 검토·협의 [협의기관] 4. 평가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승인기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5. 협의내용 반영 [승인기관,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대상계획 제안자] 6. 공사착공 [대상계획 제안자] 7.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승인기관, 협의기관]	
평가항목	• 사업의 개요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은 제외)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 환경보전방안 등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개 념	•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구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별표 1]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 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인접한 도시 간의 유출입 교통통행량이 5% 이상인 교통생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승인·인가·허가 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별표 1]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작성 [대상계획 제안자,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승인기관]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검토 [승인기관→관련부서, 심의위원] 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승인기관 소속 심의위원회]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 통보 [승인기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대상계획 제안자]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보완서 제출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승인기관] 7. 심의내용 통보 [승인기관→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분석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등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말함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계획 수립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추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법 제10조 제1항) 	
추진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 [행자부→시·도] 2.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통보 [시·도→시·군] 3.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시·도/시·군] 4.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도/시·군 지자체장→지방의회] 5.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심의·통보) [시·도/시·군 지방의회→지자체] 6. 공유재산관리계획 확정 [시·도/시·군] 7.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중요재산 취득·처분) [시·도/시·군] 	

□ 산지전용허가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개념	•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임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 채취, 산지일시사용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8조			
허가 관할행정청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행정청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소관불문	산림청장
	200만㎡이상	100만㎡이상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이상 ~200만㎡미만	3만㎡이상 ~100만㎡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도지사
50만㎡미만	3만㎡미만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	
추진절차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을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접수 → 현지조사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예정통지(납부 및 예치) → 허가의 결정			

□ 농지전용허가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개념	• 농지전용은 농지법상의 농지를 경작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				
근거법령	• 농지법 제34조				
허가 관할행정청	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3만㎡이상	3천㎡이상 ~3만㎡미만	3천㎡미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0만㎡이상	3만㎡이상 ~20만㎡미만	3만㎡미만	
	전용허가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	-	10만㎡이상	10만㎡미만	
추진절차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허가 심사 → 농지전용허가 결정 → 허가증 발급				

〈별지 제1호 서식〉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신청서식

사업지구명:

1. 목 적 (글자크기 16 point)

* 무엇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기술(글자크기 13 point)

2. 사업목표

가. 비 전(글자크기 14 point)

* 1~2줄로 핵심만 기록(글자크기 13 point)

나. 목 표

* 정량화 또는 수치화 가능한 경우 수치를 포함하여 기술

다. 추진전략

라. 성과지표

지 표 명	연차별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1	2	3	4	5	
사업지구 매출액(백만원)						
사업지구 방문객 수(명)						
참여농가 (주민) 소득	소득(백만원)					
	농어가(주민)수(호/명)					
일자리(개)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성과지표를 선택(상기 예시 외의 지표가 있는 경우 추가 가능)

* 모든 지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만 대상으로 함

3. 사업내용

- 사업위치 : 00도 00군 읍·면(00길 00)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민자)
- 사업시행주체 : (주무관청)
- 사업규모 : 부지면적 m², 건축연면적 m²(지상○층, 지하○층)
- 사업유형 : (주민중심형 / 관광중심형 중 택 1)
-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 면적, 세부 공간 기능 및 조성방안, 시설배치계획 등(도면 포함)
 - * 기타 시설 및 기반시설계획 등 서술
- 관리운영계획
 - 사업지구의 관리운영주체 설정, 조직(주체)의 구성 및 관리활동 계획
 - 부문별 시설운영계획 등
 - 운영 프로그램계획
 -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이벤트 계획,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등
- 사업기간 : ○○년~○○년(○○년간)
- 사업추진 경위
 - * 사업 추진의 배경, 논의과정, 사업 준비 및 진행상황 등을 기술

4. 연차별 투자계획

가. 총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①토목공사	면적(㎡)				
	공사비용				
②건축공사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③조경공사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④기 타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시설명)	연면적(㎡)			
		사업비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감리비 등					
합 계(A+B)		사업비			

나. 세부산출근거

* 세부사업별 투자액 산출근거를 기록(규모×단위규모당 단가 = 0000백만원)

다.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별		투자금액			
		합계	'15년	'16년	'17년이후
□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총 투자계획상 세부분류된 세부사업별(마지막 단계 분류기준)로 연차별 투자예정 금액을 기록

라. 유관사업 연계 계획

※ 유관사업과 연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명기

5.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량적 기대효과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6. 시·도 검토의견

① 광특회계 지원대상 사업인지 여부

-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광특회계 제외대상 사업 여부
-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이 아닌지 여부

②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여부

-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 이행 여부

③ 현재 추진할 시급성 및 집행 가능성

-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
- 세부적인 집행계획의 마련 여부 등 집행 가능성

④ 물량 및 단가의 적정성

-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의 적정성
- 투입비용 대비 효과(효율성)

※ 별첨 : 사업기본계획서,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 기본계획수립 :
- 행정절차 이행 :
- 의견수렴 :
- 인허가 등 :

3. 테마공원 조성계획

구 분	총 규모 및 내용	년차별계획				비 고
		'00년	'00년	'00년	'00년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관리시설 -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공원조성 - 학습전시관 - 산책로 - 공연장 등						
○ 위락시설 - 피크닉장 - 음식점 -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본계획 (A)	시행계획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시행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지구명	의견제시자 (기관)	의견제시 및 조치계획		비 고
		의견내용	반영사항	

※ 전문가 자문의견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자세히 기재할 것.

〈별지 제4호 서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변경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2.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변경내용
-

3. 테마공원 조성계획

구 분	단위	당 초			변 경			증 감 (B-A)	비 고
		총규모 (A)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총규모 (B)	'00까지 완료	'00이후 계획		
계									
○ 기초기본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관리시설 - 편의시설 등	m ² m 동								
○ 체험·휴양시설 - 공원조성 - 학습전시관 - 산책로 - 공연장 등									
○ 위락시설 - 피크닉장 - 음식점 -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당초승인 (A)	금회승인 (B)	증 감 (B-A)	비 고
계				
○ 공 사 비				
-				
-				
○ 자 재 대				
○ 용 지 매 수 비				
- 용 지 매 수				
- 보 상				
○ 관 리 비 등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5. 기타사항(승인조건 등)

승인공문사본, 검토서 등 관련문서 첨부

<별지 제5호 서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시행계획 및 공정계획(총괄)

1. 총괄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승인액	년까지	년계획	년이후	진도 (%)	월 별 공 정 계 획 (금액)												비고								
						당년	누계	1/4			2/4			3/4			4/4									
								1	2	3계 %	4	5	6계 %	7	8	9계 %	10		11	12계 %						
합계																										

2. 시행계획 수지예산서(지구별)

- 지구명 :
- 기본계획확정 : . . .
- 시행계획승인 : . . .
- 사업시행기간 : ~

□ 수입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 보조					
- 국고					
- 지방비					
○ 민자					

□ 지출

(단위 : 천원)

구분	승인액	년차별 추진계획			비고
		'00까지	'00계획	'00이후	
계					
○ 공사비					
-					
-					
○ 자재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 예비비					
○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주요공사 :
- 시공회사 :

2. 추진경위

- 사업대상지 선정 :
- 기본계획승인 :
- 시행계획승인
- 행정절차 이행 :
- 인허가 :
- 공사착수 / 사업준공 등 :

3. 테마공원 조성계획

구 분	단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기초기반시설 - 도로 - 상·하수도 - 공동이용시설 - 관리시설 -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공원조성 - 학습전시관 - 산책로 - 공연장 등									
○ 오락시설 - 피크닉장 - 음식점 -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민 자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승인 (A)	년차별 추진실적						증감 (B-A)
		계 (B)	1차년도 (‘00)	2차년도 (‘00)	3차년도 (‘00)	4차년도 (‘00)	5차년도 (‘00)	
계								
○ 공 사 비								
-								
-								
○ 자 재 대								
○ 용지매수비								
- 용지매수								
- 보 상								
○ 관리비 등								
- 측량설계비								
- 공사관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 예 비 비								
○ 기 타								

5. 기타 첨부서류(「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90조에 준한 첨부 서류 및 도면)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 시설물배치와 시설현황도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준공사진을 포함한 준공도서
- 시행 전후의 면적조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주요테마 :
- 추진현황

지구명	실시설계		시행계획 승인		발 주		공 사	
	설계중	완료	승인전	완료	미발주	완료	공사중	완료

※ 해당 항목에 완료일(또는 완료 예정일) 기재

2. 공종별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착수 년도	주요사업	총 사업비	완공 년도	기 집행액	당해연도 집행현황(금액)			누계 실적	비고
					계획	실적	집행률 (%)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관리시설								
	편의시설								
	공원조성								
	학습전시관								
	산책로								
	공연장								

※ 주요사업은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3. 이행 현황

구 분	기 간		주요내용
	시작일	종료일	
기본계획수립			
사전사업성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행정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도시·군관리계획(변경)			
토지매입			
시행계획수립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			
환경영향성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산지·농지 전용허가			
사업시행 인가			
공사시행			
사업준공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4. 사업 부진이유(애로사항) 및 대책

구 분	주요 부진사유(애로사항)	향후 대책

※ 구체적으로 작성

5. 부진 사업에 대한 조치 내용(시·도에서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테마공원 조성사업 운영상황 점검/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면 적 :
- 주요테마 :
- 개 장 일 :
- 운영주체 :
- 운영조직 구성 및 인력 :

2. 관리운영현황

관리 및 운영 이행사항

구 분	추진 주요내용
관리운영 조직 구성	
시설물별 유지관리	
안전관리	
관리대장 작성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가능

관리운영 소요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																		
기타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3. 운영실적

방문객수

(단위 : 명)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사업지구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 목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총 매출액																										
항목 별 매출 액	입장료																									
	체험프로그램																									
	임대료																									
	판매시설																									
	숙박시설																									
	기타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조정

지역 일자리 창출

(단위 : 명)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 고 (연간목표)											
		1	2	3	계	%	4	5	6	계	%	7	8		9	계	%	10	11	12	계	%			

□ 운영프로그램 및 홍보·마케팅 추진실적

프로그램 / 행사명	주요내용	시기 / 횟수	비고

□ 운영효과

- 방문객 설문조사, 지역주민 인터뷰 결과 등 정량적·정성적 자료 첨부

4. 관리 유지 및 운영활성화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대책

※ 구체적으로 작성

5. 부진 사업에 대한 조치 내용(시·도에서 작성)

※ 구체적으로 작성

참고자료 5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참고자료 5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16.12.22)

1. 개정이유

- 농공단지 지정 시에 미분양을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수요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며,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지침 전반을 재검토하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전문단지 요건 완화(제4조)

- 전문단지의 동일·유사·연관업종 비율을 60% → 50%로 완화하여 그 외 업종의 전문단지 입주 활성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나. 세부적인 입주수요조사 기준 마련(제9조제2항)

- 농공단지 지정 시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조사 등 세부적인 수요조사 기준을 규정

다. 입주수요검증 방안 마련(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제3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027호, 2016.2.29.)사항을 반영하여, 주식처분 및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처분제한 대상에서 제외

마.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51조)

- 2016. 1.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본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개정

바.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 관련 조항이 삭제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식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p> <p>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p> <p>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요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p> <p>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것</p> <p>2. 3.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 ----- ----- -----.</p> <p>1. ----- ----- ----- -----</p> <p>가. ----- ----- ----- ----- ----- 50 -----</p> <p>나. ----- ----- ----- 50 -----</p> <p>2. 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입지선정기준)</p> <p>① “생략”</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9조(입지선정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현행	개정안
<p>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 가격의 수준</p>	<p>1. ----- -----(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라. 단계별 개발 수요</p>
<p>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도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p>제29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p> <p>① “생략”</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제37조에 따른 폐수종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제29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폐수종말처리시설----- ----- -----.</p>
<p>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p> <p>1. 산업용지 및 공장 등(건설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및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당초 개인기업이 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주식등 재산권 행사가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p>	<p>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 ----- -----.</p> <p>1. ----- 기타시설(건설 중 ----- ----- ----- 등으로 ----- ----- -----</p>

현행	개정안
<p>2. 당초 주주의의 자의 지분이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자로 인하여 당초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감소하더라도 출자총액 또는 보유주식이 감소되지 아니하거나,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주주의 변동 및 상속(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재검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5일까지로 한다.</p>	<p>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2016. 12.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33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3호

환경부고시 제2016-23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01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에 따른 업무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및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등(제4조,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제1항, 제29조의2부터 제34조까지, 제41조부터 제50조까지)
2.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등(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9조제2항)
4.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등(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부처의 장관: 공통사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4조(농공단지의 종류) ①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는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전문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집적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용지(이하 "산업시설용지"라 한다)에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 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준공전인 단지의 경우 입주수가 확인된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이하 같다) 수가 넷 이상이면서, 산업시설용지 전체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 나.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지역특화단지: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로서 산업시설용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
 - 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7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을 포함한다)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이 호에서 "지역특화업체"라 한다)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입주기업체 수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 나. 지역특화업체가 입주한 면적이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일 것
3. 일반단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지
 -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이하 "전문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단지등으로 지정된 농공단지가 2년 동안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의 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특화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농공단지의 지정

제5조 <삭 제>

제6조(시·군·구별 지정면적) ① 시·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군·구별로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군·구별 지정면적 범위를 1백만 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을 합산한 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상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본다.
 - 가. 분양대상면적 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면적
 - 나. 단지 지정 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단지 면적. 다만, 입주 실수요자가 확인된 면적은 제외할 수 있다.
 - 다.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2009.8.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의 면적
2.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3. 분양대상면적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7조(단지별 지정면적)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공단지별 지정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상 33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정면적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의 현지사정, 입주수요 등을 감안하여 제6조에 따른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 내에서 단지별 지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단지조성비는 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입주업체가 단지별 지정 면적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입주기업체의 부담으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시·군·구별 지정면적의 한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공단지 지정목적의 변경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분되는 농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제여건 및 국내외 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지정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일반단지를 전문단지 또는 지역특화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및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고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전문단지등을 일반단지로 변경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단지는 조성 후 5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산업입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이 해제된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공장용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제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여야 하며, 단지 조성비로 지원된 국비보조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입지선정기준)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4.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5.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 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7.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지역
8.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한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10. 「지하수법」 제2조에 따른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로서 취수시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11.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지선정을 위한 사전 협의한 경우 허용)
 12. 제10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실정 등으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공단지 개발 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이 경우 입지수요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하여 충분한 수요가 입증된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사회적, 지역적, 환경적, 산업여건 등 지역입지 여건
 - 나. 대상지역에 대한 기업의 선호도
 - 다. 기업의 분양가격 지불의사
 - 라. 단계별 개발 수요
 2. 도로·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3.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등 여건
 4. 국토종합계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산업입지공급계획·지역개발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도로·광역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6.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농공단지의 지형적·지역적 여건 등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한 단지 조성비용 등
 - 가.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나.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 다.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제곱미터당 100m 이내인 지역
 - 라. 단지 외 오페수관로 연장이 1km 이내인 지역
 - 마.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도지사가 지역별, 시·군·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바.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 ③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

하기 위해 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시 당해 농공단지 입주 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기초시설로 연계처리하는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지 등의 적정성·타당성조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변경하기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검증을 하기 위한 수요검증반을 구성하여 농공단지 지정의 적정성 등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대상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요검증반은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수요검증반의 장은 시·도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시·도의 담당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수요검증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지정권자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수요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요검증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 예정기업 수요면적의 적정성
2. 해당 농공단지의 분양가능성
3. 인근 농공단지 개발 현황
4. 그 밖에 수요검증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개발사업 시행자)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나.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2. 민간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자

제12조(실시계획의 작성) ①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농공단지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공간배분

- 가.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활동을 위한 금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간을 배분하여 계획함.
- 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업종별 배치

- 가. 공산품, 음·식료품 및 농·수·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별로 배치
- 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 다.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
- 라.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

3. 경관보전

- 가. 단지조성 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
- 나. 단지조성 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 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4. 지원시설의 설치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해당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
- 나.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설치 하도록 계획

②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지원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비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 제10조에 따른 입지등의 적정성·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지역의 구분은 별표1과 같고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국비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단지등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단지등에 대한 지정해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 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비 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확보·내시된 국비소요 예산은 기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요자금 배정 요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지역특화단지 중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형태 및 제출관련 세부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군·구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① 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결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 지침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①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와 시공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의 주체(이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라 함)가 담당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최소 지정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③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 ④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별표3과 같다. 이 경우 각종 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농공단지의 분양 및 입주지원

제16조(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
2.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
3. 생산·수출 및 고용전망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8.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안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를 분양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면 2주 이상의 공고 기간과 2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어야 하고, 관리기본계획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른 처분계획을 따라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계획 및「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수·축산물 등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100분의 50 이상 활용하거나 현지인을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및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우선 입주자로 정할 수 있다.
- ④ 건설한 기업의 입주유치를 위하여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에 적합한 경우 사업성 검토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보다 우선하여 입주선정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 또는 대체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업종별 단계 또는 관련 전문기관과 분양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는 유치대상업종, 유치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분양가격)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의 분양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2.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이하 "시가감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여건 및 수급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 이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특화업체 이외의 자가 분양받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른 일반단지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4.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에 산업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 후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 정산시기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환경부고시 제2013-40호) 제26조부터 제26조의17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사업성 검토) ①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제23조에 따른 자금지원

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 후에 자금지원 신청기간을 경과한 기업과 자금지원 추천을 받은 후 자금대출 기한을 경과한 기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의 검토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사업성 검토의 신청은 사업성 검토 기관이 정하는 신청서류에 따른다.

③ 사업성 검토 기관은 해당 업종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주요 평가항목이 포함된 사업성 검토 평가기준을 정하여 서면 및 현지출장 조사를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평가기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
2.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도
3. 자기자금 조달 능력
4. 정책지원자금(부지조성비, 시설·운전자금등)의 상환계획
5. 신용 상태
6. 폐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업타당성

④ 사업성 검토 기관은 시장·군수의 산업용지 분양면적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산업용지 소요면적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성 검토 기간은 사업성 검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는 자는 적합판정의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내에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공장등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지조성이 완료되기 이전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사업성 검토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가 업종의 변경이 없고 사업규모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보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공단지에서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기업의 사업성검토 적합판정 유효여부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⑧ 사업성 검토 신청 후 이를 철회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철회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기업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결산재무제표상의 회계결산기간을 달리하거나 부적합판정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종합심사)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농공단지의 건설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및 사업성 검토 적합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할 수 있다.

1. 농외소득원개발에 충실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별 고용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2. 대기업, 자부담 중소기업의 경우 농공단지 입주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3. 분양면적의 적정성 여부 및 이 지침에의 적합여부 등

제21조(입주선정 통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를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업체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주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입주계약) ① 농공단지 안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를 분양하려 할 때 또는 분양시점에서 해당 토지 위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선정된 업체의 공장 및 기타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생산기술연구원, 관련 금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말한다. 이 호에서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입주기업체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아닌 자가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로부터 양도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의 분양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장등의 착공, 완공시기 및 산업용지의 사용승낙에 관한 사항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의 해지요건,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
5. 분양가격, 대금납부방법 및 공동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입주계약의 신청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3항제1호의 사항중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에 대하여는 미리 사업성 검토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⑥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 한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결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 ⑧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결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만 해당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농공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관리·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 기금의 용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4조(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입주기업체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3.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4.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5. 우수제품을 생산하는 입주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직거래 판매 행사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등 기준이 같을 경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25조(입주기업 지원)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농공단지에 관한 다음 각호 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1. 농공단지 입주유치 및 상담 업무

2. 농공단지 입지실사 및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3. 입주신청기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4. 농공단지입주기업 지원자금의 관리
5. 부실기업의 대체입주에 관한 지원 업무
6.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제공 업무
7. 농공단지의 실태조사 분석 및 종합평가 업무
8. 입주기업체의 가동실태 및 경제동향 정기분석 업무
9. 수출 및 내수판매 지원 업무
10.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지원에 관한 기본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 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2.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3. 경제적·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4.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등 사전·사후 서비스 실시
5. 재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③ 농어민의 직업훈련을 위한 정부기관별 추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농어민 직업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매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직업훈련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훈련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농어민 직업훈련의 실시·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취업알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에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담당창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제37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의2(교육훈련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고용인력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100분의 70 범위 내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및 해당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30조(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군·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제3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삭제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3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

2. 산업용지·공장 등을 처분하거나 관리기관이 산업용지를 환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때

②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성 검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에 대하여는 「산업집적법」 제43조를 따른다.

④ 「산업집적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장등이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가 「산업집적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3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본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시까지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생산자물가총지수=(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제34조(재분양시의 분양가격 결정) ① 재분양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이를 매입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
2. 「산업집적법」 제41조에 따라 환수하거나, 같은 법 제39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시 분양하는 경우. 다만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분양으로 본다.
 - ② 재분양가격은 관리기관이 환수한 가격에 재분양 시까지 발생하는 금융비용, 환매권행사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분양가격은 최초분양가에 토지분양대금의 상황에 따른 금융비용(연체이자 제외)을 합산한 금액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재분양가격이 시가감정액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가감정액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④ 관리기관이 재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분양가격 및 대금납부 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 그 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재분양의 절차는 신규분양의 절차를 따른다.

제5장 농공단지의 환경관리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① 시·도지사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20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 폐수배출관련 별표5의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의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³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2.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3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공단지 지정 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군수는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오·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6조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용자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시기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지정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미 확보된 폐수종말처리 시설 부지를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는 공장가동 시기와 일치되도록 단지조성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예산 미확보 등으로 공장가동 시기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보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지는 산업용지로 분양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폐수를 병합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 가동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은 종전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등) ① 농공단지의 확장, 입주기업체의 공장의 증설 또는 생산공정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기존단지에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연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신·증설할 수 있다.

- ② 질소·인, 난분해성유기물질 등 기존의 폐수종말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증설 또는 개선 하는 경우의 보조, 융자,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최소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관리에 관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하여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관리공단 또는 환경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기업체가 당초 사업계획보다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주기업체의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가. 부담비용: 구조물 시공비, 설계감리비 및 행정경비 등 사업수행 부대비
 - 나. 부과기준: 오·폐수량, 오염부하량, 부지분양면적, 건축연면적, 종업원수를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비용부담계획에 의한다.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비는 오·폐수를 배출하는 원인자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가. 부담비용: 인건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 나. 부과기준: 제1호 나목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시장·군수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동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 ③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사설계 요율은 제15조의 부지조성 요율을 준용한다.
 - ④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감리는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 제1호 파목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입주기업체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운동을 위하여 비용부담 계획에 따라 운영·관리비용을 적기에 납부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오염물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별도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9의 2호 나목에 따른 폐놀류 등 오염물질은 특례지역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6장 사후관리 · 운영

- 제41조(농공단지협의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의 전문가가 산·학·연 지역혁신 자문 활동으로서 참여하고,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구성,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③ 광역단위협의회 회장 또는 지역혁신 거점별 기초단위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또는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과 산·학·연 연계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장: 부시장 또는 부군수, 부구청장

나. 위원: 10인 이내(시·군·구 관계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사무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2. 성격 및 심의결정

가. 성격: 심의·의결기관

나. 개최: 회의개최 사유 발생시

다. 심의결정 :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

3. 기 능

가.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

나.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

다.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

라.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

마.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

제43조(부실기업의 결정) ①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실기업으로 본다.

1. 3월이상 또는 최근 1년누계 6월이상 휴·폐업한 경우
2.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장등의 준공후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무단전매한 경우(사실상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
6. 최근 6월간 가동율이 50% 미만인 경우
7.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8.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9.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
10. 입주기업체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11. 기타 관리기관이 정상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부실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정상화 대상기업: 부실기업중 최소의 지원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기업
2. 사고기업: 회생이 어려워 기업대체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기업
- ③ 부실기업 심의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신청: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조치 등을 희망하는 업체
 2. 직권신청
 - 가. 관리기관(관리권자)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 나. 지원기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기업
 - 다. 기타 부실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서 사무국이 심의·상정한 기업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 및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해당기업 및 관련기관은 행정처리 및 금융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4조(경영정상화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영애로 타개 및 부실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예산범위 내에서 경영정상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대체입주 지원등)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대체입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운전자금을 제2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종전 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 잔액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금융한도내에서 승계금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2. 휴·폐업공장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전문기술자의 무료점검 지원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체입주기업체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가 인수·합병을 원할 때
 2. 계열화 또는 협동화 사업으로 연계활용코자 할 때
 3. 농공단지가 소재한 행정구역안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기업
 4. 시장·군수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인수·합병을 원할 때
- ③ 시장·군수는 대체입주기업에 산업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 ④ 지원기관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한 지원요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협조요청 사항 중 자체처리가 가능한 분야는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요청받은 사항 중 다른 기관의 소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알린 후 협조사항을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이의가 있는 부실기업, 기타 관련기관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휴폐업공장에 대체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규입주기업과 동일하게 관련 조세를 감면한다.

제46조(중앙부처 보고 등) ① 시·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 농공단지 지정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의 자료를 취합하고 분기별로 전국농공단지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성 검토결과 및 자금지원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 조성사업 진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개발시책의 일관성유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및 농어민 취업확대 등과 관련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7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관리 등에 필요한 농공단지 실태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 반기말 기준으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농공단지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적, 전문적 사항 등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협조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역특화단지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은 단지의 가동상황,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지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단지현황 및 기업애로사항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이 지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및 의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탁한다.

1. 제46조제1항제2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제47조제2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49조(포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농공단지 개발, 관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농공단지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적절한 규모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의2(교육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 농공단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농공단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종합정보망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홈페이지에 『농공단지입주정보센터』사이트(www.sbc.or.kr)를 운영하고 동 사이트가 농공단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망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해야 하며, 시·군·구의 담당공무원은 관내 농공단지의 관련 자료가 항상 현행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농어촌지역의 구분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태안군, 청양군(2)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제주시(1)	서귀포시 (1)
합 계	24 (17시, 7군)	50 (25시, 25군)	48 (3시, 45군)

비고 : 시·군의 공업집적도, 재정자립도, 공장면적 등에 따라 대상지역을 구분하며,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에 따라 단지조성비를 차등 지원(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은 단지조성비 지원 제외)

[별표 2] 부지조성비 지원

(1)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도별		세부공종내용	
부지조성	용지취득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지시공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대시설	진입도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타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2) 농어촌지역별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단위 : 천원/3.3058㎡)

구분	일반농어촌	추가·우선 농어촌
· 국비보조	30	70
· 지방비보조	10	10

-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 3) 잔여소요는 지방비용자(기채)로 충당함
- 4)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별표 3]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

(1) 부지조성

- 요율산출기준 : 공사비 × 해당요율 = 조사설계비 또는 시공감리비
- 요율체계

(단위 : %)

공 사 비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시공 감리	계	비 고
20억원미만	1.78	2.75	1.53	6.06	-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관급자재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계를 말함(부가가치세를 제외함)
20억-30억원미만	1.72	2.65	1.48	5.85	
30억-50억원미만	1.69	2.60	1.45	5.74	- 공사비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50억-100억원미만	1.65	2.53	1.41	5.59	-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 등으로 공사비가 증감되는 경우의 시공감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공사비 = 변경공사비/낙찰율 · 낙찰율 = 계약금액/예정가격
100억원초과	1.60	2.45	1.37	5.42	

- 1)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 2) 시공감리의 업무범위 및 방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한다.

(2) 공동이용 건축물

- 건축설계, 감리 및 기타 업무 대가의 산정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공고)에 의한 관련업무의 산정기준 및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별표 5] 폐수배출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품목분류
	〈염색 및 가공업〉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우리늄광 및 토륨 등의 방사성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경우는 제외)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성냥제조의 경우는 제외)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의 경우는 제외)
	〈제1차 금속산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품목분류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열간 또는 냉간제품이 아닌 기타 형강, 단공강재, 용접형강 제조의 경우는 제외)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우라늄 제련 및 정련의 경우는 제외)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기타>
25922	도금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비고 : 농공단지하류의 하천 등이 조수의 영향등으로 상수원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동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합 계	보 조	용 자	보 조	용 자	보 조
100	50	50	70	30	100

- 1) 용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등으로 충당
- 2) 용자조건은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지 제1호의서식] (제13조 관련)

지역특화단지 조성 예산 및 자금(국비) 요구내역

(단위 : 천원)

농 공 단지명	지 정 승인일	실 시 계 획 승인일	부 지 조 성			예산 재배정액 (당해 년도)	예산 및 자금배정요구액				비고
			착공일	공정 (%)	준 공 예정일		전년도 까지 배정액	(당해)년도			
								기 배정액	금회 요구액	소계	
계											

[별지 제2호의서식] (제14조 관련)

지역특화단지 조성사업비 정산내역

가. 총괄

(단위 : 천원)

농공단지명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불용액)		
						합계			실집행액			이월액					
농공 단지 명	지정 년월	면적 (평)	합 계	국 비	지방 비	합계	국비	지방 비	합계	국비	지방 비	합계	국비	지방 비	합계	국비	지방 비

나. 국고보조금 불용액 조서

(단위 : 천원)

단 지 명	불 용 액	불 용 사 유
		※ 불용사유를 구체적으로 6하원칙에 의거 작성

[별지 제4호의서식](제46조 관련)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천㎡)

단지명											
소재지											
관리기관	기관명				담당과			전화번호			
지정개요	지정일 및 착공일	준공일	농어촌 구분	부지조성 사업비							
				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보조	지방비용자	자부담		
분양현황 (천㎡)	지정면적	조성면적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분양률	분양가				
							원/㎡				
입주현황	입주계약업체수	입주업체수 (A=B+C)	가동 (B)	휴·폐업 (C)	건설중	미착공	단지 가동률 (B/A)				
휴업현황 (업체수)	휴업사유		① ②	③ ④							
폐업현황 (업체수)	폐업사유		① ②	③ ④							
장기 미착공 ¹⁾	기업수			면적(천㎡)							
입주업종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형태별	계		수도권 이전	대도시 이전	기타 이전		분공장	창업			
고용인원	계		현 지 인		외지인		남	여			
			농 가	비 농 가							
생산 및 수출현황	생 산 (백만원)				수 출 (천불)						
	년 간	당분기 실적	누계 실적	년 간	당분기 실적	누계 실적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지원시설	폐수종말처리장		근로자 APT		기 숙 사		탁아소 및 유치원				
	처리용량	총사업비	세대수	수용인원	세대수	수용인원	세대수	수용인원			
	㎡/일	백만원									
단지 관리기관(관리사무소, 협의회, 협회 등)	주소 :			전화번호 :			인원수 :				

1)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2년(2009.8.7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업체의 경우 3년으로 본다) 내에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자료 6

**2017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고자료 6

2017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지침 변경 주요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지원 자격 및 요건	○ 추가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추가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20% 이상 지급하는 경우도 사회서비스 유형으로 인정	p2
	○ 추가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만 지원 가능	p2
	○ 유사한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국비지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가능	○ 유사한 마을 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p3
○ 추가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 지원을 제한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는 해당되지 않음	p3	
선정 우선순위	○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참여하여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한 농촌공동체회사	○ 삭제	p3
	○ 추가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구 분	2016년	2017년	비고
	○ 추가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 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	○ 다만, 포장재 제작은 총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다만, 포장재(포장재 디자인, 동판 포함) 제작과 시제품 개발·생산 비용은 각각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 에서 지출 가능	p4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인건비 (최대 126만원/월,인)	○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인건비 (최대 135만원/월,인)	
	○ 추가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사업비를 고령자 인건비로 지출 가능 * 월단위로 계약한 근로자는 월 2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20%까지 지출 가능	
자금재원	○ 농특회계	○ 지특회계	p4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과 장 강 혜 영 사무관 허 동 응	044-201-1571 044-201-1572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지원부	부 장 김 기 진 담당자 박 은 미	031-299-7881 031-299-7887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3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이후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지특회계)	11,100	3,300	3,300	3,300	3,300
국 고(50%)	5,550	1,650	1,650	1,650	1,650
지방비(25%)	2,775	825	825	825	825
자부담(25%)	2,775	825	825	825	825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 (농특회계)	540	135	135	135	135

II. 201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 ① 목적 : 주민 주도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각종 사회서비스, 고령자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농촌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②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서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촌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
 -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 다만, 지역 주민 비율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③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 제공 복합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25% 이상 지출하여야 함
 - *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인건비로 총사업비 규모의 20%이상을 지급하는 경우도 복합형으로 인정(고령자 일자리 제공 복합형)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 제한요건

-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자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 타 마을공동체육성사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선정시 지자체 확인 필수)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
 -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해당하지 않음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기업 (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선정우선순위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 TV, 컴퓨터, LED 전광판, 간판 등 자산취득비는 지원 불가(홈페이지 업데이트, 홍보 소프트웨어 제작 등은 가능)
- 다만, 포장재(포장재 디자인, 동판 포함) 제작과 시제품 개발·생산비용은 각각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 가능

○ (인건비 등 경상경비)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지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인건비 (최대 135만원/월·인) 등 경상경비 지출 가능

* 인건비는 '17년 최저임금 기준(6,470원/1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원(붙임2 참조)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사업비를 고령자 인건비로 지출* 가능

* 월단위로 계약한 근로자는 월 20만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합계의 20%까지 지출 가능

<설명1 : 고령자 인건비 비율 판단 방법(총사업비 5,000만원인 경우)>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은 총사업비(5,000만원) 규모의 20%인 1,000만원 이상을 고령자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총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예시1) 총사업비 5천만원 = 사업비 4,760 + 고령자 인건비지원 240(고령자 총인건비 1,000)

(예시2) 총사업비 5천만원 = 사업비 3,000 + 고령자 인건비지원 2,000(고령자 총인건비 10,000)

<설명2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임금 지원 방식>

고령자 인건비는 월단위 고용일 경우 월20만원/인(인원수 제한 없음), 일용직의 경우 그 달에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20%까지 지원 가능

(월단위/인) 인건비 100만원 = 인건비 지원 20만원 + 총사업비 외 80만원

(월단위/인) 인건비 80만원 = 인건비 지원 20만원 + 총사업비 외 60만원

(일용직 고용) 인건비 100만원(일5만원×4인×5일) = 인건비 지원 20만원(20%) + 총사업비 외 80만원

(일용직 고용) 인건비 500만원(일5만원×10인×10일) = 인건비 지원 100만원(20%) + 총사업비 외 400만원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5. 자금재원 및 지원 형태

- 자금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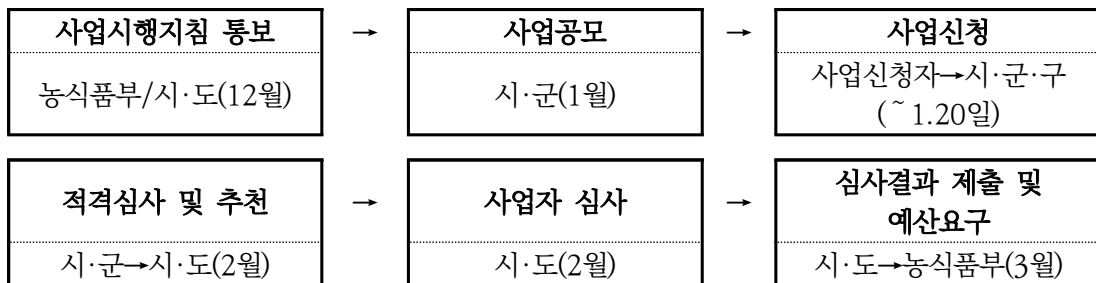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국고 25, 지방비 12.5, 자부담 12.5)
 - *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유형별 상이(최대 4년)
 - 사회서비스 유형 및 복합형(최대 4년), 소득사업유형(최대 2년)
 - 매년 사업성과 점검 후 추가 지원 검토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 일정은 시·도,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6.12.31)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자 선정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 * 심사기준의 일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가 사업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시·군은 시·도에서 교부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17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설명 및 홍보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 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7.1.20)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2.3)

3.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2.17)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7명 내·외로 구성*
 -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시·도는 그 결과*를 공문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로 제출(2.28)
 - * 선정 결과, 심사평가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등(pdf 파일로 별도 메일 제출 가능)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3.10)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3.31)

5.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자인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군은 반기별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점검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시·도에 제출(7.15, 익년도 1.15)
- 시·도는 반기별 추진결과 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업추진 완료 후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 종합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제출(익년도 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에 대해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IV. 201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8년도 사업수요조사

- '17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18년 사업수요조사로 같음
 - *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지자체)이 농특회계(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에서 지특회계(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로 이관되어 '17년 사업자 선정시 '17년, '18년 사업 대상자 선정

2. 201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군·구 공모시 시·군·구에 사업신청('17년 1.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소득사업유형 (<input type="checkbox"/> 농식품산업형 <input type="checkbox"/> 도농교류형 <input type="checkbox"/> 지역개발형) <input type="checkbox"/> 복합형(복합형일 경우 √ 하시고, 위 유형에서 해당되는 란에 각각 √ 하세요)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E-mail)		
	(전화번호)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 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 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4년	명
					'15년	명
					'16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4년	백만원	
				'15년	백만원	
				'16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고령자고용 (수, 금액 등)	'14년		
				'15년		
				'16년		
⑩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법인·조합 <input type="checkbox"/> 상법상 회사 <input type="checkbox"/> 농업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input type="checkbox"/> 90%이상 <input type="checkbox"/> 80%이상 <input type="checkbox"/> 70%이상 <input type="checkbox"/> 60%이상 <input type="checkbox"/>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 여부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input type="checkbox"/>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input type="checkbox"/>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input type="checkbox"/>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 회사에 출자한 인원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 사업 개요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월별 사업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 (경영, 직원) 등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고령자(65세 이상) 고용계획	※ 농촌지역 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 교육 및 홍보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 상품·서비스 내용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상품·서비스 내용	
◆ 수익확보 계획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2016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16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2017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내 환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 계량지표(50점)

구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선택 (B) (30)	신규	구성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구분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일자리 창출 (20)	○ 연간 고용인원/목표 고용인원×100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계속	공익 (10)	○ 달성 실적액/목표 실적액×100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합계(A+B)(50)		점			

□ 비계량지표(50점)

구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 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 성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신규 선택 (B) (30)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 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 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계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 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 원 활동도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 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 부										
합계(A+B)(50)		점											

2. 사회서비스유형-복합형 평가 지표

□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 사회서비스사업비(고령자 인건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공익 (3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 달성 지출액/목표 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제공(고령자 일자리)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계속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고령자 인건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고령자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A+B)(50)	점	

□ 비계량지표(50점)

구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선택 (B) (30)	신규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계속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계속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20</td> <td>16</td> <td>12</td> <td>8</td> <td>4</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계속	○ 공익성을 5단계로 평가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탁월</th> <th>우수</th> <th>보통</th> <th>미흡</th> <th>매우미흡</th> </tr> </thead> <tbody> <tr> <td>점수</td> <td>10</td> <td>8</td> <td>6</td> <td>4</td> <td>2</td> </tr> </tbody> </table>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합계(A+B)(50)				점												

[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	
	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4	'15(A)	'16(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 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 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 시·군 및 공동체회사의 사업추진상 문제점, 개선사항, 기타 건의 사항 등 기재하고 출처를 명시

[별지 제6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평가결과 보고서(도)

I. 평가대상 및 예산집행실적

회사명	사업 유형	사업비(천원)								대표자 (연락처)				
		국비		지방비				자부담			총계			
		계 획	실 적	도 계 획	비 실 적	시 군 계 획	비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II. 사업추진성과

〈소득사업유형〉

(단위 : 백만원, 명)

회사명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 농산물구매액			방문객		
	'14	'15	'16	'14	'15	'16	'14	'15	'16	'14	'15	'16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C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사회서비스유형〉

(단위 : 백만원, 명, 월, 회)

회사명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사회서비스 수혜인원		사회서비스 제공기간		사회서비스 제공횟수	
	'15	'16	'14	'15	'14	'15	'14	'15
계								
A 공동체회사								
B 공동체회사								

* 계량화가 어려운 지역사회 공헌, 파급효과 등은 개괄적으로 기술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의 경우 인건비, 고용인원 등으로 양식 변경 작성

〈 사업추진성과 평가표 작성예시 〉

순위	회사명	총 평점	공동체성 (15점)	지역성 (15점)	수익성 (35점)	법인성 (30점)	공익성 (5점)
1	A회사	95점	13	15	33	30	4
2	B회사	90점	12	15	30	30	3
.....							

* 회사별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작성

Ⅲ. 시도 평가결과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Ⅳ. 건의사항

-

〈작성요령〉

- 2016.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붙임 1 농촌공동체회사 유형별 모델 개념

① 사회서비스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교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고령자 일자리 제공형)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경우
 -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② 복합형

- 사회서비스유형과 소득사업유형의 사업을 함께 수행
 -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 노인재가복지 시설운영, 농촌체험관광 +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로컬푸드 판매 + 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 * 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 복합형)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사회서비스제공형 사업에 지출 (고령자 일자리 제공 복합형) 총 사업비 규모의 20% 이상을 고령자 일자리 인건비로 지출

③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 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붙임 2 인건비 지급 예시(사회서비스 제공형)

예 시	지원 연차에 따른 월 지원금			설 명 (지원한도액 : 135만원)
	1년차 (100%)	2년차 (80%)	3·4년차 (6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00만원	80만원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0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없음 - 2년차 : 자부담 20만원(20%) - 3·4년차 : 자부담 40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08만원	8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35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없음 - 2년차 : 자부담 27만원(20%) - 3·4년차 : 자부담 54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20만원	9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15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15만원 - 2년차 : 자부담 30만원(20%) - 3·4년차 : 자부담 60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35만원	1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0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65만원 - 2년차 : 자부담 65만원 - 3·4년차 : 자부담 80만원(40%)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35만원	135만원	135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공동체회사가 급여로 월 250만원을 지급할 때 - 1년차 : 자부담 115만원 - 2년차 : 자부담 115만원 - 3·4년차 : 자부담 115만원

* 월 지원 한도는 135만원(1차년도 100% → 2차년도 80% → 3·4차년도 60%)

참고자료 7

농공단지 조성 현황

참고자료 7 농공단지 조성 현황

I 농공단지 개요

□ 조성 목적

- 농어민 소득증대, 농어촌지역 산업기반 확충,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지역에 조성(소규모 산업단지)

■ 산업단지 유형(산업입지법 제2조) ■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단지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학 기술산업 육성	국토부	산업부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일반 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도지사	시·도지사	지자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식·문화·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 농공단지 종류

전문단지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60% 이상이 되는 단지
지역특화단지	지역특화업종*(농림어업등의 산업 업종, 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80% 이상이 되는 단지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를 제외한 단지

□ 농공단지 지정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

- (지정요건) 기초 지자체별로 기 조성된 단지의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신규단지 지정 제한
 - 입지선정기준에 따른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지정
 - * 기초 지자체별 미분양률(5%), 휴·폐업률(10%), 실수요자의 입주 수요(90%) 등을 고려하여 신규 단지에 대해 단지조성비 지원 제한

II 추진 경과

- '83년, 경제기획원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제정을 통해 농공단지 제도 도입
- '90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폐지, 지자체 자율 추진
 - 농공단지 업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이관,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사업을 지자체 자율추진으로 전환
 - * 농공단지 총괄부처 : ('84) 경제기획원 → ('91) 농림수산부 → ('93) 상공부(現, 산업부)
- '91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고시) 제정·운영
 - 현재 산업부·농식품부 등 5개 부처에서 소관 업무별로 관리·지원
 - * '13.3월(정부조직개편)부터 농식품부는 농림식품 관련 업종, 해수부는 수산 관련 업종 위주의 특화농공단지 조성 추진

구분	소관 업무	관련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산업집적법
농식품부	농공단지 조성 지원, 노후단지 개보수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부	수산업종 특화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토교통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법
환경부	환경 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Ⅲ 재정 지원

- 농식품부가 단지 조성, 노후단지 개·보수 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지특회계 시·도 포괄보조)으로 지원
 - 총리실 주관 농공단지 제도개선(11.5월)을 통해 '13년부터 일반 및 전문단지 신규조성 지원 중단, 지역특화단지에 한해 지원
 - 단지조성(국비) : '84~'13년 7,075억원, '14년 167(14개소), '15년 164(12개소), '16년 158(10개소), '17년 44(4개소) ⇒ 7,608억원
 - 개보수비(국비) : '10~'13년 269억원, '14년 91(56개소), '15년 106(72개소), '16년 94(48개소), '17년 89(55개소) ⇒ 649억원
- 산업부는 입주업체에 운전·시설자금 융자지원(중소기업진흥기금), 환경부는 공동폐수처리시설 지원(환특회계)

Ⅳ 조성 및 가동현황 ('16.9월 기준)

□ (조성) 총 469개소 지정, 이 중 427개소 기반조성 완료

Ⅰ 도별 조성현황 Ⅰ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시
469개 (427)	1 (1)	43 (38)	43 (42)	92 (86)	57 (52)	67 (55)	69 (65)	82 (73)	3 (3)	12 (12)

* () 내서는 기반조성 완료단지 수, 광역시(부산1, 대구2, 광주1, 울산4, 세종4)

Ⅰ 입주업체별 현황 Ⅰ

계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비금속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6,811	1,131 (16.6%)	398	296	842	495	389	1,092	769	495	904

Ⅱ 조성시기별 현황

구 분	계	'96년 이전	'97~'01년	'02~'06년	'07년 이후
조성완료수 (개)	427	251 (58.8%)	32	23	121 (28.3%)

- (분양) 총 54,390천㎡의 분양대상 면적 중 51,204천㎡ 분양(94.1%)
 - * 미착공상태의 선분양을 포함한 분양현황 : 총 58,127천㎡ 중 52,192천㎡ 분양(89.8%)
- (공장가동) 입주업체 6,811개 중 6,470개 공장설립 완료(설립률 95.0%),
 공장설립중(건설 215, 미착공 126)
 - 설립완료 6,470개소 중 가동업체 6,138개(가동률 94.9%), 휴폐업 332
- (고용) 가동업체(6,138개)에서 149천명, 업체당 평균 24명
 - * 현지인(농가+비농가) 91천명(60.9%), 현지인 중 농가 9.9천명(11.0%)
- (생산·수출, '15년기준) 생산 50조 9,410억원(업체평균 84.3억원),
 수출 124억 75백만\$(207만불)

V 특화농공단지 현황

1. 추진 경과

- 농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산업을 육성하고자 도입('01년)
 - * 지역특화단지 : 지역특화업종(농림어업등의 산업 업종, 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기업이 입주
- 지역특화단지의 내실있는 운영과 무분별한 단지 조성 방지를 위해 '11년에
 지원요건 강화 등 개선(국무총리실)
 - '13년부터 일반 및 전문단지 신규조성 지원을 중단하고 지역특화단지에 한해 지원,
 특화단지의 입주기업 비율* 강화
 - * 지역특화업종 입주기업 비율 : 50%이상 → 80%이상

■ 단지조성비 지원 제한 요건 ■

구 분	종 전	개 선('11년)
분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별 기존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u>10%를 초과</u>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별 기존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 면적의 <u>5%를 초과</u>하는 경우
가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별 기존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가 입주업체 수의 <u>1/5(20%) 이상</u>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별 기존 농공단지의 휴폐업 업체가 입주업체 수의 <u>10% 이상</u>인 경우
실수요자 입주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대상 면적의 <u>3/4(75%) 이상</u>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대상 면적의 <u>90% 이상</u>에 해당하는 실수요자 입주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재정 지원

□ (지원조건) 坪당 3~7만원* 단지조성비 국고 보조

* 농어촌지역의 유형구분에 따라 차등지원(일반농어촌 3만원, 우선지원농어촌 7만)

□ (지원규모) '13년 8,763백만원(9개소), '14년 3,535백만원(5개소),
'15년 8,419백만원(7개소), '16년 12,109백만원(7개소),
'17년 4,356백만원(4개소)

3. 조성 및 가동현황 ('16.9월기준)

□ (지정) 총 27개소 중 22개소 지정, 나머지 5개소는 설계 등 지정절차 진행중

□ (조성) 조성완료 14개소(분양완료 5), 조성중 5, 미착공(준비중) 8

Ⅰ 도별 특화농공단지 현황 Ⅰ

구 분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전 체(a+b)	27개	4	1	5	2	11	3	1
지 정 (a)	22개 (14개) [5개]	4 (3) [1]	1 (1)	4 (3) [1]	2 (1)	7 (4) [1]	3 (1) [1]	1 (1) [1]
지정절차진행중 (b)	5개	-	-	1	-	4	-	-
미착공	8개	-	-	2	-	6	-	-
해수부소관	7개	1	-	2	-	3	1	-

* () 내서는 기반조성 완료단지 수, [] 내서는 분양 완료단지 수

□ (공장가동) 입주업체 177개 중 130개 공장설립 완료(가동중 125개)

□ (고 용) 1,269명, 현지인 936명(73.8%)

□ (생산·수출, '15년) 생산 1,861억원, 수출 88백만\$

참고1

농공단지 예산지원 내역

(단위 : 개소수, 백만원)

시도	계				단지 조성				노후단지 개보수				
	'16		'17		'16		'17		'16		'17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개소	예산	
광주	1	700	-	-	-	-	-	-	-	1	700	-	-
강원	4	908	6	792	-	-	-	-	4	908	6	792	
충북	1	587	5	1,078	-	-	-	-	1	587	5	1,078	
충남	12	8,202	20	5,056	2	5,627	1	2,056	10	2,575	19	3,000	
전북	11	3,825	7	1,104	2	2,481	-	-	9	1,344	7	1,104	
전남	18	8,424	15	4,230	5	6,204	3	2,300	13	2,220	12	1,930	
경북	8	1,881	2	193	1	1,536	-	-	7	345	2	193	
경남	3	750		800	-	-	-	-	3	750	4	800	
합계	58	25,277	55	13,253	10	15,848	4	4,356	48	9,429	55	8,897	

참고2

농공단지 부처별 지원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p>□ 개발지원(농림축산식품부)</p> <p>○ 단지조성비지원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3조)</p>	<p>○ 지원액(단위 : 천원/3.3058㎡) → 지특회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2">지역특화</th> </tr> <tr> <th>일 반</th> <th>추가·우선</th> </tr> </thead> <tbody> <tr> <td>국비보조</td> <td>30</td> <td>70</td> </tr> <tr> <td>지방비보조</td> <td>10</td> <td>10</td> </tr> <tr> <td>합 계</td> <td>40</td> <td>80</td> </tr> </tbody> </table>	구 분	지역특화		일 반	추가·우선	국비보조	30	70	지방비보조	10	10	합 계	40	80
구 분	지역특화														
	일 반	추가·우선													
국비보조	30	70													
지방비보조	10	10													
합 계	40	80													
<p>□ 노후단지 정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29조)</p>	<p>○ 노후시설 정비지원 : 농공단지내 도로, 진입도로, 하수도, 녹지, 공동 이용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예산 지원</p>														
<p>□ 공동폐수처리장 지원</p> <p>○ 폐수종말처리시설비지원(환경부)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37조)</p>	<p>○ 사업비 부담비율 → 환특회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일반농어촌</th> <th>추가지원</th> <th>우선지원</th> </tr> </thead> <tbody> <tr> <td>국비보조</td> <td>50%</td> <td>70%</td> <td>100%</td> </tr> <tr> <td>국비용자</td> <td>50%</td> <td>30%</td> <td></td> </tr> </tbody> </table> <p>* 융자금리5.5%, 3년거치 10년 균등</p>	구 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우선지원	국비보조	50%	70%	100%	국비용자	50%	30%			
구 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	우선지원												
국비보조	50%	70%	100%												
국비용자	50%	30%													
<p>□ 입주지원(산업통상자원부)</p> <p>○ 입주기업 자금 지원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23조)</p> <p>○ 교육훈련비지원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29조의2)</p>	<p>○ 시설자금 : 30억원(3년거치 5년상환)</p> <p>○ 운전자금 : 5억원(2년거치 3년상환)</p> <p>* 시설자금 :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p> <p>* 운전자금 : 공장설립 완료 후 필요시</p> <p>○ 입주기업 인력의 교육훈련 실시의 경우, 1인 월10~50만원이하로 6개월 이내 지원(단, 지원액의 70%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업체가 부담)</p>														
<p>□ 세제지원(기획재정부 등)</p> <p>○ 단지개발 사업자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p> <p>○ 입주기업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p>	<p>○ 취득세 : 35% 경감(비수도권 60%)</p> <p>* 부동산 및 단지조성 후 건축물 등의 신·증축의 취득물</p> <p>○ 재산세 : 5년간 35% 경감(비 수도권 60%)</p> <p>○ 종합부동산세 : 5년간 50% 경감(비 수도권 면제)</p> <p>*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재산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p> <p>○ 취득세 : 50% 경감</p> <p>○ 재산세 : 5년간 35% 경감(비 수도권 75%)</p> <p>○ 종합부동산세 : 5년간 50% 경감(비 수도권 면제)</p> <p>○ 법인세·소득세 : '15.12.31까지 50%감면(인구 20만이상 시지역외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p>														
<p>□ 기타 지원</p> <p>○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p> <p>○ 각종 개발 부담금 등 면제</p>	<p>○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 우대</p> <p>○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 대체산림조림비(산지관리법 제19조), 개발부담금(개발이익 환수 법률 제7조)</p>														

참고3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내용 및 기준

〈 지원내용 〉

용도별		세부공종 내용	
부 지 조 성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지시공비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등	
	부 대 시 설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타시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의 용·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 지원기준 〉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반·전문농공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 농어촌
국비보조	국비지원	국비지원	국비지원	30	70
국비용자	없음	없음	없음		
지방비보조	(‘13년부터)	(‘13년부터)	(‘13년부터)	10	10
합 계				40	80

※ 지역특화단지 : 분양대상면적 중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이 업체수 및 면적기준으로 5분의 4 이상이 되는 단지

참고4

특화농공단지별 현황

(*16. 9월 기준)

시도	시군	단지명	지정	지정 면적 (천㎡)	단지 조성	착공 준공	분양율 (%)	업종	비고 (입주업체)
강원 (4)	정선	예미	'09.09	107	완료	'09.12 '11.07	29%	음식료 (빵, 김치, 두부 등)	가동 4
	고성	해양 심층수	'09.05	104	완료	'09.06 '10.10	64%	음식료	가동 13 건설 4 미착공 1
	속초	대포제2	'07.12	108	완료	'08.07 '10.01	100%	수산물 가공 (젓갈, 계 등)	가동 22 휴폐업 1 미착공 2
	속초	대포제3	'11.05	163	조성중 (93%)	'11.07 -	93%	음식료	가동 19 건설 9 미착공 10
충북 (1)	괴산	발효식품 특화	'09.12	321	완료	'12.06 '14.12	76%	음식료	가동 8 미착공 3
충남 (5)	홍성	광천김 (해수부)	'08.05	57	완료	'08.10 '14.12	100%	김 가공	가동 9 미착공 1
	서천	서면 (해수부)	'07.09	79	완료	'08.03 '15.12	58%	김 가공	가동 2 건설 1 미착공 5
	금산	인삼약초	'09.08	115	완료	'11.04 '14.03	10%	음식료 (인삼, 홍삼 등)	가동 2
	논산	노성	'15.2	160	-	미착공	-	음식료	-
	청양	정산2	-	(190)	-	미착공	-		-
전북 (2)	고창	복분자	'10.05	196	완료	'11.09 '13.12	37%	음식료 (복분자 등)	가동 4 건설 2 미착공 3
	정읍	소성	'13.11	232	조성중 (85%)	'14.04 -	-	음식료	-

시도	시군	단지명	지정	지정 면적 (천㎡)	단지 조성	착공 준공	분양율 (%)	업종	비고 (입주업체)
전남 (11)	강진	마량	'88.01	56	완료	'88.08 '89.03	100%	수산물 가공	가동 14
	강진	칠량	'09.09	149	완료	'09.09 '11.05	52%	수산물 가공 (미역등)	가동 9 휴폐업 4
	강진	칠량제2 (해수부)	'13.07	162	-	미착공	-	수산물 가공	지정해제 (16.5)
	완도	해양생물 (해수부)	'12.10	110	-	미착공	-	음식료	-
	해남	망끝해남식품	'12.08	143	완료	'13.03 '15.03	53%	식료품	가동 1
	장흥	장흥	'11.05	150	완료	'11.07 '13.01	4%	음식료 (식재료 등)	가동 1 미착공 1
	고흥	동강2	-	(299)	-	미착공	-	식료품	-
	함평	명암	-	(144)	-	미착공	-	식료품	-
	영암	영암	'14.02	116	조성중 (80%)	'14.05 -	-	식료품	-
	구례	자연드림 파크2	-	57	-	미착공	-	식료품	-
	곡성	운곡	'16.07	(182)	-	미착공	-	식료품 친환경농자재	-
	무안	몽탄	-	(107)	-	미착공	-	식료품 (양념채소등)	-
경북 (3)	영덕	로하스특화 (해수부)	'12.06	149	조성중 (85%)	'12.12 -	-	음식료	-
	영양	남영양	'13.09	31	완료	'14.02 '16.09	100%	식료품	미착공 5
	칠곡	칠곡 농기계	'13.03	245	조성중 (96%)	'13.08 -	-	농기계특화	-
경남 (1)	거창	남산	'94.12	154	완료	'95.06 '97.02	100%	석재	가동 17
계		27개							

* 음영은 주업종이 수산물가공인 단지, 해수부소관은 '13년 시행중 단지로 이관 기준

* 전남 강진 칠량제2 농공단지 지정승인 해제(강진군, '16.5.12)

참고5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 및 지원현황

I 농공단지 지정 및 조성수(누계치)

(개소)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지 정	299	305	315	322	337	345	359	385	401	421	430	444	453	459	467
조성완료	276	291	295	297	298	311	324	330	339	347	360	376	390	406	420

II 예산지원 현황

(억원)

구 분	'01년까지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국 비	2,845	54	132	251	420	260	314	428	598	523	526	462	531	258	271
용 자	2,541	17	15	51	34										
지방비	5,343	13	32	12	489	298	187	563	690	947	964	1,003	1,141	540	320
합 계	10,729	85	178	314	944	558	501	991	1,288	1,470	1,490	1,465	1,672	798	591

* '13년 국고보조 531억원(해수부 소관 28억원 포함 금액)

III 연도별 입주기업 현황

(%, 개사, 천명,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분양률	96.7	97.4	97.6	98.2	98.0	97.8	96.8	98.4	97.4	97.2	96.3	95.5	94.2	94.6	94.1
가동률	88.6	92.1	91.6	90.2	90.6	93.1	93.7	94.1	93.7	93.6	94.9	94.8	94.7	93.8	95.2
입주계약업체	4,279	4,380	4,525	4,686	4,842	5,001	5,231	5,372	5,632	5,808	6,028	6,208	6,447	6,626	6,736
고용	105	109	113	112	115	116	116	120	123	130	138	140	147	148	150
수출액	3,681	3,623	3,718	5,071	6,518	6,138	6,749	7,848	9,035	11,587	12,332	11,620	11,843	12,777	12,475

참고자료 8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

참고자료 8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

□ 사업목적

- 농촌의 독특한 자연·생태자원 등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07년부터 추진

□ 사업내용

- 농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소득기반시설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주말농원 등
 - 소득기반시설 : 위탁시설, 판매시설, 음식·숙박시설 등은 민자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
 - * 운영프로그램 개발비는 전체 보조사업비(국비, 지방비)의 1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나, 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자체자금으로 추진
- 추진현황 : '16년말 기준 총 78개 지구 조성 중(41지구 개장)
 - * '17년 : 신규 1지구(충남 부여)
 - 투입 예산(국고기준) : 215,070백만원('07~'16 기간)

□ 회계 및 지원조건

- 회 계 :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시·도자율편성), 지자체 보조
- 지원조건 :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지원(국고50%, 지방비50%)
 - * 지구당 3~5년에 걸쳐 지원.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지원대상(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 시·군당 1개 지구 지원

〈붙임〉

도입예상시설 및 지원비율

지원대상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계획수립	세부설계비,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문화재 지표조사·시굴 조사비, 사전환경성검토비, 환경영향평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비 등 * 운영프로그램 개발비는 전체 보조사업비(국비, 지방비)의 10% 이내로 하되 최대 5억원까지 가능 ※ 기본조사비는 시·군 자체자금으로 부담	100%
기반시설	도로(진입도로, 공원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 공동이용시설(주차장, 화장실, 광장 등), 택지 조성 등	100%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대피시설 등 공원 관리지원시설	100%
편의시설	파고라, 벤치, 안내판, 음수대, 전망대, 다목적 체육시설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테마·체험 시설 등 공공시설	경관(녹지)·공원조성, 식물원, 동물원, 전시관, 박물관, 산책로, (생태)탐방로, 온실, 어류 육성장, 학습관, 체험관, 농산물 가공체험, 곤충·야생관찰체험, 전통문화체험, 공예품 체험, 천체 관측소 등 ※ 유료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00%
위락시설	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짬짬방, 피크닉장 등	민자유치 (지자체 자체자금)
판매시설	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숙박시설 등 기타 사업	음식점, 카페, 펜션, 방갈로, 야영장, 가족호텔 등 기타 사업	

〈첨부〉

농촌 테마공원 조성 지구별 추진현황

('16.5월 현재)

지구명	위치		주요 테마	사업비(국고, 백만원)											추진현황	
	시도	시군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이후
합계	77지구		-	276,939	1,570	5,582	9,447	19,764	31,846	33,379	41,662	33,086	20,196	18,538	61,869	
2007	4지구		-	14,700	1,570	3,074	2,307	4,049	3,700	-	-	-	-	-	-	
신두	경기	안성	가축, 초지	3,500	500	750	600	1,650	-	-	-	-	-	-	-	○ 준공('11.12), 개장('12.04)
월남	충북	음성	캠핑장	4,000	100	800	592	1,008	1,500	-	-	-	-	-	-	○ 준공('12.03), 개장('12.04)
동부	충남	서천	동부지	3,300	418	300	891	891	800	-	-	-	-	-	-	○ 준공('13.3), 개장('13.12)
불갑	전남	영광	불갑지	3,900	552	1,224	224	500	1,400	-	-	-	-	-	-	○ 준공('12.11), 개장('13.12)
2008	8지구		-	20,790	-	2,508	4,810	6,377	6,527	568	-	-	-	-	-	
어농	경기	이천	쌀	2,500	-	250	250	1,000	1,000	-	-	-	-	-	-	○ 준공('15.06), 개장('15.07)
산대	충북	보은	전통정원	2,500	-	150	500	1,000	850	-	-	-	-	-	-	○ 준공('11.12), 예정('15.08)
천내	충남	금산	인삼, 어죽	2,500	-	100	400	1,200	400	400	-	-	-	-	-	○ 준공('13.12), 개장('13.12)
만경	전북	김제	능제지	2,500	-	58	500	665	1,109	168	-	-	-	-	-	○ 준공('12.07), 개장('12.12)
광의	전남	구례	수변	3,290	-	200	1,150	1,000	940	-	-	-	-	-	-	○ 준공('12.12), 개장('12.12)
삼백	경북	상주	쌀·누에·꽃감	2,500	-	650	600	384	866	-	-	-	-	-	-	○ 준공('14.11), 개장('15.03)
수산	경북	울진	청정생태농업	2,500	-	900	1,010	128	462	-	-	-	-	-	-	○ 준공('12.03), 개장('12.04)
서택	경남	사천	서택지	2,500	-	200	400	1,000	900	-	-	-	-	-	-	○ 준공('12.5), 개장('12.10)
2009	9지구		-	26,706	-	-	2,330	5,990	8,110	8,596	1,680	-	-	-	-	
장화	인천	강화	갯벌	2,500	-	-	250	1,000	1,000	250	-	-	-	-	-	○ 준공('13.04), 개장('13.04)
연라	경기	여주	여주쌀	2,500	-	-	150	650	1,000	700	-	-	-	-	-	○ 준공('13.03), 개장('13.03)
파로호	강원	양구	참살이, 산채	2,500	-	-	250	800	800	650	-	-	-	-	-	○ 준공('13.12), 개장('13.01)
백곡	충북	진천	백곡지·잡숯	2,500	-	-	100	500	700	600	600	-	-	-	-	○ 준공('13.12), 예정('15.04)
광시	충남	예산	한우	2,950	-	-	300	300	270	1,000	1,080	-	-	-	-	○ 준공('14.01), 개장('14.04)

지구명	위치		주요 테마	사업비(국고, 백만원)											추진현황	
	시도	시군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이후
운림	전남	진도	삼별초	4,156	-	-	300	800	1,600	1,456	-	-	-	-	-	○준공('12.11), 개장('13.04)
유천	전남	화순	산죽 산양삼	2,500	-	-	500	700	1,000	300	-	-	-	-	-	○준공('13.08), 개장('13.08)
내성	경북	봉화	송이· 은어	2,500	-	-	380	640	740	740	-	-	-	-	-	○준공('12.06), 개장('12.09)
가야	경남	함안	연꽃	4,600	-	-	100	600	1,000	2,900	-	-	-	-	-	○준공('13.08), 개장('13.09)
2010	12지구	-	-	38,760	-	-	-	3,348	9,725	10,889	9,693	3,105	2,000	-	-	
도하	경기	양주	새벽 딸기	2,500	-	-	-	700	650	575	575	-	-	-	-	○준공('16), 개장('15.02)
상천	경기	가평	잣나무· 숲	2,500	-	-	-	150	650	800	900	-	-	-	-	○준공('15.12), 개장('16)
어천	강원	고성	라벤더	2,500	-	-	-	250	800	800	650	-	-	-	-	○준공('13.12), 개장('15.12)
청풍	충북	제천	황토	2,500	-	-	-	100	935	500	965	-	-	-	-	○준공('14.06), 예정('14.07)
미래지	충북	청원	수변	2,500	-	-	-	100	600	600	600	600	-	-	-	○준공('16.03), 개장('16.07)
서동마	전북	익산	마 재배지	5,000	-	-	-	400	1,000	1,700	1,245	655	-	-	-	○준공('16.04), 개장('16.06)
애플스 토리	전북	무주	사과	4,110	-	-	-	400	800	2,176	734	-	-	-	-	○준공('13.12), 개장('15.04)
신도	경북	청도	시대촌	4,800	-	-	-	320	1,490	1,247	1,743	-	-	-	-	○준공('14.12), 개장('16.03)
삼지	경북	영양	고추, 연	3,000	-	-	-	128	950	991	931	-	-	-	-	○준공('15.12), 개장('16.03)
덕곡	경북	고령	쌀	1,450	-	-	-	600	850	-	-	-	-	-	-	○준공('12.02), 개장('12.03)
주남	경남	창원	단감	5,000	-	-	-	100	-	1,000	900	1,000	2,000	-	-	○준공('16.03), 개장('16.09)
설피	경남	의령	역사· 문화	2,900	-	-	-	100	1,000	500	450	850	-	-	-	○준공('14.06), 개장('15.07)
2011	10지구	-	-	32,750	-	-	-	-	3,784	8,206	9,712	8,959	2,089	-	-	
상북	울산	울주	한우·수 변	3,200	-	-	-	-	400	1,000	500	1,300	-	-	-	○준공('16.6), 개장('17)
동량	충북	충주	사과	2,350	-	-	-	-	100	300	600	1,350	-	-	-	○준공('15.12), 개장('15.11)
문광	충북	괴산	빛· 소금	2,000	-	-	-	-	100	563	500	500	337	-	-	○준공('15.12), 개장('16.04)
두산	전북	장수	한우, 사과	4,600	-	-	-	-	214	1,478	1,200	1,056	652	-	-	○준공('15.12), 개장('16.03)

참고8. 농촌테마공원 조성 현황

지구명	위 치		주요 테마	사업비(국고, 백만원)												추진현황
	시도	시군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이후	
상하	전북	고창	유기농	5,000	-	-	-	-	170	1,300	2,812	718	-	-	-	○준공('16.12), 개장('16)
유평	전남	장성	사과	3,000	-	-	-	-	100	1,515	900	485	-	-	-	○준공('16.04), 개장('16.07)
부석	경북	영주	콩·사과	2,500	-	-	-	-	100	200	1,000	1,200	-	-	-	○준공('14.08), 개장('14.05)
송생	경북	청송	사과	2,500	-	-	-	-	100	350	1,250	800	-	-	-	○준공('14.09), 개장('15.01)
대가	경남	고성	연꽃	3,000	-	-	-	-	500	500	450	1,550	-	-	-	○준공('16.12), 개장('17.01)
용주	경남	합천	정원 청와대	4,600	-	-	-	-	2,000	1,000	500	-	1,100	-	-	○준공('17.12), 개장('18.01)
2012	12지구	-	-	51,237	-	-	-	-	-	5,120	14,228	10,420	7,607	2,962	10,900	
매천	충북	영동	과일·건 강	5,000	-	-	-	-	-	340	848	1,500	2,200	112	-	○준공('16.12), 개장('17.05)
동남	충남	천안	세계민 족음식	4,900	-	-	-	-	-	250	3,730	920	-	-	-	○준공('15.09), 개장('18.04)
홍양	충남	홍성	홍양 저수지	3,500	-	-	-	-	-	700	1,250	300	160	1,090	-	○준공('16.12), 개장('17)
합덕	충남	당진	합덕제	2,500	-	-	-	-	-	200	100	300	160	700	1,040	○준공('17), 개장('17)
단양	전북	진안	마이돈	3,200	-	-	-	-	-	500	200	2,500	-	-	-	○준공('15.06), 개장('15.06)
백운	전남	광양	빛, 꽃, 물	5,000	-	-	-	-	-	490	1,500	1,500	1,100	410	-	○준공('16.12), 개장('17.02)
학동	전남	담양	메타세 콰이어	4,836	-	-	-	-	-	490	1,500	1,000	1,846	-	-	○준공('15.12), 개장('16.02)
영운	전남	곡성	멜론· 기차	4,251	-	-	-	-	-	490	1,920	1,000	841	-	-	○준공('16.07), 개장('16.11)
진안	경북	문경	오미자	4,050	-	-	-	-	-	160	1,000	-	800	300	1,790	○준공('17.08), 개장('17.09)
청통	경북	영천	세계 정원	5,000	-	-	-	-	-	200	500	-	-	-	4,300	○준공('17), 개장('17)
서상	경남	거제	동식물	5,000	-	-	-	-	-	200	180	-	500	350	3,770	○준공('18.12), 개장('19.03)
특리	경남	산청	한약재	4,000	-	-	-	-	-	1,100	1,500	1,400	-	-	-	○준공('15.12), 개장('16.03)
2013	10지구	-	-	43,609	-	-	-	-	-	6,349	7,801	5,400	8,400	15,659		
대촌	광주	남구	화훼	5,000	-	-	-	-	-	-	300	1,700	-	1,000	2,000	○준공('17), 개장('17)
묘목	충북	옥천	묘목	5,000	-	-	-	-	-	-	1,500	-	1,500	500	1,500	○준공('16.12), 개장('17.03)

지구명	위치		주요 테마	사업비(국고, 백만원)												추진현황
	시도	시군		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이후	
구이	전북	완주	술	2,409	-	-	-	-	-	-	1,800	609	-	-	-	○준공('14.11), 개장('15.10)
안좌	전남	신안	김환기 화백	4,500	-	-	-	-	-	-	200	700	500	600	2,500	○준공('17), 개장('18)
오봉	경북	김천	자연경 관	5,000	-	-	-	-	-	-	200	650	500	1,000	2,650	○준공('17.12), 개장('18.01)
백석	경북	예천	곤충	5,000	-	-	-	-	-	-	200	700	1,500	2,600	-	○준공('16.12), 개장('17.01)
증지	경북	칠곡	꿀벌	5,000	-	-	-	-	-	-	600	1,000	700	600	2,100	○준공('16.10), 개장('17.02)
봉계	경북	포항	철기	5,000	-	-	-	-	-	-	200	500	400	700	3,200	○준공('18.12), 개장('19.01)
대산	경남	거창	창포, 연	4,000	-	-	-	-	-	-	1,149	942	-	336	1,573	○준공('17.07), 개장('17.12)
진양호	경남	진주	진양호, 숲	2,700	-	-	-	-	-	-	200	1,000	300	1,064	136	○준공('17.07), 개장('17.11)
2014	4지구	-	-	15,937	-	-	-	-	-	-	-	2,801	1,800	2,823	8,513	
오성	경기	평택	수변	5,000	-	-	-	-	-	-	-	703	1,100	1,000	2,197	○준공('17.12), 개장('18.04)
수타사	강원	홍천	수변	4,000	-	-	-	-	-	-	-	1,298	-	898	1,804	○준공('17), 개장('18)
함박산	경남	창녕	작약, 나무	3,000	-	-	-	-	-	-	-	600	500	300	1,600	○준공('17.12), 개장('18.06)
딸기향	충남	논산	딸기, 탑정호	3,937	-	-	-	-	-	-	-	200	200	625	2,912	○준공('18.01), 개장('18.06)
2015	3지구	-	-	12,500	-	-	-	-	-	-	-	-	1,300	2,453	8,747	
비봉	전남	보성	호박	5,000	-	-	-	-	-	-	-	-	400	1,300	3,300	○준공('20), 개장('20.)
고마	전북	부안	고마제, 뽕	5,000	-	-	-	-	-	-	-	-	500	853	3,647	○준공('18), 개장('19)
보은산	전남	강진	수변	2,500	-	-	-	-	-	-	-	-	400	300	1,800	○준공('18.12), 개장('18.12)
2016	5지구	-	-	19,950	-	-	-	-	-	-	-	-	-	1,900	18,050	
부전	전북	정읍	축산	4,700	-	-	-	-	-	-	-	-	-	-	4,700	○준공('18), 개장('19)
갑제	경북	경산	대추	4,750	-	-	-	-	-	-	-	-	-	700	4,050	○준공('19.12), 개장('19.12)
대가	경북	성주	참외	2,500	-	-	-	-	-	-	-	-	-	500	2,000	○준공('18.12), 개장('19.03)
밀양	경남	밀양	김치	5,000	-	-	-	-	-	-	-	-	-	350	4,650	○준공('18.12), 개장('19.01)
섬진강	경남	하동	재첩	3,000	-	-	-	-	-	-	-	-	-	350	2,650	○준공('20.03), 개장('20.03)

참고자료 9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현황**

참고자료 9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목적)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에 기여

* 농촌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농촌의 인력, 농산물,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 (사업주체)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내용) '16년 국고 예산 총 1,785백만원

①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1,650백만원)

- 사회서비스사업 유형 : 교육, 문화, 복지 등 지역의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수반되는 사업비, 운영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공동급식 지원, 아동 돌봄 및 교육, 교통취약 지역의 대체 교통 사업,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등

- 조건 : 최대 50백만원/개소(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4년

- 소득사업 유형 :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시제품 개발비·생산,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농식품산업형(로컬푸드 생산·가공 등), 도농교류형(농촌 문화체험, 농촌 관광 등), 지역개발형(향토자원 발굴·상품개발 등)

- 조건 : 최대 50백만원/개소(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최대 2년

- 연도별 지원(국고) 현황 : ('13) 13.5억(54개소) → ('14) 15(60) → ('15) 17(66) → ('16) 17(66) → ('17) 17(66)

- ②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 운영(135백만원) : 공동체회사 창업 상담, 경영컨설팅, 우수사업 모니터링, 우수사례 확산 등 지원

□ 연도별 지원현황

〈 2011년도 〉

시·도	시·군	공동체회사 명칭
인천(1)	강화	콩세알나눔센터
경기(2)	양주	천생연분마을
	양평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강원(12)	강릉	북동리한울타리마을
	삼척	신리마을회
	삼척	육백산포도 영농조합법인
	양구	양구민들레 영농조합법인
	양양	황룡마을 영농조합법인
	영월	와석김삿갓 영농조합법인
	인제	남전1리주민협의회 영농조합법인
	인제	용대황태 영농조합법인
	정선	낙동2리새농촌 영농조합법인
	정선	365행복마을 영농조합법인
	화천	신대리토고미 영농조합법인
	화천	파로호느릅마을 영농조합법인
충북(5)	영동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옥천	산계뜰친환경 영농조합법인
	음성	불개미 영농조합법인
	증평	장뜰 영농조합법인
	충주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충남(2)	부여	밤뜨래 영농조합법인
	청양	꽃뫼 영농조합법인
전북(8)	군산	우리 영농조합법인
	김제	벵엘노인복지센터
	김제	수록골농촌체험휴양마을
	완주	안덕파워 영농조합법인

시·도	시·군	공동체회사 명칭
전북(8)	완주	삼례학동마을공동체
	완주	완주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 건강한밥상
	익산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함해국
	진안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전남(13)	고흥	사랑나눔
	광양	광양시특산물유통사업연합회
	곡성	사회적기업스마일사업단
	담양	(사)전라남도 친환경농업교육원
	무안	배피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보성	보성농정회(우리원)
	순천	순천시농특산물유통 영농조합법인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영암	친환경스터디 영농조합법인
	완도	청해진미완도전북(주)
	장성	(사)한국농업경영인 장성군연합회
	함평	나비골월송친환경 영농조합법인
	화순	화순농특산물유통(주)
경북(7)	경주	세심마을세상
	고령	우리들엔영농조합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정보화마을
	봉화	한누리워낭마을
	상주	아자개 영농조합법인
	안동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의성	교촌 녹색체험마을
경남(3)	밀양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평리체험마을)
	산청	산청조섬유배합사로 영농조합
	하동	하동배 영농조합법인
제주(1)	제주	제주시한경농가주부모임 영농조합법인

〈 2012년도 〉

시·도	시·군	공동체회사 명칭
인천(1)	강화	콩세알나눔센터
경기(2)	양주	천생연분마을
	양평	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
강원(12)	춘천	(주)이장
	춘천	솔바우영농조합법인
	강릉	대관령어울림영농조합법인
	홍천	(주)늘푸름홍천한우
	홍천	농업회사법인 홍천6년근인삼
	정선	낙동2리새농촌영농조합법인
	철원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화천	화악산토마토영농조합법인
	화천	화천현장귀농학교
	인제	강원F&B영농조합법인
	인제	설원농산영농조합법인
	양양	황룡마을영농조합법인
충북(5)	단양	한드미영농조합법인
	옥천	산계뜰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음성	불개미영농조합법인
	증평	장뜰영농조합법인
	충주	(사)충주농촌문화체험협회
충남(2)	청양	천장리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
	홍성	(주)홍성반딧불이농업회사법인
전북(8)	군산	우리영농조합법인
	익산	주식회사법인(주)산마루
	완주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
	완주	학동마을영농조합법인

시·도	시·군	공동체회사 명칭
전북(8)	완주	완주로컬푸드건강한밥상영농조합법인
	진안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
	진안	농업회사법인진안마을(주)
	고창	고창황토복분자영농조합법인
전남(13)	순천	순천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
	담양	(사)전남친환경농업교육원
	고흥	신기거북이정보마을운영위원회
	보성	보성배영농조합법인
	장흥	청태전영농조합법인
	강진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영암	태이영농조합법인
	무안	배피체힘마을영농조합법인
	영광	연한가지(주)
	신안	압해배영농조합법인
	화순	농업회사법인화순군농특산물유통(주)
	해남	산나물촌영농조합법인
	완도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전남분소 완도제일 복지센터 EM사업단
	경북(7)	안동
상주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상주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상주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포항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영주		아람진영농조합법인
봉화		봉화김치마을영농조합법인
경남(3)	산청	산청조섬유배합사료영농조합법인
	창원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창원	가고파수출영농조합법인
제주(1)	제주	제주자색고구마영농조합법인

< 2013년도 >

시·도	시·군	공동체회사 명칭
경기(2)	양평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이천	(사)이천농촌나드리
강원(10)	춘천	솔바우영농조합법인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강릉	대기리영농조합법인
	횡성	개나리마을 영농조합법인
	평창	의야지청년회영농조합법인
	정선	백두대간약초나라영농조합법인
	철원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양구	농업회사법인펍프킨(주)
	인제	대암산오미자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양양	영농조합법인달래촌
충북(3)	단양	한드미영농조합법인
	옥천	청풍명월향수한우판매장영농조합법인
	제천	(주)덕산면전통시장변영회
충남(7)	청양	천장리 알프스마을영농조합법인
	홍성	(주)홍성반딧불이농업회사법인
	논산	포전영농조합법인
	논산	덕바위농촌체험휴양마을
	논산	딸기마을영농조합법인
	아산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전북(4)	태안	네이처영농조합법인
	익산	영농조합 다송리사람들
	정읍	내장산북분자 영농조합법인
	정읍	영농조합법인 햇빛즐거는마을
	정읍	산들영농조합법인

시·도	시·군	공동체회사 명칭
전남(13)	순천	순천월등복사골영농조합법인
	광양	신선찬영농조합법인
	구례	구례문척친환경감영농조합법인
	고흥	햇고을영농조합법인
	보성	녹차마을영농조합법인
	화순	농업회사법인 (주)죽력원
	장흥	농업회사법인 정남진한우주식회사
	강진	강진만영어조합법인
	영광	연한가지(주)
	장성	농업회사법인장성감주식회사
	완도	구절초시인과 전복신랑영농조합법인
	신안	영농조합법인신안솔트
	진도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경북(10)	포항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안동	영농조합법인(주)류충현약용버섯
	영천	농업회사법인(주)모아
	영천	영성에이피씨영농조합 법인
	상주	상주원예영농조합
	상주	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
	상주	모동명산포도영농조합 법인
	의성	청매당영농조합법인
	봉화	김치마을영농조합법인
	울진	울진농수산물유통농업 회사법인
경남 (4)	진주	햇살담은자연마을영농조합법인
	남해	남해보물섬마을영농조합법인
	하동	경남양채영농조합법인
	산청	오부친환경영농조합법인
제주(1)	제주	농사랑영농조합법인

〈 2014년도 〉

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명칭
경기(4)	양평	그린팜 영농조합법인
	양평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천	(사)이천농촌나드리
	안성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강원(9)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강릉	대기리영농조합법인
	영월	예밀2리 영농조합법인
	평창	산채 으뜸마을 영농조합법인
	평창	차항2리 영농조합법인
	정선	정선명주(주)
	정선	용탄2리새농촌 영농조합법인
	양구	편치불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
	인제	백담골 영농조합법인
충북(3)	제천	청풍명월덕산전통시장 협동조합
	옥천	청풍명월향수한우판매장영농조합법인
	청원	(주)청원자연랜드 농업회사법인
충남(2)	아산	제터먹이영농조합법인
	태안	네이처영농조합법인
전북(8)	정읍	내장산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정읍	영농조합법인 햇빛즐기는마을
	정읍	단풍만나원 영농조합법인
	장수	장수신농 영농조합법인
	완주	완주춤마뜨레제과제빵생협
	완주	자운영학동마을 영농조합법인
	완주	이웃린 영농조합법인
	순창	순창친환경연합 영농조합법인

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명칭
전남(17)	광양	신선찬 영농조합법인
	구례	구례문척친환경감 영농조합법인
	고흥	햇고을 영농조합법인
	고흥	참살이 영농조합법인
	화순	농업회사법인 (주)죽력원
	화순	마중물음식문화 영농조합법인
	화순	발효햇쌀 협동조합
	장흥	청계 영농조합법인
	강진	달마지마을 영농조합법인
	강진	강진전통된장 영농조합법인
	강진	녹향월촌산들 영농조합법인
	영광	(사)여민동락공동체
	장성	농업회사법인장성감주식회사
	완도	구절초시인과 전복신랑영농조합법인
	완도	울모래마을 유기농비파 영농법인
	진도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신안	영농조합법인신안솔트
경북(7)	상주	상주호호쭈마스 영농조합법인
	상주	은자골마을 영농조합법인
	상주	참배수출단지 농업회사법인(주)
	안동	(주)류충현약용버섯 농업회사법인
	영주	장생이녹색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울진	(주)울진유통 농업회사법인
	의성	청매당 영농조합법인
경남(7)	진주	햇살담은자연마을 영농조합법인
	사천	오름주가 영농조합법인
	남해	남해보물섬마을영농조합법인
	하동	경남양채영농조합법인
	산청	농업회사법인(주)조이팜
	거창	거창공유농업 사회적협동조합
	거창	(사)거창군 농업회의소
제주(1)	제주	제주자색고구마영농조합법인

〈 2015년도 〉

사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명칭
경기(5)	안성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양평	양평친환경로컬푸드 협동조합
	양평	양평양잠영농조합법인
	남양주	팔당늘푸른영농조합
	포천	포천사과영농조합법인
강원(4)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평창	대하리영농조합법인
	인제	설악영농조합법인
	양구	농업회사법인펄프킨(주)
충북(2)	영동	AMS영동미래농업(주)농업회사법인
	증평	장뜰영농조합법인
충남(4)	서산	서산유기영농조합법인
	논산	농업회사법인(주)우주
	부여	밤뜨래 영농조합법인
	청양	청양구기자원예농업협동조합
전북(11)	정읍	청아영농조합법인
	정읍	영농조합법인 금계식품
	정읍	단풍만나원영농조합법인
	남원	덕동마을영농조합법인
	완주	이웃린영농조합법인
	완주	완주쭈마뜨레제과제빵생협
	완주	미디어공동체 완두콩(협)
	진안	농업회사법인 능길유한회사
	장수	장수신농영농조합법인
	임실	임실배과수영농조합법인
	부안	하안들협동조합
전남(20)	신안	신안배영농조합법인
	고흥	참살이영농조합법인
	고흥	농업회사법인 (주)세일식품
	고흥	엔자임팜
	순천	지역사랑복지협의회

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명칭
전남 (20)	장흥	정남진장흥표고
	장흥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
	강진	달마지마을영농조합법인
	강진	녹향월촌산들
	강진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
	강진	자연그대로영농조합법인
	강진	덕룡산아랫동네영농조합법인
	강진	청림농원영농조합법인
	강진	민음영농조합법인
	강진	천지해
	나주	자연과농부들
	곡성	곡성멜론주식회사
	화순	발효햇살협동조합
	화순	토윈
	완도	슬로시티청산도
경북 (6)	상주	삼배수출단지농업회사법인(주)
	상주	외서마을생활문화공동체회사
	상주	호호쭈마스영농조합법인
	칠곡	칠곡양봉영농조합법인
	울진	(주)울진로하스코리아
	청송	청송전통장류체험홍보관사업단
경남 (8)	양산	양산농촌체험관광협회
	남해	남해군체험마을연합회
	하동	다오티푸드영농조합법인
	함양	농업법인(주)두레마을
	함양	농업회사법인(주)한국죽염공사
	거창	농업회사법인 샘내식품(주)
	거창	거창군농업회의소
	합천	호림영농조합법인

〈 2016년도 〉

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명칭
경기(5)	안성	안성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포	김포농식품 영농조합법인
	포천	포천사과 영농조합법인
	양평	양평양잠 영농조합법인
	가평	농부들의카페장터 영농조합법인
강원(5)	원주	원주생명농업
	횡성	산세로자연 영농조합법인
	평창	대하리 영농조합법인
	양구	농업회사법인 펌프킨
	양양	해당 영농조합법인
충북(2)	영동	AMS영동미래농업(주)농업회사법인
	증평	장뜰영농조합법인
충남(4)	논산	농업회사법인 (주)우주
	정읍	태안농산 영농조합법인
	아산	농촌애 협동조합
	천안	천안도란도란 사회적협동조합
전북(10)	정읍	김정숙황토식품
	정읍	청아 영농조합법인
	완주	미디어공동체완두콩 협동조합
	완주	에버팜 협동조합
	완주	꿈드림 영농조합
	임실	이플 영농조합법인
	군산	군산콩나물 영농조합법인
	정읍	정읍귀리명품화사업단
	남원	지리산에코푸드 협동조합
	완주	이웃린 영농조합법인
전남(17)	순천	지역사랑복지협의회
	나주	자연과농부들
	나주	선한세상(주)
	광양	광양해금골드키위 영농조합법인
	구례	지리산피아골식품 영농조합법인

시·도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명칭
전남 (17)	고흥	엔자임팜
	고흥	세일식품
	보성	보향다원
	보성	참샘 영농조합법인
	강진	믿음 영농조합법인
	강진	덕룡산아랫동네 영농조합법인
	강진	청자골한우리 영농조합법인
	강진	청림농원 영농조합법인
	강진	농업회사법인 한마음토마토
	강진	자연그대로 영농조합법인
	강진	천지해 법인
	완도	(주)이엠사랑
경북 (8)	상주	북장파랑새마을 영농조합법인
	상주	외서마을문화자립 농촌공동체회사
	영주	장생이녹색농촌체험마을 영농조합법인
	안동	농업회사법인 안동제비원전통식품(주)
	안동	안동마부용농산 영농조합법인
	안동	필창농산 영농조합법인
	상주	상주꿀배사별 영농조합법인
	상주	구마이꽃감마을 영농조합법인
경남 (11)	양산	(사)농촌체험관광협회
	하동	다오티푸드 영농조합법인
	함양	농업회사법인 (주)두레마을
	함양	농업회사법인 (주)한국죽염공사
	함양	농촌마을관광 협동조합
	함양	더불어사람교육체험 협동조합
	거창	(사)거창군농업회외소
	합천	호림 영농조합법인
	합천	하남양떡메 정보화마을
	함양	씨밀레 영농조합법인
	거창	거창오미자 영농조합법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업무편람

인 쇄 : 2016년 12월 일

발 행 : 2016년 12월 일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TEL . (044) 201-1586
FAX . (044) 863-9217

편 집 : 농촌산업과장_김 철
사 무 관_신 동 원
주 무 관_유 영 속

인 쇄 : 행복을파는장사꾼
TEL . (070) 7834-9890
